

정치 문외한도 알기 쉬운

정교분리의 진짜 의미

정동수 지음



종교단체
해산법의
문제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정교분리의 진짜 의미

지은이 / 정동수

Copyright ©

2026년 4월 15일 발행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발행인 / 정동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20,000원

본서에 있는 성경 구절은 2021년도에 우리말로 출간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마제스티 에디션>(그리스도예수안에, www.KeepBible.com)에서 모두 인용했습니다.

*“The True Meaning of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ssues and Responses Concerning Laws on the
Dissolution of Religious Organizations*

— D. S. Jung —



추천사: 시대적 요청에 응답한 책 8

서문: 왜 지금 이 책이 필요한가? 10

제1부: 정교분리 개념

제1장: 정교분리란 무엇인가? 28

1. 정교분리는 종교 배제가 아니다 30
2. 국교 설립 금지와 종교의 자유 실행 - 동전의 양면 35
3. 세속주의와의 차이 - 종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39
4. 신정 정치와의 차이 - 종교가 국가를 지배하지 않는다 43
5. 두 왕국론과의 차이 - 신학적 구분만으로는 부족하다 49
6. 정교분리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원리이다 55

제2장: 성경이 말하는 두 영역 58

1. 구약의 신정 정치 - 이스라엘만의 특수한 체제 59
 2.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 카이사르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 구분 67
 3. 신약 교회 - 칼이 아니라 말씀으로 75
- 결론 -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전환이 주는 교훈 83

제3장: 국가 교회 천 년의 비극(AD 313-1564) 88

- 1. 밀라노 칙령과 기독교 공인 - 교회, 권력을 만나다 89
- 2. 어거스틴과 ‘강권하여 데려오라’ - 국가 교회의 신학적 토대 98
- 3. 중세 카톨릭교회 - 종교 재판소와 강제 개종의 시대 101
- 4. 종교 개혁의 위대한 성취와 명백한 한계 108
- 결론 - 누가 개혁을 완성할 것인가 116

제4장: 재침례교에서 침례교로 - 유럽에서의 투쟁 118

- 1. 재침례교의 탄생 - 1525년 취리히의 결단 119
- 2. 영국 침례교의 탄생 - 토마스 헬위스의 선언 130
- 3. 박해와 성장 - 존 번연의 감옥에서 관용법까지 135
- 결론 - 취리히에서 런던까지, 유럽에서 싹튼 원리 139

제5장: 신대륙에서의 자유 투쟁(AD 1620-1791) 142

- 1. 메이플라워호 청교도들의 신정 국가 - 또 다른 국가 교회 143
- 2. 로저 윌리엄스와 로드아일랜드 150
- 3. 버지니아 침례교의 투쟁 161
- 4. 존 릴랜드와 제임스 매디슨의 협력 170
- 결론 - 메이플라워에서 수정 조항 제1조까지 183

제6장: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 정교분리와 분리의 벽(1791) 186

- 1. 45개 단어의 혁명 - 266년이 낳은 한 문장 187
- 2. 헌법 수정 조항 제1조 - 두 조항, 하나의 원리 188

- 3. 토마스 제퍼슨의 ‘분리의 벽’ 서한(1802) 196
- 4. 침례교 - 정교분리의 창조자 202
- 5. 266년 투쟁이 남긴 원리 209
- 결론 - 정교분리는 침례교가 세상에 준 선물 217

제3부: 정교분리 실행

제7장: 미국에서의 정교분리 실행과 문제점 222

- 1. 헌법 수정 조항 제1조 230년의 실행 역사 223
- 2. 좌파의 오용 - 공적 영역에서 종교 제거 시도 230
- 3. 우파의 남용 - 기독교 국가주의의 위험 243
- 4. 오늘의 쟁점들 - 정교분리의 올바른 이해 247
- 결론 - 분리의 벽은 보호의 벽이다 260

제8장: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와 정교분리 264

- 1. 헌법 제20조의 의미와 한계 266
- 2. 한국 정교분리의 역사적 배경 274
- 3.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와의 비교 283
- 4. 한국법에서 종교의 자유의 범위 289
- 결론 - 이식된 원칙에서 체화된 원칙으로 296

제9장: 한국 교회의 정교분리 현실 300

- 1. 교회의 정치 개입 - 어디까지가 정당한가 301
- 2. 국가의 종교 개입 - 어디까지가 정당한가 308
- 3. 대형 교단의 이단 정죄 - 현대판 종교 재판 315

4. 정교분리 원리에서 본 이단 정죄의 문제 325

결론 - 성경적 원리로 돌아가자 329

제10장: 정교분리와 종교 단체 해산법 332

1. 2025-2026 종교 단체 해산법 논란의 전말 333

2. 일본 종교법인법과의 비교 341

3. 정교분리의 칼날이 교회를 향할 때 350

4. 국가가 종교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가 - 역사적 교훈 358

5. 대형 교단과 국가 권력의 결탁 - 역사에서 반복되는 유흥 367

6. 한국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 372

결론: 정교분리는 교회를 보호하는 울타리이다 379

1. 우리가 걸어온 길 - 열 개의 장이 말하는 것 380

2. 질문에 대한 답 - 보호 울타리인가, 제거 장치인가 383

3. 한국 교회를 향한 네 가지 제언 388

4. 성경이 말하는 정교분리의 최종 근거 391

5. 맺음말 - 분리의 벽이 서 있는 한 394

참고 문헌 399



시대적 요청에 응답한 책

우리 사회는 언어의 오남용이 유독 심하다. 서양에서는 지금도 존칭인 미스터, 마담이 한국에서는 아랫사람이나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한 호칭 정도로 쓰이고, 조선 시대 정3품 이상 당상관에게 붙여 주던 ‘영감’(令監)은 나이 든 남성에 대한 비칭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언어의 왜곡은 개념의 왜곡을 넘어 우리 사고까지 비튼다. ‘정교분리’(政教分離)도 한국 사회에서 본래의 뜻과 달리 변질된 대표적 용어이다. 그리고 이 왜곡은 시민적 자유의 근간인 종교의 자유를 근본부터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자인 정동수 목사의 「정교분리의 진짜 의미」는 종교계를 넘어 한국 시민 사회에, 정치권에, 그리고 사법부에 올바른 정교분리의 본질과 개념을 밝혀 주는, 시대적 요청에 응답한 매우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정교분리’라는 용어가 어떻게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오남용되어 왔는지를 1525년 취리히의 재침례교도에서 1791년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에 이르는 266년의 투쟁사를 통해 낱낱이 밝힌다. 정교분리가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라는 교회 침묵의 명령이 아니라, “국가는 양심의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국가 제한의 원리임을 역사적 증거로 복원한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 용어가 얼마나 전도된 의미로 유통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이를 바로잡는 작업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교분리에 대하여 “헌법적·역사적·신학적으로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감정적·정치적 수사는 넘쳤지만, 정교분리의 원리와 종교 자유의 역사에 기초한 논증은 미흡했다.”라는 저자의 문제 인식은 이 책의 체계적이고 풍성한 내용으로 이어진다.

종교 법인 해산이 아무렇지도 않게 민법 개정안의 형식으로 제출되는 이 시대의 저변에 흐르는 광기와 위험성은, 종교와 무관한 사람이라도 상식적인 시민이라면 알 수 있다.

이 책은 종교의 자유가 단지 교회 예배당 안의 문제가 아님을 일깨운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이며, 양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불가분하게 연결된 시민적 자유의 핵이다.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하듯, 국가가 교회 강단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 칼날은 반드시 언론과 학문과 양심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종교 단체 해산법이 논의되고 설교 내용이 정치적 개입으로 판정되어 현직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이 시대에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곧 모든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일임을 이해시킨다는 점에서, 이 책은 신앙인뿐 아니라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시민이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유럽연합대학(EUI) 방문교수(2013-2014)

제31회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왜 지금 이 책이 필요한가?

자유 -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유이다. 스스로 믿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free to believe, free to think, free to choose”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자유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자유는 “free to believe”, 곧 믿을 자유, 양심의 자유이다.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의 사고가 형성되고, 그 사고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생각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양심(신앙)의 자유에서 나온다. 양심이 자유롭지 않다면, 다른 어떤 자유도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자유를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마치 공기나 물처럼, 원래부터 주어진 권리처럼 생각한다.

주일 아침에 눈을 뜨면 원하는 교회에 가고, 원하는 성경을 읽고,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한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도 국가가 제재하지 않는다. 주일

에 예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당국이 검열하지 않는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도 경찰이 체포하지 않는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다.

그러나 이런 자유가 전혀 허락되지 않던 시대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허락되지 않는 나라들이 존재한다.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자유는 극히 최근에 등장한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자유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견디고, 감옥에 갇히고, 피를 흘리며 싸운 끝에 비로소 얻어 낸 자유이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없다. 가치를 모르면, 결국 지키지도 못한다. 자유를 빼앗겨 본 사람만이 자유의 소중함을 안다. 감옥에 갇혀 본 사람만이 바깥공기의 가치를 절실히 느낀다. 입이 막혀 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귀한지 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아 본 사람만이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는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안다. 지하 교회에서 몰래 성경을 읽다가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 중국의 가정 교회 성도들도 이것을 안다. 정부의 허가 없이 모여 예배드리다가 체포되면 국가 질서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기소된다. 중동 여러 지역의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버림받고, 공동체에서 추방되며, 심한 경우 목숨을 잃는다.

이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 목숨을 걸어야 지킬 수 있는 현실이며, 때로는 목숨과 맞바꾸어야 하는 가치이다.

당연한 자유는 없다 - 자유의 역사는 짧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많은 자유는 사실 놀라울 만큼 최근에야 확립되었다. 몇 가지 사례만 보아도 그렇다.

미국 여성들이 연방 차원에서 투표권을 얻은 때는 1920년,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9조가 비준되면서부터이다.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이다. “자유, 평등, 박애”를 외쳤던 프랑스조차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시기는 1944년에 이르러서였다. 직

접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스위스는 더욱 늦어, 1971년이 되어서야 전국적으로 여성의 투표를 허용했다.¹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시점은 1948년 제헌 의회 선거였다. 건국 과정에서 이미 남녀 보통·평등 선거를 채택한 결정은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세우려 했던 지도자들의 통찰과 결단이 낳은 결과였다. 특히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미국식 헌정 질서와 자유 민주주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성별 구분 없는 보통 선거권을 헌법 질서의 기초로 삼는 데 동의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건국과 동시에 여성에게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한 나라가 되었다.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이 또한 극히 최근의 변화이다.

노예 제도를 생각해 보자. 미국이 노예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한 해는 1865년이다. 영국이 1833년에 자국 식민지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했고, 브라질은 1888년까지 이를 유지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노예 제도를 공식 폐지한 시점은 1962년이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당연한 질서처럼 받아들였던 노예 제도가 지구상에서 사라진 시기는 20세기 중반 이후이다.

민주주의 또한 마찬가지이다. 고대 아테네의 제한적인 민주정을 제외하면, 근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18세기 말 미국과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참정권은 재산을 가진 백인 남성에게만 허용된 제한적 제도였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보통 선거권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20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확립되었다. 인류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이는 매우 짧은 순간에 해당

1. 미국 헌법은 1787년에 제정된 본문(전문과 7개 조)을 유지한 채, 그 뒤에 별도의 '수정 조항'(amendments)을 덧붙이는 방식으로만 변화해 왔다. 즉, 기존 본문을 전면 개정해서 새 헌법을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원문은 그대로 두고 제1조, 제2조, ... 제27조까지 수정 조항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도 이러한 추가 조항 중 첫 번째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를 '수정 헌법 제1조'라고 표현하면, 마치 헌법 전체를 전면 개정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든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미국은 헌법 본문을 대체하지 않고, 기존 본문에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을 분명히 하고자, 이 책에서는 '수정 헌법'이라는 표현 대신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조' 또는 간략히 '수정 조항 제○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를 넘어, 미국 헌법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한다.

성경 기록을 바탕으로 인류 역사를 약 6,000년으로 본다면, 현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겨우 200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군주제, 제국, 귀족정, 신정 정치 아래 살았으며, 모든 성인이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하는 체제는 인류 역사라는 긴 책에서 아주 짧은 한 장면에 지나지 않는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도 예외는 아니다. 영국에서 출판 허가제가 폐지된 해는 1695년이었고,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때는 1791년이다.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언론의 자유를 선언했으나, 나폴레옹 체제 아래에서 다시 크게 제한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장된 시기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이다. 우리가 자유롭게 책을 쓰고 읽으며 공개적으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환경은 길어야 수백 년, 어떤 나라에서는 겨우 수십 년의 역사에 불과하다.

이 모든 자유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알지 못했던 권리들이다.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본다면, 여성 참정권의 역사는 약 2% 남짓, 노예 해방 이후의 시대는 3% 안팎,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4%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여기는 권리와 제도들이 사실은 인류 역사 전체에서 극히 짧은 구간에 속한다는 뜻이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는 오랜 전통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매우 예외적인 성취이다. 이는 누군가의 피와 눈물, 희생과 투쟁으로 일궈 낸 값진 결실이다.

한국의 역사만 보아도 이 사실은 명확히 드러난다. 조선 시대에는 유교 이외의 종교를 믿는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범죄였다. 1791년 윤지충(1759-1791)은 카톨릭 신앙에 따라 조상의 위패를 불사른 일로 참수되었다. 1801년 신유박해 때는 수백 명이 처형되었고, 1866년 병인박해에서는 약 8,000명의 카톨릭 신자가 목숨을 잃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신사 참배를 거부한 목사들이 투옥되고 순교했다. 주기철 목사(1897-1944)가 옥중에서 순교한 해가 1944년으로, 불과 80여 년 전의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한 시점은 제헌 헌법이 제정된 1948년이다. 한국인이 국가의 강요 없이 종교를 선택하고, 믿고, 예배드릴 수 있

게 된 역사는 한 세기도 채 되지 않는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오래된 전통이 아니라, 매우 짧은 역사적 기적에 가깝다.

신앙의 자유 - 230여 년의 길지 않은 역사

그렇다면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놀랍게도 겨우 23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 1791년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First Amendment)가 비준되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가 종교에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이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45개 영어 단어로 이루어진 이 조항이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종교의 자유 없이 살아왔다. 태어난 나라의 종교를 따르는 것이 숙명이었다고, 다른 신앙을 가지면 이단으로 몰려 투옥되거나 화형당했다. 중세 유럽에서 카톨릭과 다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곧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다. 프랑스의 왈도파는 산속으로 숨어들어야 했고, 체코의 후스파는 전쟁을 치러야 했으며, 영국에서 위클리프의 유골은 무덤에서 파내어져 불태워지기까지 했다.

종교 개혁 이후에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루터교 지역에서 칼빈파를 믿으면 추방당했고, 칼빈파 지역에서 침례교를 믿으면 감옥에 갇혔다.² 영국에서는 국교회(성공회)가 아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벌금을 내야 했다. 「천로 역정」(*The Pilgrim's Progress*)의 저자 존 번연은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12년간 투옥되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의 종교가 곧 그 땅의 종교이다.”(*cuius regio, eius religio.*)라는 원칙이 당시 유럽을 지배했기에, 개인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세상의 참혹함을 떠올려 보라. 1553년 제네바에서 미카엘 세르벤투스(Michael Servetus, 1511-1553)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졌다. 1612년 영국의 바르톨로뮤 레

2. 종교 개혁자 John Calvin의 이름은 프랑스어 발음에 따르면 ‘칼뱅’이 더 정확하다. 그러나 한국 교계와 신학 서적에서 ‘칼빈’이라는 표기가 이미 널리 정착되어 있고 독자들에게도 익숙하므로, 이 책에서는 관용에 따라 ‘칼빈’으로 표기한다.

거트(Bartholomew Legate, 1575?-1612)와 에드워드 화이트먼(Edward Wightman, 1580?-1612)은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 혐의로 이단으로 몰려 화형당한 마지막 인물이 되었다. 1659년부터 1661년 사이 미국 매사추세츠에서는 네 명의 퀘이커 교도³가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그중에는 여성인 메리 다이어(Mary Dyer, 1611?-1660)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의 죄목은 단지 보스턴에서 퀘이커 신앙을 전파했다는 사실뿐이었다. 이것이 정부가 ‘올바른 종교’를 정하고 다른 믿음을 처벌하던 시대의 실상이다.

인류 6,000년의 역사에서 종교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된 기간은 겨우 230여 년으로 전체의 4%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신앙의 자유는 인류 역사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등장한 예외적 성취이다. 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 낸 이들은 왕이나 귀족, 당대의 철학자가 아니었다. 사회적으로 미약했던 평범한 신앙인들이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 양심의 자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다.

여기에서 얻는 교훈은 명확하다. 종교의 자유는 인류가 누려온 보편적 원리가 아니다. 오히려 인류 역사의 기본값은 종교적 강제였다.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고 다른 신앙을 억압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일반적 현상이었다. 종교의 자유는 이러한 억압의 흐름을 깨뜨린 희귀한 결실이다. 예외적인 성취는 의식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과거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독재가 다시 고개를 들 듯, 종교적 강제 또한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걸어온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자유는 어디에서 왔는가?

1525년부터 1791년까지 266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쳤다. 이 266년에 걸친 투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유 투쟁

3. 퀘이커 교도(Quakers)는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조지 폭스(George Fox)를 중심으로 시작된 개신교 종파의 하나로, 공식 명칭은 ‘종교친우회’(Religious Society of Friends)이다. 성경과 설교보다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비추시는 ‘내면의 빛’(inner light)을 중시하며, 성직자·성례전·의식보다는 침묵 속에서 드리는 예배와 양심·평화·비폭력·평등의 실천을 강조했으며, 이로 인해 영국과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여러 차례 박해와 투옥을 겪었다.

중 하나이다. 그런데도 이 역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재침례교인(Anabaptists)들과 침례교인(Baptists)들이다. 1525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시작된 재침례교 운동은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혁명적인 주장을 내세웠다. 이 신념으로 인해 펠릭스 만츠(Felix Manz, 1498?-1527)는 림마트 강에서 익사형을 당했고, 수천 명의 재침례교인들이 화형, 익사, 참수, 투옥의 박해를 겪었다. 유럽 전역에서 재침례교인에 대한 추적과 사냥이 벌어졌으며, 그들은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양측 모두에게 박해받았다. 재침례교인을 처형하는 일은 카톨릭, 루터파, 칼빈파가 드물게 의견을 같이한 사안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놀라며 묻는다.

“종교의 자유를 확립한 주체가 침례교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가 계몽주의 철학자들—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볼테르(Voltaire, 1694-1778),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의 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존 로크가 「관용에 관한 서한」(*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을 출판한 때는 1689년이다.

반면 영국의 토마스 헬위스(Thomas Helwys, 1575?-1616?)라는 침례교 목사는 이미 1612년에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서적을 영어로 출판했다. 로크보다 77년 앞선 행보이다.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 1603?-1683)가 미국 신대륙 프로비던스에서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실험한 시기는 1636년으로, 로크보다 53년 빠르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서재에서 이론을 정리하기 훨씬 전부터, 침례교인들은 감옥에서 이 원리를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고 있었다. 이론보다 실천이, 신학적 논증보다 순교가 앞섰던 셈이다.

그들이 뿌린 씨앗은 사라지지 않았다. 영국 침례교로 이어진 정신은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전해졌고, 마침내 1791년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로 꽃을 피웠다. 토마스 헬위스는 국왕에게 “왕은 인간 영혼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서신을 보

내며 양심의 주권을 선포했고 이로 인해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 로저 윌리엄스는 양심의 자유를 외치다가 매사추세츠에서 추방되어 한겨울 황야를 14주간 헤맨 끝에 프로비던스를 개척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동체를 세웠다. 버지니아의 침례교 목사들은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으나, 감옥 쇠창살 사이로 모여든 군중에게 설교를 멈추지 않았다.

아이작 백커스(Isaac Backus, 1724-1806)는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수십 년 동안 종교의 자유를 위해 청원하고 연설하며 글을 썼다. 버지니아에서 존 릴랜드(John Leland, 1754-1841)는 제임스 매디슨을 직접 만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 장전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는 등 실천적인 투쟁을 통해 거대한 담론을 헌법이라는 실질적인 보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들의 피와 눈물은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 미국 제3대 대통령)의 사상에 깊은 영감을 주었고,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1751-1836, 미국 제4대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 내어 마침내 미국 헌법에 새겨졌다. 1802년 제퍼슨이 코네티컷 주 댄버리 침례교 협의회(Danbury Baptist Association)에 보낸 편지에서 언급한 “교회와 국가 사이에 분리의 벽을 세웠다.”라는 선언은 침례교인들의 266년 투쟁을 인정한 표현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교인들 가운데 이 역사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한국



교회는 이 자유를 거의 대가 없이 얻었다. 266년을 싸우지도, 피를 흘리거나 대규모 투옥되는 역사를 겪지도 않았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 조항이 명시된 배경에는 미국 헌법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그 조항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누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어 낸 원칙인지 아는 교인은 많지 않다. 이러한 무지가 오늘날 한국에서 정교분리 원칙이 왜곡되는 주요 원인이다.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첫째, 자유의 가치를 모르니 자유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 결과 “정교분리는 세속적 개념일 뿐 교회와는 상관없다.”라는 태도가 만연해 있다.

둘째, 자유의 역사를 모르니 자유가 위협받을 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 2025년 종교 단체 해산법⁴ 논란이 제기되었을 때, 많은 교인들이 그 위험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감정적으로 반응할 뿐, 헌법적·역사적·신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셋째, 자유의 원리를 알지 못하니 스스로 그 원리를 훼손한다. 자기 교회의 자유는 주장하면서도 다른 교회의 자유는 제한하려 한다. 대형 교단이 소수 종교 단체에 대한 국가의 해산 조치를 환영하는 태도가 그 예이다. 이는 자신이 딛고 선 나뭇가지를 스스로 잘라 내는 행위와 다름없다.

오늘날 한국의 현실 - 오해와 위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이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를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목사가 설교에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면 정교분리 위

4. 2025년 12월 초,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으로 촉발되어 2026년 1월 9일 국회에서 공식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제38조 등)」의 별칭이다. 사회적으로는 ‘정교유착 방지법’ 또는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으로 명명되나, 교계에서는 종교 탄압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종교 단체 해산법’, ‘종교 법인 해산법’, ‘종교해산법’ 등으로 부르고 있다. 이 책에서는 편의상 ‘종교 단체 해산법’으로 통칭한다. 해당 법안은 기존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법인 해산 사유를 대폭 확대해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나 조직적인 정치 활동 개입 시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 공무원이 별도의 영장 없이 법인 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나 서류를 검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나아가 해산된 종교 법인의 잔여 재산을 모두 국가로 귀속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이다.”라는 주장이 마치 상식처럼 통용된다.

그러나 이는 정교분리의 본래 의미와 정반대이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거나 특정 종교를 강요·금지하지 못하도록 세운 헌법적 장치이다. 교회의 입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원칙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정교분리라는 방패가 오히려 교회를 향한 칼로 바뀌고 있다.

이 오해의 깊이를 보여 주는 사례가 있다. 2023년 한 방송 토론에서 한 패널이 “목사가 사회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정교분리 위반이다.”라고 주장하자, 다른 패널이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종교인이 사회적 발언을 못 하게 하는 원칙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첫 번째 패널은 더 이상 답하지 못했다. 그는 정교분리의 의미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정교분리에 대한 대중의 이해는 여전히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교분리가 종교 배제의 논리로 변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라이시테(laïcité) 원칙⁵이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을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되며, 미국에서도 공립 학교의 기도 문제나 공공장소의 종교적 상징물 철거가 정교분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국가 권력의 간섭을 막으려 세운 원칙이 오히려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밀어내는 수단이 된 것이다.

문제는 이 오해가 단순한 무지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2025년 12월,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를 위반한 종교 재단에 대해 해산 명령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가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청구

5. 라이시테(laïcité)는 1905년 프랑스 「정교분리법」(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Églises et de l'État)에 근거한 국가 원칙으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종교와 국가의 제도적 분리를 의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특정 종교를 인정하거나 지원하지 않으며,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4년 공립 학교에서의 확연히 드러나는 종교적 상징물(이슬람 히잡, 유대교 키파, 대형 십자가 등) 착용을 금지하는 법, 2010년 공공 장소에서 얼굴을 전체적으로 가리는 복장 금지법 등은 라이시테 원칙의 적용 사례로 언급된다. 본래 이것은 국가 권력이 종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오늘날에는 종교적 표현을 공적 영역에서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6년 1월에는 종교 단체가 정치에 개입할 경우 법인을 취소하고 재산을 환수하는 내용의 종교 단체 해산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교를 통해 자신을 비판한 특정 교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특정 단체의 정치 자금 문제로 시작된 논의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일반 교회의 설교 내용에 대한 통제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1525년부터 1791년까지 266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쳐 얻어 낸 신앙의 자유가, 그 자유를 보호하려 만든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 도리어 위협받고 있다. 이는 정교분리의 실현이 아니라 그 정신의 왜곡이자 파괴이다.

이 책의 목적

필자가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직접적 계기는 2025년 12월의 ‘종교 단체 해산법’ 논란이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동기는 따로 있다. 한국 땅에서 태어나 6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며 마음 깊이 쌓인 답답함 때문이다. 한국 교인들은 정교분리의 역사를 거의 알지 못한다. 유럽과 미국의 침례교인들이 266년 동안 피를 흘리며 이 원리를 세웠다는 사실도 생소해한다. 그래서 정교분리가 위협받을 때 무엇이 왜 위협한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감정적으로는 반응하지만, 역사적·헌법적·신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책은 그 무지를 깨뜨리고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를 담았다. 이 책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 정교분리가 무엇이며 무엇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데 있다. 정교분리는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는 원리가 아니다. 세속주의와도 다르고, 신정 정치와도 결을 달리한다. 정교분리는 교회와 국가가 각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유한 영역을 지니며, 서로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원리이다. 특히 국가는 종교 문제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개념을 바로 세우는 것이 이 책의 첫 번째 과제이다.

둘째, 이 자유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역사를 추적한다. 1525년 스위스 재침례교 운동에서 시작해서 1791년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에 이르기까지, 266년에 걸

친 피와 눈물의 역사를 복원하는 일이다. 이 역사를 모르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무게를 가늠할 수 없다. 거저 얻은 듯 보이는 자유는 가볍게 여겨지기 마련이다. 누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이 자유를 쟁취했는지 알아야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다. 한국 교인들이 유럽과 미국 침례교인들의 순교와 박해의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정교분리가 미국과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어떤 왜곡과 문제가 나타나는지 진단한다. 미국에서는 일부 진보 진영이 정교분리를 종교 배제의 논리로 확장하는 문제가 있고, 한국에서는 정교분리를 교회 통제나 탄압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대형 교단이 국가 권력을 빌려 소수 종교를 억압하려는 유혹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교분리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세 번째 과제이다.

이 세 가지 과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하나이다. 정교분리를 갈등의 무기가 아니라 자유를 보호하는 질서로 회복하는 것이다.

국가와 교회가 서로를 적이나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영역과 권한을 분명히 인식해서 서로를 침해하지 않는 건강한 공존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고, 교회가 복음과 도덕적 책임을 통해 사회를 섬길 때, 둘은 충돌이 아니라 상호 유익한 관계가 된다.

정교분리는 대립의 원리가 아니라, 질서의 원리이다. 통제의 논리가 아니라 자유의 울타리이다. 이 책은 국가와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면서도 서로를 위협하지 않는 구조, 곧 상생의 길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이것이 이 책이 지향하는 최종 방향이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 ‘개념편’(제1-2장)에서는 정교분리의 정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성경이 말하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살펴본다. 구약의 신정 정치와 신약의 정교분리 원리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예수님의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

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한다. 또한 로마서 13장의 국가론과 베드로전서 2장의 시민 윤리가 정교분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다룬다.

제2부 ‘역사편’(제3-6장)에서는 정교분리가 확립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한다.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시작된 1,000년 이상의 정교유착 국가 교회 구조, 1525년 재침례교의 등장과 박해, 영국 침례교의 투쟁, 미국 신대륙에서 로저 윌리엄스의 프로비던스 실험, 버지니아에서의 침례교 박해와 제임스 매디슨의 각성, 1791년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의 탄생, 그리고 1802년 토마스 제퍼슨의 ‘분리의 벽’ 서한까지를 다룬다. 이 네 장은 이 책의 역사적 기둥이다.

제3부 ‘실행편’(제7-10장)은 이 책의 핵심이다. 정교분리가 미국에서 지난 230년 동안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에버슨 대 교육 위원회’(1947)에서 ‘케네디 대 브레머턴 교육구’ 판결(2022)까지 살펴보고, 대한민국 헌법 제20조가 무엇을 보장하며 무엇을 보장하지 못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한국 교회의 현실을 진단하며, 2025-2026년 종교 단체 해산법 논란이 왜 위험한지를 일본 종교법인법 사례와 비교하여 경고한다.

결론에서는 이 책 전체의 질문에 답한다.

“정교분리는 교회를 보호하는 울타리인가, 아니면 교회를 제거하는 장치인가?”

정교분리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답은 분명하다. 정교분리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이다. 이 울타리를 지키는 일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제2부(역사편)에는 가장 많은 분량이 할애되었다. 이는 의도적인 구성이다. 한국 교회가 정교분리에 무지한 가장 큰 이유는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다. 원리는 역사 속에서 태어난다. 추상적 개념만 배우면 그것은 교과서적 지식에 머물지만, 그 원리를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 알게 되면 그 가치는 가슴에 새겨진다.

스위스의 펠릭스 만츠가 림마트 강에서 익사형을 당한 이야기, 영국의 토마스

헬위스가 뉴게이트 감옥에서 생을 마친 이야기, 영국의 존 번연이 옥중에서 「천로 역정」을 집필한 이야기, 미국의 로저 윌리엄스가 한겨울 황야를 14주간 헤맨 이야기—이 모든 사건들이 정교분리라는 원리에 생생한 현실성을 부여할 것이다.

이 책은 신학 서적이자 역사 서적이며, 동시에 시사적인 성격을 띤다. 1525년의 취리히와 2026년의 서울을 같은 맥락에서 다루며, 펠릭스 만츠의 순교와 한국 종교 단체 해산 법안이 동일한 원리로 분석된다. 과거의 역사는 오늘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독자로는 먼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들 수 있다. 목회자와 신학생뿐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반 성도, 교회 학교 교사, 청년 대학생, 교회 직분자들이 이 책을 읽기를 바란다. 정교분리의 역사를 아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기본 교양이다. 또한 이 책은 비그리스도인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모든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불교인, 무슬림, 무종교인 역시 종교의 자유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다. 이 울타리가 무너지면 특정 종교뿐 아니라 모든 신앙과 사상, 양심과 표현의 자유 전체가 위협받게 된다.

이 자유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약 500년 전 재침례교인들이 강물에 던져져 익사하면서도, 영국 침례교인들이 감옥에서 하나둘 힘없이 무너져 죽어 가면서도, 뉴잉글랜드 신대륙에서 로저 윌리엄스가 청교도의 탄압 속에서도, 그리고 버지니아의 침례교 목사들이 쇠창살을 붙잡고 외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투쟁의 중심에는 하나의 원리가 있었다. 바로 양심의 자유, 즉 신앙의 자유였다.

이 원리는 1791년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로 명문화되어 역사 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했으며, 이후 인류 자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선조들이 목숨으로 지켜 낸 이 자유를 오늘날 우리는 거의 아무런 대가 없이 누리고 있다. 그러나 거저 물려받은 자유라고 해서 대가 없이 지킬 수는 없다. 자유는 스스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가치를 인식하며, 이를 지키려는 의지를 갖춘 사람들에 의해서만 보존될 수 있다. 자유의 역사를 망각한 세

대는 그 자유를 잃기도 쉽다. 우리 세대가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방심한다면, 다음 세대는 자유를 살아 있는 현실이 아닌 교과서 속의 한 장면으로만 접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책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이 누리는 자유의 뿌리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과 종교가 없는 시민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왜 모든 시민의 자유를 떠받치는 토대인지를 이해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치인과 법학자들에게는 정교분리의 본래 의미를 다시 성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제안하며,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교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

필자는 28세에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37년간 기계공학을 가르쳐 온 공학자인 동시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Bible)을 번역하고 연구하며 가르쳐 온 목사이다. 이 책은 공학자의 논리적 분석과 목회자의 신학적 통찰을 함께 담았다. 역사적 사실의 토대 위에 서되, 이를 성경적 원리에 비추어 해석하고자 노력했다. 혹 부족함이 있다면, 전적으로 필자 역량의 한계이다.

기계공학 교수로서 필자는 오랜 세월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훈련을 받아 왔으며, 이를 실제로 적용해 왔다. 복잡한 현상을 인과 관계로 정리하고 원리를 도출해서 적용하는 것이 공학자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사로서, 성경의 원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왔는지를 살피는 데 깊은 관심을 두어 왔다. 특히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번역하며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포착하려 애썼던 훈련은, 이 책의 역사 서술과 개념 분석에도 큰 밑거름이 되었다. 원문에 충실하려는 태도는 성경 번역뿐만 아니라 역사 해석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한 가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525년부터 1791년까지, 266년 동안 양심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펠릭스 만츠, 토마스 헬위스, 로저 윌리엄스, 존 번연, 아이작 백커스, 존 릴랜드. 이 이름들은 교회사 교과서에서도 자주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없었다면 오

늘날 우리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책이 그들을 기억하는 작은 기념비가 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도록 권면하고 긴 시간 인내하며 기다려 준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또한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도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특별히 또 이 책을 꼼꼼히 교정해 주신 사랑침례교회의 김지훈 형제님과 여러 형제자매님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공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이 책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바른 질서를 세우는 데 작게나마 쓰이기를 바란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자유를 이해하는 자와 지키려는 자만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 책이 그 이해와 책임을 돕는 작은 도구가 되기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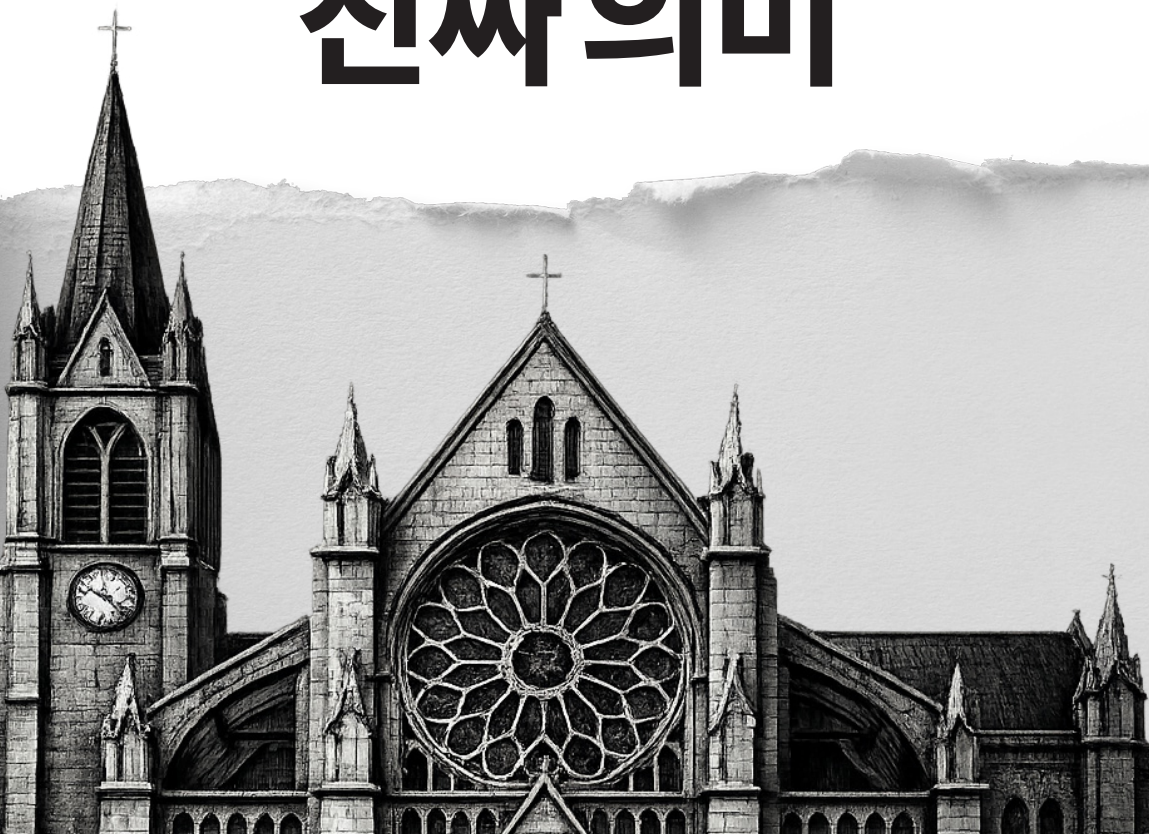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Stand fast therefore in the liberty wherewith Christ hath made us free, and be not entangled again with the yoke of bondage. (Galatians 5:1)

2026년 4월
인천에서 정동수



정교분리의 진짜 의미



1

정교분리 개념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일부 세력은
실질적으로 세속주의를 지향하면서
이를 정교분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교회는 사회적 이슈에 침묵하라”,
“목사는 정치적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라는 요구는
정교분리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다.





정교분리란 무엇인가?

정교분리(政教分離,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는 오늘날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널리 쓰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심하게 오해받는 개념 중 하나이다.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교회는 사회적 현안에 침묵하라”, “목사는 설교에서 정치를 언급하지 말라.”라는 주장들이 ‘정교분리’라는 이름으로 반복된다. 이러한 표현은 마치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정교분리의 본래 의미와 정반대이다. 정교분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원리가 교회의 입을 막으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교분리는 교회를 약화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는 헌법적 장치이다. 교회의 권리를 줄이려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원리이다. 이 장의 목적은 정교분리의 정의를 분명히 확립하는 데 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단순한 이론적 작업이 아니다. 2025-2026년 한국에서 제기된 종교 단체 해산법 논란은, 정교분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다. 정교분리의 본질을 모르면, 그 이름으로 행해지는

조치가 정교분리의 실현인지 아니면 파괴인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교분리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 개념을 가공하게 된다. 세속주의자는 정교분리를 내세워 종교인의 공적 발언을 억제하려 하고, 국가주의자는 정교분리를 명분 삼아 종교 단체를 해산하려 하며, 일부 종교인은 정교분리를 무시한 채 국가 권력을 신앙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은 하나이다. 정교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르면 속고, 모르면 빼앗기며, 모르면 자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정교분리에 대한 오해는 크게 세 방향에서 나타난다.

첫째는 세속주의적 오해이다. 이들은 정교분리를 종교 배제와 동일시해서,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제거하려 한다. 둘째는 신정주의적 오해이다. 이들은 정교분리를 거부하고, 국가가 특정 종교 원리에 따라 통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오해로서 정교분리를 교회 통제와 탄압의 명분으로 사용하는 일이다. 국가가 ‘정교분리’를 내세워 교회를 해산하고, 설교를 검열하며, 종교 활동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여기에 속한다. 이 세 가지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이 장의 핵심 과제이다.

이 세 방향의 오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세속주의자들은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므로 종교는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목사가 사회 문제에 대해 발언하거나 교회가 정치적 사안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조차 정교분리 위반으로 간주된다.

반대로 기독교 국가주의자¹들은 “국가는 특정 종교적 전통 위에 세워졌으므로 정교분리는 건국의 의도와 다르다.”라고 주장한다. 이 논리에서는 국가

1. 기독교 국가주의(Christian Nationalism)는 국가의 정체성과 법질서를 기독교 신앙과 교리에 근거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정치적·신학적 입장을 가리킨다. 이 개념은 역사적으로 교회와 국가가 긴밀히 결합되었던 중세 유럽의 전통에서 일정 부분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근대 이후에는 정교분리 원칙과 긴장 관계를 형성해 왔다. 현대적 맥락에서 기독교 국가주의는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적 가치의 우선성을 주장하거나 국가 정책과 입법에 신앙적 기준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 종교 자유의 침해 가능성과 다원주의 사회와의 충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 특정 종교적 가치를 법과 교육에 직접 반영하는 행위가 정당화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교분리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종교 단체를 규제하려는 시도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주장 모두 정교분리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 정교분리는 종교를 억압하는 장치도, 종교가 국가를 지배하는 통로도 아니며, 특정 집단을 제거하는 수단도 아니다.

1. 정교분리는 종교 배제가 아니다

정교분리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이를 ‘국가와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배제하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이다. 이 오해에 따르면 정교분리는 종교를 개인의 사적 영역에 가두고, 공적 영역에서는 종교적 가치와 목소리를 완전히 소거하는 원리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이해가 매우 지배적이다.

한국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교회가 사회적 현안에 대해 발언하면 즉각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목사가 설교에서 도덕적 문제를 언급하면 ‘정치 설교’라고 비난하고, 교회가 특정 법안에 입장을 밝히면 ‘종교의 정치 개입’이라고 공격한다. 마치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만 존재해야 하고, 문을 나서는 순간 침묵해야 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역사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옳지 않다. 정교분리를 최초로 법제화한 문서는 1791년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이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²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2.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the free exercise of religion)에서 religion은 단순한 종교 제도나 교단을 의미하기보다 하나님(또는 신적 통치자)에 대한 믿음과 경외에서 비롯되는 신앙 행위와 삶의 실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영어 옥스퍼드 사전도 religion의 주요 의미 중 하나를 ‘종교적 신앙 행위’(conduct)로 설명한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이라는 표현은 각 사람 내면의 신념의 자유뿐 아니라 예배, 신앙 고백, 양심에 따른 행위 등 종교적 신앙의 구체적 실천을 보호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런 점에서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은 줄여서 ‘종교의 자유 실행’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책에서는 두 표현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참고로 위키백과나 나무위키 등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의역하여 ‘자유로운 종교 활동’으로 번역하였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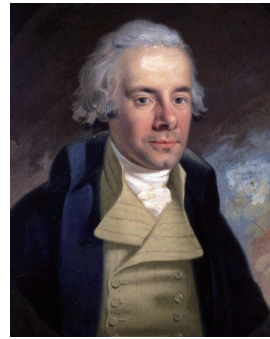
이 문장에서 주어진 ‘Congress’([연방] 의회)이다. 제한의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 국가이다. 국가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세울 수 없고, 어떠한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도 금지할 수 없다. 즉, 정교분리의 화살표는 교회가 아닌 국가 권력을 향한다.³ 특히 ‘make no law’(어떤 법률도 제정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some laws’가 아니라 ‘no law’이다. 국가는 종교에 관해서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국교를 세우는 법도, 종교를 금지하는 법도, 종교를 직접 규제하는 법도 제정할 수 없다. 이것이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의 핵심 정신이다. 물론 실제 적용 과정에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존재한다. 예컨대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아동 학대나 사기—를 처벌할 수 있는가? 당연히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처벌하는 일이다. “국교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라는 규정은 종교 자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금지하는 것이지, 범죄에 대한 형벌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구분은 제9장과 제10장에서 한국의 종교 단체 해산법 논란을 분석할 때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정교분리의 본질은 국가 권력이 종교 영역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데 있다. 국가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할 수 없고, 교회의 교리를 결정할 수 없으며, 목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없고, 설교 내용을 검열할 수 없다. 이것이 정교분리이다.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 발언하

3.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는 역사적으로 미국 각 주에 존재하던 국가 교회 제도로 인해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던 현실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헌법적 원리는 특정 종교에 한정되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 보장은 모든 종교는 물론, 종교를 가지지 않을 자유까지 아우르는 근본 원리로 해석되어 왔다. 정교분리는 국가와 특정 종교의 관계만을 규정하는 특수 조항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불교, 이슬람, 무속 신앙 등 모든 종교와 비종교인의 양심의 자유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이다. 그러므로 이 원리는 특정 종교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반드시 바르게 이해하고 숙고해야 할 자유의 토대이다.

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정교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역사적으로도 교회의 공적 발언은 사회 변화의 중요한 동력이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 1759-1833)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약 50년에 걸쳐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을 이끌었다. 그의 정치 활동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감정이



윌리엄 윌버포스

아니라 분명한 신앙적 확신에 기초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성경적 진리가 그를 움직였고, 결국 1807년 노예 무역 폐지와 1833년 대영 제국 내 노예 제도 폐지로 이어졌다. 그의 신앙은 공적 영역에서 침묵하지 않았고, 오히려 입법과 정책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마르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1929-1968)은 침례교 목사로서 교회 강단에서 인종 차별의 부당함을 설교했고, 그 설교가 민권 운동의 도덕적 토대가 되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 역시 성경적 정의와 평등 사상에 깊이 뿌리를 두었다. 그는 신앙을 사적 영역에만 가두지 않고 공적 정의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교분리 원칙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교회의 사회적 발언을 곧바로 정교분리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교분리는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원칙이지 교회를 침묵시키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정교분리가 “종교인은 공적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라.”라는 의미였다면, 노예 제도는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고 인종 차별 역시 법적 구조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20세기에도 교회의 공적 발언은 계속되었다. 폴란드에서는 카톨릭교회가 공산 정권에 맞서 자유를 외치는 도덕적 중심이 되었다. 1978년 폴란드 출신 요한 바오로 2세(John Paul II, 1920-2005)가 교황으로 선출된 사건은 민주화 운동에 강력한 정신적 동력을 제공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 1931-2021) 대주교는 아파르트헤이트 정책⁴에 맞서 싸웠고, 그의 저항은 철저히 기독교적 신념에 기초했다. 이 모든 역사의 전환점에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공적 발언이 있었다. 정교분리가 종교인의 침묵을 요구했다면 이러한 역사적 진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교회의 공적 발언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다. 1970-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명동성당은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이 되었고, 개신교 목사들은 인권 선언과 시국 기도회를 통해 독재 권력에 저항했다. 1973년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박형규 목사가 낭독한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은 유신 체제에 대한 초기 조직적 저항 중 하나였다. 이것이 정치 개입인가? 아니다. 불의한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한 대언자적 행위였다. 당시 정부는 이를 정교분리 위반이라 비난했으나, 역사는 이를 양심의 자유를 실천한 용기로 기억한다.

구약의 대언자들(prophets)⁵ 역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 대언자 나단은 다윗 왕에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는 정교분리 위반이 아니라 대언자의 사명이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목사가 설교에서 시대의 도덕적 문제에 성경적 원리를 선포하는 것은 목회의 본질적 책임이다.

정교분리가 금지하는 바는 명확하다. 국가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국민에게 신앙을 강요할 수 없고, 세금으로 특정 교회를 지원하거나 교회 지도자를 임명할 수 없다. 국가의 설교 검열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교회가

4.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는 1948년부터 1994년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행된 인종 분리 정책으로, 소수 백인 정권이 다수의 흑인 인구를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억압하고 차별한 법적 체계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쓰이는 아프리칸스어로 ‘분리’를 뜻하는 이 제도 아래에서, 흑인들은 거주지 선정부터 교육, 결혼, 참정권에 이르기까지 삶이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처참히 유린당했다. 이 반인권적인 제도는 거센 내부 저항과 끈질긴 국제적 비판에 직면했으며, 넬슨 만델라와 데스몬드 투투 등 수많은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 끝에 1994년 비로소 폐지되었다.

5. 성경에 기록된 prophet(그리스어 prophētēs)는 흔히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선지자’로 이해되고는 하지만, 본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대언자’를 뜻한다.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예언은 대언 사역의 한 요소일 뿐이며 그 본질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데 있다.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는 정교분리가 아니다. 이 구분을 혼동하면 정교분리는 교회를 침묵시키는 억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바로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정교분리가 금지하지 않는 영역도 분명히 해야 한다. 정교분리는 종교인이 시민으로서 투표하거나 공직에 출마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목사가 설교에서 사회적·도덕적 현안에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거나, 교회가 구제와 봉사, 교육 활동을 하는 것도 막지 않는다. 부당한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 역시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에 속하며 헌법의 보호 대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자주 무시된다. 2026년 1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정 교회의 설교 내용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국가 최고 권력이 설교 내용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정교분리 정신과 충돌한다. 설교는 교회의 영역이지 국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가 설교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순간, 정교분리는 실질적으로 무너진다.

또한 일부 대형 교단이 정교분리를 정략적으로 해석하는 태도도 문제이다. 자기 교단의 영향력 행사는 종교의 자유라고 주장하면서 소수 종교의 활동은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오용이다. 정교분리는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에만 유리하게 작동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국교 체제와 다름없다. 정교분리는 기독교의 특권이 아니라, 개신교, 천주교, 불교, 유교, 이슬람, 무속 신앙을 포함한 모든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법 앞에서 동등하게 보호하는 보편 원칙이다. 나아가 다수 종교나 대형 교단에 의해 ‘이단’ 혹은 ‘사이비’로 규정된 단체들까지도 국가 권력으로부터 동일한 자유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는 그들의 교리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양심의 자유가 국가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자유를 지키려면 타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제5장에서 다룰 로저 월리엄스의 핵심 가르침이다. 그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이들의 종교적 자유까지 옹호했다. 그것이 진정한 양심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2. 국교 설립 금지와 종교의 자유 실행 - 동전의 양면

1791년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의 종교 조항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국교 설립 금지 조항’(Establishment Clause)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 조항’(Free Exercise Clause)이다. 전자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세우거나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후자는 개인과 공동체가 종교를 자유롭게 믿고 실천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 두 조항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만 강조하고 다른 하나를 약화하면, 수정 조항 제1조의 균형은 무너지고 본래 의미도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

국교 설립 금지 조항(Establishment Clause)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이 조항은 국가가 특정 종교를 세우거나 지원하고 교리를 강요하며 종교 기관에 개입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이것은 단순히 “국교를 세우지 말라.”라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가 권력이 종교 영역에 제도적으로 얽히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이다. 구체적 내용은 제6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이 조항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수정 조항 제1조가 제정될 당시 미국의 여러 식민지에는 실제로 정교유착 국교 체제가 존재했다. 버지니아에는 성공회가, 매사추세츠에는 회중교회가 사실상의 국교였다. 국교에 속하지 않은 교인들은 교회세를 납부해야 했고 공직 진출에서 배제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투옥 처벌을 받았다. 특히 침례교인들이 이러한 차별의 대표적인 피해자였다. 국교 설립 금지 조항은 이러한 역사적 불의와 종교적 특권 구조를 헌법 차원에서 종식하려는 결단이었다.

국교 체제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버지니

아에서 성공회가 국교였을 때, 모든 주민은 성공회에 교회세를 내야 했다. 누군가가 성공회가 아닌 교회에서 설교하려면 주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고, 허가 없이 설교하면 투옥되었다. 1768년부터 1776년 사이 최소 30명의 침례교 목사가 이 법에 의해 감옥에 갇혔다. 매사추세츠에서도 청교도들의 회중교회가 사실상 국교의 기능을 하며 주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했다. 침례교 지도자 아이작 백커스는 이러한 부당한 세금과 종교 차별에 맞서 수십 년간 투쟁했다. 국교 체제란 결국 국가가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고, 다른 종교를 제도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두는 구조였다. 수정 조항 제1조의 국교 설립 금지 조항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대한 헌법적 반응이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국교 설립 금지가 곧 종교에 대한 적대나 배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가는 특정 종교를 세우지 않지만, 이는 종교를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가가 종교 문제에서 중립을 지키는 일은 종교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의 자율성과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이다. 모든 종교가 법 앞에서 동등해야 한다는 원칙은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으로부터 종교를 보호하는 원리이다.

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Free Exercise Clause)

또는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을 금지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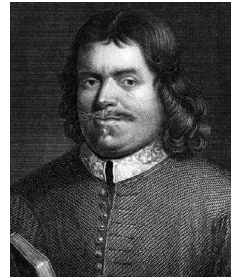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이 조항은 국가가 국민의 종교 활동을 간섭하거나 금지하지 못하도록 보장한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표현은 ‘자유로운 실행’(free exercise)이다. 이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믿을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신앙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할 자유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종교는 개인의 마음속에서만 자유롭고, 공적 영역에서는 자유롭지 않다.”라는 주장은 수정 조항 제1조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종교의 자

유는 ‘내면의 자유’를 넘어 ‘행동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권리이다. 역사적으로도 이 구분은 매우 중요했다. 과거 소련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를 시베리아로 유배 보냈다. 마음속 신앙은 허용하되 공적으로 실천하는 신앙은 금지한 것이다. 수정 조항 제1조의 ‘자유로운 실행’ 조항은 바로 이러한 위헌적 자유를 차단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조항은 침례교인들의 구체적인 고난에서 비롯되었다. 존 번연(John Bunyan, 1628-1688)⁶은 마음속으로 믿는 자유는 인정받았으나,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12년간 투옥되었다. 버지니아의 침례교 목사들 역시 신앙 자체는 허용되었으나 허가 없이 예배를 인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단순한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신앙을 실천할 자유였으며, 수정 조항 제1조는 이러한 신앙적 열망이 국가의 기틀로 정착된 법적 결실인 셈이다.



존 번연

종교의 자유 실행의 범위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예배와 기도, 전도, 그리고 신념에 따른 자녀 교육과 생활 방식의 선택은 모두 종교의 자유 실행의 본질적 영역에 속한다. 미국 대법원 판례 또한 개인이 양심에 따라 종교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자유, 종교적 모임을 조직하고 참여할 자유, 종교적 가르침을 전파할 자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자유, 종교 출판물을 발행하고 배포할 자유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권리는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서 공적 사안에 대해 발언할 자유까지 포괄한다. 즉, 종교의 자유는 단순히 교회 건물 안에서만 유효한 사적 권리가 아니다. 교회 밖에서도, 직장에서도, 광장에서도, 그리고 언론 공간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종교인이 자신의 신앙을 바탕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자유이다. 이 자유를 부인하는 행위는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의 본래 취지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6.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이자 작가로,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는 기독교 문학 작품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의 저자이다. 그는 영국 비국교도(Nonconformist) 신앙의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받으며, 청교도 문학과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두 조항의 관계

‘국교 설립 금지 조항’과 ‘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은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를 이룬다. 국교가 설립되면 종교의 자유는 형식만 남고 실질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한다. 중세 유럽에서 카톨릭이 국교였을 때 다른 신앙은 이단으로 취급되었고, 영국에서 성공회가 국교였을 때 침례교인은 감옥에 갇혔다. 식민지 버지니아에서 성공회가 국교였을 때에도 다른 교파의 목사는 허가 없이 설교할 수 없었다. 국교 체제 아래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사실상 국교에 속한 이들에게만 허용된 특권이였다.

반대로 종교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려면 국교가 없어야 한다. 국가가 특정 종교의 편에 서지 않아야만 모든 시민이 자기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신앙을 실천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국교 설립 금지 조항은 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의 전제 조건이며, 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은 국교 설립 금지 조항이 존재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하나가 울타리를 세운다면, 다른 하나는 그 안에서 숨 쉬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다. 국교 설립 금지 조항은 국가가 종교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자물쇠’이고, 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가 신앙을 실천하도록 열어 둔 ‘문’이다. 자물쇠만 있고 문이 없다면 국가는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겠지만, 교회 역시 공적 영역에서 활동할 수 없다. 반대로 문만 있고 자물쇠가 없다면 교회는 세상으로 나갈 수 있지만, 국가 역시 교회안으로 침투할 수 있게 된다. 자물쇠와 문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실제 적용에서는 이 두 조항이 긴장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국교 설립 금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종교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 예컨대 공립 학교에서 학생의 자발적인 기도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국교 설립 금지를 명분으로 종교의 자유 실행을 희생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종교의 자유 실행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면 특정 종교가 국가 권력과 결합해서 사실상의 국교 지위를 누릴 가능성도 생긴다. 만약 정부가 특정 종교 단체에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면, 형식은 중립일지라도 실질은 편향이 될 수 있다. 미국

대법원의 230여 년 판례는 바로 이 두 축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조정의 역사였다. 이 균형의 문제는 제7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는 논란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국교 설립 금지 측면만을 강조하고 종교의 자유 실행 측면은 사실상 변방으로 밀어내는 경향이 나타난다. “국가가 종교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원칙은 반복되지만, “국가가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을 금지하지 못한다.”라는 원칙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다. 2026년 1월 발의된 종교 단체 해산법은 이러한 불균형을 극명하게 보여 준 사례이다. 정교분리를 내세우면서 종교 단체를 해산하겠다는 발상은, 국교 설립 금지를 명분으로 종교의 자유 실행을 침해하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역시 이 두 축을 모두 포함한다.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에 해당하고,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국교 설립 금지 조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2항의 문구만 강조되고 제1항의 내용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문장이 종교인의 공적 발언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범인 것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의 역사적 맥락과 동일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이다. 제8장에서 한국 헌법 제20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두 조항이 어떻게 함께 읽어야 하는지 논증할 것이다.

3. 세속주의와의 차이 - 종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정교분리와 가장 빈번하게 혼동되는 개념이 바로 세속주의(secularism)이다. 많은 이들이 정교분리를 세속주의와 동일시하며, 정교분리라는 명목 아래 세속주의를 실현하려 한다. 그러나 정교분리와 세속주의는 그 뿌리와 지향점이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세속주의란 무엇인가

정교분리와 세속주의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세속주의의 정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세속주의라는 용어는 1851년 영국의 자유사상가 조지 제이콥 홀리요크(George Jacob Holyoake, 1817-1906)가 처음 사용했다. 그는 종교에 의존하지 않는 윤리 체계를 정립하고자 이 용어를 창안했다. 그러나 세속주의는 시간이 흐르며 단순히 종교에 의존하지 않는 입장을 넘어,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적극적으로 배제하려는 사상으로 발전했다.

세속주의는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 가치와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려는 시도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종교는 개인의 사적 취향에 불과하며, 공적 영역에서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세속적 이성만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립 학교에서의 기도는 금지해야 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적 상징물 전시는 부적절하며, 정치적 논의에서 종교적 논거를 사용하는 행위 또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프랑스의 라이시테(laïcité) 원칙은 이러한 세속주의의 대표적 사례이다. 프랑스는 1905년 정교분리법을 제정하면서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철저히 배제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 결과 공립 학교에서 종교적 상징물 착용이 금지되고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표현이 제한되며, 종교는 엄격히 사적 영역으로 밀려났다. 2004년에는 공립 학교에서 무슬림 여학생의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까지 제정되었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확장하는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 표현을 제한하는 조치였다.

프랑스와 미국의 차이는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한다. 프랑스 혁명(1789)은 카톨릭교회의 부패와 왕정과의 결탁에 대한 강한 반발에서 시작되었다. 구체제(Ancien Régime)에서 카톨릭교회는 국가 권력의 핵심을 이루었고, 성직자는 제1신분으로서 정치적 특권을 누렸으며 교회는 막대한 토지를 소유했다. 혁명 세력은 이러한 특권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교회를 적대적 대상으로 삼았다. 성직자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 서약을 강요하고 교회 재산을 몰수하며 수도원을 폐쇄했다. 이 반종교적 전통이 1905년 정교분리법으로 제도화되었고, 오늘날의 라이시테로 이어진 것이다.

반면 미국의 정교분리는 종교에 대한 반감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침례교인들을 비롯한 소수 종파가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간섭을

거부한 데서 비롯되었다. 출발점부터 정반대인 셈이다. 프랑스의 세속주의가 ‘종교를 억제하기 위한 분리’라면, 미국의 정교분리는 ‘종교를 보호하기 위한 분리’라고 할 수 있다.

튀르키예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1923년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⁷는 오스만 제국의 칼리프 제도를 폐지하고 급진적 세속주의를 도입했다.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적 복장을 금지하고 종교 교육을 제한하며 국가가 종교 단체를 통제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이 세속주의는 약 80년간 튀르키예를 지배했으나 2000년대 이후 에르도안 정부 아래 이슬람주의가 급격히 부활하는 반작용을 낳았다. 억눌렸던 종교적 에너지가 정치적 힘으로 재등장한 것이다. 튀르키예의 경험은 세속주의가 종교를 영구적으로 억압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종교를 강제로 밀어내면 언젠가는 그 반동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세속주의의 극단적 형태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소련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규정하고 교회를 조직적으로 해체해서 수만 개에 달하던 교회를 수백 개로 줄였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모든 종교 활동이 사실상 금지되었다. 북한에서는 오늘날까지 종교의 자유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들은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제거하려는 세속주의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정교분리는 세속주의가 아니다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명시한 정교분리는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려는 원리가 아니다. 오히려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을 공적 영역에서도 보호하려는 장치이다. 미국 의회는 전통적으로 목사의 기도로 회기를 시작하며, 화폐에는 “In God We Trust”(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가 새겨져 있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며, 연방 대법원 건물 벽면에는 모세

7.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Mustafa Kemal Atatürk, 1881-1938)는 오스만 제국의 붕괴 과정에서 튀르키예(당시 터키) 공화국을 수립하고 초대 대통령(1923-1938)을 지낸 군인이자 혁명가, 정치가였다. 그는 종교적 전통에 기반한 제국을 세속적이고 근대적인 국민국가로 변모시켜 ‘현대 튀르키예의 아버지’로 불린다.



1달러 지폐



킹제임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레이건 미국 대통령

와 십계명 형상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국교 제도가 아니라, 종교의 존재를 공적 공간에서 인정하는 역사적·문화적 표현 이기에 정교분리 원칙과 모순되지 않는다.

정교분리의 핵심은 국가의 중립성이다. 국가는 종교를 지원하지도, 억압하지도 않는다. 특정 종교를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종교적 교리에 대해 신학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이것이 참된 중립이다. 중립은 종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와 비종교를 동일한 법적 지위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세속주의는 단순한 중립을 넘어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영향력을 지우려 한다. 이는 중립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적 선택이다. 종교를 공적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사실상 ‘무종교’나 ‘반종교적 입장’을 국가의 기본값으로 삼는 것이며, 그 자체로 특정한 세계관을 공적 기준으로 강요하는 셈이다. 이 점에서 세속주의는 수정 조항 제1조의 ‘국교 설립 금지’ 정신과 충돌할 수 있다. ‘무종교’ 역시 하나의 세계관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프랑스의 차이는 이를 분명히 보여 준다. 미국의 정교분리는 종교를 보호하기 위한 분리인 반면, 프랑스의 라시테는 세속적 질서 유지를 위해 종교적 표현을 제한한다. 동일하게 ‘정교분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작동 방식과 결과는 판이하다. 한국이 어떤 모델을 지향할 것인가는 한국 교회의 미래 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자유 구조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이 될 것이다.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일부 세력은 실질적으로 세속주의를 지향하면서 이를 정교분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교회는 사회적 이슈에 침묵하라”, “목사

는 정치적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라는 요구는 정교분리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원리가 아니라 종교의 공적 발언권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정교분리의 이름으로 세속주의를 추구하는 행위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울타리를 교회를 압박하는 창으로 전용하는 것과 같다.

한국에서 나타나는 세속주의적 경향의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시민 단체는 국가 행사에서 종교적 요소를 전면 제거하라고 요구한다. 대통령 취임식에서의 종교 축도, 군대의 군중 제도, 국립묘지에서의 종교 의식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된다. 또한 차별 금지법 논의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발언—예컨대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법적으로 제재하려는 시도도 나타난다. 이는 국가의 중립을 지키는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정교분리는 종교적 발언 내용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원리이지, 종교적 가치에 근거한 공적 발언 자체를 금지하는 원리가 아니다. 목사가 성경의 가르침을 설교하는 행위는 엄연한 종교의 자유 실행에 속한다. 국가가 그 내용을 규제하거나 금지한다면, 그것은 정교분리의 실현이 아니라 명백한 종교의 자유 침해이다.

4. 신정 정치와의 차이 - 종교가 국가를 지배하지 않는다

정교분리의 반대편에서 비롯되는 오해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정교분리를 부정하며 국가가 성경적 원리에 따라 직접 통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 “성경의 법이 국법 위에 있어야 한다”, “크리스천 정치인이 정권을 장악해서 성경적 국가를 세워야 한다.”라는 식의 구호가 일부 교회 안에서 제기된다. 이러한 주장은 정교분리를 오해한 또 다른 극단이다.

이러한 입장은 신정 정치(theocracy)를 지향한다. 신정 정치란 종교 지도자나 종교법이 국가 권력을 직접 통제하거나, 국가 법체계의 최종 권위를 종교 교리에 두는 체제를 말한다. 현대 세계에서 신정 정치의 대표적 사례로는 이란을 들 수 있다. 이란에서는 최고 종교 지도자(아야톨라)가 대통령과 의회 위에

위치하며, 이슬람 율법이 입법과 사법의 최종 기준이 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이슬람 율법(샤리아)이 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며, 종교 경찰이 사회 규범을 집행해 왔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지 않으며, 종교적 권위가 국가 권력을 제도적으로 지배한다.

기독교계의 역사에서도 신정 정치의 시도는 있었다. 중세 시대 천주교의 교황권이 세속 권력 위에 군림하려 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교황 보니파스 8세(Boniface VIII, 1230?-1303, 보니파키우스)는 1302년 칙서「우남 상탐」(Unam Sanctam)에서 “모든 인간이 구원을 위해 로마 교황에게 복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선언했다. 이는 교황권이 세속 군주 위에 있다는 사상을 명문화한 것이다. 교회가 국가 위에 서는 구조가 형성되면, 신앙의 자유는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교회 권위에 종속된 특권으로 전락한다.

종교 개혁 이후에도 유사한 실험은 있었다. 칼빈이 주도한 제네바는 흔히 ‘기독교 도시’의 모델로 언급되지만, 실제로는 신정 정치적 요소가 강하게 작동한 사회였다. 제네바에서는 교회 장로회(consistoire)가 시민들의 도덕적 생활을 감독했다. 주일 예배 불참, 술집에서의 과도한 음주, 복장 규정 위반, 사적인 언행까지 조사와 징계의 대상이 되었다. 도덕적 범죄는 단순히 개인적 문제로 남지 않고 공적 처벌로 이어졌다.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 1511-1553)가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1553년 화형당한 사건은, 신학적 이견이 형벌로 이어질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이다. 물론 제네바는 당시 유럽 사회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며, 칼빈 개인의 의도와 제도 운영의 현실을 단순화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교회 권위와 시민 통제가 밀접하게 결합한 구조(정교유착)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은 중요한 교훈을 준다. 종교가 국가 권력을 직접 장악하거나 종교 교리가 곧바로 국법이 되는 구조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위축되기 쉽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체제가 다른 신앙을 억압하는 체제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교분리는 바로 이러한 반복을 막으려는 제도적 장치이다.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지 않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지 않는 구조가 양심의 자유를 가장 안정적으로 보호한다.

구약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는 예외적 체제였다

성경에서 신정 정치가 실제로 시행된 유일한 사례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고, 이집트 탈출(출애굽) 이후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그 민족을 직접 다스리셨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구속 공동체였다. 율법은 단순한 민법이나 형법이 아니라 예배 규례와 도덕법, 사회법이 통합된 언약 법전이었다. 이 신정 체제의 목적은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정치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속 계획을 계시하는 데 있었다.

재판관(사사)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셨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삿 21:25)라는 반복 구절은, 인간 왕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영적 혼란을 지적한다. 재판관들은 세습 군주가 아니라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시 대리자였다.

왕정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도 상황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사울, 다윗, 솔로몬을 비롯한 모든 왕은 율법 아래 있었고, 대언자들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권력을 견제했다.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는 왕권이 절대화된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의해 제한된 체제였다.

그러나 이 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독특하고 일회적인 형태였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 동일한 정치 구조를 명령하신 적은 없다. 구약의 신정 국가는 구속사적 목적을 가진 언약 공동체였으며,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사적 무대였다. 따라서 그 제도를 오늘날의 일반 국가에 그대로 이식하려는 시도는 구속사적 맥락을 무시한 오해이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님께서서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요 18:36)라고 분명히 선언하셨다. 이는 그분의 통치가 이 세상과 무관하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방식으로 구현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다. 교회는 세상의 국가를 장악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라는 대위임령은 정치 혁명이 아니라 영적 사명의 선언이다.

따라서 구약의 신정 정치를 오늘날의 국가에 직접 적용하려는 시도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교회가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성경적 국가’를 세우려는 시도는 역사적으로도 교회에 재앙을 가져왔다. 중세 카톨릭교회가 세속 권력을 행사한 결과는 면죄부 판매, 종교 재판, 십자군 전쟁과 같은 왜곡으로 나타났다. 칼빈의 제네바에서 세르베투스가 화형당한 사건은, 종교가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극을 상징한다. 교회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말씀이며, 교회의 권위는 정치권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서 나온다.

한국에서도 기독교 국가주의의 유혹은 존재한다. 일부 목회자들은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 “성경의 원리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원리가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기준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따른다.

첫째, 누가 ‘성경의 원리’를 최종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장로교의 해석인가, 침례교의 해석인가, 카톨릭의 해석인가? 교단마다 성경 해석이 다른 현실에서 국가가 어느 한쪽의 해석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할 수는 없다.

둘째, 기독교 국가에서 비기독교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한국 인구의 다수는 비기독교인이다. 기독교 국가를 선포하는 순간, 그들의 양심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셋째, 역사가 증명하듯 종교와 국가가 결합한 체제는 예외 없이 종교 박해를 낳았다. 칼빈의 제네바에서 세르베투스가 화형당했고, 청교도 중심의 매사추세츠에서 퀘이커 교도들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성경적 국가’라는 명분 아래에서도 양심의 자유는 쉽게 침해되었다.

이 문제는 기독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신정 정치를 시행하며, 최고 지도자가 종교적·정치적 권위를 동시에 장악하고 있다. 그 결과 이란 내 종교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된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중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고, 바하이교도들은 조직적으로 박

해를 받는다. 여성의 히잡 착용이 의무화되어 이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는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와하비 이슬람을 사실상의 국교로 두어 기독교 예배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교회 건물은 존재하지 않고, 공개적 종교 활동은 제약된다. 종교가 무엇이든, 그것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면 양심의 자유는 반드시 위축된다.

만약 한국이 ‘기독교 국가’를 표방한다면, 이론적으로 한국의 불교인, 무슬림, 무종교인은 사우디의 기독교인과 유사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물론 기독교 국가주의자들은 다른 종교를 억압하지 않겠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종교와 권력이 결합할 때 관용의 약속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 주었다. 이것이 바로 정교분리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이다. 교회와 국가가 각자의 영역을 지킬 때에만 모든 사람의 양심의 자유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

정교분리는 양방향 보호이다

정교분리는 국가를 종교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종교를 국가로부터 보호하는 양방향 원리이다. 한 방향에서는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다른 방향에서는 교회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경계한다. 이 두 방향이 함께 작동할 때 양심의 자유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4세기 콘스탄티누스(Constantine the Great, 272?-337,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교회는 국가의 보호와 특권을 누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보호는 동시에 유혹이 되었다. 교회는 세속 권력과 결합해서 부를 축적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단을 처벌하기 위해 국가의 칼을 빌리기 시작했다.

380년 테오도시우스(Theodosius I, 347?-395)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유일한 합법 종교로 선언한 이후, 박해받던 교회는 박해하는 위치에 섰다. 이것이 이른바 ‘국가 교회 천 년의 비극’의 출발점이었다.

반대의 역사도 분명하다. 교회가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복음 자체에 집중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생명력을 드러냈다. 초대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약 300년간 국가의 보호 없이 성장했다. 국가의 후원을 받기 시작한 이후 교회의 순수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침례교회는 1791년 헌법 수정 조항 제1조 제정 이후에 국가의 지원 없이도 230년 이상 자발적 신앙 공동체로 크게 발전했다.⁸ 반면 제도적 보호를 받아 온 유럽의 국교회들은 점차 형식화되고 쇠퇴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국교 체제를 유지했던 북유럽 국가들의 교회 출석률이 5% 미만으로 낮아진 현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역사적 패턴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영국 국교회는 헨리 8세가 로마와 결별하며 형성되었고 군주가 교회의 수장이 되는 구조가 굳어졌다. 그 결과 교회는 독립적 도덕 권위보다 국가 체제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었다. 북유럽의 루터교 국가 교회들도 수 세기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았지만, 오늘날 사회적 영향력과 신앙적 활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반면 국가의 보호 없이 스스로 책임져야 했던 미국 교회는 자발성과 경쟁 속에서 활력을 유지했다. 한국 교회 역시 이 교훈에서 자유롭지 않다. 1970-80년대 일부 교회가 정치권력과 밀착했을 때 대언자적 기능은 약화되었고, 정권이 바뀌자 그 도덕적 권위도 함께 흔들렸다.

로저 윌리엄스는 이러한 역사를 통찰한 인물이었다. 그는 교회를 ‘정원’에, 세상을 ‘황무지’에 비유하며, 둘 사이에 ‘분리의 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벽이 없으면 황무지의 잡초가 정원으로 스며들어 정원을 황폐하게 만든다. 국가 권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는 세속적 이해관계에 휘말려 복음의 순수성을 잃기 쉽다.

이 비유는 정교분리가 교회를 약화하는 장치가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과 자율성을 지키는 울타리임을 보여 준다. 1525년부터 1791년까지 재침례교 성도

8. 침례교는 약 1억 7천만 명의 신자를 보유한 최대 규모의 교파이다. 세계침례교연맹(Baptist World Alliance, BWA)에 따르면 2024-2025년 현재 BWA 회원 단체에 속해 침례를 받은 신자는 약 5,100만 명이며, 134개국 266개 단체, 약 178,000개 교회가 가입되어 있다. BWA는 전 세계 침례교인의 약 절반만을 대표하므로, BWA 비회원 침례교회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 침례교인은 1억-1억 7천만 명으로 추정된다. (출처: Baptist World Alliance, 2025; 프랑스 종교사회학자 세바스티앙 파트(S bastien Fath), CNRS, 2020).

들과 침례교인들이 266년 동안 이 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교분리는 교회를 침묵시키는 원리가 아니라 교회를 권력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원리이다.



5. 두 왕국론과의 차이 - 신학적 구분만으로는 부족하다

정교분리와 흔히 혼동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두 왕국론’(Two Kingdoms Doctrine)이다. 두 왕국론은 교회와 국가를 구분하는 신학적 전통으로, 어거스틴과 루터를 거쳐 발전했다. 이 이론은 정교분리와 유사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어거스틴의 두 도시

정교분리 논의에서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 354-430)⁹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교회와 국가를 신학적으로 구분하는 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그의 대작 「하나님의 도시」(De Civitate Dei)에서 인류 역사를 ‘하

9. 라틴어 이름은 Aurelius Augustinus로 ‘아우구스티누스’로도 번역되지만, 이 책에서는 한국 교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어거스틴’이라는 표기를 사용한다.

나님의 도시'(Civitas Dei)와 '세상의 도시'(Civitas Terrena)의 갈등으로 해석했다. 하나님의 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공동체이고, 세상의 도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의 공동체이다. 이 두 도시는 지리적으로 나뉜 국가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서로 뒤섞여 공존하는 두 사랑의 질서이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이 둘은 최후의 심판 때에야 완전히 분리된다.

이 두 도시 사상은 교회와 국가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신학적 기초를 놓았다. 그는 교회를 하나님의 도시로 단순화하지 않았고, 로마 제국을 세상의 도시로 기계적으로 환원하지도 않았다. 즉, 영적 공동체와 정치 공동체를 구분하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이러한 신학적 구분을 제도적 분리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는 두 도시를 구분하면서도, 실제 정치 질서 속에서는 국가 권력이 신앙 문제에 개입하는 상황을 허용했다.

특히 그는 누가복음 14장 23절의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는 구절을 근거로, 국가가 이단자들을 ‘강제로’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행위가 정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본래 문맥은 복음 전도의 열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국가 권력을 동원한 종교 강제를 승인한 내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해석은 이후 교회가 국가의 칼을 빌려 사용하는 신학적 명분이 되었다.

이는 중세 카톨릭교회가 종교 재판과 이단 박해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강권하여 데려오라.”라는 구절은 이단자를 투옥하고 고문하며 화형에 처하는 근거로 악용되었다. 어거스틴은 두 도시를 신학적으로 구분했으나, 하나님의 도시가 이 세상의 도시의 칼을 빌려 신앙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 두었다. 바로 여기에서 신학적 구분과 제도적 분리의 결정적 차이가 드러난다.

그 결과는 역사 속 비극으로 나타났다. 385년 스페인의 프리실리안(Priscillian, 340-385)은 이단으로 정죄되어 참수당했다. 이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이단 처형으로 기록된다. 어거스틴이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강제 회심 이론은 이후의 처형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었다. 1209년 교황 인노센트 3세(Innocent III, 1160?-1216)는 남프랑스의 알비파(카타리파)를 토벌하기 위해 십자군을 파견했고, 베지에 학살에서 약 20,000 명이 살해되었다. 1478년 스페인 종교 재판소가 설립된 이후에도 수천 명이 이단 혐의로 고문과 처형을 당했다. 이러한 비극의 중심에는 교회가 국가 권력을 활용해 신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상이 자리하고 있었다.

결국 어거스틴은 중요한 신학적 토대를 제공했으나, 국가 권력과 교회 권력을 명확히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는 못했다. 이 간극이 수세기 동안 종교적 강제를 정당화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 지점에서 정교분리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신학적 구분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제도적 분리라는 장치가 결합할 때에만 양심의 자유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



중세 종교 재판소의 법정

루터의 두 왕국론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어거스틴의 사상을 발전시켜 ‘두 왕국론’(Zwei-Reiche-Lehre)을 체계화했다. 루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는 복음과 은혜를 통한 ‘영적 왕국’이고, 다른 하나는 법과 칼을 통한 ‘세속 왕국’이다. 교회는 영적 왕국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양심을 섬기고, 국가는 세속 왕국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악을 억제한다. 이 구분은 교회와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중요한 신학적 틀을 제공했다.

그러나 루터 역시 신학적 구분을 제도적 분리로 이어가지는 못했다. 1524-1525년 농민 전쟁 이후 그는 교회 행정을 세속 제후에게 맡기는 방침을 택했

다. 제후가 교회의 후견인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고 목사를 임명하며 교회 행정을 감독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는 교황권을 대신해서 세속 군주가 교회 위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국가 교회 체제였다. 루터는 로마 교황의 지배를 깨뜨렸지만, 그 자리에 세속 권력의 보호와 통제를 받아들였다.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은 신학적으로는 혁명이었으나, 교회와 국가의 제도적 관계에서는 완전한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삼국에 뿌리를 내린 루터파 교회는 국가의 보호 아래 안정을 얻었으나(국가 교회), 그 대가로 국가에 대한 구조적 의존을 떠안게 되었다.

칼빈(John Calvin, 1509-1564)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칼빈은 교회와 국가를 구분하면서도 양자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제네바에서 교회와 시 정부가 협력해서 도시를 다스리는 체제를 구축했다. 교회 장로회(consistoire)가 법정이 되어 도덕 문제를 심리하고, 시 정부가 그 결정을 집행하는 구조였다. 이 체제 아래에서 제네바는 ‘개신교의 로마’라 불릴 만큼 도덕적으로 엄격한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그 엄격함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1553년 세르베투스 화형 사건이 대표적이다. 칼빈은 교회와 국가의 영역을 이론적으로 구분했음에도 교회가 국가의 강제력을 활용해서 이단을 처벌하는 행위를 막지 않았다. 국가의 칼을 빌려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려 한 점이 루터와 칼뱅이 공유한 한계였다.

루터의 ‘두 왕국론’이 남긴 구조적 결과는 20세기 독일 역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루터파 교회는 오랜 세월 국가에 의존해 왔기에, 나치 정권이 교회를 장악하려 할 때 강력히 저항하지 못했다. 나치는 ‘독일 기독교인 운동’(Deutsche Christen)을 통해 루터파 교회를 국가 이데올로기에 종속시켰고, 상당수 목사와 교인이 이에 협력했다. 소수의 저항자들이 ‘고백교회’(Bekennende Kirche)¹⁰를 세워 맞섰으나, 국가 의존 체질이 굳어진 교회는

10. ‘고백교회’는 1930년대 나치 정권하에서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려는 시도에 맞서, 성경과 복음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결성된 독일 개신교 운동이다. 고백교회라는 명칭은 국가 권력 앞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고, 오직 성경의 진리를 공적으로 고백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들은 1934년 바르멘 선언(Barmen Declaration)을 통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천명하고, 국가 권력이 교리나 교회 운영에 개입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전반적으로 무기력했다. 신학적 구분만으로는 국가 권력의 침투를 막기에 역부족임을 보여 주는 역사적 증거이다.

고백교회의 대표적 인물인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는 나치에 저항하다 체포되어 1945년 4월 9일, 연합군의 해방을 불과 2주 앞두고 플로센뷔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해 순교했다. 당시 독일의 약 18,000명 목사 중 고백교회에 참여한 이는 약 5,00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침묵하거나 협력했다. 이는 국가 교회 체제가 교회의 대언자적 기능을 얼마나 약화하는지 보여 주는 극적인 사례이다.



디트리히 본회퍼

결국 ‘두 왕국론’은 신학적 구분에 기여했으나, 국가 권력과의 제도적 단절에는 실패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침례교 전통이 주장한 정교분리의 급진성이 빛을 발한다. 이들의 정교분리는 신학적 구분을 넘어, 국가의 칼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단호한 결단이다.

두 왕국론과 정교분리의 결정적 차이

여기에서 핵심적인 구분이 필요하다. 두 왕국론은 ‘신학적 구분’이고, 정교분리는 ‘제도적 장치’이다. 신학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역할이 다르다고 인정하는 것과, 실제로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국가가 교회의 신앙과 양심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면, 아무리 이론적으로 구분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정교분리가 아니다.

어거스틴은 두 도시를 구분했으나, 국가의 종교 강제를 허용했다.

루터는 두 왕국을 구분했으나, 실제로는 제후에게 교회를 맡겼다. 이로써 교회는 로마로부터는 독립했으나 세속 권력으로부터는 독립하지 못했다.

루터의 한계는 재침례교도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자발적 신앙 공동체를 주장한 재침례교 운동을 사회 질서 위협 세력으로 간주했고, 세속 당국의 강경 조치를 정당화했다. 루터파 지역에서 벌어진 재침례교인 처형은 ‘잘못된 신앙’을 교정하려 국가의 칼을 사용한 대표

적 사례이다.

또한 루터는 후기 저술인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On the Jews and Their Lies*, 1543)에서 유대인 회당을 불태우고 랍비들의 가르침을 금지하며 재산을 몰수하라는 강경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는 신학적 논쟁을 국가적 강제력과 결합한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교분리의 원리와는 거리가 멀다.

칼빈 역시 제네바에서 시 의회와 협력하며 세르베투스 처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츠빙글리 또한 취리히에서 시 의회의 결의 아래 재침례교도를 탄압했으며, 1527년 펠릭스 만츠의 의사형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종교 개혁자들은 신학적으로는 교회와 국가를 구분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의 힘을 빌려 신앙을 제재하는 구조를 정당화했다. 결국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 셈이다.

제도적 분리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이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은 재침례교인들과 침례교인들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교회와 국가는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국가는 교회의 신앙과 양심에 절대로 간섭할 수 없다.”라고 선언했다. 신학적 구분은 종교 개혁자들이 제시했으나, 제도적 분리는 침례교인들이 피를 흘려 쟁취했다.

침례교인들이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구원받은 신자의 침례’ 교리에 있다. 오직 자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만이 침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원칙은, 유아 세례를 통해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교회에 속하게 되는 국가 교회 체제와 양립할 수 없다. 교회가 자발적 공동체라면 강제는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

루터와 칼빈은 유아 세례를 유지했기에 국가 교회 체제와 완전히 단절하지 못했으나, 침례교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국가 교회 체제를 전면 부정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이 책 제2부에서 다루게 될 ‘266년 투쟁’의 핵심이다. 신학적 구분이라는 기초 위에 제도적 분리라는 성벽을 쌓은 역사를 이해할 때,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정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6. 정교분리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원리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정교분리의 본질은 명확해진다.

첫째, 정교분리는 국가에 대한 제한이다. 국가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세울 수 없으며,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을 금지해서도 안 된다. 즉, 제한의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 국가이다.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교분리는 교회를 묶는 장치라 아니라, 비대해진 국가 권력을 묶는 장치이다.

둘째, 정교분리는 ‘국교 설립 금지’와 ‘종교의 자유 실행’이라는 두 기둥 위에서 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어느 하나만 강조하고 나머지를 무시하면 정교분리는 왜곡된다. 국교 설립 금지만 강조하면 세속주의로 흐르기 쉽고, 종교의 자유 실행만 강조하면 사실상의 국교 체제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 두 기둥이 나란히 설 때에만 온전한 균형이 유지된다.

셋째, 정교분리는 세속주의와 궤를 달리한다. 이 원리는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종교에 대해 중립을 지킴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속주의는 종교를 의심하거나 적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정교분리는 종교의 자유를 대전제로 삼는다. 여기서 중립은 배제가 아니라 보호를 의미한다.

넷째, 정교분리는 신정 정치와 다르다. 이 원리는 교회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교회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순간, 교회는 영적 공동체가 아닌 정치권력의 일환으로 전락한다. 역사는 이를 반복적으로 증명해 왔다. 칼빈의 제네바에서는 간통죄로 사형이 선고되고 춤과 오락이 금지되었으며, 교리적 일탈이 처벌 대상이 되었다. 청교도 중심의 신대륙 매사추세츠 역시 신정 정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을 추방하거나 처형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이상에서 출발했으나, 결국 양심을 강제하는 구조로 귀결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뜻을 국가 권력으로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자발적 신앙이라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강요된 예배가 아니라 자유 의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일부 교회가 특정 정치 세력과 밀착해서 정치권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깊은 우려를 낳는다.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정치 자금을 모금하며 교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은 정교분리의 정신과 어긋난다. 교회의 영향력은 정치권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교회가 권력에 기대는 순간, 교회는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뿐이다.

다섯째, 정교분리는 ‘두 왕국론’과 다르다. 두 왕국론이 신학적 구분에 머문다면, 정교분리는 법과 제도를 통해 교회와 국가의 경계를 확고히 보장한다. 이론적 구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가 권력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실질적인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정교분리는 근본적으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원리라는 사실이다. 국가와 교회가 결합할 때마다 교회가 타락해 왔음은 역사가 증명한다. 교회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지켜 내는 것이야말로 정교분리의 핵심 목적이다. “정교분리는 교회를 보호하는 울타리인가, 아니면 제거하는 장치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정교분리는 교회 제거의 칼날이 아니라 보호의 울타리이다.

이 여섯 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교분리란,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로 보장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원리이다.”

핵심 단어는 ‘국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 ‘보호’이다. 제한의 대상은 국가이며, 보호의 대상은 종교의 자유이고, 보호의 수단은 법과 제도이다. 이 정의를 마음에 새기고 나머지 부분을 읽어 주길 당부한다. 이 기준이 분명해야 역사 속에서 누가 이 원리를 수호했고 누가 훼손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한국의 현실에서 무엇이 정교분리의 실현이며 무엇이 그 파괴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논의를 가장 간결하게 압

축하면 하나의 선언으로 귀결된다.

“국가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국가는 교회에 무엇을 믿고 가르치며 어떻게 예배드릴지 지시할 수 없다. 동시에 교회 또한 국가의 칼을 빌려 타 종교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차단할 때 비로소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고 종교의 자유가 꽃피며,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순수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수 세기 동안 수많은 신앙인이 목숨을 걸고 지켜 낸 가치이다.

이 원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성령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야 한다. 이는 다음 장의 주제이기도 하다.

제2장에서는 구약 시대의 신정 체제와 신약 시대의 ‘교회-국가’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 막 12:17; 눅 20:25)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세금 문제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다.

이는 교회와 국가 관계에 관한 근본 원리를 선언하신 말씀이다.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라고 말한 것 역시 무조건적인 굴복이 아니라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인정한 것이다. 그는 먼저 모든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밝힘으로써, 국가가 절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3-4절에서 국가의 기능을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는 국가 권위의 목적과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만일 국가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악을 강요한다면, 사도행전 5장 29절의 원리처럼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성령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할 때, 정교분리가 단순한 세속적 산물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와 깊이 맞닿아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두 영역

정교분리는 18세기 미국에서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사상이 아니다. 그 뿌리는 성경 자체에 있다.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며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보여 준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신정 국가였지만, 신약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적 공동체로 나타난다.

이러한 전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정교분리의 신학적 기초를 바로 세울 수 없다. 구약의 신정 체제를 오늘날 국가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오류나, 신약의 원리를 무시한 채 교회가 국가 권력을 동원하려는 시도는 모두 이 전환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

이 장에서는 성경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구약과 신약을 따라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이는 제1장에서 정의한 정교분리 개념을 성경적 토대 위에 놓는 작업이다. 정교분리가 단순한 정치적 타협이나 계몽주의 산물이 아니라, 성경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형성된 원리임을 규명하는 데 이 장의 목적이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교분리를 세속적 개념으로 오해한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만든 사상이라 생각해서, 성경적 신앙인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도 정확하지 않다. 정교분리의 핵심 원리는 성경의 계시 구조 속에 이미 놓여 있다. 이 장에서 우리는 그 뿌리를 확인할 것이다.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전환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원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신약 교회의 본질이 왜 국가 교회 체제와 양립할 수 없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다.

1. 구약의 신정 정치 - 이스라엘만의 특수한 체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나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국가였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직접 선택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어 다스리신 나라였기 때문이다. 왕이 세워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왕정 시대에도 왕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통치해야 했다. 인간 왕이 있든 없든, 궁극적 통치자는 하나님이셨다.

이 체제의 출발점은 시내 산 언약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후,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며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신적 후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주(LORD)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출 15:18)라는 선언이 바로 신정 정치의 본질이다.

사사 시대는 이 체제의 긴장과 위기를 보여 준다. 재판관(사사)들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세우신 구출자(deliverer)였다. 그들에게는 세습적 왕권도, 절대 권한도 없었다.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셨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삿 21:25)라는 말씀은 무정부 상태를 이상화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백성의 타락을 보여 주는 진술이다.

결정적 전환점은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된 왕정 요구 사건이다. 백성은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를 위해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삼상 8:5)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삼상 8:7)라고 말씀하셨다. 인간 왕을 요구한 행위는 곧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부한 것과 다름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허락하시되, 인간 왕정의 폐해를 경고하셨다. 왕이 아들들을 징집하고, 딸들을 데려가며, 토지를 취하고,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하셨다(삼상 8:11-18). 이 경고는 이후 역사에서 현실이 되었다. 솔로몬의 과중한 세금은 왕국 분열을 초래했고, 많은 왕들이 백성을 압제하며 우상 숭배로 이끌었다. 인간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질 때 타락이 뒤따른다는 교훈이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시내 산 언약의 핵심 선언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 소유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출 19:5-6)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왕국’이라 부르셨다. 이는 정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적 공동체라는 의미이다.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 아래 하나로 통합된 구조였다. 이스라엘에서는 국가가 곧 종교 공동체였고, 종교 공동체가 곧 국가였다. 이 체제는 인류 역사상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독특한 형태였다. 하나님께서 특정 민족을 선택해서 직접 율법을 주시고, 그 민족을 통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계획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한다. 다른 민족에게는 이런 언약이 주어진 적이 없다.

율법 - 국법이자 종교법

이스라엘에서 율법은 곧 국법이었다. 십계명은 도덕의 기초였고, 민사 규정은 재산·계약·범죄에 관한 법이었으며, 의식 규정은 희생물, 명절(절기), 정결

에 관한 법이었다. 이 세 영역은 서로 분리된 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율법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종교적 범죄는 곧 국가적 범죄였고,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는 형벌의 대상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세 범주로 구분한다. 도덕법(moral law), 민사법 혹은 시민법(civil law), 의식법(ceremonial law)이다.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이다. 민사법은 이스라엘 국가의 사법·형사·민사 규정이며, 의식법은 희생물, 절기, 정결 규정이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신약 시대에 각 범주의 적용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도덕법의 원리는 시대를 초월한다. 살인, 간음, 도둑질을 금하는 명령은 어느 시대에도 유효하다.

그러나 민사법은 특정 국가, 곧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에 주어진 법이었다. 이스라엘 국가의 소멸과 함께 그 국가적 적용은 종료되었다. 의식법 역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성취되었기에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

이 구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에서 우상 숭배를 사형에 처했으니 오늘날에도 국가가 이단을 처벌해야 한다.”라는 치명적 오류에 빠지게 된다. 같은 논리라면 구약에서 돼지고기를 금했으니 오늘날에도 국가가 돼지고기 섭취를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더 이상 국가 형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당시에는 실제로 안식일을 범하면 사형에 처했고(출 31:14-15), 우상 숭배는 돌로 처형했으며(신 17:2-5), 거짓 대언자는 죽임을 당했고(신 18:20), 신성 모독 역시 사형에 해당했다(레 24:16). 이는 잔혹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언약 국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질서였다. 그러나 이 체제가 가능했던 전제는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직접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이다.

이 체제 안에서는 현대적 의미의 ‘신앙의 자유’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언약 공동체였다.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는 단순한 사적 선택이 아니라 언약 파기였으며, 곧 국가적 범죄였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엄격한 체제를 두셨을까? 그 배경에는 당시 주변 이

교 국가들의 극심한 도덕적·종교적 부패가 있었다. 가나안 종교에는 아동 희생과 성적 타락을 동반한 우상 숭배, 신전 창녀 제도와 같은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레위기 18장; 신 12:31).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구속사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려면, 강력한 경계와 엄격한 언약 질서가 필요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정 체제를 세우신 목적은 단순한 통제나 억압이 아니라, 그 시대와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과 직접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중심으로 공동체 전체를 조직하셨다. 우상 숭배는 개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부패시키고 언약을 무너뜨리는 행위였기에 국가적 범죄로 간주되었다.

제사장과 왕 - 넘을 수 없는 직분의 경계

흥미로운 사실은 구약의 신정 정치 체제 안에서도 제사장의 직무와 왕의 직무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인 레위 지파에서,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직무를 맡았다면, 왕은 국가를 다스리는 세속적 직무를 맡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권위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

사무엘기상 13장에서 사울 왕은 대언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 헌물을 드렸다. 이는 왕이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한 사건이었다. 사무엘은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라고 말하며 그의 왕조가 지속되지 못할 것을 선포했다(삼상 13:8-14). 웃시야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교만해진 그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하자 제사장들이 이를 가로막았고, 그는 그 즉시 나병에 걸려 평생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다(대하 26:16-21).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정치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 사이의 경계를 얼마나 엄격히 구분하셨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왕이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졌더라도 제사장의 영역만큼은 침범할 수 없었다. 이 구분은 현대적 의미의 정교분리와 완전히 동일한 제도는 아닐지라도, ‘권력의 집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

다.’라는 핵심 원리를 드러낸다. 하나님께서는 신정 체제 안에서조차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권위를 서로 다른 직분에 맡기셨다.

이 점은 앞으로 다루게 될 정교분리 원리가 성경적 토양 위에서 자라난 것임을 증명하는 첫 번째 단서가 된다.

이스라엘 신정 정치의 특수성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는 모든 국가를 위한 보편적 모델이 아니라, 구속사라는 거대한 흐름 안에서 주어진 특수한 체제였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셨고, 그들과만 시내 산 언약을 맺으셨다. 성경 어디에서도 다른 민족에게 이와 동일한 체제를 세우라고 명하신 적이 없다.

신명기 4장 7-8절은 이 특수성을 분명히 한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날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신 4:7-8)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율법 체제가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없는 독특한 것이었음을 선언한다. 그러므로 구약의 신정 정치를 오늘날 국가에 그대로 투영하려는 시도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이 아니며, 대한민국과 하나님 사이에 시내 산 언약과 같은 특별한 계약이 맺어진 적도 없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부 그리스도인이 미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독교 국가’라고 치켜세우지만, 미국 또한 구약적 의미의 언약 국가는 아니다.

구약의 신정 정치가 오늘날 반복될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이스라엘 체제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로 운영되었다. 모세에게 직접 율법이 주어졌고 대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으나, 오늘날 그 어떤 국가도 이러한 형태의 직접 계시를 받지 않는다.

둘째, 이스라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법이었다. 오늘날 그 어떤 입법자도 자신의 법안을 가리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절대적 권위를 주장할 수 없다.

셋째, 이스라엘은 혈통 중심의 단일 민족 언약 공동체였다. 현대와 같은 다민족·다종교 사회에서 특정 종교의 율법을 강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넷째, 신정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것이었다. 메시아께서 오신 이후 그 구속사적 목적은 성취되었다. 이미 성취된 과거의 체제를 다시 정치적으로 부활시키려는 시도는 성경의 큰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일부 개혁주의 진영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회를 변혁해야 한다.”라며 사실상 신정 정치에 가까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네덜란드 총리를 역임한 신학자요 정치가인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의 영역 주권론¹은 교회와 국가의 역할을 구분하는 데 기여했지만, 그 사상이 국가를 기독교 교리로 통치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기독교 세계관은 신자 개인의 삶과 윤리에 지침이 될 수는 있으나, 국가를 구약적 언약 공동체로 재구성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미국의 ‘기독교 재건주의’(Christian Reconstructionism) 역시 유사한 오류를 범했다. 루사스 존 러쉬두니(R.J. Rushdoony, 1916-2001)는 구약의 형벌 체제를 현대 국가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논리대로라면 간통, 우상 숭배, 신성모독 등에 대해 구약적 처벌을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구약 신정 정치의 논리를 현대에 무분별하게 확장하면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는지를 보여 준다. 같은 논리로 안식일 위반이나 부모를 거역하는 행위까지 국가가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과연 신약 시대 교회의 사명이라

1. 영역 주권론(sphere sovereignty)은 전통적 칼빈주의(Calvinism)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칼빈주의의 핵심 교리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서 출발하며, 하나님께서 교회, 국가, 가정, 학문, 경제 등 각 영역에 서로 다른 고유한 권위와 책임을 부여하셨다고 본다. 이 사상은 칼빈의 두 통치 영역 구분(영적 통치와 시민 통치)에서 영향을 받았으나, 카이퍼는 이를 더욱 체계화해서 각 영역이 서로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리로 발전시켰다. 따라서 영역 주권론은 칼빈주의의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사회철학적 영역으로 확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요 8:11)라고 말씀하신 장면은 매우 상징적이다. 이는 구약의 형벌 체제가 신약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은 변함없으나,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집행하는 방식은 구속사의 전환에 따라 완전히 달라졌다.

중세 카톨릭교회가 저지른 근본적 오류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교회가 국가 권력과 결탁해 이단을 처형하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은, 구약의 신정 체제를 신약 시대에 정치적으로 재현하려 했던 무모한 시도였다. 종교 개혁 이후 칼빈이 제네바에서 세르베투스를 화형에 처한 사건 또한 같은 오류의 연장선에 있다. 특수한 언약 체제를 보편적 정치 모델로 오인한 결과는 결국 타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전환점

그러면 구약의 신정 정치는 영원히 지속되는 체제였는가? 그렇지 않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장차 전혀 다른 차원의 새 언약 시대가 올 것을 분명히 예고했다. 예레미야서 31장 31-33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 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렘 31:31-33)

이 예언은 구약적 체제가 영구적인 정치 질서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하나님께서는 새 체제가 그 이전의 것과 “같지 않다.”라고 친히 선언하셨다. 새 언약은 시내 산 언약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질서이다.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되는 율법, 외적 강제가 아니라 내적 변화가 중심이 되는 체제이다. 이는 국가의 강제력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구조에서, 개인의 내면적 믿음과 성령의 역사에 기초한 공동체로의 전환을 암시한다.

히브리서 8장은 이 예언을 직접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선포한다.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기 마련이니라. (히 8:13)

여기에서 ‘첫 언약’은 구약 언약 체제를 가리킨다. 그것이 “사라지기 마련이니라.”라는 선언은, 구약의 신정 정치 구조가 영구적 모델이 아님을 신학적으로 확정하는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민사법과 의식법이 신약 시대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근거이다.

대언자 에스겔 역시 같은 방향의 예언을 한다.

그때에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새 마음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며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내 법규들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리라. (겔 36:25-27)

구약에서는 율법이 돌판에 기록되어 외적으로 주어졌으나, 새 언약(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거하시며 내적 순종을 이루신다. 이 전환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체제가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이 아님을 보여 준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신약(새 언약)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이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외적 율법이나 국가의 강제에 의해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일에 의해 형성되는 공동체이다.

이처럼 새 언약의 도래는 단순한 신학적 변화를 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

하고 유지되는 방식 자체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전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었다.²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원리가 선포된다. 구약의 신정 정치가 구속사의 한 단계였다면, 신약의 교회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동체로 등장한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 카이사르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 구분

유대인들의 기대 - 정치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강렬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영적 구원자라기보다 정치적 해방자에 가까웠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며, 민족적 독립과 영광을 되찾아 줄 군사적 지도자를 기대했다.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에 독립 국가를 세우며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 도시로 세우리라 믿었다.

이러한 기대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부분적으로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다.

2.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법적·구속사적으로 성립되었다. 주님께서는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눅 22:20)라고 선언하셨고, 히브리서 9장 15 절도 그분을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라고 부른다. 이 의미에서 새 상속 언약, 즉 새 언약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예레미야 31장이 말하는 새 언약의 민족적·집단적 성취, 곧 “이스라엘의 집과 및 유다의 집” 전체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 상태는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 로마서 11장이 보여 주듯이, 이스라엘의 다수는 메시아를 거부했고, 그 결과 구원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새 언약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완전한 성취는 장차 메시아의 재림과 왕국 통치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때의 핵심 역시 외적 강제가 아니라 내적 변화이다. 에스겔이 말한 “새 마음”과 “새 영”은 본질적으로 내면의 변화를 가리킨다(겔 36:26). 물론 메시아 왕국 시대에도 이스라엘에게는 일정한 외적 질서와 규제가 존재할 것이나, 그것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억지로 강요하는 체제가 아니라, 이미 변화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 위에 세워진 질서이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구약 신정 정치의 본질이 외적 율법과 국가적 강제에 있었다면, 새 언약 시대의 본질은 성령님에 의한 내적 갱신이다. 따라서 설령 장차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 정부가 종교를 강제로 통제하는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중심은 언제나 내적 변화이지, 국가 권력에 의한 신앙 강제가 아니다.

구약은 분명히 메시아의 왕권과 통치를 예언한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야서 53장에 묘사된 고난받는 종의 예언은 외면하고, 영광과 승리에 관한 본문만을 강조했다. 메시아께서 처음 오실 때는 고난받는 종으로,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신다는 구속사적 구분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러한 정치적 메시아 기대를 극단적으로 추구한 집단이 있었다. 바로 열심당(Zealots)이다. 이들은 무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영적 교사가 아니라 혁명적 지도자였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열심당원'(눅 6:15)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부르셔서, 정치적 열심을 영적 왕국을 향한 열심으로 전환시키셨다. 이는 정치적 열정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칼과 혁명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 기대는 매우 강렬했다. 예수님께서서 오천 명을 먹이신 뒤, 군중은 그분을 강제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 했다(요 6:15).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자리를 떠나 홀로 산으로 가셨다. 그분은 군중의 정치적 열망을 이용하지 않으셨다. 가룟 유다의 배신 동기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서 정치적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유대인들은 영적 메시아보다 정치적 메시아를 더 원했다.

이 왜곡된 기대는 단지 1세기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는 시도는 당시 유대인들의 정치적 메시아 기대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하나님의 왕국을 정치권력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은 시대를 초월해서 반복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질문들은 계속 정치적 색채를 띠었다. 심지어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은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행 1:6)라고 물었다. 예수님의 사역 내내 사람들은 그분이 언제 정치적 행동을 취하실지를 기다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기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셨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마태복음 22장 15-22절에 기록된 사건은 정교분리의 성경적 근거로서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와서 물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마 22:17)

이 질문은 교묘한 정치적 함정이었다. 만약 예수님께서서 “세금을 바쳐라.”라고 하시면 유대 민중으로부터 로마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시면 로마 당국으로부터 반역자로 체포될 상황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 예수님께서서 곤경에 빠질 것이라 계산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그 정치적 함정을 완전히 초월했다. 예수님께서서는 데나리온 동전을 보여 달라고 하신 후, 동전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고 물으셨다. 사람들이 “카이사르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Render therefore unto Caesar the things which are Caesar's; and unto God the things that are God's." Matthew 22:21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

그러므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 22:21)

여기에서 핵심은 단순히 세금을 내라는 교훈이 아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형상’

(image)이라는 단어를 통해 소유와 속성의 문제를 드러내셨다. 동전에 새겨진 형상이 카이사르의 것이기에 그 동전은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세(세금)는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사람은 동전과 다르다. 사람은 카이사르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창 1:27). 그러므로 인간의 양심과 예배, 궁극적 충성은 카이사르에게 속하지 않는다. 국가는 동전에 새겨진 형상까지는 요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영혼까지 요구할 권한은 없다.

이 한 문장 속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국가의 정당한 영역과 하나님의 절대적 영역을 동시에 인정하셨다. 세금은 카이사르의 것이지만,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정교분리의 신학적 기초가 된다.

이 선언의 의미

이 한 문장 안에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혁명적 원리가 담겨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두 영역을 분명히 구분하셨다. ‘카이사르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이 있으며, 각각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첫째, 예수님께서서는 국가의 영역이 존재함을 인정하셨다. 카이사르, 곧 세속 정부에게 세금을 바치는 행위는 합법적이다. 국가는 세금을 거두고 질서를 유지하며 백성을 보호하는 정당한 기능을 가진다. 예수님께서서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고, 무정부주의를 가르치지도 않으셨다.

둘째, 그러나 국가의 영역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되,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국가에 속한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있으며, 이 둘은 구분된다. 국가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오는 행위는 월권이다. 인간의 영혼과 양심과 신앙은 ‘하나님의 것’이지 ‘카이사르의 것’이 아니다. 카이사르는 동전에 자기 형상을 새길 수 있으나, 인간의 양심에 자기 형상을 새길 수는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창 1:27).

셋째, 이 선언은 구약 신정 정치의 종료를 암시한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서

는 ‘카이사르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율법이 곧 국법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 두 영역을 구분하신 말씀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신 것이다.

이 구분의 신학적 깊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서 두 영역을 나누신 것은 단순한 세금 문제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두 영역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것이다. ‘카이사르의 것들’은 시민적 의무의 영역이다. 세금, 법 준수, 공적 질서 유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하나님의 것들’은 양심과 신앙과 예배의 영역이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는 카이사르의 관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할이다.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라.”라고 하신 뒤, 곧바로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덧붙이셨다는 사실이다. 이 두 명령은 병렬 구조이지만, 그 성격은 동일하지 않다. 카이사르의 권한은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반면, 하나님의 권한은 절대적이고 궁극적이다.

따라서 두 영역이 충돌할 때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진다. 카이사르의 권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카이사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때 그리스도인은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말하는 원리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 (행 5:29)

당시 이 선언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카이사르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카이사르의 나라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밝히셨다. 메시아의 왕국은 로마를 전복해서 세워지는 정치적 왕국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세워지는 영적 왕국이었다.

영국의 침례교 목사 헬위스가 1612년에 “왕은 인간 영혼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는 바로 마태복음 22장 21절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카이사르는 세금과 질서의 영역에서 권한을 가지지만, 영혼과 양심의 영역은 카

이사르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왕은 어떤 종교를 믿으라고 명할 권한도, 어떤 방식으로 예배드리라고 강제할 권한도 없다. 이것이 정교분리의 성경적 기초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1525년부터 266년간의 투쟁이 이루어졌다.

로저 윌리엄스도 같은 원리를 적용했다. 윌리엄스는 십계명을 ‘두 판’으로 구분했다. 첫째 판(제1-4명령)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둘째 판(제5-10명령)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룬다. 그는 국가가 관할할 수 있는 영역은 둘째 판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과 같은 행위는 국가가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와 같은 명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이므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 이 구분은 예수님의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라는 선언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다.³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하신 말씀은 이 원리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3. 이 표현은 흔히 오해받고는 한다. 어떤 사람들은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라는 구절을 근거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교회는 종교 활동만 하라. 신앙은 개인적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 곧 신앙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국한하고, 공적 영역에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의 의미를 크게 왜곡한 해석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신앙을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 또한 신자가 시민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방관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시면서도 국가의 권한에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셨다. 정교분리는 신앙을 침묵시키는 원리가 아니라,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리이다. 핵심은 “교회는 입을 다물라.”가 아니라, “국가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말라.”는 엄중한 선포에 있다. 신자는 시민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내며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인간의 양심과 예배와 신앙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말씀은 신앙을 사적 영역으로 밀어 넣는 세속주의의 근거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절대화를 거부하는 선언이다. 예수님의 이 한 문장은 국가의 정당한 영역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계를 분명히 긋는 원리이다. 바로 이 점에서 정교분리는 교회를 약화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보호하는 견고한 울타리가 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 18:36)

예수님께서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not of this world)라고 하신 말씀은 왕국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왕국은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그 왕국이 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왕국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증거로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웠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의 왕국은 군사력과 무력에 의해 세워지고 방어되지만, 신약 시대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런 방식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왕국의 기원과 성격과 방법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왕국은 군사력으로 세워지고, 정치권력으로 유지되며, 경제적 힘으로 확장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워진다. 복음의 선포로 시작되고, 성령님의 일들로 유지되며, 사랑과 순종으로 확장된다. 외적 강제가 아니라 내적 변화가 그 동력이다.

이 말씀의 함의는 매우 깊다.

만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정치적 왕국이라면, 교회는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그 왕국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법을 제정하고, 반대자를 처벌하고, 강제로 종교를 확산시키는 방식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셨다면, 교회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교회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말씀이며, 강제가 아니라 복음이다.

중세 카톨릭교회가 범한 근본적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세상의 정치적 왕국과 동일시하고, 국가 권력을 통해 그 왕국을 세우려 했다. 교황이 황제 위에 군림하고, 십자군을 파견하며, 이단자를 처형한 것은 모두 그 연장선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요 18:36)라는 예수님의 선언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베드로의 칼을 거두게 하시다

젓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일어난 사건도 같은 원리를 분명히 보여 준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마 26:52)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순간의 긴급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지시가 아니었다. 이는 교회의 방법론에 대한 근본적 선언이었다. 교회는 칼로 자신을 지키지 않는다. 교회의 싸움은 육체적 전쟁이 아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걷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는 나라.) (고후 10:3-4)

교회 역사에서 이 원리가 무시될 때마다 비극이 반복되었다. 1096년부터 1291년까지 이어진 십자군 전쟁에서 교회는 문자 그대로 칼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구호 아래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다. 1478년 시작된 스페인 종교 재판소에서도 교회는 국가 권력의 칼을 빌려 이단자들을 고문하고 처형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이어진 30년 전쟁에서는 개신교와 카톨릭이 서로를 칼로 죽였고, 유럽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했다. 이 모든 비극의 공통점은 교회가 “칼을 칼집에 넣으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데 있다.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라는 경고는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되었다.

이 원리를 가장 일관되게 이해하고 실천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로저 윌리엄스이다. 그는 “영혼에 대한 박해는 영혼의 강간이다.”라고 선언하며,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개입하는 모든 형태를 거부했다. 국가가 이단을 처벌하는 것도, 정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를 규제하는 것도 모두 반대했다. 양쪽 모

두 국가가 칼을 사용해서 신앙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윌리엄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마 13:24-30)를 인용하며, 가라지를 뽑는 일은 수확할 때, 곧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교회가 자신과 다른 신학적 입장을 가진 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법적 제재를 요청하는 것은 이 원리에 어긋난다. 다수 교단이 소수 종교 단체에 대한 국가적 해산이나 처벌을 환영하는 태도 역시, 중세 교회가 국가의 칼을 빌려 이단을 처벌하던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교회가 국가의 칼을 의지하는 순간, 교회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요 18:36)라는 주님의 선언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이다.

3. 신약 교회 - 칼이 아니라 말씀으로

신약 교회의 본질 - 영적 공동체

신약 시대의 교회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⁴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이자 국가였다. 영토가 있었고, 군대가 있었으며, 세금 체계를 갖추었다. 그러나 교회는 민족이 아니다. 영토도 없고, 군대도 없으며, 세속적 권

4. 일부 신학자들은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전체’라는 넓은 의미로 정의해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이해한다. 특히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부른 표현이나, 히브리서 12장 23절의 ‘처음 난 자들의 교회’라는 구절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ἐκκλησία)는 오순절 이후 성령님의 내주와 성령 침례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라는 점에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구조적으로 구별된다. 이스라엘은 혈통과 율법과 영토에 의해 구성된 민족적·정치적 공동체였으나, 교회는 다시 태어남과 믿음과 성령님의 일에 의해 형성된 영적 공동체이다.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 교회와 동일시하는 것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 이 두 공동체를 동일한 가시적 언약 공동체로 이해하는 신학은 국가 교회 체제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였고, 반대로 이 둘을 구별하는 신학은 정교분리의 원리로 발전했다. 그러므로 정교분리를 탐구하는 이 책에서는 ‘교회’라는 용어를 신약적 의미, 곧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형성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정해서 사용한다.

력 구조도 지니지 않는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영적 공동체이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 2:9)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6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선언을 교회에 적용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이스라엘은 혈통에 의해 형성된 민족인 반면, 교회는 믿음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이다. 이스라엘은 특정 영토에 묶여 있었지만, 교회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외적 강제력 아래 유지되었지만,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유지된다. 바로 이러한 차이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이 차이는 교회의 구성 방식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혈통에 따른 출생으로 그 구성원이 결정되었다. 이스라엘 사람의 자녀는 자동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나 신약 교회는 자연적 출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 즉 중생에 의해 구성원이 된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요 3:3)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는 조건이 자연적 출생이 아니라 영적인 중생, 즉 다시 태어남에 달려 있음을 선언하신 것이다. 이는 교회의 구성원을 국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세 카톨릭교회나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국가 교회 체제처럼 유아 세례를 통해 모든 국민을 자동으로 교회 구성원으로 편입하는 방식은 신약적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교회가 영적 공동체라는 사실은 그 구성원이 자발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모인 이들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강제로 교회에 편입될 수 없다. 이것이 중세 교회의 유아 세례와 강제 개종이 성경적 교회론에 위배되는 이유이며, 침례교가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의 침례만을 고수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 교회의 문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열

리며, 국가의 칼이나 법적 강제로는 결코 열릴 수 없다.

유아 세례를 통해 국가의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교회에 속하는 국가 교회 체제는, 신약 교회의 자발적 성격과 근본적으로 모순된다. 이러한 인식을 가장 먼저 정립한 이들이 재침례교인들이었다.

1525년 스위스에서 시작된 재침례교 운동의 핵심은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이었다. 유아는 자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으므로, 유아 세례는 사실상 강제적인 교회 편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참된 세례, 곧 침례는 자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한 자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 논쟁은 단순한 의식의 차이를 넘어 국가 교회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었다. 태어나자마자 자동적으로 한 나라의 시민으로 간주되는 유아 세례를 거부하면 국가 교회 체제는 흔들린다.

국가 교회 체제가 흔들리면,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필연적 결론으로 이어진다. 바로 여기에 재침례교 운동에서 정교분리 사상으로 발전하는 신학적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로마서 13장 - 국가에 대한 교회의 태도

신약 성경에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본문은 로마서 13장 1-7절이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롬 13:1-2)

사도 바울은 국가 권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임을 인정했다. 국가는 악을 벌하고 선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국가에 위임하신 역할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정당한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세금을 내고, 법을 준수하며, 사회 질서를 존중하는 행위는 신앙과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본문을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의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다. 바울 자신도 네로의 박해로 순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만일 바울이 “모든 권력에 복종하라.”라는 말로 국가가 하는 모든 일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다면, 그는 나중에 로마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순교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다. 즉,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국가의 ‘정당한 기능’에 대한 복종이지, 국가의 ‘모든 행위’에 대한 굴종이 아니다.

국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기능과 그 한계를 넘어 양심과 신앙의 영역에 개입할 때,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행 5:29)라는 선언과 연결된다.

베드로전서 2장 13-17절도 동일한 원리를 가르친다.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함에 재갈을 물리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벧전 2:13-17)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와 “왕을 존경하라.”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는 ‘두려움’, 곧 경외를 드리되, 왕에게는 ‘존경’을 드린다. 두려움과 존경은 동일하지 않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외는 절대적이지만, 왕에게 드리는 존경은 상대적이다.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 존경의 태도는 유지하되 궁극적인 순종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약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다.

이 원리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출애굽기 1장의 산파들이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다(출 1:16). 그러나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이들을 살려 두었다. 성경

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내아이들을 살려 두니라. (출 1:17)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출 1:20-21).

이 사건은 분명한 원리를 보여 준다. 왕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불복종은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더 높은 차원의 순종이었다.

이 원리를 신약 시대 교회 역사 속에서 비교적 분명히 실천한 이들이 재침례교인들과 초기 침례교인들이었다. 그들은 국가의 정당한 권위를 인정했다. 세금을 냈고, 법을 준수했으며, 사회 질서를 존중했다. 그러나 국가가 양심의 영역에 침범했을 때, 즉 유아 세례를 강요하고, 허가 없는 예배를 금지하며, 특정 교리를 강제했을 때, 그들은 순종을 거부했다. 투옥과 추방과 처형을 감수하면서도 양심의 자유를 지킨 것은 로마서 13장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하게 이해한 결과였다. 국가의 정당한 직무에는 복종하되 국가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균형이 바로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정교분리의 성경적 토대이다.

사도행전 5장 -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가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본문이 사도행전 5장이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곧 산헤드린이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 (행 5:29)

이 한 구절은 국가 권위의 한계를 분명히 선언한다. 국가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권세이다.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 명령을 내릴 때 그리스도인은 순종한다.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명령을 내릴 때, 그리스도인은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양심은 국가의 통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이미 구약에서도 나타난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일이 그리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으며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리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께서는 아시옵소서. (단 3:16-18)

그들은 결과를 계산하지 않았다. 순종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 두었을 뿐이다. 다니엘 역시 왕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하루 세 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사자 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다(단 6장).

이 사건들이 가르치는 원리는 하나이다.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할 때, 믿는 자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 구약의 원리는 신약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행 5:29)라는 선언으로 분명하게 확정된다.

이 원리는 이후 침례교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었다. 재침례교인들이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투옥과 처형을 감수한 일, 토마스 헬위스가 “왕은 인간 영혼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 버지니아의 침례교 목사들이 허가 없이 설교하다가 감옥에 간 것 모두가 이 한 구절을 실천한 결과였다. 그들은 국가의 질서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한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이다.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며, 악을 벌하고 선을 보호하는 정당한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 정당한 권위에 복종한다. 그러나 국가의 권위는 절대적이지 않다. 국가는 양심과 신앙의 영역을 지배할 수 없다. 국가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할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국가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께 향한 최종적 순종, 이 두 원리의 균형이 바로 정교분리의 성경적 기초이다.

교회의 무기 - 말씀과 기도와 사랑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칼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싸우는가? 신약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제시한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교회의 무기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라고 선언한다. 교회의 무기는 쇠로 만든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기도한다. 이것이 교회의 전쟁 방식이다.

초대 교회는 이 원리를 삶으로 증명했다. 사도들은 로마 제국의 칼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찬송을 불렀다. 초대 교회의 순교자들은 칼을 들지 않았지만, 그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터툴리안(Tertullian, 160-220)이 남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선언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약 3세기 동안 교회는 국가의 보호 없이, 오히려 국가의 박해 속에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콘스탄티누스가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그것은 교회가 칼로 승리한 결과가 아니라 복음으로 이미 확장된 현실을 로마가 인정한 것이었다.

초대 교회가 사용한 수단은 칼이 아니라 말씀이었고, 강제가 아니라 사랑이었으며, 정치적 책략이 아니라 기도였다. 이것이 신약 교회의 방법이다. 또한 1525년 이후 재침례교인들과 침례교인들이 회복하려 했던 원리이기도 하다.

그들은 국가의 보호와 특권을 거부하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서는 교회를 세우고자 했다.

역사적 통계는 이 방법이 지닌 힘을 보여 준다. 주후 100년경 기독교인은 약 7,500명 정도로 추정된다. 200년경에는 약 20만 명, 300년경에는 약 600만 명으로 급증했다.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다를 때, 로마 제국 인구의 약 1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추정된다.⁵ 이 성장은 군사력이나 정치권력, 국가의 지원 없이 이루어졌다. 복음 선포와 순교자의 증언,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 그 동력이었다.

박해의 강도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네로 황제(Nero, 37-68, 재위 54-68)는 기독교인을 산 채로 불태워 햇불로 삼았다. 도미티안(Domitian, 51-96, 재위 81-96)은 조직적인 탄압을 가했고, 사도 요한은 밧모 섬에 유배되었다. 데키우스(Decius, 201?-251, 재위 249-251)는 제국 전역에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 디오클레티안(Diocletian, 244?-311, 재위 284-305)은 교회 건물 파괴와 성경 소각을 포함한 대박해를 단행했다. 그럼에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다. 국가의 칼은 복음을 꺾지 못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교회의 힘은 정치적 영향력이나 권력과의 연줄에 있지 않다. 권력자와의 친밀한 관계, 공개적 정치 지지, 권력 중심과의 결합이 교회의 능력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성경은 교회의 능력이 복음에 있음을 가르친다. 교회가 정치권력에 의존하려 하는 행위는 강함의 표시가 아니라 약함의 신호일 수 있다.

역사는 이 역설을 반복해서 보여 준다.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교회는 세속화되기 쉽고, 박해를 받는 교회는 오히려 정화되며 성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럽의 여러 국가 교회는 제도적 보호와 재정 지원 속에서도 급격히 쇠퇴했다. 반면 박해 속에 있던 교회들은 오히려 생명력을 유지했다. 한국 교회 역시 일제의 탄압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성장했다. 그러나 정치권력과 밀착하고 물질적으로

5. Rodney Stark, *The Rise of Christianity: A Sociologist Reconsiders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초기 교회 성장 통계(100년·200년·300년 인구 추정, 연 3-4% 성장률 모델 등)의 핵심 근거.

풍요로워진 이후, 도덕적 권위는 흔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 역설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라. (고후 12:10)

교회가 세상의 눈에 약해 보일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히 드러난다. 반대로 교회가 세상의 힘을 빌려 강해지려 할 때, 영적으로는 약해질 위험이 있다. 초대 교회의 성장과 콘스탄티누스 이후 점차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은 이 원리를 극명하게 대비해 준다.

결론 -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전환이 주는 교훈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전환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다. 그 핵심적인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약의 신정 정치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특수한 체제였다. 이를 다른 민족이나 현대 국가에 그대로 투영하는 것은 성경의 본래 의도와 어긋난다. 따라서 구약의 신정 정치를 명분 삼아 오늘날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는 시도는 신학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 원리를 무시한 대가는 역사 속에서 처참하게 드러났다. 황제가 교회의 수장을 겸한 비잔틴 제국의 ‘황제 교황주의’(caesaropapism, 카이사로파피즘)는 교회를 국가의 부속 기관으로 전락시켰다. 반대로 교황이 세속 권력 위에 군림한 중세 서유럽의 ‘교황 황제주의’(papocaesarism, 교황권)는 교회를 정치권력화했다. 방향은 달랐으나 결과는 같았다. 교회의 영적 순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카이사르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셨다. 국가는 세금 징수와 질서 유지라는 정당한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인간의 양심과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 이 구분이 정교분리의 견고한 성경적 뿌리를 이룬다.

셋째,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국가 권력을 동원해 그리스도의 왕국을 지상에 구현하려는 시도는 그리스도 자신의 선언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주님의 왕국은 물리적인 칼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때문이다.

이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른 대표적 인물이 교황 보니파스 8세이다. 그는 1302년 칙서「우남 상탐」(Unam Sanctam)에서 “모든 인간이 구원을 위해 로마 교황에게 복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선포했다. 이는 교황이 영적 권위뿐 아니라 세속 권력까지 거머쥐겠다는 야욕의 표출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요 18:36)라고 분명히 선언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거부하신 정치권력을 그분의 대리자를 자처하는 교황이 탐낸 것은 명백한 모순이었다. 이 모순이 천 년 넘게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중세 교회의 비극이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 오랜 세월과 수많은 희생이 필요했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넷째, 신약 교회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말씀이다. 교회는 강제가 아닌 설득으로,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국가의 칼을 빌려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모든 시도는 신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

이 원리는 현대 한국 교회의 이단 정죄 문제에도 적용된다. 제9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대형 교단이 소수 교단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국가에 법적 제재를 요청하는 행위는 교회가 국가의 칼을 빌려 신학적 논쟁을 해결하려는 위험한 태도이다. 이는 중세 교회가 세속 권력을 동원해 이단을 처단하던 구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교리적 논쟁은 오직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말씀과 논증으로 풀어야 한다. 국가 권력에 의존하는 순간, 교회는 ‘말씀의 충분성’을 스스로 약화시키게 된다.

다섯째,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명령을 내릴 때, 그리스도인은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인간의 양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이다.

이 다섯 가지 원리를 한국 교회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몇 가지 명확한 결론에도달한다. 교회가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행위는 성경적이지 않다. 동시에, 국가

가 교회의 설교 내용을 검열하거나 교회를 해산하려는 시도 또한 성경적이지 않다. 교회는 국가의 칼을 빌리지 말아야 하며, 국가는 교회의 양심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 양방향의 원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두 영역의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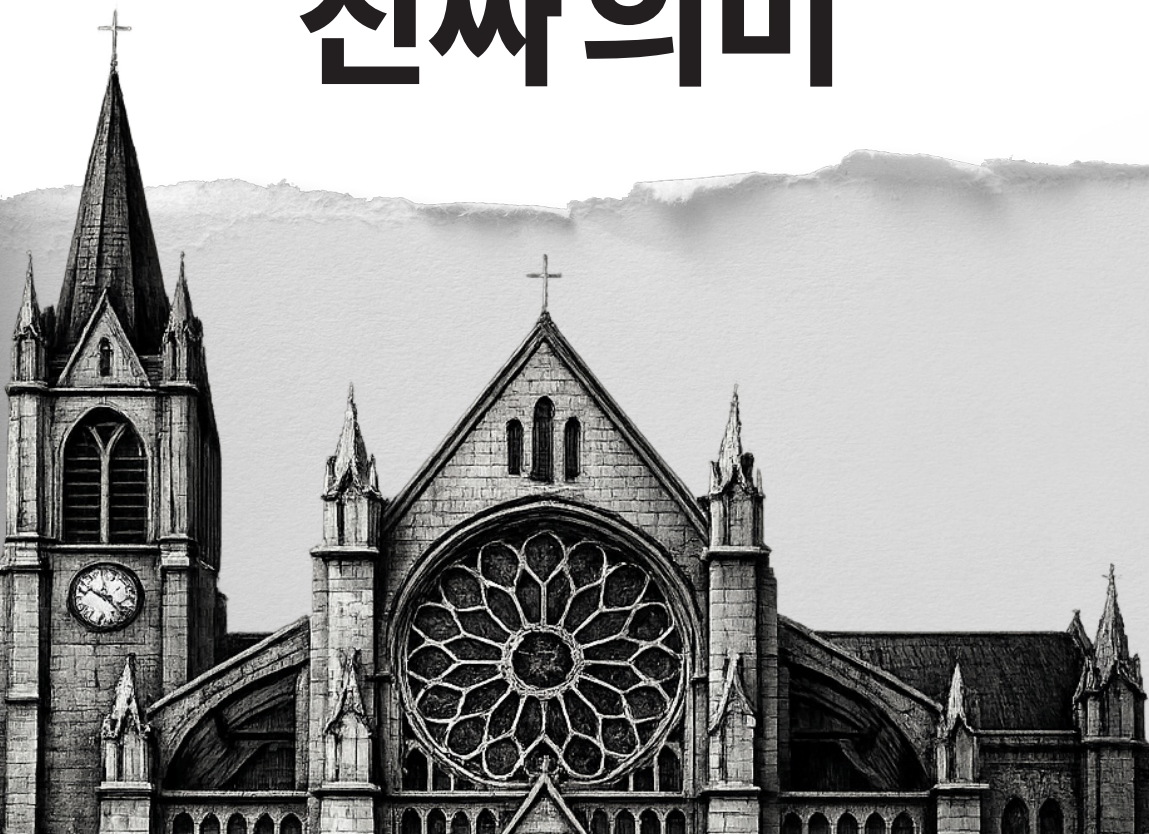
특히 주의할 점은 구약과 신약을 혼용하는 오류이다. 일부 설교에서 구약의 전쟁 서사를 현대 정치 상황에 무분별하게 대입하고는 한다. 그러나 구약의 전쟁 명령은 특정 역사적 시점에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특수한 계시였다. 신약 시대 교회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고후 10:4)라는 원리 아래 있다. 또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라는 말씀처럼, 진리는 강제가 아니라 자유 속에서 일한다. 국가의 칼로 진리를 강요하는 행위는 진리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두 영역의 원리이다. 그러나 유한하고 욕망에 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원리가 온전히 구현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권력의 유혹이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이다. 교회가 국가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설령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음을 알지라도 기꺼이 내려놓기란 쉽지 않다.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시작된 ‘국가 교회 체제’는 교회에 제도적 안정과 사회적 영향력을 주었지만, 동시에 신앙의 본질을 흐리는 깊은 타협을 낳았다.

제3장에서는 바로 이 타협의 역사를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국가의 보호라는 미명 아래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두 영역의 원리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추적할 것이다. 성경의 원리는 분명했으나 교회가 그 원리를 지키는 데에는 긴 세월과 많은 희생이 필요했다. 다음 장은 그 비극적인 교훈을 되짚어 보는 여정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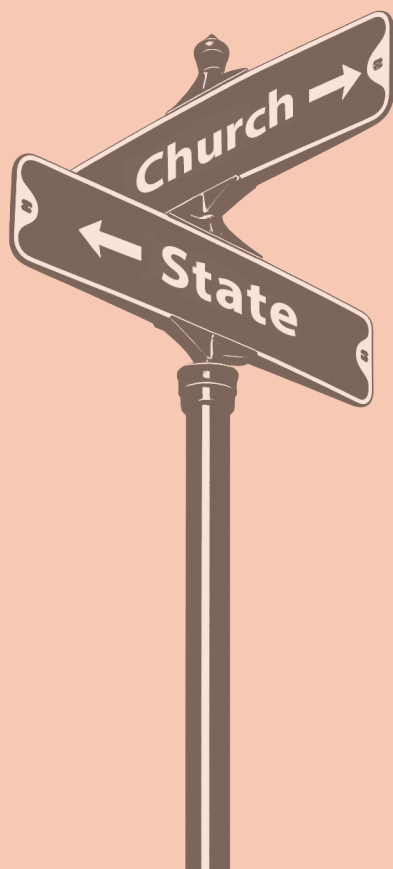
정교분리의 진짜 의미



2

정교분리 확립 역사

한국 교회는 종교 개혁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교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 교회 체제의 잔재, 국가 권력에 기대려는 유혹,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구조 역시 함께 물려받았다.
이 불완전한 유산을 넘어설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답습할 것인가?





국가 교회 천 년의 비극

(AD 313-1564)

앞 장에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두 영역의 원리를 살펴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카이사르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분명히 구분하셨고, 신약 교회는 칼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공동체로 세워졌다. 초대 교회는 약 300년 동안 국가의 보호 없이, 오히려 국가의 박해 속에서 복음의 능력만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나갔다.

그러나 313년을 전환점으로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다. 교회가 국가 권력과 결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회는 국가의 보호와 특권을 누렸지만, 그 대가로 점차 영적 순수성을 잃고 세속 권력과 얽힌 제도로 변질되었다. 이 장은 그 긴 역사적 과정을 추적한다. 이 역사를 이해해야만 제4장에서 다룰 재침례교의 등장이 왜 그토록 급진적으로 보였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혹독한 박해를 받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 1,000년의 역사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회와 국가가 결합할 때 (정교유착), 교회는 반드시 본질을 위협받는다. 이 교훈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이 시기는 한국 교회와 결코 무관한 시기가 아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겪는 여러 문제들—대형 교단의 이단 정죄, 교회의 정치권력 추구, 국가의 종교단체 해산 시도—의 구조적 뿌리가 바로 이 역사 속에 있기 때문이다. 중세 교회가 국가의 칼을 빌려 이단을 처벌한 사실과, 오늘날 일부 교단이 국가의 법적 권한을 통해 소수 종교를 제재하려는 모습 사이에는 분명한 유사성이 존재한다. 루터나 칼빈 등 종교 개혁자들이 교황의 절대 권력에서 벗어나면서도 각자의 국가 교회를 세운 것과, 오늘날 일부 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타 교회의 자유에는 인색한 모습 사이에도 동일한 긴장이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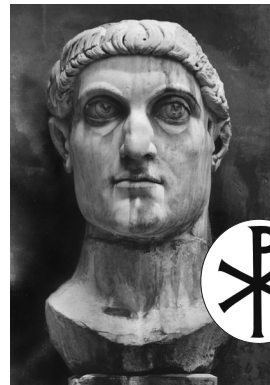
역사를 알면 현재가 보인다. 이 장에서 다루는 중세 역사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거울이 되기를 바란다.

1. 밀라노 칙령과 기독교 공인 - 교회, 권력을 만나다

콘스탄티누스의 등장

AD 312년 10월 28일,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콘스탄티누스(Constantine the Great, 272?-337)는 경쟁자 막센티우스(Maxentius, 278?-312)를 물리치고 서방 로마의 유일한 황제가 되었다. 전승에 따르면, 전투 전날 밤 그는 하늘에서 십자가 표지와 함께 “이 표지로 정복하라.”(In Hoc Signo Vinces.)라는 문구를 보았다고 한다. 그는 군사들의 방패에 그리스도의 상징인 ‘카이로’(Chi-Rho) 문양을 새기고 전투에 나아가 승리했다. 이 사건은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결정적 전환점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가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그는 침례를 죽기 직전까지 미루었고, 아들 크리스푸스와 아내 파우스타를 처형했으며, 태양신 숭배의 상징을 동전에 계속 새겼다. 그렇다면 그가 기독교를 공인한 동기는 깊은 신앙적 확신이었는가, 아니



콘스탄티누스와 카이로 문양

면 제국 통합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는가?

이 문제를 두고 역사가들의 견해는 갈린다. 전통적인 기독교 역사가들은 유세비우스(Eusebius, 260-339)의 기록을 따라, 콘스탄티누스가 전투 전날 밤 십자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다고 본다. 반면 비판적 역사학자들은 그의 회심을 정치적 판단으로 해석한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은 약 10%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조직적이며 결속력이 강하고 헌신적이었다. 분열된 제국을 통합하려는 황제에게 이 집단을 포섭하는 행위는 매우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진실이 어디에 있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후, 단지 황제가 변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 자체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황제를 얻은 동시에, 황제도 교회를 자신의 통치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의 동기가 무엇이었던 결과는 명확했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제국 통합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해서 교리 논쟁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불신자 황제가 공의회를 소집하고, 논쟁의 장을 열며, 결정을 지지하고 집행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는 이후 천 년 이상 지속될 국가의 교회 간섭의 출발점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교회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는 국가의 보호 없이, 오히려 국가의 박해 속에서 성장했다.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재산을 나누고(행 2:44-45),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았으며,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면 기꺼이 감옥에 갔다. 교회에 속한다는 사실은 곧 고난을 각오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비교적 순수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네로(AD 64), 도미티안(AD 81-96), 테키우스(AD 250-251), 디오클레티안(AD 303-311)의 박해를 거치면서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했다. 터툴리안의 말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었다. 박해는 교회를 약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교회의 정체성을 더 선명하게 했다.

바로 이 교회 위에 콘스탄티누스가 보호자로 등장했다. 300년 동안 박해와 순교의 불 속에서 정련된 공동체가 갑자기 황제의 보호와 특권을 받게 되었다. 이는 복이였는가, 아니면 비극의 시작이었는가? 단기적으로는 분명 복처럼 보였다. 더 이상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아도 되었고, 지하 묘지(카타콤)에서 몰래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긴장이 시작되었다. 교회의 외적 평화가 내적 순수성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콘스탄티누스 이후 교회에 일어난 변화는 급격했다. 니케아 공의회는 아리우스 논쟁¹을 정리하는 중요한 신학적 성과를 남겼지만, 동시에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불신자 황제가 공의회를 소집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결정을 집행하도록 보장했기 때문이다. 교리 문제를 세속 권력이 해결해 준 경험은 달콤했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교회가 이후 교리 분쟁이 있을 때마다 국가의 힘에 의존하는 관성을 낳았다.

또한 콘스탄티누스는 교회에 사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주교가 민사 분쟁을 재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이른바 ‘에피스코팔리스 아우디엔티아’(episcopalis audientia)가 그것이다. 이는 교회가 단순한 영적 공동체를 넘어 사회적·법적 권위를 행사하는 기관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교는 더 이상 영적 지도자에 머물지 않고 세속 권력을 행사하는 공적 인물이 되었다.

이 순간부터 교회와 국가의 경계는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다. 300년간 칼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공동체가 이제는 황제의 보호 아래에서 새로운 유혹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국가 교회 체제의 출발점이었다.

밀라노 칙령(AD 313) – 복인가, 비극의 시작인가

AD 313년 2월, 콘스탄티누스와 동방의 황제 리키니우스(Licinius, 265?–

1. 아리우스 논쟁(Arian Controversy)은 4세기 초 알렉산드리아의 장로 아리우스(Arius)가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아닌, 창조물로 주장하면서 시작된 기독교적 논쟁이다. 이 논쟁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성자의 동일 본질(Homoousios)을 선포하며 일단락되었으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제국의 통합을 위해 교회의 교리 문제에 직접 개입하고 공의회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정교유착과 국가의 종교 간섭이 시작된 결정적 사건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325, 재위 308-324)는 밀라노에서 합의하고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다. 이른바 밀라노 칙령(Edict of Milan)이다. 이 칙령은 제국 내 모든 종교에 대한 관용을 선언하고,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했다.

300년에 걸친 박해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자 교회는 환호했다.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Eusebius of Caesarea, 260?-339)는 콘스탄티누스를 ‘새로운 모세’라 부르며 찬양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자의 먹이가 되지 않아도 되었고, 지하 묘지(카타콤)에서 숨어 예배드릴 필요도 없었다. 의견상 이는 분명한 복이었다.

밀라노 칙령의 문구 자체는 결함이 없어 보인다. 칙령은 특정 종교에만 특혜를 준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한 관용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원문에는 “기독교인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원하는 종교를 자유롭게 따를 권리를 부여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표현만 보면 오늘날의 종교 자유 선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밀라노 칙령은 황제가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산물이다. 반면, 예컨대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는 국가가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선언한다. 전자는 통치자가 베푸는 은혜이고, 후자는 인간이 본래 가지는 천부적 권리이다. 은혜는 준 사람이 거두어 갈 수 있지만, 권리는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 실제로 밀라노 칙령이 선포한 종교의 자유는 불과 수십 년 후 테오도시우스(Theodosius I, 347-395, 재위 379-395)에 의해 사실상 무너지고,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면서 다른 종교에 대한 억압으로 변질되었다. 황제가 베푸는 자유를 황제가 다시 거두어 간 셈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갔다. 콘스탄티누스는 단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데 머물지 않고, 점차 기독교에 특권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관용은 편애로, 자유는 특권으로 변질되었다. 교회는 더 이상 단순히 보호받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 제국 질서 안에서 우대받는 집단이 되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은 위협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교회사학자 필립 샤프(Philip Schaff, 1819-1893)는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교 공인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그것은 교회에 외적 평화를 가져다주었지만, 내적 순수성을 약화시켰다. 박해의 시대에는 교회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신앙의 증거였다.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교회의 일원이 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국가의 보호와 특권이 주어지자, 신앙이 아니라 출세와 이익을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교회 안에 세속적 동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I, § 14.)

당시 교부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티누스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기독교의 황제 시대’를 찬양했다. 그의 저서 「콘스탄티누스의 생애」(*Life of Constantine*)는 사실상 황제에 대한 변증이자 찬가에 가깝다. 그는 제국과 교회의 결합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다.

반면 다른 흐름도 존재했다. 광야로 들어간 수도승들은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침묵의 저항이었다. 이집트의 안토니우스(Anthony of Egypt, 251-356)를 대표로 하는 사막의 교부들은 세상과 타협한 교회 구조를 떠나 금욕과 기도의 삶을 선택했다. 수도원 운동은 단순한 영적 열정의 표현을 넘어, 국가와 결합한 교회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교회가 제국의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진지한 신앙인들은 오히려 변두리와 사막으로 물러났다.²

여기에 국가 교회 체제의 역설이 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얻을수록 교회 안에서 순수한 영성은 약화한다. 외적 영향력은 커지지만, 내적 긴장은 사라진다. 밀라노 칙령은 박해의 종식을 의미하는 동시에 교회가 새로운 시험대에 오

2. 여기에서 사막 교부들과 초기 수도원 운동을 언급하는 목적은 그들의 금욕주의나 관상 기도, 신비 체험 등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특히 이들의 관상 기도와 금욕 수행은 그리스 철학이나 이교적 금욕 전통과 유사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신약 교회의 표준적 신앙 형태와 동일시하거나 수용해서는 안 된다.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단지 콘스탄티누스 이후 교회가 세속 권력과 결합하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제도 교회를 떠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교회 체제가 내부 긴장을 야기했음을 보여 주는 한 증거로 제시하는 바이다.

르는 순간이었다. 이후 역사는 이 시험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교회의 세속화 - 순교의 피가 권력의 금으로 바뀐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에 막대한 특권을 부여했다.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하고 각종 공적 의무를 면해 주었다. 교회에 유산을 남기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했으며, 로마의 바실리카(원래는 법정과 상거래에 사용되던 공공건물)를 교회에 하사했다. 더 나아가 성직자들에게 재판권까지 부여했다. 그 결과 교회는 급속히 부유해졌고 동시에 세속적 권력까지 갖추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의 성격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성직이 더 이상 고난을 감수하는 영적 소명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매력적인 자리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영적 부르심이 아니라 출세와 안정을 목적으로 성직에 나서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교회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했다.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는 권력과 부의 토대 위에 앉게 된 셈이다. 300년 박해 속에서 지켜 온 복음의 긴장이 불과 수십 년 사이에 느슨해졌다.

시간이 흐르며 세속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시모니(simony), 즉 성직 매매가 만연했다. 주교직과 대수도원장직이 돈으로 거래되었고, 부유한 가문이 자녀를 성직에 앉혀 그 수입을 가문의 재산처럼 활용했다. 일부 교황은 노골적으로 권력과 가문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 교황 알렉산데르 6세(Alexander VI, 1431-1503, 재임 1492-1503)는 보르자 가문 출신으로, 정치적 음모와 도덕적 타락으로 악명을 떨쳤다. 그의 아들 체사레 보르자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The Prince*)에 영향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국가 교회 체제의 장기적인 산물이다. 교회가 권력과 결합하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군주론」 초판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마침내 그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된다.

세속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 교회 건축의 변화이다. 초대 교회는 가정집에서 모였다(롬 16:5; 골 4:15). 모임은 단순했고 공동체 중심이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이후 교회는 로마의 바실리카에서 모이기 시작했다. 원래 재판과 상거래에 사용되던 거대한 공공건물이 예배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건물은 점점 더 크고 화려해졌다. 성직자의 의복도 변했다. 초대 교회의 장로들은 일반 시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옷을 입었으나, 이후 성직자들은 로마 관리의 복장을 본뜬 화려한 예복을 착용했다. 외형의 변화는 단순한 형식을 넘어 교회의 정체성까지 서서히 바꾸어 놓았다.

이 과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가 교회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면 교회는 국가에 의존하게 된다. 국가에 의존하면 교회는 국가의 뜻을 공개적으로 거스르기 어려워진다. 결국 교회는 대언자적 기능, 즉 세상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명을 상실하게 된다. 이것이 국가 교회의 악순환이다.

이 악순환은 단지 중세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정치권력과 지나치게 밀착할 때, 동일한 현상이 반복된다. 권력과 가까워질수록 비판의 목소리는 약해지고, 보호를 받는 대가로 자유를 잃는다. 4세기에 시작된 이 구조적 긴장은 시대와 장소를 바꾸어 계속 반복되어 왔다. 교회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순간, 영적 힘은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교훈은 역사가 증명하는 일관된 진실이다.

테오도시우스 칙령 (AD 380) – 기독교가 국교가 되다

AD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Theodosius I, 재위 379-395)는 「쿤크토스 포플로스」(Cunctos Populos) 칙령³을 발표해서 니케아 정통 기독교를 로마

3. '모든 백성'이라는 뜻이며 '데살로니가 칙령'이라는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칙령은 니케아 신경의 정통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유일한 국교로 선언하여 모든 백성이 이 신앙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이는 기독교가 과거의 박해를 딛고 국가 권력과 결합하여 공식적인 종교 체계를 갖추게 된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이다. 또한 이 법령을 계기로 교회와 국가가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훗날 유럽의 정치 지형과 기독교 문명이 형성되는 핵심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제국의 ‘유일한 합법 종교’, 즉 국교로 선포했다. 이는 단순한 종교 관용의 확대를 넘어 제국의 종교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조치였다. 밀라노 칙령이 모든 종교의 자유를 선언했다면, 테오도시우스의 칙령은 특정 신앙만을 합법으로 규정하며 나머지를 배제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도 가혹했다. 이교도 신전은 폐쇄되었고 전통 제의(祭儀)는 금지되었다. 니케아 신조를 따르지 않는 기독교 분파들 또한 이단으로 규정되어 탄압받기 시작했다.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는 행위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박해받던 종교가 박해하는 종교로 탈바꿈한 것이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면서도 양심의 자유를 지켰던 순교자들의 후손이, 역설적이게도 타인의 양심을 억압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구체적인 사건들은 이 전환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여실히 증명한다. 391년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고대 세계의 문화적 상징이었던 세라피움(Serapeum) 신전이 기독교 군중에 의해 파괴되었다. 415년에는 같은 도시에서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히파티아(Hypatia)가 기독교 폭도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했다. 그녀는 이교도라는 이유로 정치적 갈등의 희생양이 되었다. 529년에는 유스티니아누스 1세(Justinian I, 482?-565, 재위 527-565)가 아테네의 아카데미아를 폐쇄했다. 플라톤이 기원전 387년에 세운 이 학교는 서양 철학의 중심지로 900년 넘게 명맥을 이어왔으나, ‘이교적’이라는 낙인 아래 문을 닫아야 했다. 이것이 ‘기독교 국가’라는 이상이 현실 속에서 드러낸 민낯이었다.

이 시기부터 ‘국가 교회 체제’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국가 교회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해당 종교의 신자가 되고, 세금으로 교회를 지원하며, 다른 종교를 믿으면 처벌받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교회와 국가가 하나의 거대한 체제로 결합한 것이다. 이 구조는 이후 1,400년 넘게 서구 세계를 지배했으며, 훗날 이 견고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처절한 신학적·역사적 투쟁이 전개되어야 했다.

국가 교회 체제가 초래한 구체적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아 세례가 광범위하게 제도화되었다. 제국의 모든 시민이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주는 관행이 보편화되었다. 이

는 개인의 자발적인 믿음 고백에 기초한 신약적 침례의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 되는 변화였다.

둘째, 교회 출석이 사실상 의무가 되었다. 자발적 예배가 제도적 강제로 바뀌 었다.

셋째, 교회세(십일조)가 국가 세금 체계와 결합했다. 헌금의 자발성은 약화 되었고, 그 자리에 행정적 강제력이 개입했다.

넷째, 성직자가 국가 공무원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임명과 보수가 국가 권력 과 연결되면서 성직자의 충성 대상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권력 구조로 이동 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의 ‘자발성’이 국가의 ‘강제’로 대체되었음을 의미한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기준이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국가 체제에 의해 결정되 는 구조, 이것이 국가 교회 체제의 핵심 논리이다.

이 논리는 시대를 넘어 반복된다. 국가가 종교의 존폐를 결정하거나 특정 신 앙을 제도적으로 우대 혹은 배제하는 순간, 국가 교회적 사고는 다시 고개를 든다. 문제의 본질은 특정 종교의 종류가 아니라 ‘국가가 양심의 영역을 통제 하려 드는 구조’ 자체에 있다.

오늘날의 상황을 중세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치 구조와 시 대 정신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의 보호와 물질적 풍요가 교회의 영 적 긴장을 서서히 갉아먹는다는 원리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 교회가 세상의 힘에 기대어 설 때, 겉으로는 더 거대하고 강력해 보일지 모르나 내면의 생명력은 점차 고갈되기 마련이다. 4세기에 시작된 이 구조적 모순은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우리 곁에 나타난다.

이 관점을 오늘날 한국 교회에 비추어 보면 뼈아픈 유사점들이 보인다. 유아 세례는 대부분의 교단에서 보편적 관행이 되었고(침례교 제외), 교회 건물은 날로 거대하고 화려해진다. 대형 교회 목회자는 때로 기업 최고경영자(CEO) 와 같은 막강한 영향력과 재정권을 행사한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의 자발적 헌신이 조직적 동원과 구조화된 시스템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물론 콘스탄티 누스 시대와 오늘날의 한국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국가적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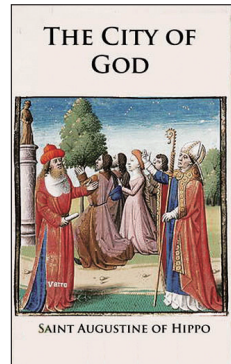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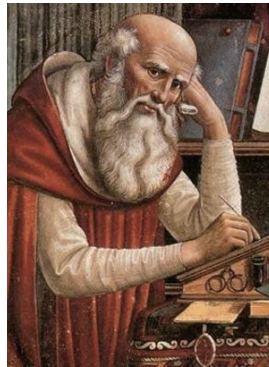
사회적 영향력, 물질적 풍요가 교회의 영적 본질을 잠식할 수 있다는 원리만큼은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하게 작동한다. 역사 속에서 반복된 이 경고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다른 이름으로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2. 어거스틴과 ‘강권하여 데려오라’ - 국가 교회의 신학적 토대

어거스틴의 선택, 천 년의 박해를 정당화하다

국가 교회 체제가 성립되자, 이 체제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할 사상적 토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히포의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 AD 354-430)이었다. 어거스틴은 서방 기독교계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로 평가되며, 그의 사상은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양측 모두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의 은혜론과 예정론은 훗날 루터와 칼빈의 종교 개혁 신학에 결정적인 토대를 제공했다.

그러나 바로 그 어거스틴이 국가가 무력을 사용해서 이단을 강제로 교회에 복귀시키는 행위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가 도나투스파와의 논쟁 속에서 발전시킨 ‘강제적 교정’(coercive correction) 이론은



어거스틴과 그의 대표 저서 「하나님의 도시」

중세 교회의 이단 박해를 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둥이 되었다.

도나투스파는 북아프리카의 기독교 분파로서, 로마 황제들의 박해 시대에 배교한 성직자가 집전한 성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처음에 어거스틴은 이들을 설득을 통해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하려 했다. 그러나 논쟁이 장기화되고 분열이 지속되자, 그는 점차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교회 역사에서 가장 운명적인 결정 중 하나였다.

도나투스파 논쟁의 배경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AD 303-

313년 디오클레티안 박해 기간 동안 많은 성직자들이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성경 사본을 로마 관리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래서 이들은 ‘넘겨준 자들’(traditores)이라 불렸다. 박해가 끝난 이후 도나투스파는 이 배교한 성직자들이 집전한 성례, 곧 세례와 성찬 등 성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교리 분쟁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성에 대한 진지한 신학적 질문이었다.

흥미롭게도 도나투스파의 관점은 후대 재침례교인들의 입장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교회는 순수한 신자들의 공동체여야 하며, 세속 권력의 보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점에서 어거스틴과 도나투스파의 충돌은 단순한 교리 논쟁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두고 벌인 근본적인 대립이었다. 도나투스파를 상대로 국가의 강제력을 요청한 어거스틴의 선택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되었다.

어거스틴의 이 결정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는 그 이후의 교회 역사가 분명히 입증한다. 어거스틴 이전에도 국가가 이단을 박해하는 사례는 존재했다. 그러나 그것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정당화한 인물은 어거스틴이 처음이었다. 어거스틴 이전에는 “국가가 이단을 박해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열려 있었다. 그러나 어거스틴 이후에는 그 질문이 사실상 닫혀 버렸다. 서방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이를 정당하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그의 대답은 이후 천 년 이상 누구도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정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강권하여 데려오라’ – 가장 치명적인 왜곡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주인이 종에게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compel them to come in)라고 명령한 내용을, 어거스틴은 국가가 이단자를 교회로 강제 복귀시키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이 비유의 본래 의미는 복음 전도의 긴급성과 열심을 강조하는 데 있었지, 국가 권력을 이용한 강제 개종을 허용하는 데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의 해석은 이후 천 년 이상 서양 기독교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어거스틴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자와 같고, 병든 사람이 치료를 거부할 때 강제로라도 치료하는 행위가 곧 사랑이라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이단에 빠진 사람을 국가의 힘을 사용해서라도 정통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논리는 겉으로는 자비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치명적인 전환을 의미했다. ‘사랑’이라는 명분 아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 해석은 중세 카톨릭교회가 천 년 이상 이단 박해를 정당화하는 신학적 토대가 되었다.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한 구절의 왜곡이 광범위한 강제 개종과 종교 재판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다. 로저 윌리엄스는 훗날 이 해석을 두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리게 한 오류 중 하나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재침례교인들과 침례교인들이 오랜 세월 신학적·실천적 투쟁을 이어 가야 했다.

로저 윌리엄스는 누가복음 14장 23절의 해석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그는 이 비유가 물리적 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긴급한 초청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강권하여’(compel)라는 표현은 무력을 통한 강제가 아니라, 간절한 권유와 설득, 그리고 진지한 호소를 뜻한다는 것이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하노라.”(we persuade men.)라고 말한 맥락과 같다. 윌리엄스는 또한 비유의 문맥 자체를 강조했다. 초청을 받은 자들이 거절하자 주인이 종을 보내어 ‘큰길과 산을 타리’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게 한 것은, 초청을 거부한 이스라엘 대신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장면을 상징하는 것이지, 국가가 무력으로 사람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라는 명령이 아니다. 한 구절의 왜곡이 천 년의 비극을 낳았다는 사실은, 성경 해석의 정확성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어거스틴의 이 오류는 오늘날에도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단으로부터 교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법적 개입을 요청하거나,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종교’라는 이유로 국가의 해산 조치를 촉구하는 태도는 구조적으로

동일한 사고방식 위에 서 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다. 교회가 종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강제력을 의지하는 행태이다. 한국의 대형 교단이 소수 종교 단체에 대한 정부의 법적 조치를 환영하는 태도 역시, 어거스틴이 도나투스파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을 정당화한 논리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이에 대해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1689년 「관용에 관한 서한」(*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에서 이 논리를 분명하게 반박했다. 로크는 국가의 칼은 신체와 재산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을 뿐,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도 없다고 선언했다. 사람을 강제로 교회 안으로 데려올 수는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믿음을 강제로 심을 수는 없다. 외적 순종은 강제할 수 있지만, 내적 신앙은 강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의 강제력은 종교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러한 통찰은 로저 윌리엄스가 그보다 약 50년 앞서 이미 주장한 바와 맥을 같이한다.

3. 중세 카톨릭교회 - 종교 재판소와 강제 개종의 시대

교황권의 확립과 절대 권력

서로마 제국이 AD 476년에 멸망한 이후, 로마 교회의 주교, 곧 교황은 서유럽에서 단순한 종교적 지도자를 넘어 점차 정치적 권위까지 장악해 나갔다. 제국의 행정 체계가 붕괴된 자리에서 교회 조직은 사실상 유일하게 유지된 전국적 구조였고, 그 중심에 있던 교황은 자연스럽게 종교적 영향력을 넘어 세속 영역에도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교황 레오 1세(Leo I, 400?-461, 재임 440-461)는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보편 교회 전체에 대한 최고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교회 내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교황권을 초국가적 권위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선언이었다. 이어 교황 그레고리 1세(Gregory I, 540?-604, 재임 590-604, 그레고리우스)는 교황청의 행정 능력을 강화하고 이탈리아 지역의 실제 통치에 관여함으로써, 교황의 세속적 권위를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교황의 세속 권력이 어디까지 확장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사례들

은 중세 후기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교황 인노첸트 3세(Innocent III, 1160?-1216, 재임 1198-1216, 인노첸티우스)는 중세 교황권의 절정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Vicarius Christi)라고 칭하며, 세속 군주들 위에 군림하는 위치를 자임했다. 그는 영국의 존 왕을 파문하고, 1208년에는 잉글랜드 전역에 성무정지령(interdict)⁴을 내려 교회를 사실상 ‘파업’ 상태로 만들었다. 결국 존 왕은 굴복해 잉글랜드와 아일랜드를 교황에게 봉토로 바치고, 자신을 교황의 봉신(vassal)으로 인정하며 충성을 맹세했다. 인노첸트 3세는 또한 독일 황제 오토 4세(Otto IV, 1175-1218, 재위 1209-1215)를 파문하고 프리드리히 2세(Frederick II, 1194-1250, 재위 1220-1250)를 지지해 황제로 세웠으며, 프랑스·아라곤·노르웨이 등의 왕들 문제에도 적극 개입했다. 그는 “교황은 해와 같고, 세속 군주는 달과 같다.”라는 비유로, 세속 권력이 교황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종속적 권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 교회 체제의 논리적 귀결이었다. 교회가 국가 위에 서는 구조가 명문화된 셈이다.

이 흐름은 교황 보니파스 8세의 교서 「우남 상탐」(Unam Sanctam, 1302)에서 극단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는 “모든 인간이 구원을 위해 로마 교황에게 복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선언했다. 이는 영적 권위뿐 아니라 세속 권위까지 교황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으로 이해되었다. 인노첸트 3세가 교황을 ‘해’에, 황제를 ‘달’에 비유해 세속 권력이 교회 권력에 종속된다고 말한 맥락과 일맥상통했다. 교황은 왕을 파문할 수 있었고, 한 나라 전체에 성무정지령을 선포할 수 있었으며, 십자군을 소집해 군사 행동에 관여할 수 있었다.

교황과 세속 군주 사이의 권력 투쟁은 중세 유럽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였다. 1077년 ‘카노사의 굴욕’ 사건은 그 상징적 장면이다. 성직 서임권 논쟁에서 교황 그레고리 7세(Gregory VII, 1020?-1085, 재임 1073-1085)와

4. 중세 카톨릭에서 성무정지령(interdict)은 개인이나 한 지역 전체에 대해 공적 예배와 성례(혼인·장례 등)를 전면 중단시키는 교회 징계였다. 교황이 왕과 갈등할 때 나라 전체에 성무정지령을 내리면, 실질적으로 그 통치자를 압박하는 강력한 정치·종교적 무기가 되었다.

충돌하던 신성로마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Henry IV, 1050-1106, 재위 1084-1105)는 파문을 당한 뒤, 이를 해제받기 위해 겨울 알프스를 넘어 카노사 성을 찾아갔다. 그는 사흘 동안 맨발로 눈 속에 서서 교황의 용서를 구한 끝에 파문을 해제받았다. 한 제국의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사건은, 교황권이 세속 권력 위에 군림한 극적인 사례로 기록되었다.



카노사의 굴욕

그러나 이러한 권력 구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프랑스의 필리프 4세(Philip IV of France, 1268-1314, 재위 1285-1314)는 1303년 ‘아나니 사건’에서 교황 보니파스 8세를 사실상 체포·모욕했고, 그 여파로 교황청은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겨져 약 70년간 이른바 ‘바빌론 유수’(1309-1377)를 겪게 되었다. 이 시기 교황은 실질적으로 프랑스 왕권의 영향 아래 놓였다. 교황청이 다시 로마로 돌아온 이후에는 두 명, 심지어 세 명의 교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대분열’(Great Schism, 1378-1417)이 발생했다. 로마·아비뇽·피사 계열의 교황·대립 교황⁵들이 서로 정통을 주장하며 교회를 갈라놓았고, 이는 결국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교황을 한 명만 남기는 방식으로 수습되었다. 교회가 세속 권력과 깊이 얽힐수록, 그 내부는 더욱 분열과 혼란에 빠져들었다.

이 모든 전개는 예수 그리스도도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요 18:36)라는 선언과 정반대의 방향이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권력 구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세속적 왕국의 논리를 받아들였고, 때로는 그 위에 군림하려 했다. 교황의 삼중관⁶은 교황이 교회와 세속 세계, 그리고 영적 영역 전반에 대한 삼중 권위를 가진다는 상징으로 이해되었다.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두 영역

5. antipope. 정통 교황이 존재하는데도 정치적 분열로 인해 경쟁적으로 교황직을 주장한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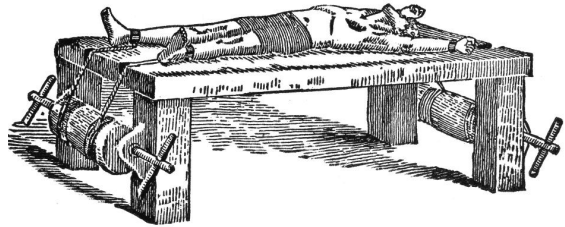
6. 삼중관(tiara, 또는 triregnum)은 중세 이래 교황이 착용한 세 겹의 관으로, 교황이 교회와 세속 세계를 통치하는 최고 권위를 지녔음을 상징한다.

의 구분을 사실상 뒤집어 놓은 것이었다. 영적 공동체로 부름받은 교회가 세속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었을 때, 그 긴장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갈등과 비극으로 이어졌다.

종교 재판소 - 교회가 칼을 휘두르다

1184년 교황 루키우스 3세(Lucius III, 1097?-1185, 재임 1181-1185)가 이단 심문을 체계화하는 칙서를 반포하면서, 종교 재판소(Inquisition)의 시대가 열렸다. 1231년에는 교황 그레고리 9세(Gregory IX, 1145?-1241, 재임 1227-1241)가 도미니코회에 이단 심문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종교 재판소를 서방 교회 전체에 걸친 제도적 장치로 정착시켰다.

종교 재판소는 이단 혐의자가 고발되면 체포하여 심문하였으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광범위하게 자행하였다. 1252년 교황



사방으로 몸을 찢는 악명 높은 고문 기구 래크(The Rack)

인노첸트 4세(Innocent IV, 1195?-1254, 재임 1243-1254)는 칙서 「아드 엑스티르판다」(Ad extirpanda)를 통해, 이단 심문 과정에서 일정 범위의 고문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교회가 직접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단자는 세속 당국에 넘겨졌고 실제 형 집행은 세속 권력이 맡았다. 유죄가 확정된 자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장기간 투옥되거나 화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외형상의 분리일 뿐이었다. 교회가 판결하고 국가가 집행하는, 교회와 국가의 공동 책임 구조였다.

스페인 종교 재판소(1478-1834)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악명 높았다. 유대인, 무슬림, 개신교인뿐 아니라, 정통 교리에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카톨릭 신자들까지 심문의 대상이 되었다. 약 350여 년 동안 약 15만 건 안팎의 사건이 종교 재판소에 회부되었고, 그 가운데 3,000-5,000명 정도가 실제로 화형에 처해진 것으로 학계는 추정한다. 화형 외에도 재산 몰수, 장기 투옥, 꺾리선 노

역, 공개 참회 등의 형벌을 광범위하게 부과하였다. 최초의 대심문관 토마스 데 토르케마다(Tomás de Torquemada, 1420-1498, 재임 1483-1498)는 재임 기간 동안 수천 건의 유죄 판결과 수많은 화형을 주도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1492년 알함브라 칙령에 따라 약 20만 명의 유대인이 스페인에서 추방되었고, 개종을 선택하지 않은 이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강제 이주를 당했다. 이것이 '기독교 국가'가 '이단'과 '이교도'에게 행한 일이었다. 국가가 종교를 판단하고 처벌하는 권한을 갖게 되면, 그 권한이 역사 속에서 항상 확대되어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어거스틴이 누가복음 14장 23절의 “강권하여 데려오라.”(compelle intrare)를 교회 징계의 근거로 확장 해석한 전통 위에 세워진 산물이었다. 교회가 사람들의 양심을 국가의 칼로 강제하는 체제, 성경의 이름으로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체제가 완성된 것이다. 이 체제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이유로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살해되었다. 이는 국가 교회 체제가 낳은 비극적인 열매였다.

종교 재판소만이 아니었다. 면죄부(indulgence)는 국가 교회 체제의 또 다른 병폐였다. 면죄부는 원래 진정한 참회와 고해 성사를 전제로 교회가 부과한 일시적 형벌을 경감·사면해 주는 제도였으나, 중세 후기로 갈수록 돈으로 죄의 형벌을 사면받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교황 레오 10세(Leo X, 1475-1521, 재임 1513-1521)는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면죄부 판매를 승인했다. 도미니코회 수도사 요한 테첼(Johann Tetzel)은 “동전이 현금함에 떨어져 소리를 내는 순간, 연옥의 영혼이 그곳을 떠나 올라간다.”라는 식의 선전 문구로 면죄부를 팔았고, 이는 루터가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면죄부 남용은 국가 교회 체제의 구조적 부패를 상징한다. 교회가 세속 권력과 결합하고 거대한 조직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성스러운 가치까지 돈으로 사고파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십자군 전쟁(1096-1291) 역시 국가 교회 체제의 산물이었다. 교황 우르바노 2세(Urban II, 1035?-1099, 재임 1088-1099)는 1095년 클레르몽 공의회에

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Deus vult!)라는 구호와 함께 제1차 십자군을 호소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지를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수십만 명이 전쟁과 전염병, 학살로 죽었다. 1204년 제4차 십자군은 이슬람이 아니라 같은 기독교 계열인 동방 정교회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공격·점령하고 약탈했다.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알비 십자군(1209-1229)은 그 비극을 한층 더 노골적으로 보여 준다. 교황 인노센트 3세는 남부 프랑스의 카타리파(알비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십자군을 파견해 그들을 전멸시키려 했다. 베지에(Béziers) 성이 함락되었을 때, 십자군 지휘관이 “이단과 정통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교황 특사 아르노 아모리는 “모두 죽여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아실 것이다.”(Caedite eos. Novit enim Dominus qui sunt eius.)라고 말했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가 저지른 일이었다.

이 비극들은 모두 “올바른 종교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에서 벌어졌다. 교황은 십자군 참가자들에게 죄들의 사면을 약속했다. “이단을 토벌하면 천국에 간다.”라는 식의 신학이 동원되었다. 종교 재판에서 이단자를 화형에 처할 때에도, 그것을 ‘자비로운 행위’라고 부르며 ‘아우토 다 페’(auto-da-fé, 신앙의 행위)라는 미명으로 사람을 산 채로 불태웠다. 이 잔혹한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주기 때문이다.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개입할 때, 아무리 좋은 의도를 내세운다 해도 결과는 거의 예외 없이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왔다.

어둠 속의 등불 - 왈도파, 위클리프, 후스

그러나 이 천년의 암흑 속에서도 진리의 불꽃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등불을 준비하셨다.

피터 왈도(Peter Waldo, 1140?-1218?)는 12세기 프랑스 리옹의 부유한 상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버리고 성경을 자국어인 프랑스어로 번역해 백성에게 전하

기 시작했다. 왈도파(Waldensians)는 교황의 권위를 거부하고 성경만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그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어 수백 년간 알프스 산골에서 숨어 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았고, 종교 개혁 시대에 개혁파 교회와 합류했다.

왈도파의 역사는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왈도파는 교황의 권위를 거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국가 권력의 보호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웠다. 그들은 알프스 산골에 숨어서 간신히 생존했다. 1655년에는 사보이 공작의 군대에 의해 ‘피에몬테 학살’이 자행되어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의 시인 존 밀턴(John Milton, 1608-1674)은 「최근의 피에몬테 학살에 대하여」(*On the Late Massacre in Piedmont*)라는 시를 써서 항의했다. 이는 국가 교회 체제 아래에서 소수 종교가 어떤 운명을 겪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비극적 사례이다.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0?-1384)는 14세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로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그는 교황의 세속적 권위를 부정하고, 교회는 성경에 의해서만 다스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추종자들은 롤라드파(Lollards)라 불리며 박해를 받았다. 위클리프 자신은 자연사했으나, 그가 죽은 지 44년이 지난 1428년에 콘스탄츠 공의회 명령으로 그의 유해가 파헤쳐져 불태워지고 강에 뿌려졌다. 죽은 자의 뼈까지 파내어 불태울 만큼 교황청은 그를 두려워했다.

롤라드들은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성경을 들고 영국 전역을 다니며 설교했다. 이들은 성체 변화설(화체설), 교황의 권위, 수도원 제도, 면죄부 등 카톨릭의 핵심 교리에 도전했다. 1401년 「이단 소각법」(*De Heretico Comburendo*)이 제정되어 롤라드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법에 따라 여러 롤라드가 화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롤라드 운동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지하로 들어가, 16세기 영국 종교 개혁의 토양이 되었다. 특히 이들의 전통은 영국 침례교의 탄생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성경의 권위에 의거해 기존 교회 체제에 도전하는 전통이 위클리프에서 롤라드로, 롤라드에서 영국 청교도로, 그리고 청교도 내의 분리주의자들에서 침례교로 이어졌다.

얀 후스(Jan Hus, 1372?-1415)는 체코 프라하 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위클리프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교회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고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다. 그는 1414년에 열린 콘스탄츠 공의회에 안전 통행증을 받고 참석했으나 배신을 당해 체포되었고, 1415년 7월 6일 이단으로 정죄되어 화형에 처해졌다. 그는 화형장에서 죽기 전, “오늘 너희가 거위(Hus는 체코어로 거위) 한 마리를 구워 먹지만, 백 년 후에 백조가 나타나리라.”라고 말했다. 그리고 102년 후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공표했다.

후스의 화형은 보헤미아에서 거대한 반란을 촉발했다. ‘후스파 전쟁’(1419-1434)이 벌어진 것이다. 후스의 추종자들은 교황과 신성로마제국에 맞서 15년 동안 싸웠다. 교황은 다섯 차례의 십자군을 보헤미아에 보냈으나, 후스파는 이를 모두 격퇴했다. 후스파의 군사적 지도자 얀 지슈카(Jan Žižka, 1360?-1424)는 눈이 먼 상태에서도 전투를 지휘했다. 후스파는 결국 내부 분열로 약화되었지만, 이 운동은 100년 후 루터의 종교 개혁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다.

후스파의 역사가 정교분리와 관련해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국가의 칼로 이단을 처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콘스탄츠 공의회가 후스를 화형시킨 결정은 후스의 가르침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전쟁과 유혈을 초래했다. 칼로 신학적 논쟁을 해결하려 하면 결과는 항상 더 큰 칼의 사용으로 귀결된다. 이들은 종교 개혁의 선구자들이었다.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고, 교황의 절대 권력에 도전하며,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구도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지는 못했다. 아직 시대가 성숙하지 않은 탓이었다. 그 과제는 1525년 이후의 재침례교인들과 침례교인들에게 맡겨졌다.

4. 종교 개혁의 위대한 성취와 명백한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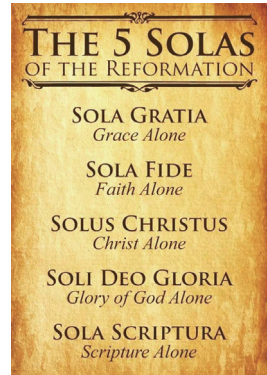
위대한 성취 - 다섯 솔라의 회복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논제를 게시하면서 종교 개혁의 불길이가 타올랐다. 루터는 면죄부 판매의 부당함을 비판하며 출발해, 점차 카톨릭교회의 근본적인 신학적 오류를 정면으로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마르틴 루터와 다섯 솔라



은혜(Sola Gratia),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 — 이 다섯 솔라(Five Solas)가 종교 개혁의 핵심 원리였다. 이 원리들은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넘어 성경을 최종 권위로 세우려는 선언이었고,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구원의 복음을 회복하려는 외침이었다.

루터에 이어 울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가 스위스 취리히에서,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이 제네바에서, 존 녹스(John Knox, 1514-1572)가 스코틀랜드에서 개혁을 이끌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지역과 정치적 상황 속에서 개혁을 추진했으나, 공통적으로 교황의 절대 권위를 거부하고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려 했다. 영국에서는 헨리 8세(Henry VIII, 1491-1547, 재위 1509-1547)의 이혼 문제로 시작된 종교적 변화가 결국 성공회(Church of England)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영국의 종교 개혁은 대륙의 개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헨리 8세는 아라곤의 캐서린과의 이혼을 교황이 허락하지 않자, 1534년 수장령(Act of Supremacy)을 통해 영국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했다. 이것은 신학적 각성의 결과라기보다 정치적 결별의 산물이었다. 교회의 머리가 교황에서 국왕으로 바뀌었을 뿐, 국가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노골적인 국가 교회가 된 셈이었다. 국왕이 곧 교회의 수장이라는 구조는, 교회가 국가 권력 아래에 종속되는 체제를 제도화한 것이었다.

이후 영국에서는 국교회에 속하지 않는 비국교도(Dissenters)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영국의 종교 개혁이 정교분리의 역사에서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영국 국교회의 탄생과 발전은, 훗날 등장하는 영국 침례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헨리 8세 이후 영국의 종교 정책은 군주에 따라 극적으로 변동했다. 헨리 8세는 카톨릭에서 분리하되 교리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부분을 유지했다. 에드워드 6세(Edward VI, 1537-1553, 재위 1547-1553)는 보다 급진적인 개신교 개혁을 추진했다. 메리 1세(Mary I, 1516-1558, 재위 1553-1558), 이른바 ‘피의 메리’(Bloody Mary)는 카톨릭을 복원하고 약 300명의 개신교인을 화형에 처했다.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 1533-1603, 재위 1558-1603)는 다시 개신교로 돌아갔으나, 카톨릭과 급진 개신교 양쪽을 모두 억압했다.

이 50년간의 격렬한 변동은 한 가지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군주가 종교를 결정하는 국가 교회 체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군주가 바뀔 때마다 나라 전체의 종교 정책이 뒤집혔다. 백성의 신앙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왕의 결단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구조적 부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의 성취는 실로 위대했다. 교황의 독점이 깨졌고, 면죄부의 기만이 폭로되었으며,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어 일반 성도의 손에 들어갔다. ‘오직 믿음’의 원리가 회복되어 은혜의 복음이 다시 선포되었다. 교회 역사에서 이보다 더 중대한 전환은 많지 않다.

그러나 종교 개혁의 위대한 성취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교 개혁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었으나, “교회란 무엇인가”와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에서는 여전히 중세적 구조를 상당 부분 유지했다.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도, 신자의 자발적 고백에 기초한 교회와 국가로부터 분리된 교회 구조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

이 미완의 과제를 이어받아 더욱 급진적으로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1525년 이후 등장하는 재침례교인들이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훗날 침례교가 태

어나게 된다. 종교 개혁은 거대한 문을 열었으나, 그 문을 끝까지 열어젖혀 정교분리의 원리를 명확히 세운 것은 다음 세대의 몫이었다.

명백한 한계 - 국가 교회를 유지하다

16세기 종교 개혁은 불완전했다. 개혁자들은 “무엇을 믿는가”(구원론)는 개혁했지만, “교회란 무엇인가”(교회론)와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정교분리)는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못했다. 가장 결정적인 한계는, 개혁자들이 국가 교회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데 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이 국가 교회 체제를 유지한 데에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 1524-1525년 독일 농민 전쟁이 발발했다. 농민들은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On the Freedom of a Christian*)에서 영감을 받아, 종교적 자유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자유까지 요구하며 봉기했다. 루터는 처음에는 양측의 화해를 시도했으나, 농민들의 폭력이 확대되자 태도를 바꾸었다. 그는 「살인질과 강도질을 일삼는 농민 떼에 대하여」(*Against the Murderous, Thieving Hordes of Peasants*)라는 글에서 제후들에게 농민을 진압할 것을 촉구했다. “찌르고, 때리고, 목을 졸라 죽여라.”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결국 약 10만 명의 농민이 학살되었다. 이 사건 이후 루터는 제후들의 보호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고, 교회의 운영을 제후에게 맡기는 체제가 고착되었다. 루터가 세속 권력에 의존한 것은 단순한 신학적 확신의 결과라기보다 정치적 현실 속에서 형성된 선택이기도 했다.

루터는 독일 제후들의 보호 아래 개혁을 진행했다. 루터파 교회는 각 제후국의 국가 교회가 되었다.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Peace of Augsburg*)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의 종교가 곧 그 땅의 종교이다.”(*cuius regio, eius religio.*)라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는 개인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루터파 제후의 영토에서는 루터교를, 카톨릭 제후의 영토에서는 카톨릭을 믿어야 했다. 그러나 만약 다른 신앙을 선택하려면 그 땅을 떠나야 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의 종교가 곧 그 땅의 종교이다.”라는 원칙은 100년

후 30년 전쟁(1618-1648)의 배경이 되었다. 유럽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인 30년 전쟁은 명목상 종교 전쟁이었다.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서로 칼을 휘둘렀다. 독일 인구의 약 3분의 1이 죽었다고 추정된다. 전쟁이 끝나고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Peace of Westphalia, 1648)은 칼빈파를 합법 종교 인정 대상에 추가했으나, 여전히 개인의 종교 선택의 자유는 보장하지 않았다. 재침례교인들과 침례교인들은 여전히 인정받지 못했다. 국가 교회 체제는 전쟁을 치르고도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유럽 정치 질서의 전환점이었으나, 종교의 자유를 개인의 권리로 선언한 것은 아니었다. 이 조약은 카톨릭, 루터교, 칼빈교를 합법적 종교로 인정하고, 소수 종교에 대한 일정한 관용을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관용’(toleration)을 베푸는 것일 뿐 ‘권리’(right)에 대한 인정은 아니었다. 군주가 자기 영토의 종교를 결정하되, 소수 종교를 일정 범위 안에서 ‘참아 주는’ 구조였다. 더욱이 침례교인이나 퀘이커 교도와 같은 급진 개신교는 이 관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용’에서 ‘권리’로의 전환, 즉 종교의 자유가 군주의 은혜가 아니라 개인의 천부적 권리로 인정되는 전환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것은 이후 세대의 투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과제였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사실상의 신정 통치를 시행했다. 그는 제네바 시 의회와 협력해 교회 규율을 국법처럼 집행했다. 예배 불참, 도박, 춤, 과도한 오락은 벌금이나 투옥의 대상이 되었다. 1553년 미카엘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 1511?-1553)가 삼위일체를 부인했다는 이유로 제네바에서 화형에 처해졌다. 칼빈도 세르베투스의 처형에 동의했다. 이는 구조적으로 카톨릭교회의 이단 처형과 다르



이 기념비는 1903년 스위스 제네바의 샹펠 지역에 제네바 시와 자유주의 개신교 인사들이 세운 것으로, 1553년 제네바에서 세르베투스가 화형당한 사건을 기억하며 후대 제네바 시민들이 그 일을 깊이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 기념비는 단순한 역사 표지가 아니라, 종교적 강압과 박해에 대해 후대 사람들이 느끼는 회개의 심정과 반성의 표시로 세워진 것이다.

지 않았으며, 개혁자 스스로가 이단을 처형한 사건이었다.

세르베투스 사건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르베투스는 스페인 출신의 의사이자 신학자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독자적 견해를 전개했다. 그는 전통적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단일성을 강조했다. 세르베투스는 칼빈과 서신을 교환했으나, 양자 사이의 신학적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1553년 세르베투스가 제네바를 경유하다가 체포되었고, 재판에 회부되어 화형에 처해졌다. 이 사건은 당시에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세바스찬 카스텔리오(Sebastian Castellio, 1515-1563)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일 뿐이다.”라고 반박하며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는 글을 발표했다. 그의 주장은 후대의 종교적 관용 사상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세르베투스 사건은 개신교 역시 국가의 칼을 사용해 신학적 논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음을 보여 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츠빙글리의 취리히에서는 더 직접적인 비극이 벌어졌다. 1525년 이후 재침례교인들이 신자 침례와 정교분리를 주장하자, 취리히 시 의회는 재침례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1527년 1월 5일, 펠릭스 만츠가 림마트 강에서 익사형에 처해졌다. 그는 개신교 당국에 의해 처형된 최초의 재침례교 순교자였다. 만츠의 마지막 말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였다고 전해진다. 츠빙글리도 이 처형을 지지했다.

이 모든 사건은 한 가지 공통점을 드러낸다. 종교 개혁은 교황의 권위를 무너뜨렸지만, 국가의 칼을 사용해 신학적 일치를 강제하는 정교유착 구조 자체는 근본적으로 해체하지 못했다. 카톨릭과 개신교는 서로 다른 교리를 주장했으나, 종교 문제를 국가 권력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공유했다. 종교 개혁은 위대한 신학적 회복이었으나, 신약 교회의 정교분리 원리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었다.

종교 개혁자들은 왜 재침례교인들을 박해했는가

이 질문은 정교분리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카톨릭의 박해에서 벗어나려던 개혁자들이 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들을 박해했는가? 종교의 자유를 위해 교황에 맞선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의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았는가?

답은 국가 교회 체제에 있다. 재침례교인들이 주장한 핵심은 신자 침례, 자발적 교회 회원제,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분리였다. 이는 단순한 교리적 차이가 아니라 국가 교회 체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다. 국가 교회 체제에서 유아 세례는 모든 시민을 자동으로 교회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는 장치였다.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행위는 곧 국가 교회 체제를 거부하는 의사 표시였고, 이는 곧 국가 질서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루터는 재침례교인들을 “수장시켜야 한다.”라고까지 말했다. 칼빈은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다. 츠빙글리의 취리히에서는 그들이 실제로 역사형에 처해졌다. 개혁자들은 카톨릭의 면죄부는 거부했지만, 카톨릭의 국가 교회 구조와 이단 박해 원칙 자체는 근본적으로 버리지 못했다. 이 점이 종교 개혁의 가장 비극적인 한계였다.

이 비극의 규모는 상당했다. 메노나이트 신자인 튀레만 판 브라흐트가 집필한 「순교자의 거울」(*Martyrs Mirror*, 1660)은 재침례교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1,100쪽이 넘는 방대한 저술이다. 이 책에 기록된 순교자는 수백 명에 이르며, 기록되지 않은 순교자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역사가들은 16세기에만 수천 명의 재침례교인이 처형되었다고 추산한다. 프로테스탄트 당국과 카톨릭 당국 모두 재침례교인들을 체포하여 심문하고 처형했다.

「순교자의 거울」에 기록된 사례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더크 윌렘스(Dirk Willems, 1530?-1569) 사건이다. 1569년 네덜란드에서 재침례교인이라는 이유로 체포된 윌렘스는 감옥에서 탈출해 얼어붙은 호수를 건너 도주했다. 그를 추적하던 간수도 얼음 위를 따라왔으나, 간수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다. 윌렘스는 이미 안전한 곳에 도달했으나, 뒤를 돌아보고 물에 빠진 간수를 보았다. 그는 다시 돌아가 그 간수를 구해주었다.

그러나 구조된 간수는 윌렘스를 체포했고, 윌렘스는 얼마 후 화형에 처해졌

다. 자신을 잡으러 온 자의 생명을 구해 준 결과로 다시 붙잡혀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이것이 재침례교인의 신앙이었다.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강제가 아니라 희생으로 믿음을 증거로 보인 삶이었다. 국가의 칼을 빌리지 않고 오직 복음의 힘으로 살고 죽은 사람들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재침례교인들의 혁명적 의미가 분명해진다. 그들은 종교 개혁자들이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한 결론, 즉, 국가 교회 체제 자체를 거부하고 완전한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양쪽 모두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재침례교인들이 왜 종교 개혁자들과 달리 정교분리를 주장할 수 있었는지를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 핵심은 교회론의 차이에 있었다. 루터, 칼빈, 츠빙글리는 유아 세례를 유지했다. 유아 세례가 시행되는 한, 한 지역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교회에 속하게 된다. 이는 모든 시민이 곧 교인임을 의미하며, 교회와 국가의 구성원이 동일해진다. 그 결과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재침례교인들은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의 침례’(believer’s baptism)를 주장했다. 오직 자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한 자만이 침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 교회는 자발적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교회의 구성원과 국가의 구성원은 일치하지 않는다. 교회는 국가와 구별되는 공동체가 된다. 바로 여기에서 정교분리의 원리가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이 연쇄적 원리는 분명하다.

종교 개혁자: 유아 세례 → 전체 시민의 교회 편입 → 교회와 국가의 동일화
재침례교인: 신자의 침례 → 자발적 교회 회원제 → 교회와 국가의 분리

유아 세례 거부는 단순한 의식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혁명적 선언이었다. 또한 그 선언은 곧 국가 교회 체제 전체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래서 재침례교인들은 단지 ‘다른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체제 전체를 뒤흔드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결론 - 누가 개혁을 완성할 것인가

우리는 AD 313년 밀라노 칙령부터 1564년 칼빈의 사망까지, 천 년이 넘는 역사를 압축해 살펴보았다. 이 긴 시간은 몇 가지 분명한 교훈을 남긴다.

첫째, 교회와 국가의 결합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재앙이었다. 교회는 세속 권력과 결합하면서 점차 타락했고, 시민은 양심의 자유를 빼앗겼다.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국가의 칼을 들어 다른 이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교회로 변했다. 영적 공동체가 정치권력의 도구가 되는 순간, 교회는 외적으로 강해 보여도 내적으로는 이미 약해져 있었다.

둘째, 종교 개혁은 위대했지만 불완전했다. 개혁자들은 “무엇을 믿는가”(구원론)라는 문제에서는 중세 교회의 오류를 바로잡았으나, “교회란 무엇인가”(교회론), 그리고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정교분리)라는 문제에서는 중세적 구조를 상당 부분 유지했다. 교황 대신 제후가, 시 의회가 교회의 방향을 좌우하는 구조로 바뀌었을 뿐, 국가 권력이 신앙의 경계를 정하는 체제는 근본적으로 해체되지 않았다. 양심의 자유라는 가장 깊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셋째,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프랑스의 왈도파와 영국의 존 위클리프, 체코의 얀 후스는 성경의 권위를 증언하며 후대를 위한 길을 닦았다. 그들의 불꽃은 루터에게 전해졌고, 루터의 외침은 더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어졌다. 역사는 단절이 아니라 계승이었다. 한 세대의 증언이 다음 세대의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넷째, 국가 교회 체제는 어떤 형태이든 교회를 세속화한다. 교황 중심이든, 제후 중심이든, 시 의회 중심이든 본질은 동일하다. 국가 권력과 결합하는 순간 교회는 의존하게 되고, 의존은 침묵을 낳으며, 침묵은 대언자적 기능의 상실로 이어진다. 이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섯째, 양심의 자유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자유이다. 이 자유가 억압될 때 종교 전쟁, 이단 박해, 강제 개종이라는 비극이 반복되었다. 30년 전쟁에서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진 사건은 신앙을 칼로 통일하려 할 때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신앙은 강제될 수 없으며, 강제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더 큰 폭력을 낳았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남는다.

누가 종교 개혁이 끝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누가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고, 양심의 자유를 원리로 세우며, 국가의 칼 앞에서 영혼의 자유를 지킬 것인가?

그 답은 1525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시작된다. 취리히 시 의회가 재침례를 금지한 바로 그날, 콘라트 그레벨(Conrad Grebel, 1498?-1526), 펠릭스 만츠(Felix Manz, 1498?-1526), 게오르크 블라우록(Georg Blaurock, 1491?-1529)이 서로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그 사건은 단순한 교리적 이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근본적 차원에서 다시 묻는 선언이었다. 신앙은 국가가 규정할 수 없으며, 양심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외침이었다.

이 질문은 과거의 역사적 논쟁에 머물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질문이기도 하다. 한국 교회는 종교 개혁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교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 교회 체제의 잔재, 국가 권력에 기대려는 유혹,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구조 역시 함께 물려받았다.

이 불완전한 유산을 넘어설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답습할 것인가?

종교 개혁자들이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한 이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들, 국가의 칼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려 했던 사람들, 양심의 자유를 위해 박해를 감수한 사람들이 바로 재침례교인들이었고, 그 흐름을 이어받은 침례교인들이었다.

다음 장은 그들의 이야기이다.

1525년 취리히에서 시작된, 영혼의 자유를 위한 가장 급진적이고도 가장 성경적인 개혁의 이야기이다.



재침례교에서 침례교로 - 유럽에서의 투쟁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종교 개혁은 위대했으나 불완전했다. 개혁자들은 구원론은 개혁했으나 교회론은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고, 무엇보다 국가 교회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누가 종교 개혁이 끝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누가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고, 양심의 자유를 원리로 세우며, 국가의 칼 앞에서 영혼의 자유를 지킬 것인가?

그 답의 실마리는 1525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재침례교의 탄생(1525)으로부터 영국 침례교의 형성, 그리고 1689년 관용법에 이르기까지 정교분리의 원리가 유럽에서 어떻게 싹터서 성장했는지를 추적한다. 1525년 취리히에서부터 1791년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까지 이어지는 266년의 투쟁 가운데, 이 장은 유럽에서 전개된 전반부(1525-1689)를 다룬다. 이는 박해 속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피 위에서 사상이 자라나며, 감옥 안에서 원리가 단련된 과정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밝히는 서사이다. 국가가 종교를 강요하지 못하고

개인이 양심에 따라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를 갖게 된 배경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 이 역사를 모르면 그 자유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인지 알 수 없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 또한 생기지 않는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역사를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국의 침례교인들조차 자기 교단의 영적 조상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며 양심의 자유를 지켰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장로교인은 칼빈과 녹스를 배우고, 감리교인은 웨슬리를 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콘라트 그레벨, 펠릭스 만츠, 토마스 헬위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 장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은 교회사 교과서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으나, 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도 없었을 것이다.

1. 재침례교의 탄생 - 1525년 취리히의 결단

츠빙글리와 젊은 급진파들

스위스 종교 개혁의 중심지 취리히에서 올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는 혁신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는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카톨릭의 전통을 비판하면서 취리히를 개혁의 도시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츠빙글리의 개혁에는 한 가지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는 취리히 시 의회의 승인 아래에서만 개혁을 진행했다. 교회의 개혁을 시 의회의 결정에 맡긴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츠빙글리의 개혁에 열정적으로 동참했다. 콘라트 그레벨(Conrad Grebel, 1498?-1526), 펠릭스 만츠(Felix Manz, 1498?-1526), 게오르크 블라우록(Georg Blaurock, 1491?-1529) 등이 대표적이었다. 그들은 츠빙글리의 제자였으며 처음에는 그의 개혁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이 젊은이들의 열정을 이해하려면 당시 취리히의 분위기를 알아야 한다. 1519년부터 츠빙글리는 성경을 연속적으로 강해하는 혁명적인 설교를 시작했다. 전통적인 미사 대신 성경 본문을 순서대로 풀어 가는 이 방식은 청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국어로 성경을 듣고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1522년에는 사순절 기간에 소시지를 먹는 사건, 이른바 ‘소시지 사건’이 발생해 카톨릭 금식 규정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계기가 생겼다. 1523년에는 두 차례의 공개 토론회가 열려 츠빙글리의 개혁안이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레벨, 만츠, 블라우록 등은 이 과정에서 츠빙글리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다. 그러나 점차 그들은 스승의 개혁이 충분히 철저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성경을 공부하면서 점점 더 급진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이들은 신약 성경을 통해 침례가 언제나 믿음 뒤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때부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진리들을 깨닫기 시작했다. 유아 세례의 근거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또한 신약 교회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자발적인 공동체였다는 사실도 절감하게 되었다.

그들은 츠빙글리에게 더 철저한 개혁을 요구했다.

“왜 유아 세례를 계속합니까?”

“왜 교회가 여전히 시 의회의 통제 아래 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왜 성경에 없는 것을 유지합니까?”

츠빙글리는 이들의 주장을 이해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유아 세례를 폐지하면 국가 교회 체제가 무너지고, 시 의회의 지지를 잃을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었다. 츠빙글리는 개혁을 원했으나 국가 교회 체제 안에서 이뤄지는 개혁을 원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국가 교회 체제 자체를 넘어서는 개혁을 꿈꿨다.

유아 세례 논쟁 - 국가 교회 체제의 핵심 장치

갈등이 폭발한 계기는 유아 세례 문제였다. 이는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니었다. 유아 세례는 국가 교회 체제의 핵심 장치였기 때문이었다. 태어나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교회의 구성원이자 동시에 국가의 시민이 된다. 유아 세례를 거부한다는 말은 이 체제 전체를 거부한다는 의미와 같았다. 그러나 급진파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성경적 진리, 즉 신약 성경의 모든 침례 사

례는 복음 선포, 말씀을 듣고 믿음, 회개, 그리고 침례라는 순서를 따른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었다.

36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하므로 **37**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38**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행 8:36-38)¹

사도행전의 기록은 한결같이 분명하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찢린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행 2:38-41).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했을 때 “남녀가 믿고 침례를 받았다”(행 8:12).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했을 때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의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다”(행 18:8).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 뒤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라고 물었다(행 8:36). 신약의 모든 침례 사례를 보면 복음 선포와 믿음이 침례보다 선행한다.

항상 믿음이 먼저이고 침례는 그다음이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아 세례는 교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유아 세례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까지 교회 안에 포함시키면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무너진다. 참된 교회를 회복하려면 신자의 침례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다.

츠빙글리는 이 주장에 대해 구약의 할례를 근거로 반박했다. 구약에서 유아

1. 사도행전 8장 37절은 다수 사본(KJV, 루터 성경 등)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개역성경, NIV, ESV 등 현대 역본들과 천주교에서 발행한 공동번역·새번역 성경 등은 이 절을 본문에서 삭제하거나 각주로 처리한다. 이는 주로 시내 사본(Codex Sinaiticus)과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 등 알렉산드리아 계열 소수 사본에 이 구절이 없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믿음의 고백 후 침례’라는 명시적 구조가 약화된다. 역사적으로 신자 침례를 주장하는 전통에서는 이 구절이 침례 이전의 자발적 믿음 고백을 명확히 증명하는 본문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 구절의 삭제는 유아 세례를 유지하는 신학적 입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에게 할례를 행한 것처럼 신약에서도 유아에게 세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였다. 그레벨과 만츠는 이에 대해 재반박했다. 할례는 이스라엘이라는 혈통 공동체에 들어가는 표지이지만, 침례는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표지이다. 혈통은 태어남으로 결정되지만, 믿음은 자발적 결단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므로 할례와 침례는 본질이 다르다. 유아에게 침례를 주는 행위는 자발적 믿음이라는 침례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 논쟁은 단순히 침례의 형식이나 대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교회가 지역의 모든 주민을 포함하는 지리적 공동체인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영적 공동체인가? 전자를 택하면 국가 교회가 되고, 후자를 택하면 자유교회(free church)가 된다. 재침례교인들은 후자를 택했고, 바로 이 선택이 정교분리의 신학적 기초가 되었다.

스위스 형제단의 탄생: 1525년 1월 21일, 역사적인 밤

1525년 1월 18일, 취리히 시 의회는 최후통첩을 내렸다. 모든 부모는 8일 이내에 아이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추방한다는 내용이였다. 그레벨과 만츠 등에게는 비합법적인 성경 공부 모임을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제 문제는 단순한 신학 토론이 아니라, 순종과 불복종의 기로로 바뀌었다.

1525년 1월 21일 저녁, 이들은 만츠의 어머니 집으로 추정되는 취리히의 한 가정집에 모였다.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다. 시 의회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추방과 체포, 결국 처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고, 성경을 읽었다.

그때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 (행 5:29)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 앞에서 결단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뜻

을 모은 것이다. 게오르크 블라우룩이 일어서서 콘라트 그레벨에게 다가가 말했다. “그레벨 형제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침례를 주기 바랍니다.” 그레벨은 블라우룩에게 침례를 주었고, 이어 블라우룩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이때 약 15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그 작은 방에서 중세 이후 처음으로 신자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교회가 탄생했고, 그날 밤 확립된 원리는 명확했다.

첫째, 교회는 믿는 자들의 자발적인 공동체이다.

둘째, 침례는 믿음의 고백 이후에 받는 것이다.

셋째, 교회는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넷째, 양심의 자유는 국가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네 가지 원리가 266년 후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에서 제도적 형태로 꽃피게 된다.

이들이 ‘재침례교인’(Anabaptists)이라 불린 이유는, 그들이 유아 세례를 무효로 보고 성인이 된 후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호칭에서 ‘Ana-’는 ‘다시’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이 명칭을 거부했는데, 유아 세례는 침례가 아니므로 침례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 받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에게 이것은 재침례가 아니라 참된 침례의 회복을 의미했다.

1525년 1월 21일의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날 밤 일어난 일은 단순히 몇 사람이 물에 잠긴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세 1,000년 이상 유지되어 온 국가 교회 체제에 대한 최초의 조직적 거부였다. 콘스탄티누스 이후 처음으로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원리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사건이었다. 이는 교리의 수정이 아니라 체제의 전환이었다. 루터는 교황의 권위에 도전했어도 국가 교회는 유지했지만, 재침례교인들은 국가 교회 자체를 거부했다. 이 점이 종교 개혁자들과 재침례교인들 사이의 결정적 차이이며, 그들이 카톨릭과 개신교 양쪽 모두로부터 박해를 받은 근본적 이유이기도 했다.

이 사건을 당시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보면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분명해진다. 당시 취리히에서 시 의회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는 단순한 시민 불복종이 아니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결합된 체제에서 시 의회의 종교적 결

정을 거부하는 것은 곧 국가 질서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콘라트 그레벨은 취리히의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다. 그의 아버지 야콥 그레벨은 시 의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선택은 아버지의 정치적 지위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 펠릭스 만츠는 취리히 토박이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고, 게오르크 블라우록은 이미 사제 서품을 받은 성직자였다. 이들은 사회적 지위와 안전, 가족의 안녕과 미래를 포기하고 양심의 명령을 따랐다. 그날 밤 그들이 한 선택은, 단지 새로운 의식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 이해, 새로운 국가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자유의 이해였다.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용기, 바로 그 용기가 종교의 자유의 출발점이었다.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 - 칼에 대한 선언

1527년 2월 24일, 스위스와 독일 국경 근처의 슈라이트하임에서 재침례교 지도자들이 모여 신앙 고백을 작성했다. 이 모임을 주도한 사람은 전직 수도사 미카엘 사틀러(Michael Sattler, 1490?-1527)였다. 박해가 거세어지는 상황에서, 그들은 흩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신앙의 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해 문서화된 고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의 7개 조항을 살펴보면 재침례교의 세계관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제1조는 침례에 관한 조항으로, “회개하고 삶을 바꾸기로 결심한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문화했다. 이는 유아 세례를 명확히 거부하는 선언이었다.

제2조는 출교(파문)에 관한 조항으로, 교회 규율은 교회 내부의 문제이며 국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님을 전제한다.

제3조는 주의 만찬에 관한 조항으로, 신자 공동체의 거룩함을 강조한다.

제4조는 세상과의 분리에 관한 조항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속적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제5조는 목자(목사)에 관한 조항으로, 교회는 스스로 목사를 세워야 하며 국가 권력이 이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제6조는 ‘칼’에 관한 조항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속 권력의 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제7조는 맹세에 관한 조항으로, 그리스도인은 맹세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 일곱 조항을 종합하면, 재침례교인들이 추구한 바는 국가 권력과 완전히 독립된 자발적 신자 공동체였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이 가운데 정교분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조항은 제6조, 즉 ‘칼’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국가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칼을 들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사랑과 인내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마 26:52)

이 말씀은 단순한 개인 윤리의 차원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방식에 관한 선언으로 이해되었다. 교회가 칼을 사용할 수 없다면, 교회는 국가 권력과 결합할 수 없다. 국가의 본질은 강제력이며, 교회의 본질은 자발적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국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 주장은 당시 유럽에서는 거의 전례가 없었다. 카톨릭도, 루터파도, 츠빙글리파도, 칼빈파도 모두 국가 교회 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교 개혁자들조차 국가의 보호와 권력을 통해 교회를 유지했다. 오직 재침례교인들만이 교회가 국가 권력과 결합해서는 안 되며, 신앙은 결코 강제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당대의 ‘이단’으로 낙인찍혔으며, 동시에 정교분리 사상의 선구자가 되었다.

박해와 순교 - 진리를 피로 확증하다

1527년 1월 5일, 펠릭스 만츠(Felix Manz, 1498?-1527)는 취리히 림마트 강에서 익사형에 처해졌다. 처형 방법은 노골적인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가 물로 주는 침례를 좋아하니, 물에 빠뜨려 주자.”라는 속셈이었다. 만츠의 손은 무릎 아래로 묶였고, 무릎과 팔 사이에는 막대기가 끼워졌다. 그는 전

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차가운 강물에 던져졌다. 물 위로 잠시 떠오르며 그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라고 외쳤다. 이는 프로테스탄트 당국에 의해 처형된 최초의 재침례교 순교자의 최후였다. 종교 개혁의 도시에 서, 종교 개혁의 이름으로 한 신자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었다.

같은 해 5월,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을 이끌었던 미카엘 사틀러는 아내



림마트 강의 펠릭스 만츠(원내 그림) 순교 기념비. 1527년 1월 5일, 취리히 시 당국은 재침례교 지도자 펠릭스 만츠를 이곳 림마트 강에서 익사형에 처하였다. 그는 성경적 침례와 신앙을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그의 죽음은 양심의 자유를 위한 증언으로 기억된다.



만츠의 처형. 취리히 사람들은 림마트 강 양쪽 독에 뻗뻗이 모여 강 한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음산한 장면을 지켜보았다. 손과 발이 묶인 채 어부의 작은 배 갑판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던 펠릭스 만츠는 “내 영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라는 시편을 힘껏 크게 노래하였다.

마르가레타와 함께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사틀리의 재판 기록은 오늘날까지 전해져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그는 법정에서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오스만 제국의 투르크인들(이슬람 세력)이 이 땅에 침입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 맞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적을 죽이지 말고 사랑하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 발언은 재판관들을 격분하게 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의 위협은 유럽 전체의 공포였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사틀리의 비폭력 신앙은 국가 질서를 해치는 위험한 사상이었다.

그의 판결문에는 “그의 혀를 자르고, 쇠집게로 몸의 다섯 곳을 찢은 후, 불태운다.”고 적혀 있었다. 이 형벌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공개적인 본보기였다. 사틀리는 이 잔인한 고문을 당한 이후, 5월 20일 화형에 처해졌다. 그는 불 속에서 팔을 들어 올려 “아버지,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라고 기도했다. 그의 아내 마르가레타는 며칠 후 네카르 강에서 익사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이 잔혹한 처형에도 불구하고, 군중 가운데 일부는 그의 담대한 태도와 믿음에 감동받아 재침례교에 합류했다고 전해진다. 티톨리안의 말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게오르크 블라우록은 1529년 티롤에서 화형을 당했고, 콘라트 그레벨은 1526년 탈옥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1526년 슈파이어 제국 의회는 재침례교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교리적으로는 대립하면서도, 재침례교인을 색출하고 처형하는 문제에서는 뜻을 같이한 셈이다. 이후 유럽 전역에서 재침례교인에 대한 조직적인 추적과 박해가 이루어졌다. 화형, 익사, 참수, 장기 투옥이 이어졌고, 수천 명이 희생되었다.

윈스터 사건과 재침례교의 세 부류

1534년 초, 네덜란드 출신 재침례교인 얀 마티스(Jan Matthys, 1500?-

1534)와 얀 반 라이덴(Jan van Leiden, 1509-1536)이 독일 윈스터 시를 장악했다. 마티스는 자신을 구약의 에녹이라 주장했고, 반 라이덴은 '새 다윗 왕'을 자처하며 '시온의 왕'으로 즉위했다. 그들은 성인 침례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들을 추방했으며, 일부다처제를 도입하고 사유 재산을 폐지한 채 '새 예루살렘'을 선포하며 무력으로 도시를 방어했다. 그러나 1535년 6월,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연합군이 도시를 함락시키면서 이 실험은 끝이 났다. 지도자들은 쇠집게로 고문당한 뒤 공개 처형되었고, 그들의 시체는 철제 우리(새장 형태)에 담겨 성 람베르트 교회 탑에 매달렸다. 이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그 자리에 남아 있다.

이 사건은 재침례교 운동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반대자들은 윈스터를 근거로 모든 재침례교인을 광신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으로 일반화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다. 윈스터의 극단주의자들은 재침례교의 주류가 아니었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재침례교 내부의 구분을 이해해야 한다. 교회사학자 케언스(Earle E. Cairns, 1920-2008)는 널리 알려진 그의 저서 「시대를 관통하는 기독교」(*Christianity Through the Centuries*)에서 재침례교를 세 부류로 구분한다.

첫째, 성경적 재침례교도들이다. 이들은 신자 침례, 자발적 교회, 정교분리를 주장하면서도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을 포함한 정통 교리를 유지했다. 또한 폭력과 무장 봉기를 거부하고, 국가의 칼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주의를 견지했다. 그레벨과 만츠로 시작된 '스위스 형제단', 그리고 후대의 '메노나이트'가 이 흐름에 속한다. 이들은 정치권력을 장악하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교회가 국가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언스는 이러한 흐름이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오늘날의 침례교회들로 이어졌다고 보며, 이들을 재침례교 운동 가운데 가장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건전한 계보로 평가한다.

둘째, 극단적 재침례교도들이다. 이들은 종말론적 열광과 정치적 급진주의에 기울어 신정 국가 수립을 시도했다. 성경 해석에서 균형을 잃고 개인적 계시와 환상을 강조했으며, 무력과 강압을 정당화했다. 윈스터 사건이 바로 이 범

주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은 재침례교의 주류가 아니라 일탈적 분파였다.

셋째, 이단적 재침례교도들이다. 이들은 재침례라는 외형을 취했으나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정통 교리를 부정했다. 삼위일체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재 해석하거나 부인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경계를 벗어났다. 케언스는 대표적인 사례로 ‘몰몬교’와 ‘여호와의 증인’을 들었다. 이러한 흐름은 재침례교 운동의 본질과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윈스터 사건을 근거로 재침례교 전체를 폭력적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역사적 오류이다. 오히려 윈스터는 재침례교 주류의 사상이 얼마나 왜곡 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반례에 가깝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정 교분리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종교가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순간, 아무리 순수 한 이상에서 출발했다 해도 타락과 강압으로 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재침례교의 주류는 국가의 칼을 거부하고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교회를 자발적 신자 공동체로 이해했다. 그들이 박해받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윈스터는 재침례교의 본질이 아니라, 그 본질에서 벗어난 극단적 변형이었다.

재침례교의 생존: 메노나이트와 후터라이트

네덜란드의 메노 시몬스(Menno Simons, 1496-1561)는 본래 카톨릭 사제 였으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유아 세례의 근거에 의구심을 품고 결국 재침례교인이 되었다. 그는 윈스터 사건 이후 혼란과 불신 속에 놓였던 재 침례교 운동을 정리하고 재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메노는 윈 스텐의 폭력주의와 종말론적 열광을 명확히 거부하고, 평화주의·비폭력·정 교분리의 원리를 재확인했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메노나이트’ (Mennonites)라 불리었으며,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메노는 약 25년 동안 수배자의 신분으로 떠돌며 사역했다. 그의 머리에는 현상금이 걸려 있었고, 그를 숨겨 준 이들 역시 처벌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저술과 목회를 멈추지 않았다. 그의 삶은 “참된 복음적 믿음은 잠자고

있을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요약된다. 신앙은 침묵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능동적 순종임을 역설한 것이다.

야콥 후터(Jakob Hutter, 1500?-1536)의 지도 아래 모라비아(현재 체코 공화국의 일부)에서 형성된 공동체는 ‘후터라이트’(Hutterites)라 불렸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 교회의 삶을 문자적으로 따르려 했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철저한 공동체 생활을 실천했다. 후터는 1536년 오스트리아에서 화형당했으나 그의 추종자들은 박해를 피해 이동하면서도 공동체 전통을 지켰고, 오늘날에도 북미 지역에서 그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재침례교의 세 주요 계열—스위스 형제단, 메노나이트, 후터라이트—은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면서도 공통된 핵심 가치를 공유했다. 신자 침례, 자발적 교회, 국가 권력과의 분리, 그리고 비폭력 평화주의이다. 이 원리를 삶과 죽음으로 입증한 씨앗은 박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형태로 꽃을 피웠으니, 바로 영국 침례교의 탄생이다.

2. 영국 침례교의 탄생 - 토마스 헬위스의 선언

영국 국교회 - 또 하나의 국가 교회

영국의 종교 개혁은 대륙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헨리 8세(Henry VIII, 1491-1547, 재위 1509-1547)의 종교 개혁은 신학적 동기보다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아라곤의 캐서린과의 이혼을 교황이 허락하지 않자, 1534년 수장령(Act of Supremacy)을 발표해 영국 국왕이 영국 교회의 머리임을 선포했다. 교황의 자리를 국왕이 대신하게 된 것이다. 이는 교리의 근본을 개혁한 사건이라기보다, 국가 교회의 주인이 교황에서 국왕으로 바뀐 결과에 가까웠다.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 치세에 개신교적 개혁이 일부 진전되었으나, 메리 1세는 약 300명의 개신교인을 화형시키며 카톨릭 복구를 시도했다. 이어 엘리자베스 1세의 중도 노선은 영국 국교회(Church of England)의 구조를 안정

적으로 정착시켰다. 그러나 이 절충적 체제는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국교회 내부에서 더 철저한 개혁을 추구한 청교도(Puritans)가 등장했고, 국교회 자체를 떠나 별도의 교회를 세우려 한 분리주의자(Separatists)도 나타났다.

영국 국교회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대륙의 국가 교회와 동일했다.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국왕이 교회의 머리이고, 의회가 교리와 예배 형식을 규정하며, 국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을 받는 체제였다. 엘리자베스 1세의 1559년 수장령과 통일법(Act of Uniformity)은 이 체제를 제도적으로 확립했다. 모든 성직자는 기도서(Book of Common Prayer)를 사용해야 했고, 국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른바 '12펜스 벌금'은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상당한 부담이었다.

이 체제 아래에서 양심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예배드리려는 사람들은 곧 범법자가 되었다. 선택지는 세 가지뿐이었다. 양심을 억누르고 국교회에 순응하든가, 양심을 따르고 법을 어기든가, 아니면 영국을 떠나는 길이었다. 많은 이들이 세 번째 길을 택했는데,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과 암스테르담으로 망명한 스마이스와 헬위스가 바로 그러한 이들이었다.

분리주의의 등장과 존 스마이스

16세기 말, “국교회는 개혁될 수 없다.”라고 판단한 분리주의자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참된 교회란 회심한 신자들의 자발적 모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교회를 떠났다. 이는 국가 교회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고, 곧 국법 위반으로 간주되었다.

분리주의자와 청교도(Puritans)의 차이를 구분하는 일은 중요하다. 청교도는 영국 국교회 내부에서의 개혁을 추구했다. 그들은 국교회의 구조 자체는 인정하되, 카톨릭적 잔재를 제거하고 보다 철저한 칼빈주의적 개혁을 이루고자 했다. 반면 분리주의자들은 국교회 체제 자체가 성경적 교회의 본질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별도의 독립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리주의자 로버트 브라운(Robert Browne, 1550?-1633)은 “개혁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분리하라.”라고 주장했고, 그의 추종자들은 ‘브라운파’(Brownists)로

불렸다. 분리주의는 국가 교회 체제를 근본적으로 거부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에서도 유아 세례를 유지한 경우가 많았다.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신자 침례를 실천하며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인물들이 바로 존 스마이스와 토마스 헬위스였다.

존 스마이스(John Smyth, 1570-1612)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국교회 사제로 서품받은 인물이었다. 그러나 점차 분리주의적 입장으로 기울어 국교회를 떠났다. 1607년 무렵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망명한 그는, 그곳에서 메노나이트 재침례교인들과 접촉하며 유아 세례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당시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종교적 관용이 가장 넓게 허용된 지역이었고, 암스테르담에는 여러 영국인 분리주의 회중과 메노나이트 교회가 공존하고 있었다.

1609년 무렵 스마이스는 유아 세례가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먼저 자신에게 침례를 행하고(self-baptism), 이어 토마스 헬위스를 포함한 약 40명의 회중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영국 침례교의 출발점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스마이스의 자기 침례는 곧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적법한 집례자가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침례를 베푸는 행위가 정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스마이스 자신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고, 결국 메노나이트 교회에 합류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에 대해 헬위스를 포함한 일부 회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메노나이트에 흡수되지 않고 독자적 노선을 선택했고, 그 흐름이 이후 영국 침례교의 고유한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다.

스마이스는 1612년 암스테르담에서 메노나이트 교회와의 합류를 기다리던 중 세상을 떠났다.

토마스 헬위스 - “왕은 인간 영혼의 주인이 아니다”

토마스 헬위스(Thomas Helwys, 1575?-1616?)는 노팅엄셔의 부유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다. 스마이스와 견해가 갈라진 후, 그는 1611년경 영국으로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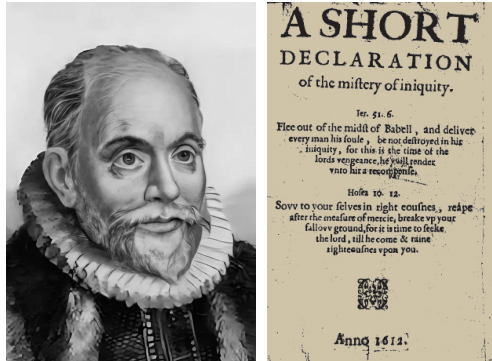
아와 런던 근처 스피탈필즈에 영국 최초의 침례교회를 세웠다.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을 감행한 것이다. 이 선택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깊은 확신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1612년 헬위스는 정교분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가운데 하나인 「불법의 신비에 대한 짧은 선언」(*A Short Declaration of the Mystery of Iniquity*)을 출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왕은 필멸의 인간이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왕은 사람의 영혼에 대한 권력이 없으며, 영혼을 위해 법을 만들 수도 없고, 영적 통치자를 세울 수도 없다. … 이것은 영혼의 종교에 관한 것으로서, 어떤 인간의 법이나 명령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 선언은 역사상 최초로 모든 사람의 종교적 자유를 체계적으로 주장한 문서로 평가된다. 헬위스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종교의 자유는 기독교인에게만 해당하는 특권이 아니라, 이단, 투르크인(무슬림), 유대인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7세기 초에 무슬림과 유대인의 종교적 자유까지 명시적으로 인정한 사실은 시대를 수 세기 앞선 파격적인 태도였다.

그의 선언이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상황을 살펴야 한다. 1612년은 영국에서 바르톨로뮤 레거트(Bartholomew Legate, 1575?–1612)와 에드워드 와이트먼(Edward Wightman, 1580?–1612)이 이단으로 화형당한 해였다. 이들은 영국에서 이단으로 화형된 마지막 인물들이기도 했다. 당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곧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음에도, 헬위스는 바로 그해에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토마스 헬위스와 「불법의 신비에 대한 짧은 선언」

더욱 주목할 점은, 헬위스가 종교의 자유를 특정 교파의 권리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를 보편적 원리로 제시했다. 존 로크가 1689년 「관용에 관한 서한」에서 무신론자와 카톨릭을 관용의 범주에서 제외한 점과 비교하면, 헬위스의 주장은 로크보다 77년 앞섰을 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훨씬 포괄적이었다. 침례교인이 계몽주의 철학자보다 더 급진적인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학적 추론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확신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참된 신앙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제는 신앙을 낳지 못한다는 원리를 일관되게 적용하면, 모든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 결론이 된다.

헬위스는 이 책을 제임스 1세에게 직접 보내며 곁장에 헌정사를 적었다. “왕은 필멸의 인간일 뿐이니 불멸의 영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이는 국왕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문장이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1613년경 그는 체포되어 뉴게이트 감옥에 수감되었고, 1616년경 약 41세의 나이로 옥중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정교분리의 원리를 위해 생명을 바친 최초의 영국인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러나 그의 투옥과 죽음은 그의 사상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주장은 후대 침례교인들에게 계승되어 더욱 발전했다. 헬위스가 세운 런던의 일반 침례교회는 그의 사후에도 존속했고, 점차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왕은 인간 영혼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선언은 침례교 정체성의 핵심 원리로 자리 잡았다.

이 선언에는 세 가지 원리가 함축되어 있다.

첫째, 국가 권력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는 외적 행위를 규제할 수 있으나, 내적 양심을 지배할 수는 없다.

둘째, 종교 문제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지, 왕에게 있지 않다.

셋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에 따라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 세 원리는 이후 침례교인들의 투쟁을 거쳐 150년 후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에 제도적으로 구현된다.

3. 박해와 성장 - 존 번연의 감옥에서 관용법까지

영국 침례교의 두 갈래

헬위스 이후 영국 침례교는 두 갈래로 발전했다. ‘일반 침례교’(General Baptists)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일반 속죄론(general atonement)을 주장했다. 헬위스의 교회가 이 계열에 속한다. 반면 ‘특수 침례교’(Particular Baptists)는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제한 속죄론(particular atonement)을 주장했으며, 칼빈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다.

구원론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두 계열은 세 가지 핵심 원리에서 일치했다. 곧 신자의 침례, 교회와 국가의 분리, 그리고 양심의 자유이다. 1644년 특수 침례교가 발표한 「제1차 런던 신앙 고백」은 침례교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문서로서, 자신들이 급진적 종파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정통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임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1640년대 영국 내전은 역설적으로 침례교에게 기회가 되었다. 국교회의 권위가 약화되면서 다양한 비국교회 집단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 재임 1653-1658)이 조직한 신형군²에는 적지 않은 침례교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크롬웰 자신은 침례교인은 아니었지만, 일정 수준의 종교적 관용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신형군은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강한 종교적 열정을 지닌 집단이었고, 그 내부에서는 신학과 정치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침례교인들은 특히 종교적 강제에 반대하며 관용을 옹호했다. 1647년 퍼트니 토론(Putney Debates)에서는 군인 대표들이 국가의 미래와 정치 질서에 관해 놀라울 만큼

2. 신형군(New Model Army)은 1645년 영국 내전 당시 의회파가 창설한 상비군이다. 이는 기존의 지방 민병대 체제를 탈피하여 중앙 정부의 통합 지휘 체계로 재편된 ‘새로운 형태의 군대’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의 지도 아래 이들은 강력한 전투력 뿐만 아니라 철저한 청교도적 신앙과 열정을 겸비한 정예 군대로 발전했다.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전개했다. 이른바 ‘자유민 협약’(Agreement of the People) 초안에는 종교적 관용이 중요한 원칙으로 포함되었다.

크롬웰 치하에서 어느 정도의 종교적 관용이 시행된 사실도 분명하다. 1655년에는 1290년 이후 추방되었던 유대인의 영국 재입국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그 관용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카톨릭은 여전히 배제되었고, 아일랜드에서는 잔혹한 정복 전쟁이 전개되었다. 또한 공화정은 국가 교회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지 못했다. 결국 1660년 왕정복고와 함께 국교회 체제가 회복되었고, 침례교를 비롯한 비국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다시 시작되었다.

왕정복고와 클래런던 법전

1660년 왕정복고와 함께 찰스 2세(Charles II, 1630-1685, 재위 1660-1685)는 국교 체제를 복구하고 비국교도들을 억압하기 위해 이른바 ‘클래런던 법전’(Clarendon Code)을 시행했다. 1662년 통일법(Act of Uniformity)은 모든 성직자에게 국교회 기도서 사용을 강제했고, 이를 거부한 약 2,000명의 목사가 교회에서 축출되었다. 이어 1664년 비밀집회법(Conventicle Act)은 국교회 밖에서 5인 이상이 모인 예배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투옥하도록 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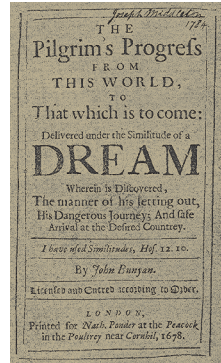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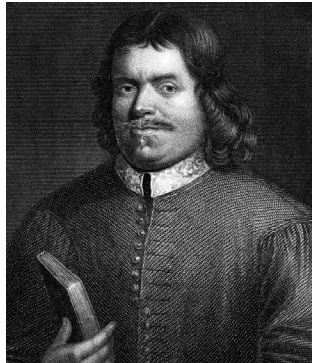
이 법에 따라 수천 명의 비국교도가 감옥에 갇혔다. 감옥은 비국교도 목사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허가 없이 예배드리고, 허가 없이 설교했으며, 투옥되면 감옥 안에서 다시 설교했다. 박해는 그들의 신앙을 꺾기보다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존 번연 - 감옥에서 쓴 「천로역정」

가장 유명한 침례교 죄수는 존 번연(John Bunyan, 1628-1688)이었다. 그는 가난한 땀장이의 아들로 태어나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뒤 강력한 설교자가 되었다. 그의 설교는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국교회의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번연은 1660년부터 1672년까지 12년 동안 베드퍼드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는 아내와 네 명의 어린 자녀, 특히 시력을 잃은 맏딸 메리를 남겨 둔 채였다. 번연은 자서전에서 가족과의 이별에 대해 “내 몸에서 살을 뜯어내는 듯했다.” 라고 기록했다.

특히 앞을 보지 못하는 딸 메리가 가난 속에 굶주릴 것을 우려해, 감옥 안에서 쉬지 않고 긴 신발 끈 (shoelaces)을 만들어 팔아 가족의 생계를 도왔다. 차갑고 어두운 감방 바닥에서 땀장이의 거친 손으로 신발 끈을 꼬며, 그는 육체의 자유와 영혼의 자유 사이에서 매일 사투를 벌였다.



존 번연과 「천로역정」

재판관은 그에게 “허가 없이 설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풀어 주겠다.”라며 달콤한 제안을 했다. 그러나 번연의 대답은 단호했다. “나를 오늘 풀어 주면, 나는 내일 다시 설교할 것입니다.” 그가 12년간의 수감 생활을 택한 것은 광신이 아니라 양심에 대한 충성이었다.

그에게 설교란 국왕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다. “설교하려면 허가를 받으라.”라는 국가 명령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국왕의 권위 아래 두는 의미였기 때문에 번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한편, 영문학의 가장 위대한 작품 가운데 하나인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은 그의 수감 생활 중에 탄생했다. 가족을 위해 신발 끈을 만들던 그 손으로,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을 써 내려갔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영어 서적이 되었다. 번연의 투옥은 국가 교회 체제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극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번연만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비국교도 목사들이 감옥에 갇혔다. 침례교 역

사학자 토마스 크로스비(Thomas Crosby)는 「영국 침례교의 역사」³에서 투옥된 침례교인들의 사례를 상세히 기록했다. 어떤 목사는 10년 넘게 수감되었고, 어떤 목사의 아내는 남편의 투옥 중에 세상을 떠났으며, 어떤 교인들은 재산을 몰수당해 생계가 무너졌다. 그들은 국가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말만 하면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 그들에게 양심의 자유는 육체의 자유보다 더 귀한 것이었다.

1689년 관용법

1688년 명예혁명 이후 1689년에 통과된 관용법(Toleration Act)은 삼위일체를 믿는 모든 개신교도에게 예배의 자유를 허용했다. 침례교인들이 더 이상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투옥되지는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관용법은 완전한 종교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었다. ‘관용’(toleration)은 ‘권리’(right)가 아니다. 관용은 권력자가 베푸는 허락이지만, 권리는 본질적으로 빼앗을 수 없는 고유한 것이다.

관용법의 구체적 한계를 살펴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첫째, 관용의 대상은 삼위일체를 믿는 개신교도에 한정되었다. 카톨릭과 유니테리언은 여전히 법적 제재의 대상이었다.

둘째, 비국교도는 공직에 취임할 수 없었다. ‘심사법’(Test Act)과 ‘법인법’(Corporation Act)이 유지되어, 공직을 맡으려면 국교회의 성찬에 참여해야 했다. 이 제약은 1828년까지 존속했다.

셋째, 비국교도는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할 수 없었고, 이 제한은 1871년까지 유지되었다.

3. 총 4권으로 구성된 「영국 침례교의 역사」(*The History of the English Baptists, 1738-1740*)는 영국 침례교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최초의 정식 사료이다. 이것은 당시 침례교를 광신적인 재침례교도들과 동일시하며 비하하던 국교회의 왜곡에 맞서, 침례교의 성경적 정통성과 역사적 기원을 변증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특히 국가 교회 체제 아래서 침례교도들이 겪었던 박해의 기록과 주요 인물들의 전기를 보존하고 있어, 초기 침례교의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리 투쟁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헌으로 평가받는다.

넷째, 비국교도의 결혼은 국교회 사제 앞에서만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비국교도를 사실상 '2등 시민'으로 만드는 장치였다. 예배는 허용되었지만, 사회적·정치적 권리는 제한되었다. 이것이 관용의 구조적 한계였다. 관용은 다수가 소수를 '참아 주는' 것이지, 소수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용과 권리의 차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존재할 때, 국가는 그것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가 특정 종교 단체의 존립 여부를 허가의 문제로 치부한다면, 종교의 자유는 권리에서 관용으로 격하된다. 정부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종교는 권리를 가진 종교가 아니라, 관용의 대상이 된 종교일 뿐이다. 이는 1689년 영국 관용법의 수준에 머무는 것과 다르다.

종교의 자유가 단순한 관용을 넘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자리 잡기까지는,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에서 이루어진 또 하나의 역사적 실험이 필요했다.

결론 - 취리히에서 런던까지, 유럽에서 싹튼 원리

1525년 취리히의 작은 방에서 시작된 정교분리의 원리는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며 성장했다. 그레벨과 만츠가 씨를 뿌렸고, 메노 시몬스가 가꾸었으며, 헬위스가 영국 땅에 옮겨 심었고, 번연이 감옥 안에서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렸다. 이 여정을 되돌아보면 세 가지 핵심 사항이 드러난다.

첫째, 재침례교는 종교 개혁이 수행하지 못한 과업을 완수하려 했다. 루터와 츠빙글리가 구원론을 개혁했다면, 재침례교인들은 교회론을 개혁하고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혹했다. 만츠는 역사당하고, 사틀러는 화형당했으며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던 까닭은 “진정한 신앙은 강제될 수 없다.”라는 원리를 역사 속에 심었기 때문이다.

둘째, 영국 침례교는 재침례교의 원리를 영국적 맥락에서 발전시켰다. 헬위스의 “왕은 인간 영혼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선언은 정교분리의 가장 간결하

고 강력한 표현이었다. 이는 왕 앞에서 양심의 자유를 주장한 선언이었으며, 국가 권력의 한계를 분명히 그은 것이었다. 헬위스는 감옥에서 죽었지만, 그의 선언은 여전히 살아남아 이후 모든 정교분리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셋째, 변연의 12년 투옥과 1689년 관용법은 유럽에서의 정교분리 투쟁의 정점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 준다. 관용법은 비국교도에게 예배의 자유를 허용했지만, 이는 국가가 베푸는 은혜의 ‘관용’이었을 뿐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양도 할 수 없는 ‘권리’가 아니었다. 유럽에서 정교분리의 원리는 이 지점에서 더는 나아가지 못했다. 영국에서도 국교회 체제는 유지되었고, 대륙에서도 국가 교회 구조는 그대로였다. 확립된 원리가 완전히 실현될 곳은 유럽 어디에도 없었다.

이 장에서 살펴본 신앙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느리지만 놀라운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525년에는 신자 침례를 주는 행위만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1612년에는 “왕은 인간 영혼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선언이 나왔지만, 그 선언자는 감옥에서 죽었다. 1689년에는 관용법이 통과되었지만, 완전한 종교의 자유에는 한참 못 미쳤다. 진전은 느리고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강제에서 자유로, 억압에서 관용으로, 관용에서 권리로 향하는 방향은 분명했다.

이를 이끌어 온 주역은 언제나 침례교인들이었다. 그들은 해당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던 상식을 거부하고, 아직 아무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던 가치를 주장한 사람들이었다.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일관된 원리가 있었다. 진정한 신앙은 강제될 수 없다. 교회가 국가의 칼에 의존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한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자유이며, 국가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원리를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적용하면 불편한 질문이 나오게 된다. 한국 교회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진정으로 원하는가, 아니면 국가 권력의 보호와 특권을 원하는가? 한국 교회는 양심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자기 교단의 교리만을 특권화하기를 원하는가?

당시의 유럽도 이 원리를 완성하지 못했다. 국교회의 벽은 너무 두꺼웠고, 왕

권의 힘은 너무 강했다. 원리는 있었지만 이를 헌법에 새길 땅이 없었다. 이 원리가 마침내 법과 헌법적 현실이 되려면, 대서양 건너편의 새로운 땅이 필요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 원리가 신대륙에서 어떻게 꽃을 피우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신대륙에서의 자유 투쟁

(AD 1620-1791)

미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를 떠올린다. 그런데 정작 그 출발점인 매사추세츠 청교도 식민지에는 왜 종교의 자유가 거의 없었는가? 영국의 박해를 피해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넌 사람들이, 왜 자신들과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을 추방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교수형까지 집행했는가?

앞 장에서 우리는 1525년 취리히에서 시작된 정교분리의 원리가 네덜란드와 영국을 거쳐 1689년 관용법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관용법은 말 그대로 ‘관용’이었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리’ 선언은 아니었다. 유럽에서는 이 원리가 끝까지 완성되지 못했다. 정교분리가 한 나라의 헌법적 원리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결국 대서양 건너 새로운 땅에서의 긴 투쟁이 필요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세운 또 하나의 국가 교회, 곧 매사추세츠 식민지의 실상을 살펴본다. 이어 로저 윌리엄스가 로드아일랜드에서 시작한 종교 자유 실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체였는지 추적한다. 그다음으

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부유했던 버지니아에서 침례교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견디며 자유를 위해 싸웠는지, 그리고 마침내 침례교 목사 존 릴랜드와 제임스 매디슨의 협력이 어떻게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라는 위대한 결실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본다.

이 장에서 다루는 171년(1620-1791)은 정교분리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구간이다. 이 기간 동안 정교분리는 책 속의 이론에서 로드아일랜드와 버지니아의 실험으로, 그리고 마침내 미국 헌법 속 ‘법’으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들—로저 윌리엄스, 아이작 백커스, 존 릴랜드, 제임스 매디슨, 토마스 제퍼슨—의 이야기는, 종교의 자유가 어떻게 쟁취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과정에서 신학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원리를 위해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다.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 침례교인 릴랜드와 이신론자에 가까웠던 제퍼슨이 종교의 자유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 것이다.¹

이는 정교분리가 특정 신학 진영의 산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위한 보편적 원리임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1. 메이플라워호 청교도들의 신정 국가 - 또 다른 국가 교회

청교도들의 이주 - 또 다른 탈출

17세기 초 영국은 분리주의자들과 청교도들에게 여전히 위험한 땅이었다. 제임스 1세(James I, 1566-1625, 재위 1603-1625)는 국교 체제를 더욱 강화하며 반대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그는 1604년 햄프턴 코트 회의에서 청교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나에게 순응하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떠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1. 이신론(deism)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그 이후에는 자연법칙 속에 맡겨 두셨다고 보고 역사 속에 기적이나 계시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상으로, 성경의 초자연적 계시와 기적을 인정하는 성경적 신앙과는 구별된다.

많은 이들이 실제로 쫓겨났고, 일부는 네덜란드로 피신했으나 그곳에서의 삶도 쉽지 않았다. 언어가 달랐고,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어려웠으며, 자녀들이 네덜란드 문화에 동화되어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우려하는 부모들이 많았다. 그때 그들의 눈에 신대륙 아메리카가 들어왔다. 대서양 건너편에는 아직 영국 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광활한 미개척지가 있었던 것이다.

1620년 9월,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을 떠났다. 우리는 그들을 ‘순례자들’(Pilgrims)이라고 부른다. 66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그들은 오늘날 매사추세츠 주 플리머스에 도착했다. 첫 겨울은 참혹했다. 102명 중 거의 절반이 추위와 굶주림,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살아남은 이들은 정착지를 건설하고, 농사를 짓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며 새 삶을 시작했다.

상륙에 앞서 그들은 배 안에서 ‘메이플라워 서약’(Mayflower Compact)을 작성했다. 이 문서는 오늘날 흔히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 문서로 칭송된다. 그러나 그 서약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발전을 위해’라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 있었다. 이는 그들이 세우려 한 공동체가 세속적 민주주의 공동체가 아니라, 분명한 기독교적 공동체였음을 보여 준다. 플리머스 식민지는 매사추세츠만 식민지만큼 엄격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기독교적 틀 안에서 운영되었다. 메이플라워 서약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출발점에 이미 ‘자치’(self-government)의 원리와 ‘기독교 국가’의 원리가 나란히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두 원리 사이의 긴장이 이후 171년간 계속 될 투쟁의 배경을 형성한다.

1630년에는 더 큰 이주 물결이 일어났다. 약 1,000명의 청교도들이 11척의 배를 타고 매사추세츠만에 도착했는데, 그들의 지도자는 존 윈스롭(John Winthrop, 1588-1649)이었다. 윈스롭은 항해 중 유명한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산 위에 세워진 도시(마 5:14)가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의 눈이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다.”

그는 매사추세츠를 ‘새 예루살렘’, 곧 신정 국가로 만들고자 했다. 1630년대 내내 약 2만 명의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로 이주했는데, 이를 ‘대이주’(Great Migration)라 부른다. 그들은 보스턴을 중심으로 여러 마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식민지 정부를 조직했다. 매사추세츠는 빠르게 번영하는 식민지로 성장했다.

매사추세츠 신정 정치의 법적 체계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641년에 제정된 「자유 의 본체」(Body of Liberties)는 매사추세츠 최초의 법전이었다. 이 법전은 10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중 제94조는 사형에 해당하는 12가지 범죄를 열거하면서, 그 안에 우상 숭배, 신성모독, 마법 사용 등을 포함시켰다. 이 조항들은 모두 구약 율법에 직접 근거를 두고 있었다. 매사추세츠 청교도들은 제2장에서 비판했던 바로 그 오류—구약의 신정 정치를 신약 시대의 시민 국가에 그대로 적용하는 오류—를 실제 법제 속에서 범하였다.

1692년 살렘² 마녀재판은 이 체제의 가장 비극적인 결말이었다. 약 200명이 마녀로 고발되어 20명이 처형되었으며, 5명이 감옥에서 죽었다. 국가가 종교적 판단을 대신 내리는 체제에서 집단적 히스테리와 광기가 결합했을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매사추세츠의 신정 국가 – 본질은 같았다

청교도들이 세운 매사추세츠는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땅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실상 또 다른 국교 체제를 수립했을 뿐이다.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국교였고, 신대륙 매사추세츠에서는 ‘청교도 회중교회’(Congregational Church)가 지배했을 뿐, 구조와 정신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식민지 정치 관련 투표권은 교회 회원에게만 부여했다. 교회 회원이 되려면 회심 경험을 공개적으로 증언해야 했고, 교회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했다.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은 투표권도, 공직 임용권도 얻지 못한 채 사실상 정치 공동체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어떤 남성은 20년 동안 식민지에서 세금

2. Salem은 영어 발음상 ‘세일렘(/ˈseɪləm/)'에 가깝지만, 한국어에서는 관용적으로 ‘살렘’으로 표기한다. 이 살렘은 매사추세츠 식민지의 도시로, 로저 윌리엄스가 한때 사역했던 곳이기도 하다.

을 내고 땅을 일구며 살았지만, 교회가 그의 회심 간증을 신뢰하지 않아 회원 자격을 거부하는 바람에, 평생 정치적 권리 없이 이등 시민으로 살아야 했다.

주일 예배 참석은 법적 의무였다. 모든 주민은 주일에 반드시 교회에 출석해야 했으며, 불참 시 벌금을 물었다. 가난한 가정에 이 벌금은 큰 부담이었다. 주일에 일하거나 여행하고 오락을 즐기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했다. 어떤 농부는 추수기에 비가 내리기 전 급히 곡식을 거두다 주일 노동 혐의로 고발되어 벌금을 내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았다. 안식일 법은 예외나 자비 없이 엄격하게 집행되었다.

신학적 의견의 차이는 거의 용납되지 않았다. 청교도 교리를 의심하거나 비판하면 재판을 거쳐 벌금형, 투옥, 추방에 처했으며, 극단적인 경우 사형까지 집행했다. 매사추세츠의 지도자 나다니엘 워드(Nathaniel Ward)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진다.

“모든 이단과 잘못된 신앙과 분파들에게 무제한의 관용을 허용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판단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셈이다.”

존 코튼(John Cotton) 목사는 더 직설적이었다.

“이단자를 관용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다.”

퀘이커 교도의 처형 - 박해의 극단

매사추세츠 신정 체제의 박해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퀘이커 교도들에 대한 처우였다. 1656년부터 1661년 사이에 퀘이커 교도 4명이 매사추세츠에서 교수형을 당했다.

첫 희생자는 윌리엄 로빈슨(William Robinson)과 마마듀크 스티븐슨(Marmaduke Stephenson)이었다. 1659년 10월 27일, 그들은 보스턴 커먼(Boston Common)에서 함께 처형되었다. 그들의 죄목은 퀘이커 신앙을 고백한 사실과 추방 명령을 받고도 다시 매사추세츠로 돌아왔다는 점이었다.

그날 메리 다이어(Mary Dyer)라는 여성도 함께 교수대에 올랐다. 그녀는 두 남성이 처형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고, 그녀의 목에도 이미 올라미가 걸렸으나 마지막 순간에 아들이 총독에게 간청해 사면을 받았다. 48시간 안에 매사추세츠를 떠난다는 조건이었다. 메리는 일단 식민지를 떠났지만, 1660년 5월 다시 돌아왔다. 불의한 법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결심 때문이었다. 1660년 6월 1일, 메리 다이어는 다시 교수대에 올랐고 이번에는 실제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교수대로 올라가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랐을 뿐입니다. 사람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여섯 자녀를 남겨 두고 순교자의 죽음을 맞았다. 1661년에는 윌리엄 레드라(William Leddra)가 교수형을 당했다. 그는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기쁘게 죽습니다. 진리를 위해 받는 고난은 영광입니다.”

박해의 본질 - 자기만의 자유

이 사건들은 대서양을 건너 영국에까지 충격을 주었다. 퀘이커 교도 처형 소식이 전해지자, 찰스 2세는 매사추세츠에 서한을 보내 더 이상 퀘이커 교도를 교수형에 처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국가 교회의 수장인 영국의 왕이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매사추세츠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었다. 영국 본토에서도 비국교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장면은 매사추세츠의 신정 통치가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 종교 박해의 본국이었던 영국조차 감당하기 힘들 만큼 가혹한 박해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었다.

매사추세츠의 종교적 박해는 퀘이커 교도들로 끝나지 않았다. 침례교인들도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1651년 존 클라크(John Clarke), 오바디아 흄즈

(Obadiah Holmes), 존 크랜달(John Crandall), 이 세 명의 침례교인이 매사추세츠 린(Lynn)에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다가 체포되었다. 클라크와 크랜달은 벌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홈즈는 벌금 납부를 거부해 공개 채찍형에 처해졌다. 그는 30대의 채찍을 맞고 등이 처참하게 찢겨 피가 낭자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홈즈는 채찍을 맞으면서도 “당신들은 꽃으로 때리고 있소.”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침례교 역사에서 오래도록 기억되었다. 국교 체제 아래에서 침례를 행하고 별도의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채찍형을 받았다는 사실은, 국가 교회 체제가 얼마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지를 방증한다. 존 클라크는 후에 「뉴잉글랜드로부터 온 나쁜 소식」(*Newes from New-England*, 1652)를 써서 매사추세츠의 박해를 영국 사회에 고발했다.

퀘이커 교도 박해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1637년 앤 허친슨(Anne Hutchinson) 사건은 매사추세츠 신정 정치의 또 다른 실상을 드러낸다. 허친슨은 보스턴에서 가정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며, ‘은혜의 언약’과 ‘행위의 언약’을 구분하는 신학적 주장을 펼쳤다. 그녀는 많은 추종자를 모았고, 일부 성직자들의 설교가 ‘행위의 언약’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이 논쟁은 이른바 ‘반율법주의 논쟁’(Antinomian Controversy)으로 번졌다. 1637년 11월, 허친슨은 총회에서 재판을 받고 ‘부주의한 여자’로 정죄되며 추방 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로드아일랜드로 이주했다가, 후에 뉴네덜란드(오늘날의 뉴욕)에서 원주민과의 충돌 속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허친슨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국가 교회 체제에서는 신학적 토론조차 국가와 교회의 통제 아래 놓인다. 단순히 신학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추방당할 수 있는 사회에서, 양심의 자유는 존재하기 어렵다.

이것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에서 구현한 ‘종교의 자유’의 실제 모습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방식대로 예배드릴 자유는 원했지만,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같은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이 본인의 의무라고 확신했다. 그 확신 아래에서 자

신들의 판단에 따라 오류는 용납될 수 없었고, 이단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청교도 회중교회는 제3장에서 살펴본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국가 교회와 본질 면에서 동일했다. 교회가 국가 권력과 결합하면, ‘진리의 수호’라는 이름으로 결국 양심을 강제하게 된다. 누가 권력을 잡든—카톨릭이든, 개신교이든, 청교도이든—결과는 동일하다. 국가 교회 체제는 필연적으로 박해를 낳는다. 이것이 정교분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이 역사적 교훈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박해받던 자가 권력을 잡으면 박해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은 인간 본성의 비극이다. 한국 교회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신사 참배를 거부하며 고난을 받던 교단이, 해방 후에는 다른 교단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기가 당한 박해의 고통은 기억하면서, 자기가 가하는 박해의 부당함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정교분리 원리는 바로 이 비극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누가 권력을 잡든 상관없이, 국가가 양심의 영역에 손을 댈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다.

매사추세츠의 역사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주는 구체적 교훈은 이렇다.

첫째, ‘진리의 수호’라는 명분이 양심의 억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매사추세츠의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기독교를 실천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 확신이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짓밟는 근거가 되었다.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단들이 ‘정통 교리의 수호’를 명분으로 소수 종교를 억압하고 해산을 요청하려는 태도는 같은 논리 구조를 띤다.

둘째, 과거에 박해를 받았다고 해서, 미래에 박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영국에서 박해받던 청교도가 매사추세츠에서 박해자가 되었듯이, 과거 일제의 박해를 받았던 한국 교회가 오늘날 다른 종교와 다른 교단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

셋째, 다수의 동의가 소수의 권리 침해로 정당화하지 못한다. 매사추세츠의 다수가 퀘이커 교도 박해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 박해가 정당한 것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다수 교단이 소수 종교의 해산에 찬성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다수결의 표결로 지켜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성경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리이다.

2. 로저 윌리엄스와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에 도착한 젊은 목회자

1631년 2월, 매사추세츠에 한 젊은 목회자가 도착했다. 그의 이름은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 1603?-1683)였다. 그는 1603년 무렵 런던에서 태어났으며, 뛰어난 속기 재능 덕분에 저명한 법률가 에드워드 코크 경의 눈에 띄어 후원을 받았다. 윌리엄스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펨브로크 칼리지에 입학해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를 익혔고, 훗날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까지 여러 개 배울 정도로 언어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윌리엄스는 신학을 공부하고 성공회 성직자로 서품받았으나, 대학 시절부터 청교도 사상에 끌렸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그는 영국 국교회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단순히 국교회를 조금 개혁하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교회는 국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1629년 제인 왈리(Jane Whalley)와 결혼한 뒤, 그는 박해가 눈앞에 다가온 영국을 떠나 아메리카로 건너가기로 결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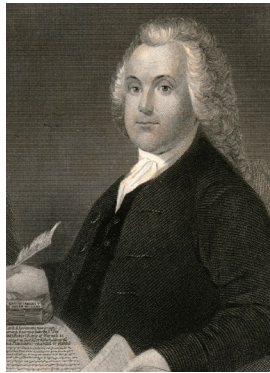
윌리엄스의 위험한 생각들

28세의 나이에 보스턴에 도착한 윌리엄스를 매사추세츠 청교도들은 처음에는 크게 환영했다. 케임브리지에서 교육받은 학자이자, 탁월한 설교자로 보였기 때문이다. 보스턴 교회는 그에게 목사직을 제안했지만, 윌리엄스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보스턴 교회가 여전히 영국 국교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은 '분리되지 않은 교회'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곧 보스턴을 떠나 살렘으로 갔고, 그곳에서 목회자로 섬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의 급진적인 견해들이 매사추세츠 신정 체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큰 논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윌리엄스의 주장은 매사추세츠 체제를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첫째, 국가는 종교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윌리엄스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처음 네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과 두 번째 돌판(나머지 여섯 계



로저 윌리엄스와 그를 기념한 우표

명, 사람들 사이의 관계)을 분명히 구별했다. 그는 국가는 두 번째 돌판에 속하는 살인·도둑질·거짓 증언과 같은 사람 사이의 죄들만 규제해야 하며, 첫 번째 돌판에 속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배는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제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악취를 내뿜는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예배를 원하신다. 칼로 위협받아 드리는 예배는 위선일 뿐이다.”

만약 국가가 예배를 강제할 수 없다면 ‘주일 예배 의무법’은 무효가 되고, 국가가 교리를 집행할 수 없다면 ‘이단 처벌법’도 무효가 된다. 이는 곧 매사추세츠 신정 체제 전체를 부정하는 선언이었다.

이 주장에 대해 존 코튼은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국가가 종교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교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튼에 따르면 이단자는 자기 양심에 따라 다르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분명한 진리를 고의로 거부하는 죄인이다. 따라서 국가가 이단자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일이라는 논리이다. 오늘날에도 “이단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 아니라 공익이다.”라는 주장은 바로 이 코튼의 논리와 구조적으로 궤를 같이한다. 윌리엄스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누가 진리를 판단하는가? 카톨릭은 개신교를 이단이라 하고, 개신교는 카톨릭을 이단이라 한다. 루터파는 칼빈파를, 칼빈파는 재침례파를 이단이라 한다. 이 모든 이들 가운데 누가 최종 심판관인가?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심판관이시다. 인간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양심을 심판할 권한이 없다.”

이 논증은 정교분리의 가장 근본적인 논거 중 하나이다.

둘째, 교회는 순수해야 한다. 윌리엄스는 교회는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의 공동체여야 한다고 보았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정치 관련 투표권이 교회 회원에게만 주어지다 보니, 정치적 권리를 얻기 위해 진정한 회심 없이 형식적으로 교회에 가입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와 국가가 결합하면 교회가 필연적으로 타락한다고 보았다. 교회는 국가 권력을 빌려 사람들을 강제로 묶어 두는 기관이 아니라, 설득과 가르침과 기도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영국 왕은 원주민의 땅에 대한 권리가 없다. 매사추세츠 식민지는 영국 왕이 내린 인가장(charter)에 근거해 세워졌고, 그 인가장은 왕이 그 땅을 식민지 개척자들에게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이렇게 물었다. “왕이 어떻게 자기 소유가 아닌 땅을 다른 이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 땅의 정당한 소유자이며, 영국인들이 그 땅을 점유하려면 반드시 원주민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식민지의 법적·도덕적 기초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급진적인 발언이었다.

넷째, 양심의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윌리엄스는 설령 잘못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양심은 강제로 꺾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양심을 위해 자유를 요구한다. 카톨릭의 양심도, 유대인의 양심도, 투르크인(무슬림)의 양심도, 이교도의 양심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단지 내 양심의 자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

당시 기준으로는 이 발언 역시 극도로 급진적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류에는 어떤 권리도 없다고 믿었고, 진리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거짓은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양심의 자유는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오류를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교분리는 특정 교파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양심을 위한 보편적 원리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에게 양심의 자유는 기독교인들만의 특권이 아니었다. 그는 복음을 모르는 원주민들에게도 그들의 땅과 양심에 대한 천부적인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종교적 배타성을 넘어선 보편적 인권 의식의 표출이었다.

재판과 추방

매사추세츠 당국은 끝내 윌리엄스의 행보를 묵과할 수 없었다. 1635년 10월, 그는 총회에 소환되었다. 존 윈스롭 총독과 다른 지도자들이 그를 심문하며 말했다. “당신의 견해를 철회하십시오. 당신은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윈스롭은 개인적으로 윌리엄스를 아꼈기에, 그가 생각을 거두고 남아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단호했다.

“나는 내 양심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경의 가르침을 전했을 뿐입니다. 내가 옳지 않다면, 성경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옳다면, 나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결국 총회는 윌리엄스를 ‘새롭고 위험한 의견들을 퍼뜨리고, 정부와 교회의 권위를 거스른 죄’로 매사추세츠에서 추방하기로 결의했다. 처음에는 자비를 베풀어 아내가 임신 중임을 이유로 봄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했다. 단, 그 기간 동안 더 이상 자신의 견해를 유포하지 말라는 조건이 붙었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침묵할 수 없었고, 여전히 집으로 사람들을 맞아들이며 가르치고 토론을 이어 갔다. 마침내 당국은 인내심을 잃고, 그를 체포해 영국으로 강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광야에서의 14주

1636년 1월, 관리들이 윌리엄스를 체포하러 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친구들이 미리 소식을 전해 준 덕분이었다. 윌리엄스는 한겨울 폭풍 속으로 도망쳐 숲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 14주를 쫓겨 다녔습니다. 집도, 침대도, 빵도 없었습니다.”라는 그의 회고처럼, 그는 뉴잉글랜드의 혹독한 1월 추위를 아무 보호 없이 견뎌야 했다. 눈은 깊이 쌓여 있고 바람은 살을 에듯 불어오며, 기온은 연일 영하로 떨어졌다. 윌리엄스는 숲속을 헤매며 나무 아래에서 잠을 청하고, 얼어붙은 개울의 얼음을 깨서 물을 마시며, 손에 쥘 얼마 되지 않는 식량으로 버텼다.

광야에서의 이 경험은 그의 신학과 사상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14주 동안 그는 자연의 잔혹함 속에서 인간의 완전한 무력함을 체험했고, 동시에 원주민들의 친절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생생히 경험했다. 그 경험은 두 가지 확신을 그의 마음에 더욱 분명히 새겨 주었다.

첫째, 강제된 종교는 거짓이라는 확신이다. 광야에서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그가 맞닥뜨린 존재는 하나님과 자기 양심뿐이었다. 그 순간 국가의 법이나 교회의 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진정한 신앙은 양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며, 외부의 강제와 처벌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둘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서도 선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 윌리엄스를 살려 준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매사추세츠 당국이 아니라, 당시 ‘이교도’라 불리던 원주민들이었다. 기독교 사회를 자부하던 매사추세츠가 그를 한겨울 광야로 내쫓았고, ‘이교도’ 원주민이 그를 맞이해 살려 준 사건은 매우 역설적이다. 이 경험은 윌리엄스의 보편적 종교 자유 사상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

윌리엄스는 영국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매사추세츠에 머무는 동안에도 원주민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을 공정하게 대하려 애쓰며,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려고 했다. 이번에는 그들이 그에게는 은혜를 베풀었다. 워파노아그 족과 나라간셋 족의 추장들은 윌리엄스를 기꺼이 받아들여 먹을 것을 주고, 피난처를 제공하며,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윌리엄스는 원주민들을 단순한 ‘야만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로 보았고, 그들을 존중하며 복음을 전했다. 나중에는 원주민 언어 사전까지 편찬해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다.

프로비던스 - 최초의 정교분리 정착지

1636년 봄, 윌리엄스는 마침내 새로운 정착지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나라간셋 족 추장들에게 적당한 값을 지불하고 땅을 샀다. 그리고 그 땅을 ‘프로비던스’(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름 붙였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자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곧 아내 제인과 두 딸이 합류했고, 살렘에서 여러 가족이 뒤따라 왔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당시 그 어떤 정착지와도 달랐다. 윌리엄스는 공동체가 세워질 때부터 원칙을 분명히 선언했다. 프로비던스의 정부는 오직 ‘세속적 문제들’(civil things)만 다루고, ‘종교적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의 양심에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프로비던스의 운영 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윌리엄스는 토지를 ‘공동 소유’로 간주하되, 각 가정에 분배해 경작하게 했다. 정치적 결정은 ‘가장들의 모임’(town meeting)에서 다수결로 이루어졌다. 모든 가장에게 투표권이 주어졌고, 종교적 자격 조건은 전혀 없었다. 이는 교회 회원에게만 정치적 투표권을 부여했던 매사추세츠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세금은 오직 ‘시민적 사안’에만 사용되었고, 예배당 건축이나 목사 사례비 등 종교 목적에는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 각 개인은 자기 양심에 따라 종교를 선택하거나, 아예 선택하지 않을 자유를 가졌다. 윌리엄스 자신은 열정적인 침례교인이었지만, 프로비던스 주민에게 침례교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다. 진정한 정교분리였다.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굳게 가지면서도, 그 신앙을 국가의 법이나 세금으로 남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이 원칙은 실제로 다음을 의미했다. 예배 참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특정 교리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정치적 투표권은 신앙 여부와 무관하게 부여된다. 공직 진출에 어떤 종교적 자격도 요구하지 않는다. 교회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각 교회가 스스로 재정을 마련한다. 정부는 교회의 내적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혁명적인 원칙이었다. 유럽 어디에도 이런 체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1638년 - 미국 최초의 침례교회

프로비던스에 정착한 이후에도 윌리엄스는 성경, 특히 교회론과 침례 문제를 깊이 연구했다. 1638년경, 그는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라고 가르치는데, 아직 믿을 수 없는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행위는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그는 자신이 유아 때 받은 세례도 무효로 판단하여, 신자 침례를 다시 받기로 결심했다.

윌리엄스는 같은 신념을 가진 동료 이즈키엘 홀리만(Ezekiel Holliman)에게 자신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홀리만은 윌리엄스에게 침례를 주었고, 이어 윌리엄스는 홀리만을 포함해 약 10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이리하여 1638년 프로비던스에 세워진 이 교회는 오늘날까지 존재하며, ‘미국 최초의 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 in America)³로 불린다.

흥미로운 사실은, 윌리엄스가 이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약 4개월 만에 그는 교회를 떠났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가 사도적 계승 문제, 곧 “누가 처음에 우리에게 침례를 줄 자격이 있었는가”라는 문제로 마음이 흔들렸다고 보기도 한다. 윌리엄스는 자신을 ‘진리를 찾는 사람’(seeker)이라고 불렀다. 그는 아직 완전한 진리를 다 찾지 못했다고 겸손히 고백하며, 어느 특정 교파에도 최종적으로 안주하지 않았지만,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기꺼이 교제했다. 그가 떠난 뒤에도 교회는 계속 성장했고, 훗날 미국 침례교 운동의 중요한 씨앗이 되었다.

윌리엄스가 자신이 세운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의 정교분

3. 이 교회는 로드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 중심부에 위치하며, 18세기 후반에 현재의 회중 예배당 건물이 세워졌다(1775-1776). 초기에는 작은 목조 예배처에서 시작했으나 이후 미국 식민지 시대 건축의 대표적 침례교 예배당으로 발전해 오늘날까지 역사적 랜드마크로 보존되고 있다.

리 원리를 더욱 또렷하게 드러냈다. 그는 교회를 떠난 후에도 프로비던스 공동체의 시민 지도자로 활동했다. 특정 교파에 묶이지 않으면서도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다. 이는 시민적 의무와 종교적 소속이 본질적으로 별개라는 사실을 몸소 증명한 셈이다.

로드아일랜드는 이후 종교적 다양성의 모범이 되었다.

로드아일랜드 - 정교분리가 가능하다는 증거

프로비던스를 중심으로 여러 정착지가 생겨나면서 로드아일랜드 식민지가 형성되었다. 1638년, 매사추세츠에서 추방된 앤 허친슨(Anne Hutchinson)과 그 추종자들이 로드아일랜드 섬에 정착했고, 1639년에는 포츠머스 와 뉴포트가, 1642년에는 워릭이 세워졌다. 이 네 정착지가 합쳐져 로드아일랜드 식민지가 되었다.

1644년, 윌리엄스는 영국 의회로부터 로드아일랜드에 대한 인가장(charter)을 받아 냈다. 이 인가장은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자치권을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문서였다. 그 결과 로드아일랜드는 17세기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식민지가 되었다. 침례교인들과 퀘이커 교도들이 모여들었고, 유대인들도 이곳을 택했다. 1658년에는 뉴포트에 북미 최초의 유대인 회당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1763년에 투로 시나고그(Touro Synagogue)가 건축되었다. 이곳은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유대교 회당으로,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다. 1790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이 유대인 공동체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미국 정부는 종교에 대해 어떠한 편견도 행사하지 않으며, 박해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선량한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한, 그들의 양심과 예배는 정부의 간섭 밖에 있습니다.”

이 약속은 150년 전 로저 윌리엄스가 로드아일랜드에서 세운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퀘이커 교도들도 로드아일랜드에서 번성했다. 다른 식민지에서라면 교수형까지 당할 수 있었던 퀘이커 교도들이, 로드아일랜드에서는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심지어 공직에도 진출했다. 로드아일랜드의 여러 총독이 퀘이커 교도였다는 사실은, 윌리엄스가 세운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 원리가 실제 역사 속에서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 주는 생생한 증거이다.

다른 식민지들은 로드아일랜드를 ‘뉴잉글랜드의 하수구’, ‘온갖 오류의 쓰레기장’이라고 조롱했으나, 로드아일랜드는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번영했다. 네 정착지 중 뉴포트는 중요한 무역 항구로 성장했다. 이 작은 식민지가 증명한 바는 단순하지만 혁명적이었다. 교회와 국가를 분리해도 사회는 붕괴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종교들이 한 지역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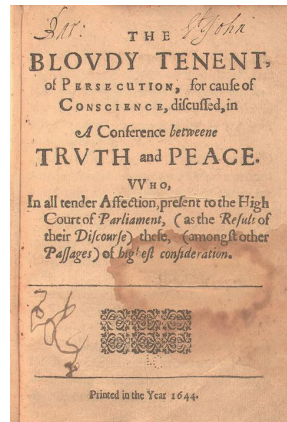
종교의 자유는 사회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힘이었다.

「피로 물든 박해의 교리」 - 정교분리의 대작

1644년, 윌리엄스는 런던에서 「피로 물든 박해의 교리」(*The Bloody Tenent of Persecution*)를 출판했다. 이 책은 ‘진리’와 ‘평화’라는 두 인물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종교적 박해를 정당화하는 모든 논리를 하나씩 해부하는 강력한 저술이었다.

그의 핵심 주장은 분명했다.

“양심의 강제는 양심의 강간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으므로, 양심은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영역이다. 정부나 교회가 양심에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짓밟는 짓이다. 박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순된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인내를 가르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며, 제자들이 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칼과 감옥과 교수대를 통해



「피로 물든 박해의 교리」

만들어진 ‘신자’는 진짜 신자가 아니라 위선자에 불과하며, 참된 신앙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윌리엄스는 마태복음 13장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인용했다. 많은 이들이 이 비유를 빌려 “가라지를 뽑아야 한다.”며 박해를 정당화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라.”(마 13:30)라고 말씀하셨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지 사람의 권한이 아니다. 윌리엄스의 해석은 어거스틴의 해석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제3장에서 보았듯이, 어거스틴은 누가복음 14장 23 절의 “강권하여 데려오라.”를 국가의 강제 개종 정책을 뒷받침하는 성경적 근거로 사용했다. 윌리엄스는 이를 반박하며 예수님의 비유가 국가의 강제가 아니라 인내를 가르친다고 주장했다. 주인(하나님)은 종들이 가라지를 뽑으려 할 때 “하지 말라.”라고 하였고,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셨다. 심판은 수확 때, 즉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 인간이 미리 가라지를 뽑으려 하면 반드시 알곡까지 함께 뽑히게 된다. 윌리엄스는 이를 오늘의 현실에 적용했다. 국가가 ‘이단’을 처벌하려 들면, 결국 참된 그리스도인들까지 함께 박해하게 된다. 이단과 정통을 완벽히 구분하는 일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국가는 종교적 판단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이 논증은 오늘날 한국에서 이단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매우 강력한 반론이 된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어린양의 참된 교회는 박해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의미이다. 이 책은 영국에서 곧바로 금서로 지정되었고, 의회는 책을 수거해 불태우라고 명령했다. 그럼에도 책은 비밀리에 계속 읽혔고, 윌리엄스의 사상은 점점 더 넓게 퍼져 나갔다.

윌리엄스의 유산과 미국 침례교의 확산

윌리엄스는 1683년, 약 80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는 부자가 아니었고 큰 정치권력을 잡은 적도 없었으며, 당대에 특별한 명성을 누리지도 않았다. 그의 장례식은 소박했고, 무덤의 위치조차 오늘날 분명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남긴 유산은 매우 컸다. 정교분리,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자 침례, 원주민의 권리 — 이 원리들은 처음에는 극소수만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더 많은 이들이 그 지혜를 깨닫기 시작했다.

윌리엄스가 세운 침례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다.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에 뉴잉글랜드 곳곳에 더 많은 침례교회들이 세워졌다. 1665년에는 윌리엄스를 추방했던 도시 보스턴에 침례교회가 세워졌다. 1707년에는 필라델피아에서 여러 침례교회 대표들이 모여 미국 최초의 침례교 협의회를 조직했다.

뉴잉글랜드 침례교 성장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아이작 백커스(Isaac Backus, 1724-1806)이다. 백커스는 코네티컷 출신으로, 18세기 대각성 운동의 영향 아래 회심한 뒤 회중교회에서 나와 침례교인이 되었다. 그는 매사추세츠에서 40년 넘게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

당시 매사추세츠에서는 여전히 회중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교회세가 부과되고 있었고, 침례교인들도 자신들이 속하지 않은 회중교회에 세금을 내야 했다. 백커스는 이 부당한 세금과 국가 교회 체제에 맞서 끈질기게 저항했다. 그는 수많은 청원서를 쓰고 팸플릿을 발행하며 법정에서 싸웠다. 1773년에는 대륙회의에 청원서를 제출해 종교의 자유가 미국 독립의 핵심 원리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커스는 '미국 종교 자유의 아버지' 중 한 사람으로 불리며, 그의 투쟁은 버지니아 침례교인들의 투쟁과 함께 수정 조항 제1조 탄생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18세기의 대각성 운동은 침례교 성장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조지 윗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와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 등 설교자들이 이끈 이 영적 부흥 운동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했다. 침례교가 강조해 온 신자 침례와 개인적 회심의 필요성은 부흥 운동의 핵심 메시지와 잘 맞았기 때문에 침례교회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대각성 운동은 1730년대에 시작되어 174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다. 이 운동의

중심에는 ‘새로운 탄생’(new birth), 곧 개인적 회심 경험이 있었다. 기존의 회중교회와 장로교회는 이 운동을 두고 찬성파인 ‘새로운 빛’(New Lights)과 반대파인 ‘오래된 빛’(Old Lights)으로 나뉘어 격렬히 논쟁했다. 이 과정에서 실망한 많은 신자들이 침례교로 이동했다. 침례교는 처음부터 회심을 교회 회원 자격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 왔기에, 대각성 운동의 신학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또한 대각성 운동은 기존 교회의 제도적 권위에 도전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새로운 빛’을 받은 설교자들은 전통적 성직자들의 회심 여부를 의심하며 대중에게 직접 복음을 호소했다. 이 반권위적 분위기가 침례교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1740년 이전 뉴잉글랜드에는 침례교회가 약 30개에 불과했으나, 35년 뒤 미국 독립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200개가 넘는 침례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처럼 윌리엄스가 프로비던스에서 시작한 작은 씨앗은 대각성 운동과 더불어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침례교와 종교 자유 운동의 거대한 숲으로 자라났다.

3. 버지니아 침례교의 투쟁

버지니아 - 성공회 국교 체제의 철응성

18세기 중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13개 식민지 가운데 가장 크고 부유하며 영향력이 막강했던 버지니아에서였다. 버지니아는 1607년 제임스타운에서 시작된 영국의 첫 성공적인 식민지였고, 17-18세기를 거치며 가장 번영하는 식민지가 되었다. 담배 농장이 막대한 부를 만들어 냈고, 노예 노동이 경제를 떠받쳤으며, 대농장주들이 사회를 지배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제임스 먼로 등 초기 미국 대통령 5명 가운데 4명이 버지니아 출신이었다.

버지니아의 국교 체제는 철저하고도 포괄적이었다. 1619년부터 법으로 확립된 이 체제 아래에서 모든 주민은 자동으로 성공회 교구에 속했다. 교회세(church tax)는 강제적으로 부과되어, 모든 주민이 성공회를 지원하기 위

해 세금을 내야 했으며 개인의 신앙 여부는 무관했다. 세금 납부를 거부하면 재산이 압류되었다. 성직자 임명은 지역 유력 지주들로 구성된 교구 위원회(vestry)가 담당했고, 성공회 예배 참석은 법적 의무였으며, 성공회가 아닌 집단이 예배를 드리려면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다. 공직 역시 성공회 신자에게만 열려 있었다.

성공회는 단지 하나의 교파가 아니라, 버지니아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제도였다. 성공회에 도전하는 행위는 단순한 종교적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회 질서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다. 바로 이 ‘국교의 철옹성’ 한복판에서 자유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성공회 성직자가 누린 특권과 지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구조가 선명히 드러난다. 버지니아의 성공회 사제는 식민지 정부로부터 ‘담배 16,000파운드’를 연간 급여로 지급받았다. 당시 버지니아에서 담배는 사실상 화폐 역할을 했기에 이는 적지 않은 수입이었다. 사제는 교구에 딸린 대농장, 곧 ‘글리브’(glebe)의 사용권도 가졌다. 교구 위원회는 지역 유력 대농장주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빈민 구제와 도로 유지 등 지방 행정의 핵심 기능을 수행했다. 즉, 성공회 교구는 종교 기관이자 지방 행정의 기본 단위였다. 이런 구조 아래에서 성공회 질서에 도전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이견을 넘어 정치·사회 구조 전체에 대한 도전이었다. 침례교에 대한 박해가 그토록 격렬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버지니아 국교 체제의 견고함은 구체적인 법 조항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1662년에 제정된 영국의 통일법(Act of Uniformity)은 모든 공적 예배가 성공회 기도서(Book of Common Prayer)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1663년에 제정된 다른 법은 부모가 아이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비국교도 목사가 허가 없이 설교하면 200파운드의 벌금과 투옥형이 뒤따랐다.

이 벌금은 당시 일반 노동자의 수년 치 임금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었다. 버지니아의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종교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은 철옹성 같은 법률 체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었다.

대각성 운동과 침례교의 등장

그러나 18세기 중반, 대각성 운동이 버지니아에 도달하며 상황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운동은 각 개인의 회심 경험을 강조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죄를 깨달으며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선포는 국교 체제의 안락한 틀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도전이었다.

버지니아에서 침례교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1750년대였고, 1760년대에 들어서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버지니아 침례교는 크게 ‘세퍼레이트 침례교’(Separate Baptists)와 ‘정규 침례교’(Regular Baptists)로 나뉘었다. 세퍼레이트 침례교는 뉴잉글랜드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은 계열로, 열정적이고 감정이 풍부한 예배와 설교가 특징이었다. 정규 침례교는 보다 절제되고 교리적으로 칼빈주의 색채가 강했다. 그러나 두 계열 모두 신자 침례, 회중 정치, 양심의 자유 등 핵심 침례교 원리들을 공유했다.

침례교가 버지니아에서 빠르게 성장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성공회 예배가 형식적이고 의례 중심이었다면, 침례교 설교는 직접적이고 생생했으며 회심을 향해 양심을 찌르는 선포였다. 침례교는 신자 침례를 통해 교회 회원이 되는 과정을 매우 진지한 개인의 결단으로 만들었다. 계급적인 성공회에 비해 침례교는 평등을 강조했다. 대농장주와 소작농이 나란히 앉았으며, 심지어 흑인 노예들도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될 수 있었다. 침례교 목사들 역시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농부와 장인이 많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침례교는 회중 정치를 실천했다. 모든 교회 회원이 목사 선택, 새 회원 수용, 권징 시행, 교회 정책 결정에 참여했다. 이는 매우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구조였다. 예배는 자유로웠다. 성도들은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쁨과 눈물로 하나님께 화답했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하면서 1760년대 초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침례교가 1770년대 초에는 수십 개의 교회와 수천 명의 회원을 가진 큰 운동으로 성장했다.

침례교의 성장은 단지 종교적 운동이 아니라, 사회적 혁명이기도 했다. 버지

니아의 성공회는 대농장주와 지주 계급의 교회였다. 교구 위원회는 부유한 지주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목사는 그들의 후원에 크게 의존했다. 반면 침례교는 가난한 소작농과 하층민, 심지어 노예들까지 포용했다. 침례교 모임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은 의자에 앉았고, 백인과 흑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는 버지니아의 엄격한 사회적 위계질서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었다. 지배 계층이 침례교를 단순한 교리적 이탈이 아니라, 사회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위협으로 인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침례교가 가져온 사회적 혁명의 구체적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침례교는 흑인 노예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당시 성공회는 노예의 영적 상태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침례교 설교자들은 흑인과 백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임을 열었다. 일부 침례교회에서는 흑인이 침례를 받고 정식 교회 회원이 되었고, 드물게는 흑인 설교자도 등장했다. 이는 버지니아의 인종 질서를 뒤흔드는 급진적 변화였다.

둘째, 침례교는 여성의 역할을 확대했다. 침례교회에서 여성은 여성들의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공개적으로 간증하며, 교회 규율과 중요한 결정에 투표할 수 있었다. 이는 남성 중심 구조였던 성공회와 대조적이었다.

셋째, 침례교는 교육받지 못한 평민 설교자를 목사로 세웠다. 성공회 사제는 대부분 대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지만, 침례교 목사는 농부·장인 출신이 많았다. 이는 기존 사회적 위계와 문화적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기득권층의 불안을 자극했고 박해의 강도는 점점 높아졌다.

박해의 시작 - 법의 이름으로

침례교의 급성장은 버지니아 지배층의 경계심을 극도로 불러일으켰다. 성공회 성직자들은 침례교를 ‘광신적이고 무지한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침례교는 기존 권위 구조를 위협하는 운동으로 비쳤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설교는 사회적 계급 질서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회중 정치는 정치적 민주주의 요구로 연결될 수 있었으며, 국교 체제 거부는 정부 권위 자체를 약화하는 행위로 인식되었다.

버지니아 당국은 침례교를 억압하기 위해 ‘허가법’을 적극 활용했다. 성공회가 아닌 집단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많은 침례교인들은 이 허가 제도 자체를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들은 예배드릴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었기에, 사람의 허가를 전제 조건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허가 없이 예배를 드렸고, 그 결과 체포되었다.

감옥에 갇힌 목사들

1768년부터 1776년까지 약 8년 동안, 최소 30명의 침례교 목사들이 버지니아에서 투옥되었다. 그들의 공식 죄목은 ‘무허가 설교’였다.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앞으로 설교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면 석방해 주겠다.”라고 제안했으나, 대부분 단호히 거절했다.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그러므로 설교를 멈출 수 없습시다.”

1768년 스포트실베이니아 카운티에서 있었던 재판 장면은 특히 유명하다. 존 월러(John Waller), 루이스 크레이그(Lewis Craig), 제임스 차일즈(James Childs) 등 다섯 명의 침례교 목사가 체포되어 법정에서 싸웠다. 기소장에는 “이들은 이 식민지의 평화를 교란하는 자들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재판관이 “설교를 그만두겠다고 서약하면 석방하겠다.”라고 말하자, 월러는 이렇게 대답했다. “재판관님, 저는 설교를 그만둘 수 없습시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들에게 각각 다른 기간의 감옥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 소식은 버지니아 전역으로 퍼져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는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침례교 목사들을 변호하게 했다. 그는 변론에서 “이 사람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입니까?”라고 물었다고 한다.

18세기 감옥은 어둡고 축고 습하며, 쥐와 벌레가 들끓는 곳이었다. 각종 질병이 만연했고 음식은 형편없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환경에서조차 침례교 목사들은 설교를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감옥 창살 사

이로 밖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소문이 퍼지자 감옥 담장 밖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어떤 날에는 일반 교회 예배보다 감옥 창살 옆에서 전하는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이 더 많았다.

투옥된 침례교 목사들의 이야기는 무수히 전해진다. 제레마이아 워커(Jeremiah Walker)는 1774년 체스터필드 카운티(Chesterfield County)에서 투옥되었다. 그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생계 위기에 처했지만, 워커 역시 “설교를 중단하겠다.”라고 서약을 하면 석방해 주겠다는 제안을 거부했다. 동일한 감옥에 존 웨더포드(John Weatherford)도 약 5개월 동안 갇혀 있었다. 건강은 크게 악화되었지만 그는 감옥 밖에 모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설교했다. 이 ‘감옥 설교’가 오히려 침례교의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되었다. 감옥에 갇힌 목사가 창문 너머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호기심과 감동으로 모여들어 그 설교를 들었다. 박해가 오히려 전도의 도구가 되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터툴리안의 말이 18세기 버지니아에서도 그대로 증명되고 있었다.

제임스 아일랜드 - 독극물 공격을 견디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젊은 목사였던 제임스 아일랜드(James Ireland, 1748-1806)는 열정적인 설교로 많은 이들이 회심하도록 도왔다. 1769년 컬페퍼 카운티(Culpeper County)에서 체포되어 투옥된 그는, 감옥 창살 사이로 밖에 모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설교를 전했다. 이런 그의 모습에 분노한 성공회 지지자들은 그를 저지하기 위해 애썼다. 어느 날 그들은 감옥으로 찾아가 유황과 인도 고추를 불에 태워 독한 연기를 만들어 감옥 창살 사이로 밀어 넣었다. 아일랜드를 질식시키거나 병들게 해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였다. 아일랜드는 그때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독한 연기가 감방 안으로 들어왔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이 타는 듯했고,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 주셨습니다.”

결국 그는 살아남았고,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다시 설교하기 시작했다.

아일랜드는 석방된 후에도 쉬지 않고 설교를 계속했고, 시간이 흘러 버지니아 침례교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가 남긴 자서전 「제임스 아일랜드의 생애」(*The Life of the Rev. James Ireland*, 1819)는 버지니아 침례교 박해사를 보여 주는 가장 생생한 1차 사료 중 하나이다. 그 책에 기록된 독극물 공격, 감옥 생활, 그리고 믿음의 승리 이야기는 후대 침례교인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존 월러 - '채찍질당한 존'

성공회 신자였던 존 월러(John Waller, 1741-1802)는 욕설과 방탕으로 인해 '욕쟁이 잭'(Swearing Jack)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사람이었다. 술과 도박을 즐기며 침례교인들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것을 낙으로 삼던 그는, 침례교 설교자를 고발하기 위해 집회에 갔다가 복음을 듣고 마음이 꺾여 극적으로 회심하였다. 침례를 받고 목사가 된 그는 이후 투옥과 채찍에도 굴복하지 않고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그가 개척한 교회만도 수십 개에 이르렀다. 사도 바울의 회심을 연상시키는 이 이야기는 버지니아 침례교인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졌다. 한때 침례교의 가장 격렬한 적이었던 사람이 가장 헌신적인 목사가 된 것이다. 이는 복음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 줄 뿐 아니라, 양심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 잘 보여 준다. 만약 월러에게 그 침례교 집회에 '갈 자유'가 없었다면, 그의 회심도 없었을 것이다.

1771년, 월러가 야외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성공회 지지자들이 들이닥쳐 그를 폭행했다. 그들은 그를 땅에 내던지고 채찍으로 마구 후려쳤다. 그의 등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었고 군중은 공포에 질려 흩어졌다. 그러나 월러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다시 일어나 설교를 이어 갔다.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조금 고통받는다 한들, 그것이 대수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그를 '채찍질당한 존'(Whipped John)이라고 불렀으며, 이 별명은 조롱이 아니라 존경의 표시였다.

크레이그 형제

루이스 크레이그(Lewis Craig)와 그의 형 일라이저 크레이그(Elijah Craig)는 모두 침례교 목사였다. 이들은 1768년 오렌지 카운티에서 함께 체포되어 수개월 동안 투옥되었다. 감옥에서 두 형제는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기도했고, 감옥 창문을 통해 밖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했다. 어머니가 감옥으로 찾아와 울면서 아들들을 바라보자, 루이스는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하며 말했다.

“어머니, 우리를 위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있어요.”

이런 장면들은 당시 침례교 신앙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살아 있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폭력과 모욕 - 법 밖의 박해

감옥형만이 침례교인들이 겪은 고난의 전부는 아니었다. 야외에서 침례를 행할 때면 폭도들이 몰려와 돌을 던지고 막대기로 위협하며, 물로 들어가 목사를 붙잡아 흔들기도 했다. 실내 예배도 안전하지 않았다. 예배 중에 폭도들이 예배당에 들이닥쳐 창문을 깨고 문을 부수며 모임을 방해했다. 침례교 여성들은 길을 지나다 “광신자!”, “이단!”이라는 조롱을 들었고, 진흙이나 오물을 뒤집어쓰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해의 효과는 박해자들의 의도와는 정반대였다. 폭력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침례교 신앙의 진정성을 확신시켰다. “저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으면 서도 신앙을 지킨다면, 그들의 믿음은 진짜임이 틀림없다.”

침례교인들은 박해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다. 대신 조직적인 청원 운동으로 대응했다. 버지니아 침례교 총회(General Association)는 체계적으로 청원서를 작성해 서명을 모으고, 식민지 의회와 이후 주 의회에 제출했다. 1770년대에 침례교가 제출한 청원서는 수십 건에 달한다. 청원서의 논조는 “우리는 국왕과 정부에 충성합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고 법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유만을 원할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자연적 권리입니다.”로 일관되었다. 이 청원 운동은 두 가지 중

요한 효과를 낳았다. 첫째, 침례교의 입장과 고난이 버지니아 사회 전반에 알려졌다. 둘째, 제임스 매디슨과 토마스 제퍼슨 같은 계몽주의적 정치 지도자들이 침례교의 주장에 공감하고 동맹자로 나서게 되었다. 침례교의 이 ‘청원 전략’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분명한 교훈을 준다. 박해와 부당한 법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폭력이 아니라, 근거 있는 논리와 헌법적 원리에 기반한 합법적·체계적 호소에 있다는 사실이다.

제임스 매디슨 - 한 청년의 각성

침례교인들을 박해하는 현장을 지켜본 이들 가운데 한 젊은이가 있었다.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1751-1836, 미국 제4대 대통령)은 버지니아의 명문 가문 출신으로 프린스턴 대학(당시 뉴저지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고, 뛰어난 지성과 깊은 사색으로 정평이 난 청년이었다. 1768년 당시 17세였던 매디슨은 오렌지 카운티(Orange County)의 가족 농장에서 살고 있었고, 바로 그 카운티에서 여러 침례교 목사들이 체포되어 투옥되는 사건을 가까이에서 목격했다. 1774년 1월, 매디슨은 대학 친구 윌리엄 브래드퍼드에게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젊은 매디슨의 분노와 확신을 잘 보여 준다.

“여기 버지니아에서는 지옥 같은 원칙이 여전히 만연해 있네. 대여섯 명의 정직한 침례교 목사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 그들의 죄는 자기 양심에 따라 설교했다는 사실뿐이라네. 이러한 악마적이고 잔인한 광경을 보니 내 영혼이 분노와 치욕으로 가득 차 버렸지. 자유와 권리에 관해 그토록 많이 말하고 글을 쓰면서도, 우리 이웃의 양심을 이렇게 짓밟는다니! 이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피가 끓어오른다네!”

이 경험은 매디슨의 평생 사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때 그는 종교의 자유가 모든 자유의 기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매디슨이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침례교 박해를 눈앞에서 본 경험만이 아니었다. 프린스턴 시절의 교육도 큰 역할을 했다. 당시 총장이었던 존 위더스푼(John Witherspoon)은 스코틀랜드 출신 장로교 목사로, 독립선언

서에 서명한 유일한 성직자였다. 그는 학생들에게 자연법 사상과 저항권 이론을 가르치며, 양심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권으로 설명했다. 매디슨은 위더스푼의 영향 아래 ‘양심의 자유는 정부가 부여하는 특혜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주신 선천적 권리’라는 사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에게 결정적인 인상을 남긴 것은 교실에서 배운 이론이 아니라, 고향 버지니아에서 직접 목격한 현실이었다. 감옥 창살 너머로 복음을 전하는 침례교 목사의 모습이 청년 매디슨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이론과 현실이 만나면서 그의 확신은 흔들림 없이 굳어졌다. 훗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양심은 인간이 소유한 가장 성스러운 권리이다. 양심은 정부가 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정부가 빼앗을 수도 없다. 양심은 창조자께서 각 개인에게 직접 주신 선물이다.”

이 확신이 중요한 까닭은, 매디슨이 나중에 미국 헌법의 핵심 설계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17세 청년이 버지니아 감옥 앞에서 받은 충격이, 약 23년 후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라는 조문으로 결실을 맺었다. 역사의 전환점은 종종 한 사람의 양심에서 시작된다. 매디슨은 침례교인이 아니었다. 그는 성공회가 정에서 자랐고, 프린스턴에서 전통적인 장로교 교육을 받았지만 침례교인들이 당하는 박해를 목격한 후, 종교의 자유가 모든 자유의 토대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신학적으로 서로 다른 이들이 양심의 자유라는 공통의 원리를 위해 함께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매디슨과 침례교인의 관계가 잘 보여 준다.

4. 존 릴랜드와 제임스 매디슨의 협력

독립 전쟁과 침례교의 기회

1775년, 미국 독립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버지니아 정부는 더 이상 국교 체제를 예전처럼 엄격하게 집행할 여유가 없었다.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이때 침례교인들이 분명히 애국자 편에 섰다는 사실이다. 많은 침례교 목

사들이 군종 목사(chaplain)로 복무했고 침례교 청년들이 실제 전투에 참여했다. 버지니아 지도부는 침례교의 이러한 지원을 환영하며 박해를 완화하고 일부 수감자들을 석방했다.

침례교인들이 독립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는 단순한 정치적 동기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영국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영국 국교회 체제의 명에서 벗어남을 의미했다. 영국 왕은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었으므로 왕의 권위가 약화되면 국교회의 특권도 함께 흔들릴 수 있었다. 따라서 침례교에게 독립 전쟁은 정치적 자유만이 아니라 종교적 자유를 쟁취할 절호의 기회였다. 실제로 많은 침례교인들이 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여했다. 전쟁 후 이들은 “우리는 독립을 위해 피를 흘렸다. 이제 우리의 종교적 권리도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논리로 정치적 발언권을 키웠다.

침례교는 일시적 관용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전쟁이 끝나면 언제든지 국교 체제가 다시 강화되고 박해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 그래서 침례교는 ‘영구적인 종교의 자유’를 헌법과 법률 속에 새겨 넣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청원의 폭풍

1776년 버지니아는 독립을 선언한 뒤 새로운 주 헌법과 권리 장전을 작성하고 있었고, 침례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조직적인 청원 운동을 펼쳐 버지니아 곳곳의 침례교회들이 청원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청원서들은 하나둘로 그치지 않고 폭풍처럼 밀려들었다.

청원서들의 요구는 명확하고 일관되었다.

1. 국교 체제를 폐지하라. 어떤 교회도 법적으로 다른 교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
2. 교회세를 폐지하라. 누구도 자신이 믿지 않는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된다.
3. 모든 교파에 평등한 시민권을 부여하라.

4. 양심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라.
5. 종교적 이유로 차별하거나 자격을 제한하지 말라.

이 청원서들에는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이 서명을 했다. 침례교인들뿐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웨이커 교도 등 다른 비국교도들도 서명을 통해 침례교의 요구에 힘을 보탰다. 이 연합 전선은 국교 체제를 지키려는 성공회 측에 큰 압박이 되었다. 침례교의 청원 운동은 나중에 제임스 매디슨과 존 릴랜드 사이의 협력으로 이어지며, 버지니아 종교자유법(1786)과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1791)라는 결실로 이어진다.

제퍼슨 - 이성의 빛으로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다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 미국 제3대 대통령)은 이미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는 계몽주의 사상가로서 이성을 신뢰했고, 어떤 형태의 종교적 강제도 폭정으로 보았다.

그의 종교관은 복잡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 교사로 존중했으나 그분의 신성과 기적은 믿지 않았다. 이처럼 제퍼슨은 침례교인들과 신학적으로 매우 달랐다. 침례교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대속을 확고히 붙잡는 복음주의 신앙이었으나, 제퍼슨은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었고 기적에 회의적이었으며 이성주의적이었다. 그럼에도 종교의 자유라는 원칙에 있어서만큼은 둘이 완전히 일치했다. 제퍼슨은 침례교가 박해받는 현실에 분노했고, 침례교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 헌신한 제퍼슨에게 감사했다.

제퍼슨의 종교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독특함이 드러난다. 그는 전통적 기독교 교리, 특히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기적, 부활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에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도덕적 가르침만을 발췌해 엮은 이른바 「제퍼슨 성경」(Jefferson Bible)을 만들었는데, 이 책에서는 모든 기적과 초자연적 사건이 삭제되어 있다. 침례교인의 관점에서 제퍼슨의 신학



토마스 제퍼슨

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릴랜드를 비롯한 침례교 지도자들은 그와의 협력을 주저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첫째, 정교분리의 원리가 옳다고 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완전한 신학을 갖출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2 더하기 2가 4라는 진리는 누가 말하든 진리이다. 둘째, 침례교인들은 자기 신앙의 순수성과 복음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의 보호 없이도, 심지어 신학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적 원리를 위해 일하더라도 복음 자체는 결코 위협받지 않는다고 믿었다.

제퍼슨은 말년에 “나와 침례교인들은 많은 교리 문제에서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라는 위대한 원칙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라고 회상했다.

버지니아 권리 장전 - 첫 번째 승리

1776년 6월, 버지니아는 새로운 주 헌법과 함께 ‘버지니아 권리 장전’을 채택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권리 장전이었고, 훗날 연방 헌법 권리 장전(Bill of Rights)의 직접적인 모델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임스 매디슨이 종교 조항 문구를 다듬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초안은 조지 메이슨(George Mason, 1725-1792)이 작성했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은 종교를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충분한 관용을 누려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었다. 그러나 매디슨은 ‘관용’(toleration)이라는 단어에 강하게 반대했다. 관용이라는 단어는 마치 정부가 종교를 통제할 권리가 있지만 너그럽게 봐준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다. 매디슨은 종교의 자유는 정부가 베푸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라고 확신했다. 매디슨은 수정안을 제안했고, 적지 않은 논쟁 끝에 다음과 같은 최종 문구가 채택되었다.

“종교, 즉 우리가 창조자에게 지는 의무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은 오직 이성 과 확신에 의해서만 지도될 수 있으며, 강제나 폭력으로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양심의 명령에 따라 종교를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는 중요한 첫 승리였다. 버지니아가 공식 문서에서 종교의 자유를 ‘관용’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로 선언했다. 그러나 이 선언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권리 장전이 종교의 자유를 원칙으로 천명했음에도 실제로는 성공회를 위한 국교 체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교회세도 계속 징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0년의 투쟁 – ‘일반 세금’ 논쟁

1776년부터 1786년까지 10년 동안, 버지니아에서는 종교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정치 투쟁이 이어졌다.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처럼 영향력 있는 지도자는 일종의 절충안을 제안했다. 특정 교파 하나만 특권을 누리는 국교 체제는 폐지하되, ‘모든 교파를 평등하게 대우하면서’ 정부가 모든 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와주자는 제안이었다. 납세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교파를 지정해 세금을 내게 하는 이 제도를 ‘일반 세금’(general assessment)이라 불렀다. 겉으로 보기에 이 제도가 공평한 듯 보였다. 그러나 매디슨과 침례교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으며,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가 종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순간, 곧 종교에 간섭하고 통제할 명분도 얻게 된다. 돈이 들어간 곳에 손이 들어간다. 재정 지원은 결국 교리와 인사, 설교 내용에 대한 정부 간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 근본적으로, 참된 종교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교회는 신자들의 자발적 헌신과 헌금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교회와 목사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치적 편의와 여론을 따르게 된다.”

패트릭 헨리의 논리도 나름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유지하기 위해 종교가 필요하고,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논리는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사회 도덕의 토대이니, 국가가 교회를 지원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반복되고 있다. 헨리의 법안은 조지 워싱턴, 존 마셜 등 유력 인사들의 지지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큰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이처럼 ‘기독교 국가를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재정 지원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논리는 달콤했다.

이 위기에서 매디슨과 침례교가 손을 맞잡고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지성적 논리만으로는 부족했다. 수만 명의 침례교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필요했고, 바로 이때 등장한 인물이 ‘거인’ 존 릴랜드 목사였다.

매디슨의 「기념과 항의」- 결정적 반격

1785년 버지니아 의회에 제출된 이른바 ‘일반 세금’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 위기의 순간에 매디슨이 나섰고, 그는 익명으로 팸플릿 「종교의 자유에 관한 기념과 항의」(Memorial and Remonstrance)를 작성했다. 이 글은 이후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가장 강력하고 명료한 논증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매디슨이 주장한 반론의 핵심은 “종교가 국가의 지원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말은 종교를 모독하는 것과 같다.”였다.

이와 함께 “종교에 단 일 페니(penny)의 세금이라도 투입되는 순간, 양심의 자유는 무너진다.”라는 그의 논리는 정교분리의 정수를 담고 있었다. 기독교는 초대 300년 동안 국가의 보호는커녕 혹독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성장했고, 콘스탄티누스 이후 1,500년의 역사는 국가의 지원이 오히려 교회를 타락시켰음을 보여 준다는 것이었다. 이는 제3장에서 살펴본 국가 교회 역사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 날카로운 통찰이었다. 매디슨은 이 글에서 15개 항으로 논리를 전개했는데,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는 창조자와 개인 사이의 문제이다. 사람은 정부를 구성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정부는 그 관계를 규제할 권리가 없다.

둘째, 종교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필연적으로 소수를 억압하게 된다.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종교를 지원·선별할 권리를 허용하면 언제든 다수가 소수를 누르는 종교적 폭정으로 이어진다.

셋째, 역사를 돌아보면 종교적 강제는 기독교에 재앙이었다. 15세기 동안 기독교의 법적 확립은 기독교를 순화하기는커녕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오히려 성직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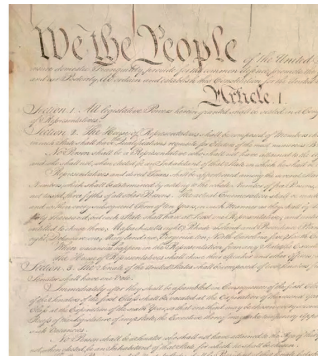
교만과 게으름, 타락과 부패뿐만 아니라 신자의 무관심과 노예근성을 드러냈다. 넷째, 진정한 종교는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초대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성장했으며, 오히려 국가의 지원이 교회를 상하게 했음을 역사가 증명한다.

다섯째, 종교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의 토대이다. 정부가 사람의 양심을 통제할 수 있다면, 정부가 통제하지 못할 영역은 더 이상 남지 않는다.

매디슨 논증의 핵심은 종교 강제가 단지 시민의 자유를 해칠 뿐 아니라 종교 자체를 망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데 있었다. 이는 로저 윌리엄스의 '정원과 황무지' 비유와 동일한 관점으로, 국가의 보호는 교회를 정결하게 지켜주기보다 오히려 세속화와 타락을 촉진한다는 것이었다. 매디슨은 아울러 역사적 관찰을 근거로, 종교의 자유가 사회적 평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국교가 있는 나라에서는 종교 전쟁과 박해가 끊이지 않았으나, 다양한 종교를 허용한 나라에서는 오히려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제1장에서 정리한 정교분리의 정의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 팸플릿은 버지니아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매디슨의 친구들과 침례교 지도자들이 조직적으로 이를 배포했고, 수천 명이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다. 그 결과, 통과가 거의 확실해 보이던 '일반 세금' 법안은 결국 부결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존 릴랜드(John Leland, 1754-1841)였다. 매사추세츠 출신인 그는 1776년부터 1791년까지 약 15년 동안 버지니아에서 침례교 목사로 사역했다. 또한 버지니아 침례교의 대표적 지도자로서 매디슨과 제퍼슨 모두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미국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과 그의 책 「종교의 자유에 관한 기념과 항의」

릴랜드의 종교 자유 사상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이었다. 그는 “정부는 유대인이든 이교도이든 투르크인(무슬림)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노예 제도에 반대하고 교회가 세속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의 날 선 비판은 다음 한마디에 응축되어 있다. “정부가 종교를 지원할 때, 종교는 정부의 창녀가 된다.” 거칠지만 핵심을 찌르는 표현이다.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교회는 결국 국가에 예속되어 대언자적 사명을 잃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 릴랜드는 자신의 확신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는 교회마다 청원서를 작성하게 하고 성도들을 직접 동원했으며, 그 열정적인 조직력으로 ‘일반 세금’ 법안 저지에 결정적인 힘을 보탰다.

1786년 - 버지니아 종교자유법

‘일반 세금’ 법안이 무산되자 매디슨은 곧바로 움직였다. 그는 7년 전 토마스 제퍼슨이 작성했으나 당시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바로 ‘버지니아 종교자유법’(Virginia Statute for Religious Freedom)이었다. 1779년에는 거센 반대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했다.

1786년 1월, 버지니아 의회에서 이 법안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보수파는 “종교에 대한 모든 정부 지원을 없애면 종교가 쇠퇴하고 사회가 도덕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매디슨은 침례교와 다른 비국교도들의 폭넓은 지지를 등에 업었고, 마침내 16일 버지니아 의회는 이 종교자유법을 통과시켰다.

법의 전문은 제퍼슨 특유의 분명한 문장으로 시작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정신을 자유롭게 창조하셨다. 정신을 강제로 억누르려는 모든 시도는 폭정을 낳을 뿐이다. 위선적이고 비열한 자들에게 교회나 국가의 권력을 넘겨주면, 그들은 이 권력을 종교 자체를 파괴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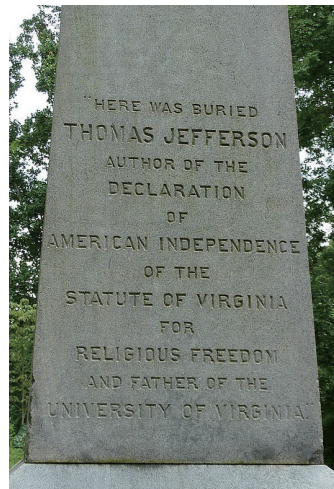
핵심 조항 역시 간결하지만 매우 분명하다.

1. 누구도 어떤 종교적 예배나 모임, 사역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된다.
2. 이를 이유로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종교적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자유가 제한되거나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법은 교회세 폐지, 국교 체제 해체, 종교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 금지, 완전한 종교 자유 보장을 의미했다. 정교분리를 명시적으로 법제화한 첫 입법이었기 때문에 세계사적 사건이나 다름없었다.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법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가가 종교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한 법이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종교적 관용을 허용한 법은 있었다. 1689년 영국의 관용법(Toleration Act)과 1663년 로드아일랜드 왕실 헌장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 법들은 어디까지나 국왕과 국가가 참아 주는 ‘관용’에 불과했다. 관용은 은혜이며, 은혜는 줄 수도 있고 언제든지 거둬갈 수도 있다.

반면,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은 종교의 자유를 ‘자연적 권리’(natural right)로 선언했다. 권리는 은혜가 아니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 ‘관용에서 권리로’의 전환이 이 법의 혁명적 의미이다. 법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놀랍다. 이 법에 반하는 어떤 입법도 자연권 침해가 될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사실상 미래의 의회조차 이 권리를 뒤집을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다수결로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정책이 아니라, 의회 권한 바깥에 있는 불가침의 권리라는 뜻이다. 이것은 한국



토마스 제퍼슨의 묘비

헌법 제37조 제2항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원리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제퍼슨은 이 법을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그는 자신의 묘비에 단 세 가지만 기록하라고 유언했다.

“여기 토마스 제퍼슨이 잠들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저자이자 버지니아 종교 자유법의 저자이며 버지니아 대학교의 설립자.”

그는 자신이 제3대 대통령으로 8년 동안 미국을 통치하였다는 사실은 굳이 적지 말라고 했다. 그만큼 종교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한 일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

릴랜드와 매디슨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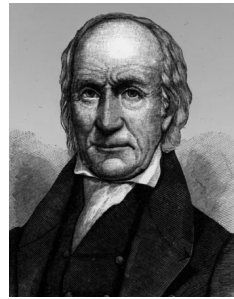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헌법 제정 회의가 열렸을 때, 제임스 매디슨은 헌법의 핵심 설계자로 활약했다. 그러나 원래 헌법 초안에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었다. 침례교인들은 이를 크게 우려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지 않으면, 미래의 정부가 종교를 억압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다.

헌법이 각 주에서 비준을 앞둔 시점에, 침례교는 분명한 조건을 내걸었다. “헌법에 개인의 권리 장전을 추가하라. 그리고 그 권리 장전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라.” 1788년 3월, 릴랜드는 매디슨을 직접 만났다. 매디슨은 버지니아 헌법 비준 회의 대표로 선출되기 위해 출마해 있었고, 릴랜드 역시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를 고려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오렌지 카운티의 한 교회 근처—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한 참나무 아래—에서 만나 몇 시간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릴랜드는 매디슨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침례교인들은 헌법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헌법 어디에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조항이 없으니 우려가 큼니다. 만약 당신이 권리 장전을 추가해 종교의 자유를 분명히 명시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당시 선거 배경을 보면 이 만남의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매디슨이 버지니아 비준 회의 대표로 나섰을 때,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가 바로 릴랜드였기 때문이다.



존 릴랜드, 정교분리를 이룬 침례교 목사

릴랜드는 침례교인들 사이에서 절대적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다, 그 지역에는 침례교인이 많았다. 릴랜드가 실제로 출마하면 매디슨이 낙선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하여 성사된 이른바 ‘참나무 아래의 만남’에서 릴랜드는 매디슨에게 권리 장전 약속을 요청했다.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 침례교 목사와 합리주의 정치인이, 신학적으로는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자유라는 한 원리를 위해 손을 잡은 장면이다. 이것이 정교분리의 고귀함이다. 정교분리는 특정 교파의 신학에 갇힌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진 양심의 자유를 위한 보편적 원리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신학을 가진 사람들도 이 원리 위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매디슨은 처음에는 권리 장전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양피지 위의 장벽’이 실제로 자유를 지켜 주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릴랜드와의 대화, 그리고 버지니아 침례교인들의 강력한 요구를 직접 확인하면서 생각을 바꾸었다. 그는 릴랜드에게 약속했다. “만약 내가 선출된다면, 권리 장전을 추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그 권리 장전의 첫 번째 조항 중 하나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만남 이후 릴랜드는 출마를 포기하고 매디슨을 지지했다.

침례교인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매디슨은 버지니아 대표로 선출되었고, 버지니아는 결국 헌법을 비준했다.

1791년 -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의 탄생

1789년 봄, 연방 하원의원이 된 매디슨은 곧바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버지니아 권리 장전과 버지니아 종교자유법,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침례교 박해와 그에 맞선 투쟁에서 영감을 얻어 권리 장전 초안을 작

성해 하원에 제출했다.

의회는 매디슨의 초안을 토대로 여러 차례 논의와 수정을 거쳤고, 최종 문구를 만들어 주 헌법 비준에 회부했다. 1791년 12월 15일, 첫 10개 수정 조항이 비준되면서 미국 연방 헌법 권리 장전(Bill of Rights)이 효력을 갖게 되었다. 그 가운데 맨 앞에 놓인 수정 조항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이 45개 단어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조항은 종교에 대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장한다.

첫째, 국가는 어떤 종교도 ‘국교’로 세울 수 없다(국교 설립 금지 조항, Establishment Clause).

둘째, 국가는 어떤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도 금지할 수 없다(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 Free Exercise Clause).

이 두 조항이 함께 작동하면서, 국가가 종교를 세울 수도, 종교의 자유 실행을 금지할 수도 없도록 만드는 완전한 정교분리가 법적으로 구현되었다.

이는 1525년 재침례파에서 시작해, 로저 윌리엄스, 토마스 헬위스, 아이작 백커스, 존 릴랜드,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침례교인들이 투옥과 채찍과 피로 쌓아 올린 266년 투쟁의 결실이었다. 이 조항은 이후 230년 넘게 미국 교회와 복음 전파의 자유를 지키는 법적 방패가 되었다. 다음 장에서 그 구체적 의미와 역사적 적용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침례교의 승리 - 266년 투쟁의 결실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의 비준은 침례교에게 역사적 승리였다. 1525년 취리히에서 재침례교가 처음 정교분리를 주장한 이래 266년이 흘렀다. 만츠가 림마트 강에서 의사형을 당한 이후, 사틀러가 화형을 당한 이후, 헬위스가 뉴게이트 감옥에서 죽은 이후, 번연이 12년간 감옥에 갇혀 있던 이후, 윌리엄스가 매사추세츠에서 추방된 이후,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위해 고통을 감수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이 마침내 열매를 맺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한 266년 투쟁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실감할 수 있다.

1525년 — 취리히에서 신자 침례가 사형죄로 규정됨

1527년 — 만츠가 의사형, 사틀러가 화형을 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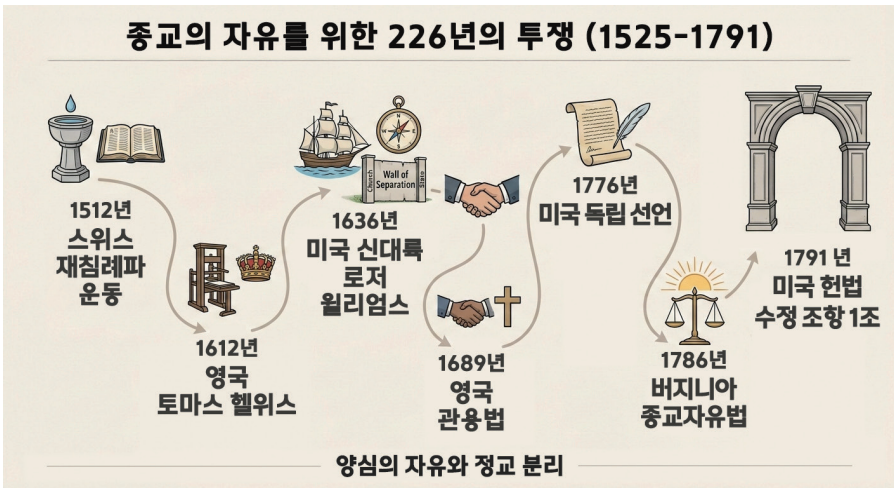
1530년대 — 수천 명의 재침례교인들이 순교함

1612년 — 헬위스가 감옥에서 사망함

1660-1688년 — 영국에서 수천 명의 비국교도가 투옥됨

1635년 — 윌리엄스가 추방됨

1768-1776년 — 버지니아에서 30명 이상의 침례교 목사가 투옥됨



이 긴 고난의 역사를 지나, 1791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었다. 이 승리의 의미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가 종교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선언한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콘스탄티누스 이래 1,478년 만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재설정된 것이다. 릴랜드 목사는 제퍼슨과 매디슨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우리 침례교인들은 이 위대한 업적에서 제퍼슨과 매디슨의 역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신학적으로 다른 점이 많음에도, 그들은 자유의 원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섰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치가의 표지입니다.”

매디슨 역시 침례교에게 감사를 표했다.

“버지니아에서 종교의 자유가 확립된 것은 침례교인들의 공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불의를 잊지 않았고, 그 불의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싸웠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끈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론 - 메이플라워에서 수정 조항 제1조까지

1620년 메이플라워호가 플리머스에 도착한 이래 1791년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비준될 때까지 171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긴 세월 동안 신대륙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원리가 끊임없이 충돌했다. 하나는 ‘국가가 종교를 통제해야 한다’는 원리였고, 다른 하나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리였다.

첫 번째 원리를 따른 매사추세츠는 퀘이커 교도들을 교수형에 처했고, 버지니아는 침례교 목사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반면 두 번째 원리를 붙든 로저 윌리엄스는 매사추세츠에서 추방되었지만, 프로비던스와 로드아일랜드에서 정교분리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해 냈다.

이 장에서 살펴본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교도들의 매사추세츠는 국가 교회 체제의 본질적 문제를 다시금 드러냈다. 한때 박해받던 자들이 권력을 잡자 다른 이들을 박해하는 자가 되었다. 누가 권력을 잡든 국가가 양심을 장악하면 강제와 박해는 반복된다.

둘째, 로저 윌리엄스는 정교분리 원리를 성경과 양심의 언어로 체계화하고 로드아일랜드에서 실제 공동체로 구현했다. 프로비던스와 로드아일랜드는 정교분리가 단지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충분히 가능한 질서임을 입증한 ‘실험실’이었다.

셋째, 버지니아 침례교인들은 국교의 철옹성 한복판에서 감옥과 채찍을 견디며 자유를 위해 투쟁했다. 그들의 고난은 제임스 매디슨과 같은 젊은 지도자의 양심을 깨웠고,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새겨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 주었다.

넷째, 존 릴랜드와 제임스 매디슨의 협력은 신학적으로 전혀 다른 이들이 공통의 원리를 위해 함께 싸울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 협력의 결실이 바로 버지니아 종교자유법과 미국 연방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였다.

다섯째, 법의 문구가 지닌 중요성을 보여 준다. ‘관용’(toleration)과 ‘권리(right)’의 차이, ‘허락’과 ‘보장’의 차이는 실제 역사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매디슨이 버지니아 권리 장전에서 ‘관용’을 ‘동등한 권리’로 바꾼 한 단어의 수정이 역사의 방향을 틀어 놓았다. 한국 헌법 제20조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선언한 것과 “국가는 종교를 관용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여섯째, 소수의 용기가 다수의 자유를 쟁취한다는 점이다. 매사추세츠에서 침례교인은 소수였고, 버지니아에서도 성공회에 비하면 작고 가난한 집단이었다. 그러나 이 소수가 양심의 자유를 위해 감옥과 채찍을 기꺼이 감당한 헌신 이, 결국 모든 미국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으로 열매 맺었다. 오늘날 한국에서 소수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일 역시 소수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다.

이로써 정교분리 원리는 한 나라의 최고 법에 확고히 자리 잡았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순차적으로 원활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후 230년 넘게 이 조항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다음 장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이 미국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정교분리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620년 메이플라워호부터 1791년 수정 조항 제1조까지의 171년 역사는 자유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친다. 정교분리는 학자의 서재에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라, 감옥과 채찍과 교수대에서 쟁취되어 마침내 45개 단어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최고법에 새겨진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도, 결국 이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져 있다. 이 역사를 모르면 그 자유의 무게를 알 수 없고, 무게를 모르면 지킬 수도 없다.

이 역사가 한국 교회에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첫째, 종교의 자유는 반드시 법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좋은 의도나 관습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적 장치가 없으면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자유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한국 헌법 제20조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사실은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그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적용되고 있는지도 늘 점검해야 한다.

둘째,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동의하지 않는 종교의 자유까지 함께 지키는 것이다. 윌리엄스가 카톨릭, 유대인, 무슬림의 자유까지 옹호한 이유는 그들의 교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서라도 모든 사람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가 다른 종교의 해산을 환영하거나 요구하는 행태는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일과 같다.

셋째, 국가의 보호에 의존하는 교회는 결국 국가에 종속된다. 릴랜드의 말대로 “정부가 종교를 지원할 때, 종교는 정부의 창녀가 된다.” 한국 교회는 국가의 보호와 특혜를 구하기보다 복음의 능력 위에 서야 한다. 정교분리는 교회의 적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으로만 서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보호 장치이다.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 정교분리와 분리의 벽⁽¹⁷⁹¹⁾

오늘날 우리는 미국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부르지만, 처음부터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18세기 중반까지 대부분의 식민지에는 여전히 국교가 있었고, 침례교인들은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럽에서 가난하고 소수였던 침례교회의 신학, 곧 교회와 국가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급진적 주장이 결국 미국의 최고법 언어가 되었는가? 그 과정은 단순한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266년에 걸친 눈물과 피와 순교와 투쟁의 결과였다.

앞 장에서 우리는 침례교인들의 투쟁이 어떻게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라는 결실로 이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그 45개 단어, 곧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격적으로 분석한다. 수정 조항 제1조의 두 조항—국교 설립 금지(Establishment Clause)와 종교의 자유 실행(Free Exercise Clause)—이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 두 조항이 어떻게 결합해 완전한 정교분리를 이루는지, 그리고 제퍼슨이 댄버리 침례교

협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한 ‘교회와 국가 사이의 분리의 벽’이 이 원리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제4장과 제5장이 시간 순서에 따라 역사를 추적했다면, 이 장은 그 역사가 만들어 낸 법적·신학적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장이다. 역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원리를 분명히 이해해야,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는 정교분리 논쟁에 성경적으로, 또 헌법적으로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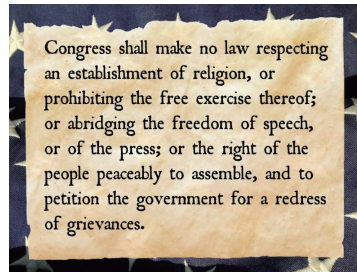
1. 45개 단어의 혁명 - 266년이 낳은 한 문장

1791년 12월 15일,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비준되었다.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수정 조항 제1조는 모두 45개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이 한 문장이 탄생하기까지 무려 266년이 걸렸다. 제4장과 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525년 취리히에서 시작된 정교분리의 원리는 수천 명의 순교, 수만 명의 투옥, 수십만 명의 차별을 거쳐 마침내 미국의 최고법이 되었다.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

1525년에 시작된 이 266년의 자유 투쟁 여정은 하나의 인과 관계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침례교 신학 → 침례교의 증언 → 침례교의 고난 → 건국자들의 각성 → 헌법적 확립

각 단계는 다음 단계를 낳았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종교의 자유의 토대가 완성되었다. 이 사슬에서 단 하나의 고리라도 빠졌다면,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츠가 의사형을 당하지 않았다면 재침례교 운동의 순교적 진정성이 증명되지 못했을 것이고, 헬위스가 제임스 1세에게 책을 보내지 않았다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최초의 영어 문서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윌리엄스가 추방당하지 않았다면 프로비던스라는 실험도 없었을 것이며, 버지니아 침례교인들이 투옥되지 않았다면 매디슨의 양심에 불이 켜지지 않았을 것이다. 릴랜드가 매디슨에게 협상 조건을 걸지 않았다면 권리 장전도 달라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고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연결하셨다.

이 사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각 단계마다 신학적 깊이가 더해졌다는 사실이다. 재침례교인들은 “교회는 자발적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교회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원리를 세웠다. 헬위스는 여기에 보편성을 더했다. “종교의 자유는 기독교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이다.” 윌리엄스는 체계적 신학을 더했다. ‘정원과 황무지’ 비유, 십계명의 두 돌판 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 해석 등을 통해 정교분리를 성경적으로 정당화했다. 매디슨은 정치철학적 논증을 더했다. 종교의 자유는 ‘자연적 권리’이며, 국가는 그것을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고, 창조자께서 주신 권리를 단지 인정할 뿐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제퍼슨은 법적 언어를 더했다. 버지니아 종교자유법과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의 문구를 통해 신학적 원리를 헌법적 원리로 변환했다. 이 발전 과정은 정교분리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깊은 신학적·철학적·법적 기초 위에 세워진 원리임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제 그 원리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할 차례이다.

2. 헌법 수정 조항 제1조 - 두 조항, 하나의 원리

많은 사람들은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얼마나 혁명적인 조항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학

에서는 이를 ‘국교 설립 금지 조항’(Establishment Clause)과 ‘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Free Exercise Clause)이라 부른다. 이 두 조항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완전한 정교분리가 실현된다.



국교 설립 금지 조항 – 국가는 국교를 세울 수 없다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이 조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정부는 특정 종교를 선호하거나 지지할 수 없다. 모든 종교는 법 앞에서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콘스탄티누스 이후 1,500년간 유럽을 지배했던 원칙의 정반대이다. 유럽에서는 국왕이 특정 교단을 국교로 지정하고 그 교단에 특권을 부여했다. 카톨릭이 국교인 나라에서는 프로테스탄트가 차별받았고, 루터교가 국교인

나라에서는 칼빈파와 침례교가 탄압받았다. 수정 조항 제1조는 이 모든 역사를 부정하는 혁명적 선언이었다.

둘째, 정부는 종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교회세를 부과할 수 없고, 세금으로 교회를 세울 수도 없으며, 공공 자금으로 성직자를 후원할 수도 없다. 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버지니아에서 침례교인들이 가장 격렬하게 싸운 것이 바로 이 교회세였다. 성공회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주민에게 부과되었던 세금에 대해 침례교인들은 일관되게 거부했다.

셋째, 정부는 종교적 교리를 법으로 강요할 수 없다. 주일 예배 참석을 의무화하거나, 십일조를 법률로 요구하거나, 특정 신앙 고백을 공식 요건으로 만들 수도 없다. 중세 유럽에서는 이 모두가 법률로 강제되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었고, 교회세를 내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되었으며, 국교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직에서 배제되었다.

넷째, 정부는 종교 기관을 통제할 수 없다. 목사를 임명하거나 교회 정책을 결정할 수 없고, 신학적 논쟁에 개입할 수도 없다. 이는 영국에서 국왕이 교회의 머리로서 주교를 임명하고 교회 정책을 결정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칙이다.

이 네 가지 원칙은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당연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1791년 당시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국가의 최고법으로 채택한 나라가 없었다. 영국에서도 국교회가 여전히 존재했고, 프랑스에서도 카톨릭이 사실상 국교였으며,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교회세가 부과되고 있었다. 미국이 국교 설립 금지를 헌법에 명시한 것은 당시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실험이었다. 그리고 이 실험의 원리를 제공한 주체가 바로 침례교였다.

이 네 가지 원칙을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흥미로운 질문들이 제기된다.

첫째, 한국 정부는 특정 종교를 선호하거나 지지하는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특정 종교의 기도가 행해지고, 정치인들이 특정 종교 행사에 참석하며, 군대에서 특정 종교의 포교 활동이 허용되는 현실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둘째, 한국 정부는 종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가? 종교 단체에 대한 세금

면제, 종교 시설에 대한 재산세 면제 등은 사실상의 재정 지원이 아닌가?

셋째, 한국 정부는 종교적 교리를 법으로 강요하는가?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대형 교단의 ‘이단’ 규정을 근거로 국가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은 간접적으로 특정 교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가?

넷째, 한국 정부는 종교 기관을 통제하려 하는가? 종교 단체 해산법이 통과된다면, 이것은 국가가 종교 기관의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질문들은 제8장에서 한국 헌법 제20조를 분석할 때 다시 다루게 될 것이다.

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 – 국가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

의회는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이 조항은 국교 설립 금지 조항의 또 다른 면이다. 정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세울’ 수 없다면, 정부는 또한 특정 종교의 신앙 행위를 ‘금지’할 수도 없다. 이 조항은 다음의 자유를 보장한다.

첫째, 각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믿을 권리가 있다. 정부는 그 선택에 간섭할 수 없다. 이는 양심의 자유(Soul Liberty)의 법적 표현이다. 침례교인들이 266년간 주장해 온 핵심 원리가 바로 이것이었다. 각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유가 있으며, 그 누구도—국왕도, 주교도, 정부도—이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둘째, 각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자유롭게 실행할 권리가 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 다니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권리가 있다. 중세 유럽에서 국교 이외의 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종교 활동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영국에서 비국교도인 침례교인들은 허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존 번연이 12년간 감옥에 갇힌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셋째, 각 사람은 종교적 확신에 따라 행동할 권리가 있다. 물론 무제한은 아니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신앙을 실행할 자유가 있다. 이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제7장에서 살펴볼 미국 대법원의 판례들을 통해 구체화되어 왔다.

넷째, 각 사람은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공직에서 배제될 수 없고, 시민권이 제한될 수 없으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없다. 식민지 시대 버지니아에서 침례교인들은 치안 판사직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직에서 배제되었고,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까지 박탈당했다. 수정 조항 제1조는 이러한 종교적 차별을 헌법적으로 금지했다.

이 ‘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Free Exercise Clause)의 범위는 놀라울 정도로 넓다.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예배의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신앙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영역, 즉 예배, 교육, 전도, 자선, 출판, 집회 등을 포함한다.

이는 종교를 예배당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을 실천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세속주의(laïcité)가 종교를 사적 영역에 한정하려는 것과 달리, 미국의 종교의 자유는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적 표현까지 보호한다.

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의 범위에 대해 미국 대법원은 오랜 기간에 걸쳐 그 의미를 구체화해 왔다. 1878년 ‘레이놀즈 대 미합중국’(Reynolds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대법원은 몰몬교의 일부다처제를 심리하면서, 종교적 믿음(belief)의 자유는 절대적이지만 종교적 실행(practice)의 자유는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원칙을 세웠으며, 몰몬교도의 일부다처제를 금지한 연방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1963년 ‘셔버트 대 버너’(Sherbert v. Verner) 사건에서 대법원은 안식교인이 토요일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정부가 종교적 행위를 제한하려면 ‘불가피한 국가적 이익’(compelling state interest)이 있어야 한다는 높은 기준을 세웠다. 1990년 ‘고용부 대 스미스’(Employment Division v. Smith) 사건에서는 이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이에 반발해 1993년 「종교의 자유 회복법」(RFRA)¹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들과 판례의 흐름은 종교의 자유가 단순히 헌법 조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해석과 투쟁을 통해 구체화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두 조항의 조화 - 완전한 정교분리

이 두 조항이 함께 작동해 완전한 정교분리를 만든다. 정부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확립할 수도 없고(국교 설립 금지 조항), 특정 종교의 신앙 행위를 금지할 수도 없다(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

국교 설립 금지 조항만 있고 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정부가 국교를 세우지는 않지만, 특정 종교를 금지하거나 탄압할 수는 있게 된다. 이는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공산주의 체제는 공식적으로는 국교가 없지만 종교를 탄압하고 금지한다.

반대로 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만 있고 국교 설립 금지 조항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각 사람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는 있지만, 국가가 특정 종교를 지원하고 다른 종교를 차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식민지 시대 버지니아의 상황이었다. 이론적으로는 침례교인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국교인 성공회가 세금 지원을 받고 법적 특권을 누리는 반면, 침례교인들은 허가를 받아야 설교할 수 있었고 허가 없이 설교하면 감옥에 갇혔다.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는 이 두 가지 위험을 모두 차단한다. 국가는 특정 종교를 세울 수도 없고, 금지할 수도 없다. 국가는 종교 문제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

1. 종교의 자유 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RFRA)은 1993년 미국 연방 정부가 제정한 법률로, 1990년 '고용부 대 스미스'(Employment Division v. Smith) 판결로 인해 약화된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의 '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정부가 시민의 종교 행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 반드시 '중대한 국가 이익'(compelling governmental interest)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 제한 또한 '최소의 침해 수단'(least restrictive means)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종교적 양심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방패로 평가받는다.

이 두 조항의 균형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시험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교 설립 금지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정부가 종교를 적극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립 학교에서 학생의 자발적 기도까지 금지하려는 시도가 그 예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정교분리의 지속적 과제이다. 그러나 이 균형의 원리 자체는 500년 전에 재침례교인들이 확립하였다. 교회는 국가의 칼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는 교회의 양심에 침범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공립 학교에서의 기도 문제가 대표적이다. 공립 학교 교사—주 정부의 대리인인 ‘주 정부 행위자’(State Actor)로 간주—가 학생들에게 기도를 지도하면 국교 설립 금지 조항 위반이다. 그러나 학생의 자발적인 기도를 금지하면 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 위반이다. 2022년 ‘케네디 대 브레머턴 교육구’(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립 학교 미식축구 코치가 경기 후 경기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행위가 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과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정교분리의 균형점에 대한 논쟁을 다시 촉발하였다.

그러나 이 원칙은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거나 다수 종교의 기준을 강요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정부의 중립성은 종교적 발언을 침묵시키는 수단이나, 다양한 신앙이 강제나 불이익 없이 공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극적인 보호를 의미한다. 현실에서 이 원칙이 왜곡되어 대형 교단이나 다수 종교가 소수 종교의 신앙 표현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국가 권력이 다수 종교의 논리를 대신 집행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국가 종교를 만들어 내는 셈이다. 제9장에서 살펴볼 한국 교회의 이단 정죄 문제가 바로 이러한 왜곡의 실례이다.

이 점에서 정교분리에 대한 두 가지 대립되는 오해를 모두 경계해야 한다.

첫째, 정교분리를 종교 배제로 이해하는 오해이다. 일부 세속주의자들은 정교분리를 근거로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정 조항 제1조의 원래 의미가 아니다. 수정 조항 제1조는 정부가 종교

를 세우거나 금지하는 행위만 막을 뿐, 종교인들이 공적 영역에서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를 막지 않는다.

둘째, 정교분리를 무시하고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는 오해이다. 일부 기독교 인들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므로 기독교 원리로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수정 조항 제1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미국 건국자들은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이 두 극단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군대에서의 종교 활동, 공립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 정부 행사에서의 종교적 기도 등에서 정부가 특정 종교를 ‘촉진’ 하지도 않고 ‘억제’ 하지도 않는 중립적 위치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동시에 두 가지 방향의 왜곡도 나타난다. 한편에서는 ‘정교분리’를 내세워 그리스도인의 공적 발언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있다. 공직자가 기도회에 참석하거나 국회의원이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해 발언하면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비판이 제기되고, 교회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성경적 입장을 표명하면 ‘종교의 정치 개입’이라고 공격한다.

그러나 정교분리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세우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막는 원칙이지, 종교인이 공적 영역에서 자기 신앙에 기초하여 발언하는 행위를 막는 원칙이 아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독교 우월주의적 극단이 있다. 대형 교단이 “한국은 기독교 국가이다.”라고 주장하거나 “기독교적 가치가 법률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면서 다른 종교의 자유를 위협한다. 특정 종교를 ‘이단’ 또는 ‘사이비’로 규정하고 국가의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이 극단에 해당한다. 이는 교회가 국가의 칼을 빌려 종교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정교분리 위반이다.

침례교의 정교분리 원리는 이 두 극단 모두를 거부한다. 정교분리는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권력을 특정 종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와 종교가 각자의 영역에서 독립적인 기능을 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침례교가 266년 동안 꿈꾸어 온 비전이었다. 교회와 국가 사이의 완전한 분리. 그 꿈이 마침내 최고법의 언어로 새겨졌다.

3. 토마스 제퍼슨의 ‘분리의 벽’ 서한(1802)

덴버리 침례교 협의회회 편지

1801년 10월, 코네티컷의 덴버리 침례교 협의회는 새로 당선된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편지를 보냈다. 제퍼슨이 종교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코네티컷은 여전히 청교도들의 회중교회를 사실상 국교로 유지하고 있었고, 침례교인들은 차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비준된 지 이미 10년이 지났지만, 이 조항은 연방 의회에만 적용될 뿐 각 주에는 미치지 않았다. 코네티컷은 1818년까지, 매사추세츠는 1833년까지 사실상의 국교를 유지했다.

덴버리 침례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유명한 조상들의 감정과 일치합니다. 종교는 언제나 하나님과 각 개인 사이의 문제이며, 정부와는 무관합니다. 종교는 입법부의 권한 밖에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일부 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여전히 ‘특권’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마치 정부가 베푸는 은혜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특권이 아니라 권리라고 믿습니다.”

이 구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종교의 자유가 ‘특권’이면, 정부가 그것을 베풀 수도 있고 거둬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권리’이면, 정부가 그것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정부가 그것을 빼앗을 수도 없다. 침례교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양도할 수 없는 권리’(unalienable right)로

보았다. 이것은 매디슨이 「기념과 항의」에서 “양심의 권리는 인류의 가장 성스러운 재산”이라고 선언한 내용과 일치하는 원리이다.

덴버리 침례교인들의 이 주장은 200년 전 토마스 헬위스가 한 주장과도 동일하다. 헬위스는 “왕은 인간 영혼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왕이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2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같은 원리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같은 종류의 권력자에게 주장하고 있었다. 1612년에 헬위스가 영국 왕에게 한 주장을, 1801년에 덴버리 침례교인들이 미국 대통령에게 하고 있었다. 이는 침례교가 정교분리의 원리를 200년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는 증거이다.

이 구분은 오늘날 한국에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제10장에서 살펴볼 종교 단체 해산법 논란에서 핵심 쟁점이 바로 이것이다. 종교의 자유가 국가가 부여하는 ‘특권’이면, 국가가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그 조건을 위반하면 ‘해산’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이면, 국가에는 종교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

제퍼슨의 답장 - ‘분리의 벽’

제퍼슨은 이 편지를 받고 신중하게 답장을 작성했다. 이것이 단순히 한 지역 침례교 협의회에 대한 답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는 종교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표명할 기회였다.

그는 여러 번 초안을 수정했고, 법무장관 레비 링컨(Levi Lincoln)과 우정장관 기드온 그레인저(Gideon Granger) 등 각료들과도 상의했다. 대통령이 한 지역 침례교 협의회에 보내는 답장을 이토록 신중하게 작성했다는 것은, 제퍼슨이 이 편지의 역사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제퍼슨의 초안 수정 과정은 그가 이 서한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잘 보여 준다.

원래 초안에는 더 직접적인 표현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제퍼슨은 처음에 “나는 단식과 추수감사절 선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시켰다가 삭제했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추수감사절이 중요한 전통이었으므로, 불

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리의 벽’(wall of separation)이라는 핵심 표현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었는데, 이는 이 표현이 제퍼슨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제퍼슨이 이 서한을 작성한 정치적 맥락도 이해해야 한다. 1801년 제퍼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그의 정적들은 그를 ‘무신론자’라고 공격했다. 뉴잉글랜드의 회중교회 성직자들은 제퍼슨이 대통령이 되면 성정이 불태워지고 교회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댄버리 침례교인들의 편지는 제퍼슨에게 중요한 정치적 기회였다. 종교적 소수파인 침례교인들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하면서, 동시에 정교분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퍼슨의 답장을 단순히 정치적 계산의 산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제퍼슨은 버지니아 주 의회 의원 시절부터 종교의 자유를 위해 일관되게 투쟁해 왔다. 버지니아 종교자유법(1786)의 저자로서, 그는 이미 정교분리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댄버리 서한은 그 확신의 가장 간결한 표현이었다.

1802년 1월 1일, 제퍼슨은 답장을 보냈다.

“신사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종교는 오직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종교에 관해 개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명할 책임이 없으며 예배 방식이나 교리에 관해 어떤 사람도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미국 국민 전체가 공표한 헌법 수정 조항 제조를 최고의 경외심으로 바라봅니다.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을 통해 그들은 교회와 국가 사이에 ‘분리의 벽’(wall of separation)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최고의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대상이며, 인간의 양심에 대한 모든 침해를 막는 주권적 장벽을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분리의 벽’ — 이 표현은 곧바로 유명해졌고, 이후 미국 정교분리 역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표현이 되었다.

To Messrs. Nehemiah Dodge, Ephraim Robbins & Stephen S. Nelson a committee of the Danbury Baptist Association in the state of Connecticut.



Gentlemen

The affectionate sentiments of esteem & approbation which you are so good as to express towards me, on behalf of the Danbury Baptist Association, give me the highest satisfaction. My duties decide a faithful & zealous pursuit of the interests of my constituents, and in proportion as they are persuaded of my fidelity to those duties, the discharge of them becomes more & more pleasing.

Believing with you that religion is a matter which lies solely between man & his God, that he owes account to none other for his faith or his worship, that the legitimate powers of government reach actions & not opinions, I contemplate with sovereign reverence that act of the whole American people which declared that their legislature should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thus building a wall of ~~stone~~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Con-

Handwritten marginal note: The passage in the Constitution which prohibits Congress from establishing a religion, or from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is 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is not a declaration of the powers of the government. It is 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is not a declaration of the powers of the government.

gress thus inhibited from acts respecting religion, and the Executive authorities only to execute their acts, I have refrained from prescribing even those occasional performances of devotion, ^{prohibited in all legal persons} ~~permitted in all legal persons~~ Executive ~~functions~~ ^{as a national church} is the legal head of ~~the~~ church, but subject here, as religious exercises only to the voluntary regulations and discipline of each respective sect. ~~in adhering to the supremacy of the supreme will of the nation in behalf of the people generally, or in exercising their great and rightful legislative authority in behalf of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 shall see with ^{sinister satisfaction} ~~pleasure~~ the progress of those sentiments which tend to restore to man all his natural rights, convinced he has no natural right in opposition to his social duties.~~

I reciprocate your kind prayers for the protection and blessing of the common father and creator of man, and tender you for yourselves and your religious ~~the Danbury Baptist Association~~ assurances of my high respect & esteem.

Signature: W. Jefferson
Jan. 1. 1802.

20.593

덴버리 침례교 협의회에 보낸 제퍼슨의 편지

‘분리의 벽’의 의미

첫째, 벽은 경계이다. 두 영역을 나눈다. 한쪽은 교회의 영역이고, 다른 쪽은 국가의 영역이다. 이는 윌리엄스가 말한 ‘정원과 황무지’ 비유와 같다. 교회는 정원이고 세상은 황무지이며, 벽은 황무지가 정원 안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둘째, 벽은 양방향이다. 국가가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게 막는 동시에, 교회도 국가를 통제하지 못하게 막는다. 국가가 교회의 교리를 정하거나 목사를 임명할 수 없듯이, 교회도 국가 권력을 행사하거나 법률을 지배할 수 없다. 중세 카톨릭이 세속 권력을 행사한 일은 이 벽을 교회 쪽에서 허문 사례이고, 영국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된 일은 이 벽을 국가 쪽에서 허문 사례였다.

셋째, 벽은 보호이다. 정부의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장벽이다. 이 벽이 있는 한, 정부는 교회를 해산할 수 없고, 설교를 검열할 수 없으며, 교리를 판단할 수 없다. 이 벽이 바로 결론에서 다루는 ‘교회를 보호하는 울타리’이다.

넷째, 벽은 영구적이다. 한 번 세워진 벽은 임의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 제퍼슨은 이 벽이 헌법에 의해 세워졌음을 강조했다. 헌법은 일반 법률보다 상위에 있으므로, 의회의 다수결만으로 이 벽을 허물 수 없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밀라노 칙령(313)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테오도시우스 칙령(380)에 의해 67년 만에 사라진 역사는 이 교훈을 잘 보여 준다. 황제가 준 자유는 황제가 거두어 간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거두어들이 수 없다. 한국 헌법 제20조도 같은 원리이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일반 법률로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 종교단체 해산법 같은 일반 법률로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다섯째, 벽은 유연하되 견고하다. 벽은 교회와 국가가 전혀 접촉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교회 건물도 소방법의 적용을 받고, 종교인들도 세금을 낸다. 시민적 영역에서 교회와 국가는 당연히 접촉한다. 그러나 종교적 영역—교리, 예배, 교회 운영, 회원 자격—에서 국가는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벽의 의미이다.

제퍼슨이 이 편지를 침례교인들에게 보낸 이유

제퍼슨이 이 편지를 침례교인들에게 보낸 데는 이유가 있다. 침례교인들이야말로 이 원리를 가장 오래, 가장 일관되게, 가장 용감하게 주장한 사람들이었

기 때문이다.

제퍼슨은 버지니아에서 침례교인들의 고난을 직접 목격했다. 그는 침례교인들이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청원서를 읽었으며, 그들의 논리를 이해했다. 매디슨이 침례교인들의 고난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확신을 얻었듯이, 제퍼슨도 침례교인들의 투쟁에서 정교분리의 원리를 확인했다.

제퍼슨은 침례교인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알며, 그것을 지키리라 믿었다. 그래서 그는 수정 조항 제1조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해석한 이 편지를 침례교인들에게 보냈고, 이는 제퍼슨이 침례교인들에게 바치는 경의였다.

제퍼슨의 ‘분리의 벽’ 서한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많이 분석되고 논쟁된 문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벽이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벽이 너무 높으면 종교의 자유가 오히려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래 윌리엄스가 이 비유를 사용한 맥락을 기억해야 한다. 윌리엄스에게 벽은 ‘교회의 정원을 세상의 황무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 즉, 벽의 1차 목적은 교회를 보호하는 데 있었지,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는 데 있지 않았다. 제퍼슨도 이 벽이 종교를 억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했다.

대법원의 인용 - 145년 후의 결실

20세기에 미국 대법원이 정교분리 관련 사건들을 다룰 때마다 제퍼슨의 ‘분리의 벽’ 표현을 인용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47년 ‘에버슨 대 교육위원회’ (Everson v. Board of Education)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는 교회와 국가 사이에 벽을 세웠습니다. 그 벽은 높아야 하고 뚫을 수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벽에 구멍을 내는 것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이후 여러 사안에서 “국가가 특정 종교를 설립하거나, 종교 기관을 직접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종교 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위헌이

라는 기준이 세워졌다. 제퍼슨이 1802년에 댄버리 침례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표현이 145년 후 대법원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 제7장에서 이 판례들의 전개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본다.

4. 침례교 - 정교분리의 창조자

왜 오직 침례교만이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침례교는 정교분리를 단순히 지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개념을 형성하고 확립한 주역이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이다.

1525년 이전에는 정교분리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다. 중세 유럽에서 교회와 국가는 긴밀하게 얽혀 있었다. 카톨릭교회는 막대한 정치권력을 가졌고, 왕들은 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종교 개혁도 처음에는 이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 루터는 농민 전쟁(1524-1525) 때 제후들의 편에 서고 그들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의 종교가 곧 그 땅의 종교이다.”(cuius regio, eius religio.)라는 원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칼빈은 제네바를 신정 도시로 만들었다. 영국 국교회는 왕이 교회의 머리였다. 심지어 종교적 열심으로 알려진 청교도들도 매사추세츠에서 신정 국가를 세웠다.

그러나 1525년 재침례교가 처음으로 말했다.

“아니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국가는 교회를 통제할 수 없고, 교회는 국가 권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는 1,200여 년의 중세 카톨릭 전통을 부정하는 혁명적 주장이었다. 재침례교는 이 주장 때문에 박해받았고 고문당했고 처형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영국 침례교가 이 원리를 이어받았다. 1612년 토마스 헬위스가, 1644년 로저 윌리엄스가, 1650년대 존 번연이 이 원리를 위해 고난을 감수

했다. 로저 윌리엄스가 이 원리를 아메리카에 가져왔다. 1636년 그가 세운 프로비던스는 완전한 정교분리를 실천한 최초의 정부 가운데 하나였다.

버지니아 침례교가 이 원리를 위해 싸웠다. 1760-1770년대 그들은 투옥되고 폭행당하고 모욕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외쳤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매디슨과 제퍼슨이 이 원리를 헌법에 새겼다. 그들은 침례교로부터 배웠다. 침례교의 고난을 목격했던 그들은 침례교의 논리를 진심으로 이해했다. 결국 침례교의 원리를 미국의 법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정교분리는 침례교 신학의 산물이다. 침례교가 없었다면 정교분리도 없었을 것이다. 침례교가 없었다면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도 없었을 것이다. 침례교가 없었다면 미국은 종교의 자유의 나라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다른 교파들은 왜 이 원리를 주장하지 않았는가?

왜 루터파, 칼빈파, 성공회, 청교도는 정교분리를 주장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루터파는 제후들의 보호를 받았고, 결국 국가 교회 체제를 수용했다. 세속 권력과의 동맹은 루터파에게 안전과 안정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만들었다. 루터의 ‘두 왕국론’(Zwei-Reiche-Lehre)은 영적 왕국과 세속 왕국을 구분했지만, 실제로는 세속 권력이 교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루터 자신이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에 의해 보호받았고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서 성경을 번역한 경험은, 세속 권력의 보호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배경이었다. 그러나 이 보호의 대가는 교회의 독립성 상실이었다. 루터파 교회는 ‘제후의 교회’가 되었고, 제후가 바뀌면 교회도 바뀌었다. 이는 정교분리가 아니라 정교결합이었다.

루터파 전통의 정교분리 실패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20세기 독일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나치 정권이 등장했을 때, 독일 개신교(대부분 루터파)의 다수는 히틀러에 순응했다. ‘독일 그리스도인’(Deutsche Christen) 운동은 나치 이데올로기와 기독교를 결합시키려 했다. 국가에 순응하는 태

도가 루터파 전통에서는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 마르틴 니뮐러(Martin Niem Iler, 1892-1984) 등이 ‘고백교회’(Bekennende Kirche)를 결성해 저항했으나, 이는 소수에 의한 저항 운동에 그쳤다. 본회퍼는 결국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해 처형되었다. 만약 독일 개신교가 침례교적 정교분리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치 정권에 대한 교회의 저항은 훨씬 더 강력했을 것이다. 국가 권력에 대한 독립성이 교회의 전통으로 확립되어 있었다면, ‘독일 그리스도인’ 같은 타협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독일 교회의 비극은 정교분리의 부재가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보여 준다.

개혁파(칼빈주의자들)도 제네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에서 국가의 지원을 기반으로 체제를 세웠다. 칼빈의 제네바에서는 교회와 국가가 긴밀하게 협력해 도시를 통치했다. 칼빈은 세르베투스를 이단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제네바 당국이 그를 처형하는 데 동의했는데, 이는 국가 권력을 이용한 종교적 처벌이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녹스(John Knox, 1514?-1572)가 주도한 1560년 개혁 이후 장로교회가 사실상 국교로 자리 잡았고, 의회와 함께 국가 차원의 교회 체제를 구축했다.

성공회는 말할 것도 없이 국왕이 교회의 머리였다. 헨리 8세가 종교 개혁을 시작한 동기는 신학적 이유가 아니라 이혼 문제와 왕권 강화였으며, 이 때문에 영국의 종교 개혁은 처음부터 국가 권력과 결합되어 있었다. 국왕이 교회의 수장으로서 주교를 임명하고 교회 제도를 통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심지어 종교적 열심으로 알려진 청교도들조차 매사추세츠에서 신정 국가를 만들었다. 그들은 영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아메리카에 왔지만, 자신들이 받은 박해를 다른 교단에 되풀이했다. 침례교인을 추방하고, 퀘이커 교도를 채찍질하고 처형하기까지 했다.

청교도들의 모순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이다. 그들은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싸웠고 박해를 피해 대서양을 건넜다. 그러나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이 영국에서 당한 것과 똑같은 박해를 다른 이들에게 가했다. 이는 인간 본성의 한계를 드러낼 뿐 아니라, 제도

적 보장의 중요성도 일깨워 준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도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남용할 유혹에 빠진다. 그래서 의도가 아니라 제도로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는 바로 그 제도적 보장이다.

장로교와 감리교는 어땠는가?

장로교 전통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존 녹스(John Knox, 1514?-1572)는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를 국교적 지위로 세웠다. 1560년 스코틀랜드 의회는 로마 교황의 권위를 폐지하고 개혁파 신앙 고백을 채택함으로써, 개혁파 교회를 스코틀랜드의 공식 종교로 선언했다. 이후 장로교회는 ‘국가가 인정하고 보호하는 교회’, 곧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교로 자리 잡았다. 17-18세기 내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왕과 의회로부터 재정적·법적 인정을 받았고, 1707년 연합법(Act of Union)에서도 그 지위가 보장되었다. 녹스는 교회의 교리를 정하는 최종 권위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 전체가 참된 종교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으며, 국가가 참된 교회를 지지하고 거짓 종교를 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정교분리와는 다르다. 녹스는 왕이 교회를 지배하는 영국식 국교회 모델을 거부하는 대신, ‘참된 교회가 국가를 교리적으로 지배하는’ 스코틀랜드 모델을 세운 셈이다. 이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느냐,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느냐의 차이일 뿐, 둘 사이의 제도적 분리를 인정하는 방향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장로교의 스코틀랜드 전통은 정교분리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정교결합이었다.

감리교의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는 평생 영국 국교회의 사제로 남았고, 스스로를 끝까지 영국 국교회 성직자로 이해했다. 웨슬리는 감리회(Methodism)를 별도의 교단으로 세우려 하기보다, 국교회 안에서 영적 각성과 성결을 일으키려는 개혁 운동으로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설교와 사역이 ‘영국 국교회의 신앙을 참되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설교에서 반복해서 자신이 국교회의 신앙 고백과 기도서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웨슬리는 복음 전도와 사회 개혁(노예제 반대, 빈민 구제, 노동자 사역 등)에서는 탁월했지만,

국왕이 수장인 국가 교회 체제 자체를 성경적으로 문제 삼거나, 교회와 국가의 제도적 분리를 적극 주장하지는 않았다.

물론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미국으로 건너간 장로교인들과 감리교인들 가운데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강하게 지지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미국 장로교 총회는 수정 조항 제1조를 지지했고, 감리교 지도자들도 국교 반대와 양심의 자유를 옹호했다. 그러나 이 흐름은 어디까지나 미국 헌법 환경과 침례교의 강력한 영향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나 영국 감리교의 원래 전통에서 자생적으로 나온 정교분리 교리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 장로교와 감리교가 18-19세기 미국에서 정교분리를 지지하게 된 것은, 자신의 교파 전통이 본래부터 정교분리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 침례교의 증언과 헌법 질서에 나중에 합류한 결과였다.

왜 침례교만이 이것을 할 수 있었는가?

오직 침례교만이 처음부터 국가 권력을 원리적으로 거부했다. 1520-1530년대 재침례교가 그러했고, 1610년대 영국 침례교가 그러했으며, 18세기 미국 침례교도 역시 그 원칙을 붙들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질 기회가 있었을 때조차 그것을 제도화된 ‘국교’로 만들기를 거절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원칙을 공식 교리 차원에서 타협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침례교의 핵심 교리에 있다. 침례교는 신자의 침례를 주장한다. 이는 단순한 의식의 차이가 아니다. 신자의 침례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의미한다. 유아 세례를 통해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교회에 속하게 되는 국가 교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교회가 자발적 공동체라면, 국가의 강제는 교회의 본질에 모순된다. 따라서 신자의 침례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교분리를 요구한다. 이것이 침례교 교회론이 정교분리의 신학적 기초가 되는 까닭이다.

침례교의 핵심 교리와 정교분리의 관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의 침례(Believer's Baptism). 오직 자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한 사

람만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온다. 이는 교회가 자발적 공동체임을 의미한다. 자발적 공동체는 국가의 강제와 양립할 수 없다.

둘째, 회중 정치(Congregational Polity). 각 지역 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교황이나 감독이 위에서 통제하지 않는다. 이는 교회가 외부 권력—국가 포함—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원리와 직결된다.

셋째, 영혼의 역량(Soul Competency). 각 개인은 하나님 앞에 직접 서며, 중개자가 필요 없다고 본다. 이것은 양심의 자유의 신학적 기초이다. 국가도 교회도 그 사람의 양심에 간섭할 수 없다.²

넷째, 성경의 권위(Authority of Scripture). 침례교는 교황의 교령이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을 최종 권위로 인정한다. 성경이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이 종교적 문제에서 최종 권위가 될 수 없다.

이 네 가지 교리는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 정교분리를 향해 수렴된다. 이 네 가지를 모두 교파 정체성의 중심에 두고 출발한 전통은 실제로 침례교뿐이었다. 루터파에게는 회중 정치가 없었고, 칼빈파에게는 신자의 침례가 없었으며, 성공회에게는 네 가지 모두가 없었다.

약함이 강함이 된 역설

이 때문에 침례교는 때로 약해 보이기도 했다. 국가의 후원이 없었기에 재정 이 늘 부족했고, 정부의 보호가 없었기에 박해에 쉽게 노출되었다. 사회적 특권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영향력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 장기적으로 이것이 오히려 침례교를 더 강하게 만

2. '영혼의 역량 혹은 유능성'은 20세기 초 미국 남침례교 신학자 멀린스(E. Y. Mullins, 1860-1928)가 체계화한 개념으로, 각 개인은 타인의 강요나 중재 없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응답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각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직접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신학적 토대 위에 서 있다. 따라서 교회나 국가가 개인의 양심을 대신해 특정 신앙이나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각 영혼에 부여하신 고유한 책임성과 역량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여긴다. 정교분리는 이러한 '유능한 영혼'이 외부 권력의 강제 없이 자발적으로 신앙과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종교적 자발주의와 양심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신학적 토대가 된다(참조: E. Y. Mullins, *The Axioms of Religion*, 1908).

들었다. 국가 권력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에 의해 타락하지 않았고, 국가 지원에 기대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었다. 침례교는 외적 강제가 아니라 내적 확신으로 성장한 교회였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들의 삶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라. (고후 12:10)

침례교는 세상의 눈에는 약해 보였지만, 원리의 힘으로 강했다. 국가의 보호 없이 서야 했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에 의지했고, 세상의 권력을 빌리지 않았기에 복음의 권능으로만 전진했다.

이 역설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국가의 보호를 받은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쇠퇴했다.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카톨릭교회, 영국의 성공회, 북유럽의 루터파 국가 교회가 그 예이다.

오늘날 유럽의 국가 교회들은 대부분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 영향력을 크게 잃었다. 독일과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 국민 다수가 교회세를 납부하지만,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비율은 한 자릿수에 머문다는 연구들이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다. 영국 성공회의 경우 2010년대 기준으로 주일 예배 참석률이 성인 인구의 약 2% 수준에 그친다는 통계가 있다.

반면 정교분리 원칙 아래에서 교회가 국가의 보호 없이 자발적으로 성장해 온 미국에서는, 2010년대 기준으로 성인의 약 30-40%가 주 1회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침례교는 국가의 보호 없이도 가장 큰 기독교 교단으로 성장했으며, 남침례교(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³는 수천만 명 규모의 신자를 가진 연합체가 되었다.

3. 남침례교(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는 1845년 미국 조지아 주 어거스타에서 창설된 세계 최대 규모의 기독교 교단이다. 성경의 무오성과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며, 각 지역 교회의 자치권과 양심의 자유를 핵심 신앙 원리로 삼고 있다. 특히 20세기 초 멀린스(E. Y. Mullins) 등을 통해 '영혼의 유능성'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현대 신학적으로 체계화하여 침례교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더 극적인 사례는 중국이다. 공산주의 정권의 탄압 아래에서 중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해, 현재 대략 7천만-1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다양한 연구들이 추정한다. 국가의 박해가 교회를 없애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더 강하게 단련했다.

이 역설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제9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한국의 대형 교단들이 국가 권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에 의존해 소수 종교를 탄압하려 할 때, 이는 결국 자기 교단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회는 외적 권력이 아니라 내적 진리의 힘으로 서야 한다.

5. 266년 투쟁이 남긴 원리

266년의 투쟁이 우리에게 남긴 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원리들은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한국 상황에 적용될 것이다.

첫째, 양심의 자유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양심의 자유(Soul Liberty)는 침례교 신학의 핵심이다. 각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유가 있으며, 이 자유는 정부가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

이 원리는 성경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 22:21)

양심은 하나님의 것이지 카이사르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 (행 5:29)

양심이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명령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양심은 하나

님을 따라야 한다. 댄버리 침례교인들이 제퍼슨에게 ‘종교의 자유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라고 쓴 것은 바로 이 원리의 표현이었다.

이 원리를 한국 상황에 적용하면 분명한 결론이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국가가 선심 쓰듯 베푸는 특권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국가가 특정 종교 단체를 해산하거나 특정 종교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 헌법적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다. 침례교인들이 266년간 싸워서 확립한 이 원리가 대한민국 헌법에도 새겨져 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리의 수혜자들이다. 그런데 정작 한국의 일부 대형 교단이 소수 종교 단체에 대한 국가의 해산 조치를 환영한다면, 이는 자신들이 누리는 권리의 기초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다.

둘째,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교회와 국가는 각각 하나님께서 세우신 서로 다른 기관이다. 교회는 영적 영역을, 국가는 시민적 영역을 담당한다. 이 두 영역이 혼합되면 양쪽 모두 타락한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콘스탄티누스 이후 교회와 국가가 결합하면서 교회는 세속 권력에 타락했고, 국가는 종교적 편협성과 폭력에 물들었다. 중세 1,000년이 이를 보여 준다. 교회가 국가 권력을 빌리면 교회는 국가의 종이 되고, 국가가 교회를 이용하면 국가는 종교적 독재를 행한다.

윌리엄스의 ‘정원과 황무지’ 비유가 이를 가장 잘 표현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정원이고, 세상은 황무지이다. 이 둘 사이에는 벽이 있어야 한다. 벽이 무너지면 황무지의 잡초가 정원 안으로 들어와 정원을 황폐하게 만든다. 즉, 국가 권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한다.

이 원리의 중요성은 역으로 생각하면 더 분명해진다. 만약 교회와 국가가 분

리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3장에서 살펴본 대로, 중세 교황은 왕을 파문하고 나라 전체에 성무정지령을 내렸다. 카톨릭 국가에서는 종교 재판소가 이단을 화형에 처했다. 프로테스탄트 국가에서도 비국교도를 투옥하고 재산을 몰수했다. 30년 전쟁(1618-1648)에서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이 모든 비극은 교회와 국가가 결합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정교분리는 이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셋째, 국가는 교리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

어떤 교리가 정통이고 어떤 교리가 이단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국가의 영역이 아니다. 국가는 교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다. 이 원리는 수정 조항 제1조의 국교 설립 금지 조항에서 직접 도출된다.

중세 유럽에서 국가가 교리를 판단하고 이단을 처형했을 때 일어난 비극을 우리는 제3장에서 살펴보았다. 왈도파, 위클리프파, 후스파, 재침례파가 모두 국가 권력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되고 박해받고 처형되었다. 역사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오히려 진리의 편에서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국가가 교리를 판단하면, 진리가 처벌받고 권력이 승리한다.

이 원리는 제9장에서 다룬 한국의 이단 정죄 문제와 제10장에서 다룬 종교 단체 해산법 문제에 직접 적용된다. 국가가 특정 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해산하는 행위는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금지하는 바와 본질적으로 같다.

특히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 원리가 더욱 절실하다. 한국에서는 대형 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가 특정 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에 법적 조치를 요청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단’인지 ‘정통’인지에 대한 판단은 신학적 사안이지, 법적 사안이 아니다. 국가는 교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 삼위일체가 참인지, 칼빈주의가 옳은지,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맞는지 국가가 판단할 수 있는가? 물론 없다. 국가의 권한은 범죄를 처벌하는 일이지, 교리를 심판하는 일이 아니다. 특정 종교 단체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형법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 종교 단체 해산법으로 교리 자체를 문제 삼을 사안이 아니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국의 주요 교단(예장통합, 예장합동 등)의 이단대책위원회는 특정 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한다. 이 자체는 각 교단의 신학적 판단이므로 교단 내부의 자유 영역이다. 문제는 그다음 단계이다. 이 ‘이단’ 규정을 근거로 국가에 법적 조치를 요청하는 행위는 국가가 교리를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셈이다. 국가가 “이 종교는 이단이므로 해산하라.”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국가는 사실상 신학적 판단을 한 것이 된다. 이는 국교 설립 금지 조항이 금지하는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다.

미국 대법원은 1872년 ‘왓슨 대 존스’(Watson v. Jones)⁴ 사건에서 이 원리를 명확히 했다. “세속 법원은 종교적 교리나 관행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 미국 법원은 그 이후 교리 다툼에서 항상 ‘교리 판정은 교회가, 세속 권한은 법원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한국 법원도 이와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원이 특정 종교가 ‘이단’ 인지를 직접 판단하는 행위는 법원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다.

넷째, 소수 종교의 자유가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정교분리의 가장 중요한 시험대는 소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일이다. 다수 종교의 자유는 다수가 지지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연스럽게 보호된다. 진정한 시험대는 사회에서 인기가 없고 다수로부터 비난받는 소수 종교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느냐에 있다.

오늘날 한국도 이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대형 교단이 ‘이단’이라고 규정한 단체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가? 국가가 ‘반사회적’이라고 낙인찍은 종교의 ‘종교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다면, 한국의 종교의 자유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

4. 이 사건은 교회 재산권을 둘러싼 내부 분쟁에서 국가 사법권의 한계를 규정한 미 대법원의 핵심 판례이다. 대법원은 교회의 교리나 권징 등 종교적 본질에 관한 사안은 교회 내부의 최고 결정 기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국가는 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사법적 자제’(Judicial Deference)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는 국가 권력이 종교 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함으로써 정교분리의 원칙을 사법적으로 구체화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다. 다수 교단이 환영하는 종교만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적 다수결에 불과하다.

로저 윌리엄스가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프로비던스에서 카톨릭, 유대인, 투르크인(무슬림), 심지어 이교도와 무신론자의 양심의 자유까지 보호하려 했다. 자신과 신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매디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자신과 교리가 다른 침례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 그 교리를 수용하느냐와 별개로, 윌리엄스 때문에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보았다. 윌리엄스와 매디슨의 정신은 이렇게 요약된다. “나는 그들의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권리를 목숨 걸고 지킬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종교의 자유이다.

이 정신을 외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르틴 니뮐러⁵ 목사의 시가 경고한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유대인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나치 독일 치하에서 나온 시이지만, 종교의 자유 앞에서도 그 울림은 같다.

5. 마르틴 니뮐러(Martin Niemöller, 1892-1984)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재에 저항했던 독일의 루터교 목사이자 신학자이다. 그는 초기에는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히틀러를 지지하기도 했으나, 나치가 교회를 장악하려 하자 고백교회 운동을 이끌며 가장 강력한 반대자로 변모했다. 이후 7년간 수용소에 수감되면서도 끝내 신앙의 자유를 지켰으며, 전후에는 타인의 고통에 침묵했던 과거를 반성하는 시 ‘그들이 처음 왔을 때’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양심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일깨운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들이 소수 종교를 해산할 때 나는 침묵했다. 내 종교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이단이라 불리는 교회를 탄압할 때 나는 침묵했다. 내 교회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내 교회를 탄압하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종교는 하나도 없었다.”

소수 종교의 자유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어떤 종교의 자유도 안전하지 않다.

다섯째, 강제된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이것은 266년간 진행된 양심의 자유 투쟁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다. 참된 신앙은 자발적이지 강제적이지 않다. 국가가 종교를 강제하면 신앙이 아니라 위선만 만들어질 뿐이다. 국가가 종교를 금지하면 양심만 파괴될 뿐이다.

이 원리의 진실성은 역사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었다. 국가가 종교를 강제한 모든 사례에서, 결과는 위선과 형식주의였다. 콘스탄티누스 이후 “모든 로마 시민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교회는 회심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름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교회를 세속화시켰다.

중세 유럽에서 이단자에게 강제로 ‘개종’을 시도했을 때, 결과는 표면적 순응과 내면적 저항이었다. ‘콘베르소’(converso, 강제 개종한 유대인)⁶들은 겉으로는 카톨릭 신자이면서 속으로는 유대교를 지켰다. 종교 재판소는 이들의 ‘진정한 개종’을 확인하기 위해 고문까지 사용했지만, 고문으로 참된 신앙을 만들어 낼 수는 없었다.

일본 에도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후미에’(踏み絵, 그리스도 상을 발로 밟게

6. 콘베르소(Converso)는 14-15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국가의 강압적인 정책이나 박해로 인해 유대교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한 이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들은 개종 후에도 ‘새 신자’(New Christians)라 불리며 종교 재판소의 가혹한 감시와 차별을 받았는데, 이는 국가 권력이 칼의 힘으로 신앙을 강요할 때 발생하는 양심의 유린과 신앙의 형식화를 보여 주는 비극적인 역사적 사례이다. 결국 이들의 역사는 참된 신앙이 외적 강제가 아닌 오직 개인의 자발적 확신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하는 의식)를 강요받았다. 어떤 이들은 겉으로는 발로 밟는 시늉을 하면서,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를 붙들었다. 강제는 신앙을 낳지 못한다. 강제는 위선과 공포만 낳을 뿐이다.

윌리엄스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강제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악취를 내뿜는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요 4:24)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지, 국가의 법률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침례교인들이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신자의 세례만을 실시한 배경도 바로 이 원리였다. 유아는 신앙을 고백할 수 없다.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강제로 덮어씌우는 행위이다. 침례교인들은 각 사람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자발적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종교를 강제하는 행위와 부모가 유아에게 세례를 강제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같은 원리에서 비롯된 오류이다. 강제된 신앙은—국가에 의한 것이든, 제도에 의한 것이든—참된 신앙이 아니다.

이 원리를 한국 상황에 적용하면 분명한 함의가 있다. 국가가 특정 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해산을 요구하는 행위는, 강제로 신앙을 바꾸려는 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강제는 참된 신앙을 낳지 못한다. 국가의 조치로 신앙 공동체를 해산한다 해도, 그 공동체의 신앙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역사가 이를 반복해서 증명했다.

여섯째, 교회는 국가의 보호 없이 복음의 힘으로 선다

이것은 침례교의 역사 전체가 증명하는 원리이다. 침례교는 어떤 국가의 보호도 받지 않았다.

어떤 왕의 후원도 받지 않았다. 어떤 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침례교는 생존했고, 성장했고, 마침내 가장 위대한 종교의 자유 원칙을 인류에게 선물했다.

이 역설의 비밀은 무엇인가? 복음의 힘이다. 초대 교회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성장한 것처럼, 침례교도 박해 속에서 성장했다. 터틀리안이 말했듯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국가의 보호에 의존하는 교회는 국가의 그 보호가 사라지면 무너진다. 그러나 복음의 힘에 의존하는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매디슨이 「기념과 항의」에서 선언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진정한 종교는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초대 교회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300년간 성장했다. 침례교는 266년간의 박해 속에서 성장했다. 1791년 이후 미국 교회는 국가의 지원 없이 230년간 번성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 국교회들의 쇠퇴는 이 역설을 역사적으로 확인해 준다.

이 원리 앞에서 한국 교회는 자유롭지 않다. 한국의 일부 대형 교회들은 정치 권력과 밀착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 대통령 조찬 기도회, 정치인과의 공개적 친교, 정부 위원회 참여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활동들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이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대언자로서의 기능을 잃을 위험이 있다.

국가 권력과 밀착한 교회는 국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려워진다. 침례교 역사가 가르치는 교훈은 분명하다. 교회는 국가의 보호가 아니라 복음의 힘으로 서야 한다. 국가와의 밀착은 단기적으로는 유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교회를 약하게 만든다.

한국 교회가 국가 권력에 의존하는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자.

첫째, 이단 대책의 국가 의존이다. 대형 교단이 자체적으로 이단을 규정하는 일은 교단의 자유이다. 그러나 그 규정을 근거로 국가에 법적 조치를 요구하

는 행위는 국가의 칼을 빌리는 것이다. 이는 어거스틴이 도나투스파에 대해 로마 당국의 강제력을 요청한 사례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둘째, 정치적 영향력의 추구이다. 일부 대형 교회는 정치인들과의 밀착을 통해 교회의 이익을 보호하려 한다. 이는 중세 교황이 세속 군주와 동맹을 맺은 경우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셋째, 세금 면제와 토지 특혜의 기대이다. 종교 단체에 대한 세금 면제는 사실상의 국가 지원이다. 교회가 이 특혜를 당연시하고 그 유지를 위해 정치적으로비를 한다면, 이는 국가의 보호에 의존하는 행위이다. 침례교의 원리에 따르면, 교회는 이 모든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회의 힘은 국가의 보호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서 나와야 한다.

결론 - 정교분리는 침례교가 세상에 준 선물

침례교가 지켜 낸 이 원리는 결국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들이 어떤 형태로든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침례교가 처음 주장하고, 고난 가운데 증명하며, 끝까지 붙들어 온 원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와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의 뿌리를 추적하면 1791년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에 이르고, 그 뿌리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1525년 재침례교에 닿는다.

한국 교인이 누리는 종교의 자유는 266년간 침례교인들이 피를 흘려 쟁취해 낸 자유이다. 이 사실을 아는 한국 교인은 많지 않다.

이 역사적 연결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 교회는 1884년 선교사들의 도착 이래 14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는 140년이 아니라 500여 년의 역사 위에서 있다.

1525년 취리히부터 1791년 수정 조항 제1조 비준을 포함하는 500여 년의 투쟁 위에 한국 헌법 제20조가 서 있기 때문이다. 이 역사를 모르면 종교의 자유

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것을 지킬 의지도 사라진다.

그러나 법 조문이 있다고 해서 그 원리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법 조문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 정신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법이 살아 있게 된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교분리의 역사를 모르면, 헌법 제20조의 무게를 알 수 없다. 무게를 모르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가볍게 여기면 쉽게 포기하게 된다. 이 책이 그 역사를 들려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66년 양심의 자유 투쟁의 역사는 결국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친다. 진정한 신앙은 자유 속에서만 꽃핀다. 국가와 분리된 자유 속에서, 교회는 양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한다.

미국 침례교의 역사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한국 교회도 이 진리 앞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국가 권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순수한 힘에 의존해야 한다. 대형 교단이 국가에 특정 종교의 해산을 요청하는 것은, 자기 복음의 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고백이다.

만약 우리의 복음이 참되다면, 복음 자체의 힘으로 충분하다.

만약 복음의 힘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국가의 칼을 빌려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복음 이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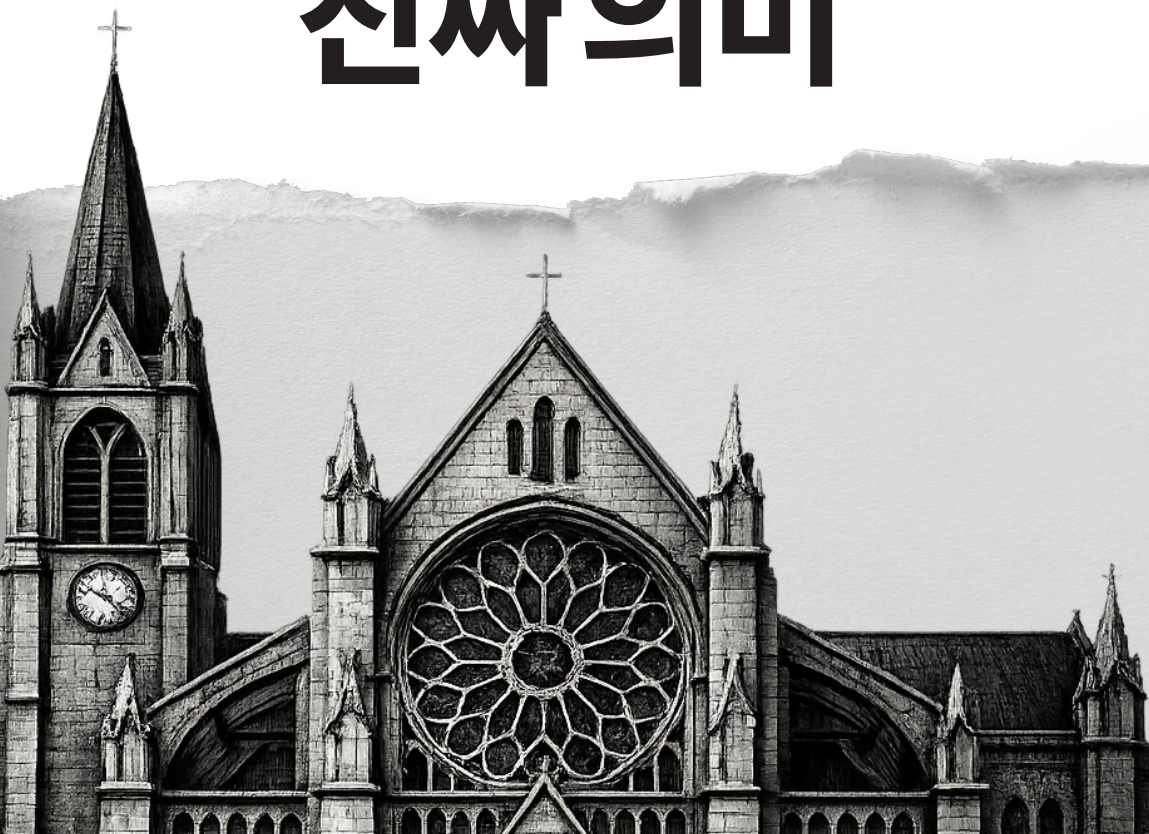
침례교인들은 266년 동안 국가의 도움 없이, 오히려 국가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의 힘만으로 성장했다. 침례교의 여정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진리의 길, 그리고 자유를 향한 오랜 투쟁과 승리의 역사였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는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강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권력이 아니라 진리로 서야 한다.

제4장부터 제6장까지 우리가 추적한 이 여정은 단순한 교파의 역사가 아니다. 이것은 인류가 양심의 자유를 향해 걸어온 가장 위대한 여정이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7장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 원리를 둘러싼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바로 그렇기에 성경 신자들이 지켜온 이 원리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일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과제이다. 다음 장에서는 수정 조항 제1조가 비준된 이후 230여 년간 미국에서 이 원리가 어떻게 실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겠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교분리가 구체화된 과정, 그리고 이 원리가 왜곡되거나 악용된 사례들을 검토할 것이다.



정교분리의 진짜 의미



3

정교분리 실행

국가가 종교 단체 해산권을 갖도록 허용하는 순간,
오늘은 통일교와 신천지를 겨냥하지만,
내일은 정권과 여론이 불편하게 여기는
다른 교회와 교단을 향해 그 칼을 돌릴 수 있다.
정교분리의 진정한 정신은,
바로 그 칼을 아예 만들지 않는 데 있다.





미국에서의 정교분리 실행과 문제점

1791년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비준된 이후, 미국의 정교분리 원칙은 230여 년 동안 살아 있는 법적 현실로 작동해 왔다. 그러나 이 조항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었다. 때로는 좌파에 의해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도구로 오용되었고, 때로는 우파에 의해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되었다.

침례교인들이 266년에 걸쳐 피 흘리며 지켜 낸 정교분리의 본래 목적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종교를 보호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이 원칙은 점차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제거하는 논리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는 정교분리의 취지를 거꾸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해석의 변화는 한국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교분리라는 명분 아래 교회의 공적 발언 자체를 봉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보호인지 배제인지 분별해야 한다.

법 조문은 고정된 문장이 아니라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해석과 적용이 요구된다. 미국 건국자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상

항들—공립 학교 교육의 보편화, 대중 매체의 발달, 종교 다원주의의 심화, 문화 전쟁의 격화—이 펼쳐지면서, 국교 설립 금지 조항과 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 사이의 긴장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국교 설립 금지 조항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고, 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사실상의 국교가 형성될 위험이 있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 230년간 계속되어 온 과제이다. 이 장은 바로 그 지점을 역사적·법적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수정 조항 제1조의 230년 실행 역사를 주요 판례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좌파에 의한 오용과 우파에 의한 남용을 차례로 검토한다. 이어 실제 미국 교회의 적용 사례를 살펴본 뒤, 결론에서 한국 교회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특히 미국 교회의 적용 사례는 한국 교회가 정교분리 원칙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1. 헌법 수정 조항 제1조 230년의 실행 역사

초기 100년 - 연방(Federal, 聯邦)과 주(State, 州)의 이중 구조

수정 조항 제1조는 원래 연방 의회만을 구속했다. “[연방] 의회는(Congress shall make no law)…”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각 주는 여전히 자체적인 국교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매사추세츠는 1833년까지, 코네티컷은 1818년까지 사실상의 국교 체제를 유지했다. 수정 조항 제1조의 비준이 곧바로 미국 전역의 정교분리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교분리를 향한 원칙적 선언은 이미 나와 있었다. 1802년 토마스 제퍼슨은 코네티컷 덴버리 침례교 협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수정 조항 제1조가 “교회와 국가 사이에 분리의 벽”을 세운 조항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이며… 나는 미국 국민이 수정 조항 제1조를 통해 교회와 국가 사이에 분리의 벽을 세웠다는 점에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각 주에서의 국교 폐지 과정은 점진적이었다. 버지니아는 1786년에 이미 종교자유법을 통과시켰으나, 매사추세츠는 1833년까지 회중교회를 사실상의 국교로 유지했다. 코네티컷은 1818년에야 국교 체제를 폐지했고, 뉴햄프셔는 1877년까지 개신교인만 주 의회 의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유지했다. 이처럼 수정 조항 제1조가 비준된 이후에도 미국 전역에서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확립되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남북전쟁(1861-1865) 이후 채택된 헌법 수정 조항 제14조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1868년에 비준된 수정 조항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Due Process Clause)과 ‘동등 보호 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은 연방 헌법상의 권리를 각 주 정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수정 조항 제1조의 ‘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이 실제로 각 주에서 본격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된 때는 20세기 중반 이후였다.

1940년 ‘캔트웰 대 코네티컷’(Cantwell v. Connecticut) 사건에서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을 각 주에 적용했고, 1947년 ‘에버슨 대 교육위원회’(Everson v. Board of Education) 사건에서는 ‘국교 설립 금지 조항’을 주 정부에도 적용했다. 이로써 수정 조항 제1조는 명실상부하게 미국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원칙이 되었다. 이 과정은 보통 ‘편입’(incorporation)이라 불린다. 원래 권리 장전은 연방 정부에 대한 제한이었으나, 수정 조항 제14조를 통해 각 주 정부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종교 조항의 편입은 특히 중대한 의미를 지녔다. 편입 이전에는 매사추세츠처럼 주 차원에서 사실상의 국교를 유지하더라도 합헌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그러나 편입 이후에는 어느 주도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수정 조항 제1조의 보호 범위는 획기적으로 확장되었다. 다만 이 과정에는 또 다른 결과도 뒤따랐다. 연방 대법원이 각 주의 종교 정책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소수의 대법관이 미국 전체의 종교 문화와 공적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는 훗날 ‘전략적 소송’(strategic litigation)을 통한 법 해석 투쟁이 심화되는 배경이 되었다.

20세기 - 대법원 판례의 시대

1947년의 ‘에버슨 대 교육위원회’(Everson v. Board of Education)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정 조항 제1조의 국교 설립 금지 조항을 주 정부에도 적용했다. 휴고 블랙(Hugo Black)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제퍼슨의 ‘분리의 벽’을 인용하며, 아래와 같이 선언했다.

“교회와 국가 사이의 벽은 높고 난공불락이어야 한다.”

이 판결은 현대 정교분리 법리의 출발점이 되었다.

에버슨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이렇었다. 뉴저지 주 머서 카운티의 지방자치단체인 이윙 타운십(Ewing Township, Mercer County, New Jersey)은 공립 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하던 통학 버스 비용 환급 제도를 사립 학교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그 사립 학교들 가운데 상당수가 로마 카톨릭교회가 운영하는 교구 학교였다. 당시 미국 사회에는 카톨릭교회의 교육 활동에 대한 강한 경계심이 존재했고, 특히 공적 자금이 카톨릭 학교에 흘러 들어가는 데 대한 반감이 적지 않았다.

납세자였던 에버슨(Arch Everson)은 바로 이 점을 문제 삼았다. 비록 환급 형식은 ‘학부모에게 지급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카톨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므로 결과적으로 종교 학교를 공공 자금으로 돕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수정 조항 제1조의 ‘국교 설립 금지 조항’(Establishment Clause)에 위배된다는 논리였다. 다시 말해, 국가가 특정 종교 기관의 교육 활동을 간접적으로라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헌법이 금지한 ‘국교 설립’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는 논거였다.

에버슨의 소송은 단순히 카톨릭에 대한 반감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정교분리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국가와 종교 사이에는 재정적 연계조차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국가가 종교를 직접 설립하거나 강제하지는 않더라도,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5대 4의 근소한 차이로 환급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다수 의견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다.

첫째, 환급의 대상은 학교가 아니라 학부모이다.

둘째, 이 정책은 특정 종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돕기 위한 일반적 공공복지 정책이다.

셋째, 공립 학교 학생과 사립 학교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 정책은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즉, 대법원은 “공공 서비스가 종교 기관에 간접적 이익을 준다고 해서 자동으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원칙을 세운 셈이다. 동시에 다수 의견에서 휴고 블랙 대법관이 제퍼슨의 ‘분리의 벽’을 강하게 인용했기 때문에, 이 판결은 한편으로는 분리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범위의 공공 지원을 허용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 사건은 결국 두 가지 흐름을 동시에 열어 놓았다. 하나는 정교분리의 ‘벽’을 헌법 해석의 핵심 언어로 정립한 점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 기관에 대한 간접적·중립적 지원은 허용될 수 있다는 길을 연 점이다. 이후 미국의 교육 바우처, 교통 지원, 교과서 대여, 세액 공제 문제 등은 모두 이 ‘에버슨 대 교육위원회’ 판결의 틀 안에서 논의되었다.

한편 ‘에버슨 대 교육위원회’ 판결을 내린 블랙 대법관의 배경도 주목할 만하다. 블랙은 앨라배마 출신의 침례교인이었다. 그는 정교분리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바탕에는 침례교 전통이 자리하고 있었다. 블랙 대법관이 제퍼슨의 ‘분리의 벽’ 표현을 판결문에 인용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으며, 이를 통해 침례교의 정교분리 전통은 헌법 해석의 언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블랙 대법관의 판결 이후 ‘분리의 벽’이라는 표현은 점차 본래 의미를 넘어 확대 해석되기 시작했다. 블랙 자신은 분리가 종교에 대한 적대감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으나, 후대의 법학자들과 좌파 활동가들 가운데 일부는 이 표현을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이는 정교분리 원리가 원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전용된 역설적 사례이다.

1962년 ‘앵겔 대 바이탈’(Engel v. Vitale) 사건¹에서 대법원은 공립 학교에

1. 스티븐 앵겔(Steven Engel)을 포함한 학부모들은 뉴욕주 교육위원회가 공립 학교에서 초교과적 기도문 낭독을 주도한 것이 ‘국교 설립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대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판결하며 미국 공립 학교에서 공식적인 단체 기도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서 정부가 작성한 기도문을 낭독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것은 뉴욕 주 교육위원회가 작성한 22개 단어의 짧은 기도문이었지만, 대법원은 그 형식과 길이에 관계없이 정부가 기도를 주도하는 행위 자체가 ‘국교 설립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이듬해인 1963년 ‘애빙턴 교육구 대 스킴프’ (Abington School District v. Schempp) 사건²에서는 공립 학교에서의 성경 봉독과 주기도문 낭독 역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두 판결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많은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대법원이 “하나님을 학교에서 몰아냈다.”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논리는 분명했다.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유이다. 다만 정부 기관인 공립 학교가 공식적으로 기도를 주도하거나 성경 봉독을 의무화하는 것은 국교 설립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이 판결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앨라배마 주지사 월리스(George C. Wallace)는 이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일부 침례교 지도자들은 이 판결을 지지했다. 당시 전미 침례교 연합(Baptist Joint Committee on Public Affairs)의 책임자였던 이 매뉴얼 칼슨(C. Emanuel Carlson)은 “정부가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교분리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었다. 문제는 학교에서의 기도 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기도문을 작성하고 이를 공적 권위로 강요한 데 있었다. 학생의 자발적 기도는 여전히 보호받는 권리였다.

1971년 ‘레몬 대 커츠먼’(Lemon v. Kurtzman)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이른바 ‘레몬 테스트’(Lemon Test)를 확립했다. 해당 소송의 원고였던 알톤 레

2. 에드워드 스킴프(Edward Schempp) 가족은 공립 학교에서 성경 봉독과 주기도문 낭독을 의무화한 펜실베이니아 주 법률이 자녀들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를 국교 설립 금지 조항 위반으로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훗날 ‘레몬 테스트’의 초석을 놓은 기념비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문(Alton Lemon)의 성에서 명칭을 따온 이 기준은, 정부의 행위가 국교 설립 금지 조항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 첫째, 해당 정부 행위는 반드시 종교와 무관한 세속적인 입법 목적을 지녀야 한다.
- 둘째, 그 행위의 주된 효과가 특정 종교를 조장하거나 억제해서는 안 된다.
- 셋째, 정부와 종교 단체 사이에 과도한 행정적 뒤엉킴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이 기준은 이후 수십 년간 정교분리 사건의 판단 틀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레몬 테스트’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보수적 법학자들은 이 기준이 종교에 대한 적대적 중립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앤터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는 ‘레몬 테스트’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좀비’에 비유하며, 일관성 없이 적용되는 이 기준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적 법학자들은 ‘레몬 테스트’가 정교분리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옹호했다. 이 논쟁은 결국 정교분리의 ‘벽’이 얼마나 높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시각 차이를 반영한다.

21세기 - 해석의 전환

2005년의 ‘반 오르덴 대 페리’(Van Orden v. Perry) 사건³과 ‘맥크리어리 카운티 대 미국시민자유연맹’(McCreary County v. ACLU) 사건⁴은 같은 해에 내려진 판결이면서도 상반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 텍사스 주 의사당 앞의 십계명 비석은 합헌으로, 켄터키 주 맥크리어리 카운티와 폴라스키 카운티 법원 청사의 십계명 게시는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그 차이는 맥락에 있었다. 텍사

3. 전직 변호사 토마스 반 오르덴(Thomas Van Orden)은 텍사스 주 의사당 부지에 설치된 십계명 비석이 국교 설립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대법원은 해당 비석이 주변 역사적 기념물들과 어울려 텍사스의 법적·문화적 역사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합헌이라 판결했으며, 이는 정교분리 판단에서 설치 맥락과 역사적 전통이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 준 사례이다.
4. 반 오르덴 사건과 같은 날 판결되었으나 상반된 결론이 내려진 사건으로, 켄터키 주 법원 내부에 십계명을 게시한 지역 공직자들을 상대로 미국시민자유연맹이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대법원은 해당 카운티들이 소송 제기 후에야 다른 역사적 문서들을 추가한 점을 근거로 그 실질적 목적이 종교 전파에 있다고 보아 5대 4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스 주의 비석은 40년 이상 여러 기념물 사이에 서 있었으므로 역사적 성격이 강하다고 본 반면, 켄터키 주의 게시물은 종교적 목적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십계명’이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합헌이 될 수도, 위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이다.

그렇다면 공공건물에 세워지거나 게시된 십계명은 종교적 행위인가, 아니면 역사적 전통의 계승인가? 2005년의 두 판결은 이에 대해 “맥락에 따라 다르다.”라고 답했다. 정교분리는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 속에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원칙이라는 점을 두 판결은 분명히 보여 주었다. 2022년의 ‘케네디 대 브레머턴 교육구’(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사건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고등학교 풋볼 코치가 경기 후 경기장에서 개인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문제가 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6대 3으로 코치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레몬 테스트’를 사실상 폐기하고, 대신 역사적 관행과 전통에 기초한 해석을 채택했다. 이 판결은 종교적 표현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이 판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셉 케네디(Joseph A. Kennedy)는 워싱턴 주 브레머턴 고등학교의 미식축구 코치였다. 그는 경기 후 50야드 라인에서 무릎을 꿇고 짧은 기도를 드렸다. 학교 측은 이를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케네디가 이를 거부하자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케네디는 학교의 지시가 자신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정부가 종교적 표현을 억압하는 것은 수정 조항 제1조의 이중 보장—국교 설립 금지와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모두에 반한다.”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역사적 관행과 전통에 기초한 새로운 분석 틀이 제시되었다. 진보 진영은 이 판결이 정교분리의 벽을 약화시킨다고 우려했고, 보수 진영은 종교의 자유가 회복되었다고 환영했다.

2024년, 루이지애나 주는 공립 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즉각적인 법적 도전을 받았다. 반대 측은 이것이 국교 설립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고, 찬성 측은 십계명이 미국 법의 역사적 기초이므로 교육적 목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논쟁은 현재도 진행 중이

다. 주목할 점은, 이 법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침례교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학교에 십계명이 걸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침례교의 정교분리 원리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만약 정부가 십계명을 게시할 수 있다면, 정부가 꾸란(코란)이나 불교 경전의 구절을 게시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 물음이야말로 정교분리 원칙의 일관성을 가장 날카롭게 묻는 질문이다.

수정 조항 제1조의 230년 역사는 고정된 해석의 연속이 아니라 끊임없는 균형 조정의 과정이었다. 국교 설립 금지와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 보장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미국 사회는 시대마다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판례의 흐름을 종합하면, 미국의 정교분리 해석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건국기(1791-1947)는 원래 의도에 비교적 가까운 시기였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특정 교회를 세우지 않고 종교를 억압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에 초점을 두었다.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적 표현은 비교적 자유로웠다.

둘째, 세속화 시기(1947-2000년대)는 대법원이 ‘레몬 테스트’를 적용하면서 정교분리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했다. 공립 학교 기도 금지, 십계명 게시 제한 등이 이루어졌으며, 전략적 소송이 활발했다.

셋째, 재균형 시기(2000년대 이후)는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에 다시 주목하면서, 과도한 종교 배제를 바로잡으려는 흐름이 나타난 시기이다. ‘케네디 대 브레머턴 교육구’ 판결(2022)은 이 시기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의 상황은 미국의 세속화 시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교회의 공적 발언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판례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는 일은 단순한 비교 연구가 아니라, 현재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참고가 된다.

2. 좌파의 오용 - 공적 영역에서 종교 제거 시도

정교분리 원칙이 좌파에 의해 오용되는 대표적 사례는, 정교분리를 ‘종교의

자유 보장'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완전한 제거'로 해석하는 데 있다. 수정 조항 제1조의 본래 취지는 정부가 특정 종교를 강제하거나 설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데 있었지, 공적 영역에서 모든 종교적 표현을 금지하는 데 있지 않았다.

1962년과 1963년의 공립 학교 기도 관련 판결 이후, 일부 세속주의자들은 해당 판결을 확대 해석해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 표현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려 했다. 이른바 '공격적 세속주의'(aggressive secularism)가 등장했다.

이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정교분리는 종교와 정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공간에서 종교적 표현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종교는 철저히 사적인 영역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 전략의 단계적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좌파 세속주의자들은 정교분리를 근거로 삼아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전략을 취했다.

1단계는 정부 주도의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일이다(공립 학교 기도 금지). 이 단계 자체는 수정 조항 제1조의 본래 취지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

2단계는 정부 시설에 존재하는 종교적 상징물을 제거하는 일이다(십계명 철폐, 성탄 장식 제거). 이 단계에서부터 논쟁이 본격화된다.

3단계는 공직자의 종교적 발언을 문제 삼는 일이다. 정치인이 자신의 신앙을 언급하면 이를 '정교분리 위반'으로 공격한다.

4단계는 종교적 가치관에 근거한 정책적 입장을 '정교유착'으로 규정하는 일이다. 낙태 반대나 동성혼 반대와 같은 입장을 '종교를 법으로 강제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5단계는 종교를 순수한 사적 영역으로 밀어내어 공적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일이다. 이러한 패턴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미국인을 위한 정교분리 연합(AUSCS),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FFRF) 등은 정교분리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수십 년간 조직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 표현을 제거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들은 공공건물에서의 십계명 제거, 공립 학교 졸업식에서의 기도 금지, 공공

장소의 크리스마스 장식 철거 등을 요구하며, 정부 기관에서 어떤 종교적 상징이나 표현이라도 허용되면 국교 설립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⁵ FFRF는 매년 수천 건의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지방 정부와 학교에 이른바 ‘요구 서한’(demand letter)을 보내 종교적 표현을 중단하라고 압박한다. 소규모 지방 정부나 학교는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에서 다툰 경우 승산이 있는 사안이라도, 비용 부담 때문에 십자가를 철거하거나 기도를 중단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이는 소송 위협을 통한 압박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로, 2010년 모하비 사막의 참전 용사 추모 십자가(Salazar v. Buono) 사건⁶에서는 75년간 세워져 있던 작은 십자가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2014년에는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FFRF)이 위스콘신 주 마쉬필드 시청 앞에 60년 이상 서 있던 예수 그리스도 동상의 철거를 요구했다.⁷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오랜 기간 문제없이 존재하던 종교적 상징물이 갑자기 위헌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학교에서의 성경 읽기 문제 역시 논란이 컸다. 1963년 ‘애빙턴 교육구 대 스퀴프’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립 학교에서 매일 아침 성경을 낭독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한 펜실베이니아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국가가

-
5.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1920년 설립되어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 기관 내 종교적 행위를 감시한다. ‘미국인을 위한 정교분리 연합’(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은 1947년 설립되어 교회와 국가의 엄격한 분리를 옹호하며,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은 1978년 설립된 무신론·불가지론 성향의 단체로 공공 장소와 학교에서의 종교적 의례 및 상징물 전시에 법적으로 대응한다.
 6. 전직 국립 공원 관리직원 프랭크 부오노(Frank Buono)는 캘리포니아 주 모하비 국립 보호 구역 내 연방 부지에 설치된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 추모 십자가가 국교 설립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대법원은 해당 십자가가 종교적 의미뿐 아니라 추모와 역사적 맥락을 지닌다고 보아 토지 교환을 통한 십자가 존치를 허용했으며, 이는 공공장소의 종교 상징물을 역사적 추모 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된 사례이다.
 7. 마쉬필드 시 의회는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의 철거 요구에 맞서 동상이 위치한 부지를 성 요한 침례교회에 2만 5천 달러에 매각하여 논란을 해소했다. 이는 헌법적 원칙과 종교적 유산이 충돌할 때 사법적 판결 대신 행정적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이다.

종교 의식을 주도하는 행위가 ‘국교 설립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학생 개인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는 행위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톰 클라크(Tom C. Clark)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종교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배제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국가의 종교 의식 주도는 금지되지만, 개인의 종교 활동은 보호된다는 구분이었다.

문화적 영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이어졌다. 일부 학교에서는 독립선언서에 포함된 ‘창조자’(Creator)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려 했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휴일 트리’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로 바꾸라는 압력이 가해지기도 했다. 이러한 시도는 정교분리라는 이름 아래 문화적 기독교 요소를 공적 공간에서 축소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수정 조항 제1조는 종교적 강제를 금지할 뿐, 사회 전반에서의 종교적 표현을 제거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공립 학교에서의 창조-진화 논쟁도 중요한 쟁점이다. 1925년 테네시 주 대 존 토마스 스코프스(State of Tennessee v. John Thomas Scopes)⁸ 이후 이 논쟁은 계속되어 왔다. 1968년 ‘에퍼슨 대 아칸소’(Epperson v. Arkansas) 사건⁹에서 대법원은 공립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금지한 아칸소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국가가 특정 종교적 동기에 기초해 교육 내용을 제한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이른바 ‘과학 대 종교’라는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은 과학을 객관적 사실, 종교를 주관적 믿음으로 구분하고 공적 영역에는 객관적 사실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 구분 자체가 중립적 전제가

8. 1925년 테네시 주에서 고등학교 교사 존 스코프스(John Thomas Scopes)가 공립 학교 내 진화론 교육을 금지한 버틀러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기독교 근본주의를 수호하려는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William Jennings Bryan)과 민권 변호사 클레런스 데로우(Clarrence Darrow)의 법정 대결로 전 세계적 관심을 모았으며, 유죄 판결로 끝났으나 성경의 권위와 근대 과학 교육 사이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건으로 평가된다.

9. 아칸소 주 고등학교 생물 교사 수전 에퍼슨(Susan Epperson)은 진화론 교육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주법이 특정 종교적 신념을 옹호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스코프스 재판 이후 여러 주에서 유지되어 온 진화론 교육 금지 조항들이 효력을 잃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아니라 특정 철학적 입장에 기초한 주장이다. 진화론은 자연주의적 전제 위에서 있으며, 이 전제는 과학적 실험의 산물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가정이다. 자연주의를 허용하면서 유신론적 전제는 배제하는 것은 특정 세계관을 사실상 우대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부 주에서는 ‘동등 대우법’(Balanced Treatment Act)을 제정해, 진화론을 가르칠 때 ‘창조 과학’(Creation Science)도 함께 다루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1987년 ‘에드워즈 대 아귈라드’(Edwards v. Aguillard) 사건¹⁰에서 대법원은 루이지애나 주의 해당 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창조 과학’은 과학적 이론이라기보다 종교적 교리에 가까우며, 이를 공립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는 국교 설립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판단이었다.

2005년에는 ‘지적 설계’(Intelligent Design)를 둘러싼 논쟁이 재차 불거졌다. ‘키츠밀러 대 도버 교육구’(Kitzmiller v. Dover Area School District) 사건¹¹에서 펜실베이니아 연방 지방법원은 지적 설계를 공립 학교에서 과학으로 가르치도록 한 도버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판사는 지적 설계가 종교적 관점을 과학적 언어로 재구성한 이론에 가깝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결들에 대해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꾸준히 강하게 반발해 왔다. 그들의 논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10. 고등학교 생물 교사 돈 아귈라드(Don Aguillard)는 진화론 교육 시 창조 과학도 함께 가르치도록 규정한 루이지애나 주법이 종교적 신념을 공립 학교에 강제 주입하려는 시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종교적 의도로 입법되었다고 판단하여 7대 2로 위헌을 선언했으며, 이는 미국 공립 교육에서 창조론 기반 교육을 차단하는 법적 이정표가 되었다.

11. تام미 키츠밀러(Tammy Kitzmiller)를 포함한 학부모들은 펜실베이니아 주 도버 지역 교육위원회가 생물 수업에서 진화론의 대안으로 지적 설계론(Intelligent Design)을 가르치도록 결정한 것이 국교 설립 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존 존스 3세(John E. Jones III) 판사는 지적 설계론이 과학적 이론이 아닌 종교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위헌 판결을 내렸고, 이는 지적 설계론을 공립 학교 과학 교육에 포함하려는 시도를 차단한 최초의 법적 판결로 평가된다.

“진화론도 과학계 내에서 하나의 이론이라면, 창조론도 하나의 설명 틀로 소개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둘 다 제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편이 교육적으로 더 공정하지 않은가?”

그러나 미국 대법원의 논리는 분명하다. 공립 학교는 국가 기관이므로, 국가가 특정 종교적 교리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은 국교 설립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성경의 창조 기록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공립 학교에서 진화론만을 가르치는 현실이 심각한 불균형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정교분리의 기본 원칙은 이렇다. 국가는 종교적 교리를 가르칠 수 없다. 반대로, 그리스도인 가정과 교회는 자녀에게 성경의 창조 기록을 가르칠 충분한 자유를 가진다. 이 자유가 바로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의 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이 보호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국가가 진화론만을 가르치는 데 대한 불만의 해결책을 “국가 창조론까지 가르치라.”라고 요구하는 데서 찾기보다는, 교회와 가정이 책임 있게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이것이 정교분리 원칙에 더 부합하는 접근이다.

또한 ‘사실’과 ‘가치’를 엄격히 구분해 종교적 가치를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는 주장 자체가 하나의 가치 판단이다. 세속주의를 중립으로 규정하고 종교적 관점을 편향으로 간주하는 견해는 세속주의를 사실상의 공적 기준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수정 조항 제1조는 정부가 종교를 설립하는 행위를 금지했지, 종교적 관점을 공적 토론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정교분리를 종교 배제로 해석하는 것은 그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국가 주도의 종교 행위와 개인의 자발적 종교 표현 사이의 이 구분이 무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학교에서는 판결을 과잉 적용해, 학생이 점심시간에 혼자 성경을 읽는 것,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것, 심지어 성경 구절이 적힌 티셔츠를 입는 것까지 제한하려 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과잉 적용이었다. 대법원은 국가

가 종교를 강제하거나 주도하는 행위를 금지했지, 개인의 자발적 종교의 자유 실행을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안전한 행정’을 추구하려는 학교 당국이 모든 종교적 표현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오히려 침해되는 역설이 나타났다. 이것이 정교분리의 좌파적 오용의 전형적 사례이다. 이러한 극단적 해석의 문제점은 분명하다.

첫째, 수정 조항 제1조의 본래 의도와 충돌한다. 헌법 제정자들은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추방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특정 종교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려 한 것이다. 제퍼슨 역시 대통령 재임 중 공식 문서와 연설에서 하나님을 언급했다.

둘째, 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을 경시한다. 수정 조항 제1조는 국교 설립 금지와 함께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을 보장한다. 공적 공간에서 모든 종교적 표현을 금지한다면, 이 두 번째 보장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셋째, 결과적으로 세속주의를 공적 기본값으로 만든다. 공적 영역에서 모든 종교를 배제하는 것은 ‘무종교’라는 특정 세계관을 표준으로 삼는 것이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편향일 수 있다.

좌파의 종교 배제 논리에는 구조적 긴장이 존재한다. 좌파는 다양성(diversity)과 포용(inclusion)을 강조한다. 그런데 막상 종교적 다양성과 종교적 관점의 공적 표현에 대해서는 제한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많은 대학은 인종·성별·성적 지향과 관련된 다양성은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에서 나오는 전통적 교리나 도덕관은 오히려 다양성을 해치는 관점으로 규정한다. 실제로 일부 캠퍼스에서는 기독교 학생 단체가 성경적 교리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학교의 공식 인준을 취소하거나, 종교적 입장을 공적 토론에서 ‘혐오 발언’으로 분류하는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이렇게 되면, 다양성과 포용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특정 세계관, 특히 전통적 종교 관점은 공적 공간에서 밀어내는 모순이 생긴다.

이러한 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일부 좌파 진영에서는 종종 칼 포퍼(Karl Popper)의 ‘불관용에 대한 불관용의 역설’(paradox of tolerance)을 인용한다. 포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완전히 무제한의 관용은 결국 관용 자체를 파괴하는 세력에게 이용당할 수 있으므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불관용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관용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하다.”

문제는,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행위 자체를 이런 ‘파괴적 불관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오히려 다른 관점을 허용하지 않고 종교적 발언을 일괄적으로 ‘혐오’나 ‘불관용’으로 낙인찍어 배제하는 태도야말로 또 다른 형태의 배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공격적 세속주의의 논리적 귀결은 프랑스식 세속주의인 라이시테에 가깝다. 프랑스는 1905년 정교분리법 이후 종교를 철저히 사적 영역에 한정하는 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2004년에는 공립 학교에서 눈에 띄는 종교적 상징물(히잡, 키파, 대형 십자가)의 착용을 금지했고, 2010년에는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의복(부르카, 니캅)의 착용을 금지했다. 이는 국가가 종교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반면 미국의 정교분리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종교를 억제하기보다는 간섭하지 않는 방향을 지향한다. 미국식 정교분리는 ‘종교로부터의 자유’보다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는 전통 위에서 있다.

좌파 세속주의 논쟁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중립’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정교분리의 본래 의미는, 정부가 종교에 대해 어느 편도 들지 말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데 있다. 여기에서 중립이란 특정 종교를 지지하지도 않고 적대시하지도 않는 태도를 뜻한다.

그런데 공적 영역에서 모든 종교적 표현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곧 중립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다. 종교적 표현은 금지하고 세속적 표현만 허용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중립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공립 학교 수업에서 유신론적 설명은 ‘종교’라며 배제하면서, 자연주의적·무신론적 전제에 기초한 설명은 ‘중립적’이라고 간주해 허용한다면, 실제로는 특정 철학, 즉 세속적 자연주의를 기본 전제로 채택하는 셈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963년 ‘에빙턴 교육구 대 스캴프’ 판결에서 스투어트(Potter Stewart) 대 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이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그는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 실천을 전면 제거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중립이 아니라, 사실상 ‘세속주의라는 하나의 세계관’을 국교처럼 세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논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 프랑스의 중간 어딘가에 있다. 한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제20조 제2항)고 규정한다. 그러나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표현은 해석의 여지가 넓다. 이를 미국식 정교분리로 이해할 것인가, 프랑스식 세속주의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적용은 달라질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종교인의 공적 발언이 때때로 ‘정교분리 위반’으로 비판받는다.

그러나 미국식 해석에 따르면, 종교인이 자신의 신앙에 기초해 공적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결국 핵심은 종교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종교를 강제하거나 억압하는가에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에서 좌파가 정교분리를 악용하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교회의 사회적 발언을 봉쇄하려는 시도이다. 목사가 설교 중에 동성애, 낙태, 공산주의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성경적 입장을 밝히면, 일부 좌파 매체와 단체는 즉각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공격한다. 이 점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겠지만, 목사가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해 사회적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정교분리 위반이 아니다. 이는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free exercise)에 해당한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강제하거나 특정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지, 종교인이 공적 사안에 대해 침묵하도록 강요하는 원칙이 아니다. 설교단에서 성경이 다루는 죄와 도덕, 정의와 불의의 문제를 말하는 것까지 금지한다면, 이는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처사이다.

둘째, ‘혐오 표현’ 프레임을 통한 종교적 발언 억압이다. 한국의 좌파 진영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¹² 제정을 추진하면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종교적 발언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려 한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목사가 성경에 근거해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국가가 종교 교리의 내용을 통제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성경이 무엇을 죄라고 말하는지를 설교하는 행위는 교회의 고유 영역에 속한다. 국가가 특정 교리의 표현을 금지하거나 처벌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교리의 내용을 국가가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것이 된다. 이는 정교분리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셋째, 교회의 정치 참여 자체를 ‘정교유착’으로 매도하는 전략이다. 한국의 좌파 진영은 교회가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기만 하면, 정교유착이라고 공격한다. 교회가 낙태에 반대하거나, 공산주의를 비판하거나, 종교 단체 해산법에 반대하기만 해도 정교유착이라는 식이다. 이 논리로라면 교회는 오직 영적 문제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지 정교분리가 아니다. 정교분리는 국가 권력이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지,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 발언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가 아니다.

한국 좌파의 이러한 전략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 쟁점임을 보여주는 해외 사례들도 존재한다.

캐나다에서는 2017년 C-16 법안(Bill C-16)¹³이 통과되면서 성별 정체성과 성별 표현이 인권법의 보호 대상에 추가되었다. 그 이후 일부 목사들과 보수

12. 대한민국 국회에서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골자로 발의된 법안들을 통칭한다. 제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 발의를 시작으로 여러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과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모두 폐기되었고, 제22대 국회에서도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교계는 이 법안들이 성경적 가치관 선포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13. 캐나다 인권법 및 형법 개정안(An Act to amend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and the Criminal Code)은 차별 금지 사유에 성 정체성과 성적 표현을 추가한 법안으로, 2017년 6월 19일 발효되었다. 토론토 대학의 조던 피터슨(Jordan B. Peterson) 교수가 이를 국가 권력에 의한 언어 강제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세계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교계에서는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성별 정의 선포가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기독교 단체들 사이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성별 이분법이나 동성 간 행위를 죄라고 가르치는 것이 ‘혐오 발언’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논란이 일었다. 서스캐처원 주에서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전단지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한 시민이 인권위원회 제재를 받았다가 상급심에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구제된 사례도 있었고, 다른 사건에서는 보다 강한 표현 때문에 제재가 유지된 사례도 있었다.

스웨덴에서는 2003년 오케 그린(Åke Green) 목사가 설교 중 동성애를 비판했다가 ‘혐오 선동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항소심·최고재판소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영국에서는 2010년 거리 전도자 데일 매칼파인(Dale McAlpine)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공공질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결국 경찰이 과도한 조치였음을 인정했고 기소는 취소되었다.

핀란드에서는 국회의원 파이버 뤼새넨(Päivi Räsänen)이 2019년 트위터에 로마서 1장을 인용한 것을 계기로 ‘혐오 발언’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과 항소심에서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2024년에는 대법원이 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차별 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실제로 어떻게 압박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한국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일한 유형의 분쟁이 한국 법정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목사가 성경 그대로 설교한 내용이 ‘혐오 발언’이나 ‘차별’로 규정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좌파가 정교분리라는 명분으로 종교적 목소리를 공적 영역에서 약화시키려는 최종 목표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이중 기준’(double standard)으로 귀결된다. 진보적 교회의 정치 참여는 대언자적 사명으로 높이 평가되지만, 보수적 교회의 발언은 정교유착으로 공격받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 기준은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미국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침례교 목사였던 마르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1929-1968)은 설교단에서 시민권 운동을 이끌었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에서 성경과 신학적 언어를 직접 사용해

정치·사회 변화를 호소했다.

이를 두고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공격하는 좌파는 거의 없다. 제레미아 라이트(Jeremiah Alvesta Wright Jr.) 목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오랜 담임 목사로서 강단에서 노골적인 정치적 발언을 했지만, 이 역시 주류 좌파 담론에서는 정교분리 문제로 크게 비판받지 않았다. 윌리엄 바버 2세(William J. Barber II) 역시 침례교 목사로서 ‘가난한 자의 캠페인’을 주도하며 민주당 성향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 정교분리 위반을 심각하게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 보수 성향의 침례교 목사가 낙태 반대나 동성혼 반대 입장을 설교하면, 곧바로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곤 한다. 이러한 이중 잣대는 좌파의 궁극적 관심이 정교분리 원칙의 일관된 적용이 아니라 보수 기독교의 공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있음을 드러낸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좌파 성향의 목사가 평화 운동, 환경 운동, 노동 운동에 참여하면 ‘대언자적 사명’으로 높이 평가되지만, 보수 성향의 목사가 공산주의를 비판하거나 동성애에 반대하면 곧 ‘정교유착’ 또는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비난이 제기된다.

정교분리 논쟁을 더욱 뜨겁게 만든 사건 가운데 하나는, 미국인들의 ‘국기에 대한 맹세’(Pledge of Allegiance, 충성 서약)에 포함된 ‘하나님 아래 한 나라’(one nation under God)¹⁴라는 문구이다. 2002년 ‘뉴도 대 미 의회’(Newdow v. U.S. Congress) 사건에서 뉴도(Michael Newdow)는 공립 학교에서 이 표현이 포함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학생들에게 암송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9순회 항소법원은 국교 설립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보았으나, 연방 대법원은 뉴도의 소송 자격(원고적격) 문제를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원심을 파기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정교분리의 경계선을

14. 이 문구는 1892년에 공식화된 프랜시스 벨라미(Francis Bellamy)의 ‘국기에 대한 맹세’ 초안에는 없었으나 1954년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미국 제34대 대통령) 행정부가 냉전기 공산주의 무신론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했다. 이 문구가 국교 설립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연방 대법원은 마이클 뉴도(Michael Newdow) 사건 등에서 법적 자격 문제를 이유로 실질적인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어디에 그어야 하는가를 놓고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하면, 좌파 세속주의가 지향하는 궁극적 방향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는 단순한 정교분리의 실현이 아니라, 공적 영역의 전면적 세속화이다. 좌파가 사실상 추진하는 바는 ‘종교와 국가의 분리’라기보다, ‘종교와 사회의 분리’에 가깝다. 이는 종교를 예배당 안, 사적 양심의 영역 안에만 가두고, 공적 담론과 정책 논의에서는 종교적 목소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려는 경향을 뜻한다.

좌파 세속주의의 위험성은, 그것이 공산주의 체제의 종교 억압과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소련은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명제를 근거로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조직적으로 제거하려 했다. 교회에는 제한된 예배 의식만 허용되었을 뿐, 사회 현안에 대한 공개적 발언은 금지되었다. 성경 출판은 엄격히 통제되었고, 종교 교육은 금지되었으며, 신앙인은 공직에서 사실상 배제되었다.

서방의 좌파 세속주의는 소련처럼 노골적인 강압은 아닐지라도, 지향하는 방향에서는 “종교를 사적 영역에 가두고, 공적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다만 서방에서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언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종교에 대한 배제와 경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좌파의 종교 제거 전략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 1891-1937)의 ‘문화적 헤게모니’(Cultural Hegemony) 이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람시는 옥중에서 쓴 「옥중 수고」(*Prison Notebooks*)에서, 혁명은 반드시 무장봉기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교육·언론·법률·문화 전반의 가치 체계를 차례로 장악해 가는 방식으로도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종교, 특히 기독교는 기존 도덕 질서와 세계관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공적 영역에서 밀어내는 것은 새로운 이념, 즉 마르크스주의·급진적 세속주의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만드는 핵심 단계가 된다.

그람시의 이러한 사상은 이후 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와 네오-그람시안(neo-Gramscian) 흐름으로 발전하면서, “지배 계급은 경제력뿐 아니

라 문화·교육·언론·법률 같은 ‘상부 구조’를 장악해 사회의 상식과 도덕을 재구성한다.”라는 이론으로 정리되었다.

오늘날 좌파 이데올로기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문화적 헤게모니 전략이며, 그 안에서 기독교를 공적 영역에서 약화시키고 배제하려는 시도가 중요한 과제로 간주된다.

이런 맥락에서 ‘정교분리’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헌법적 원칙을 빌려 기독교를 공적 담론에서 배제하면서도, 그 배제를 오히려 ‘헌법 수호’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좌파가 정교분리를 반복해서 강조할 때, 그 주장 이면에 어떠한 철학·정치 전략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교회는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 정교분리는 교회를 침묵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국가 권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원리이다. 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정교분리는 보호의 울타리가 아니라 복음을 가두는 담장이 될 수 있다.

3. 우파의 남용 - 기독교 국가주의의 위험

좌파의 종교 배제 시도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파 진영에서는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강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1980년대의 ‘도덕적 다수’(Moral Majority) 운동¹⁵에서 본격화되었고, 1990년대의 ‘기독교 연합’(Christian Coalition)을 거쳐, 2000년대 이후에는 ‘기독교 국가주의’(Christian Nationalism)라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본래 기독교 원리 위에 세워졌으므로 기독교가 법과 정책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교분리 원칙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려 한다.

이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나, 그 사실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다. 미국 건국의 지도자들 중 다수가 기독교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

15. 1979년 미국의 침례교 목사 제리 폴웰(Jerry Falwell)이 창립한 보수 기독교 정치 운동 단체이다. 낙태 반대, 전통적 가정 가치 수호, 공산주의 반대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1980년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미국 제40대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지지했다. 1980년대 미국 보수 복음주의 정치 참여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의도적으로 정교분리를 헌법에 명문화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정 조항 제1조의 형성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집단은 침례교인들이었다. 그들 자신이 기독교인이었음에도, 국가가 기독교를 포함한 어떤 종교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 배경에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기독교 국가주의의 위험성은 바로 그 확신이 왜 옳았는지를 보여 준다.

첫째, 기독교 국가주의는 침례교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투쟁하며 무너뜨린 국가 교회 체제를 다시 세우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가 기독교를 우대하게 되면, 곧바로 “어떤 분파의 기독교가 국가의 공식 종교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카톨릭인가, 개신교인가? 개신교라면 장로교인가, 침례교인가, 오순절 교회인가? 그리고 누가 정통 교리를 판단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답하려면 결국 국가가 교리의 정통성을 판정하는 위치에 서야 한다. 이는 중세 국가 교회 체제로 회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둘째, 국가 권력에 기대는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타락의 위험을 안게 된다. 제3장에서 검토한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교회사적 전개는, 교회가 정치권력과 결합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 준다. 교회가 국가의 후원을 받는 순간, 교회는 세속 권력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기 쉽다.

셋째, 기독교 국가주의는 비기독교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로저 윌리엄스가 “투르크인(무슬림)의 양심도, 유대인의 양심도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선언한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러한 위험성은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 2022년 이후 미국 정치 담론에서 기독교 국가주의(Christian Nationalism)라는 용어가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2023년에는 하원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이 공개적으로 기독교 국가주의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건국되었으므로 기독교적 가치가 법과 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부의 좌파 세속주의에 대한 반발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대안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한국이 “기독교적 가치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기독교적 가치를 법률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 한다. 낙태 금지나 동성혼 반대와 같은 개별 정책 사안에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는 것은 정당한 정치 참여의 범주에 속한다. 다만 국가 자체를 ‘기독교 국가’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는 정교분리의 원리에 어긋난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더 분명한 도덕적 기초 위에 서야 한다는 주장과, 그 기준으로서 기독교적 가치가 공적 담론 속에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기독교 국가를 세우자.”라는 주장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정교분리의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기독교인이 공적 영역에서 가치와 양심을 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국가 제도와 법질서 전체를 특정 종교의 공식 교리에 종속시키려 하는지의 여부이다.

기독교인이 자신의 신앙에 근거해 생명 존중, 가정의 질서,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가치들을 법과 정책 논의 속에서 제시하는 것은 정당한 시민적 참여이다. 민주 사회에서 모든 시민은 자신의 세계관에 기초해 공적 사안에 의견을 낼 권리가 있으며, 기독교인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낙태, 생명 윤리, 교육 정책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행위는 국가를 기독교화하려는 시도라기보다, 신앙 양심에 따른 공적 발언에 해당한다.

문제는 국가 자체를 특정 종교의 정체성으로 규정하거나, 법적·제도적으로 특정 교리를 특권화하려 할 때 발생한다.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정책 제안과,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선언하려는 시도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되고 보호되어야 할 정치 참여의 영역에 속하지만, 후자는 정교분리의 원칙과 충돌한다.

정교분리를 위해 오랜 세월 투쟁한 침례교인들은 국가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라.”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들은 일관되게 “국가는 종교 문제에서 손을 떼라.”라는 원칙만 주장했을 뿐이다. 신앙은 강요될 수 없고, 교리는 입법으로 정해질 수 없으며, 양심은 국가 권력의 명령으로 통제될 수 없다

는 확신이 그 기초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기독교인이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해 공적 영역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이는 한 시민으로서, 또한 양심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실천하는 정당한 자유이다. 그러나 국가가 특정 종교를 제도적으로 우대하거나, 국가의 공식 정체성을 특정 종교와 동일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성경적 가치를 공적 논의 속에 제시하는 것과, 국가가 특정 종교를 제도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정교분리의 정신을 온전히 이해하는 핵심 기준이다.

기독교 국가주의가 우파 내에서 아직 소수 의견에 머물러 있다 해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역사가 그 결과를 분명히 보여 주기 때문이다.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로마 제국, 중세 교황권 아래의 유럽, 칼빈의 제네바, 청교도들의 매사추세츠 신정 국가 체제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기독교 국가라 불린 체제들에서 양심의 자유는 반복해서 억압되었고, 소수자는 예외 없이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 기독교 국가주의자들은 미국 건국이 기독교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정작 건국에 기여한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지 않았던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

제임스 매디슨은 로마 제국 이후 중세까지 약 1,500년 동안 기독교가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법으로 세워진 종교’였던 역사를 돌아보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15세기 동안 기독교의 법적 확립은 성직자의 교만과 게으름, 타락과 부패뿐만 아니라 신자의 무관심과 노예근성을 드러냈다. 그리고 양쪽 모두의 미신과 편견과 박해를 낳았다.”

이 말은 국가가 기독교를 법적으로 확립한 15세기의 역사가 신앙을 순수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시켰다는 비판이다. 만일 매디슨이 기독교 국가를 원했다면, 과연 이런 평가를 남겼겠는가?

매디슨의 이 평가는 단순한 역사 비평이 아니다. 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면 국가 권력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의 확인이었다. 국가가 교회를 후원할 때 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한다는 사실을 역사는 반복해서 가르쳐 왔다.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성경적 관점을 밝히는 것과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는 시도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전자는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에 속하지만, 후자는 국교를 세우려는 정치적 기획이다. 그런데 이 둘을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는 방식은 일부 진영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한국 교회는 이 구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왜곡된 프레임에 끌려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정교분리는 교회의 입을 막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교회의 양심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4. 오늘의 쟁점들 - 정교분리의 올바른 이해

정교분리 위반이 아닌 11가지 사례

정교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무엇이 정교분리가 아닌지를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개념을 추상적으로만 이해하면 쉽게 오해에 빠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자.

첫째,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것은 정교분리 위반이 아니다.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오랜 관습에 따른 자발적 선택이다. 조지 워싱턴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 이후, 대부분의 대통령이 같은 방식을 택했지만, 헌법 어디에도 이 행위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실제로 존 퀸시 애덤스(John Quincy Adams) 제6대 대통령은 헌법 책 위에 손을 얹었고, 프랭클린 피어스(Franklin Pierce) 제14대 대통령은 성경 대신 법률서에 손을 얹고 선서했다. 선서 방식은 개인의 양심과 선택에 맡겨져 있으며, 국가가 특정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교분리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

둘째, 미국 의회에 원목(chaplain)이 있어서 회기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 역시

정교분리 위반이 아니다. 연방 의회는 1789년 첫 회기부터 원목 제도를 운영해 왔다. 주목할 점은, 수정 조항 제1조를 작성한 바로 그 의회가 동시에 원목을 임명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헌법 제정자들이 정교분리를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1983년 ‘마쉬 대 체임버스’(Marsh v. Chambers) 사건¹⁶에서 연방 대법원도 의회 기도가 수정 조항 제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의회 기도가 미국의 역사적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관행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셋째, 대통령 각각이 각료 회의 전에 함께 기도하는 것 또한 정교분리 위반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각료들이 회의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공개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는 국가가 종교 의식을 공식 제도로 강제한 것이 아니라, 공직에 있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앙을 표현한 사례이다. 정교분리는 신앙인이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거나 공직자가 개인적 신앙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핵심은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넷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침례교 목사 출신인 마이크 허커비(Mike Huckabee)가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로 봉사하거나, 그의 딸 새라 허커비 샌더스(Sarah Huckabee Sanders)가 아칸소 주지사로 재직하는 것 역시 정교분리와 무관하다. 그녀가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변인(White House Press Secretary)으로 일했던 경력도 마찬가지로, 한 신앙인이 공직을 맡아 재직한 사례일 뿐이다.

신앙인의 공직 진출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헌법 제6조는 “어떠한 종교적 자격도 연방 공직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종교를 이유로 공직 진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종교가 공직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공직 진출을 막는 사유가 되어서도 안

16. 네브래스카 주 의원 어네스트 체임버스(Ernest Chambers)는 주 의회 개회 시 목사가 기도를 인도하는 관습이 국교 설립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대법원은 미국 첫 번째 의회 때부터 이어진 역사적 전통을 근거로 합헌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공공 기관의 종교적 의례가 역사적 정당성을 가질 때 허용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례이다.

된다는 뜻이다. 공직자는 자신의 신앙적 가치관을 지니고 일할 수 있다. 다만 그 권력을 사용하여 특정 종교를 강제해서는 안 될 뿐이다.

다섯째, 미국 군대에 군목(chaplain)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도 정교분리 위반이 아니다. 미국 군대는 건국 초기부



마이크 허커비



세라 허커비

터 군목 제도를 유지해 왔다. 군인들은 일반 시민과 달리 종교 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대가 군목을 제공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군목은 각기 특정 교단에 속해 있지만, 모든 종교를 가진 군인들의 신앙 활동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침례교 군목이 카톨릭 병사의 종교적 요청을 돕고, 유대교 군목이 개신교 병사의 신앙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야말로 미국 군목 제도의 실제 모습이다. 이는 정교분리 원칙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여섯째, 미국의 모든 통용 화폐와 동전에 있는 “In God We Trust”라는 문구는 정교분리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이 문구는 1860년대 남북전쟁 시기에 처음 동전에 사용되었고, 1956년에는 미국의 공식 표어로 채택되었다. 연방 법원들은 이 표현을 특정 종교의 강요가 아니라, 역사적·의례적 표현(ceremonial deism)으로 보아 합헌으로 판단해 왔으며, 연방 대법원도 관련 소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 입장을 사실상 지지해 왔다.

일곱째, 공립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행위는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학교가 공식 기도문을 작성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는 위헌이지만, 학생이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자발적으로 기도하거나 시험 전에 조용히 기도하는 행위는 수정 조항 제1조의 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에 따라 보호된다. 이는 국가가 종교를 강제하지도, 금지하지도 않는다는 정교분리의 균형을 보여 준다.

여덟째, 공공장소에서의 종교 집회 허가는 정교분리 위반이 아니다. 시청 앞 광장이나 공원에서 기독교 집회, 전도 집회, 성경 공부 모임이 열리는 것은 허

용된다. 만약 그 공간이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 공공 포럼이라면, 종교 단체도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특정 종교에 주는 특혜가 아니라, 차별 없이 동일하게 대우하는 방식이다.

아홉째, 정부가 종교 단체에 일반 복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도 자동적으로 위헌이 아니다. 예를 들어, 노숙자 보호소, 재난 구호, 음식 배급 프로그램 등에 대해 종교 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정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행위가 아니라, 종교 단체를 일반 시민 단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다고 여겨 왔다.

열째, 대통령이 국가 연설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행위 역시 정교분리 위반이 아니다.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제16대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제35대 대통령의 취임 연설,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제40대 대통령이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제44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제45대, 제47대 대통령의 연설 등에는 종종 'God'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국가가 특정 교리를 강제하는 행위가 아니라, 지도자의 개인적 신앙 표현 혹은 문화적 전통의 일부로 이해된다.

열한째, 추수감사절(Thanksgiving)이나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¹⁷을 선포하는 것도 정교분리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역사적 전통에 속하며, 특정 교파를 강제하거나 예배를 의무화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교분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실제 미국 사회에서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교분리를 오해하는 이유는 추상적 원칙만 기억한 채, 그 원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교분리는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몰아내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종교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원칙이

17. 1952년 연방 의회가 법률로 제정했으며, 매년 5월 첫째 목요일에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특정 교파를 강제하지 않는 자발적 기도의 날로 규정되어 있으며, 1988년부터 현재의 날짜로 고정되었다.

라는 점을 이러한 사례들이 명확히 보여 준다.

교회와 목사의 구분 - 쟁점 옹호 발언과 후보 지지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쟁점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어디까지 발언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미국 법은 이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

‘쟁점 옹호’(Issue Advocacy), 즉 특정 사회적 현안에 대해 도덕적·신학적 입장을 밝히는 행위는 허용된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낙태는 성경적으로 살인이다”, “동성애는 죄이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 체제이다”, “차별 금지법은 성경적 가치와 충돌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허용된다. 이러한 발언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안에 대해 도덕적·신학적 원칙의 입장을 밝히는 행위이다. 이는 수정 조항 제1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교회는 도덕적 원칙을 가르칠 자유가 있으며, 사회적 사안에 대해 성경적 관점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후보 지지’(Candidate Endorsement)는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러므로 이 후보자에게 투표하십시오”, “이 당에 투표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1954년 제정된 ‘존슨 수정안’(Johnson Amendment)¹⁸에 의해 제한된다. 이 조항은 세금 면제 지위를 가진 비영리 단체(교회 포함)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면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다만 목사 개인이 시민 자격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이 후보자를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상 보호된다.

대표적 사례로 텍사스의 대형 교회 담임목사인 로버트 제프리스(Robert

18. 린든 B. 존슨(Lyndon B. Johnson) 상원의원이 발의한 연방 세법 개정안으로, 종교 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가 특정 정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 운동에 개입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박탈한다. 교회는 도덕적·신학적 원칙을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지만,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Jeffress)를 들 수 있다. 주일 평균 출석 인원이 약 1만3천에서 1만5천 명에 이르는 델러스 제일침례교회(First Baptist Dallas)의 목사로서, 그는 여러 차례 폭스 뉴스(Fox News) 인터뷰와 공개 방송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강하게 지지하는 발언을 해 왔다. 방송과 집회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밝히고,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지도자”, “그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2016년 대선 기간에는 유세장에서 트럼프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세우셔서 미국을 다시 유대-기독교적 토대 위에 세우시려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취임 전 예배에서는 “하나님께서 트럼프와 펜스를 위해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델러스 제일침례교회 제프리스 목사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발언이 교회 명의를 공식 성명이 아니라, 제프리스 목사 개인의 시민 자격 발언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방송 패널, 종교 지도자, 정치 평론가의 한 사람으로서 인터뷰에 응한 것이지, 교회 차원에서 “이 후보자에게 투표하십시오.”라는 공식 선거 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수정 조항 제1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존슨 수정안’이 제한하는 행위는 면세 지위를 가진 종교 기관의 공식적인 후보 지지이다. 목사가 개인 자격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행위는 일반 시민과 동일한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핵심은 교회라는 ‘기관’과 목사라는 ‘개인 시민’을 구분하는 데 있다.

“교회(기관)는 후보자 지지를 할 수 없다.”

“목사(개인 시민)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

이 둘을 혼동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 정교분리는 종교 지도자의 시민 권을 박탈하는 원칙이 아니라, 종교 기관이 국가 권력과 결합해 특정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원칙이다. 이 구분이 명확할 때 교회의 자유와 헌법 질서가 동시에 보호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자유로운 신앙과 발언’을 촉진한다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798)을 통해 존슨 수정안의 집행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덕·정책 이슈에 대한 종교적 발언을 이유로 국세청(IRS)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선언과 함께, 존슨 수정안이 교회의 정치적 발언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좌파·세속 진영과 상당수 시민 단체는 이 조항이 교회를 당파적 선거 운동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게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폐지·완화 시도에 반대했다. 이 조항 자체는 완전히 폐지되지 않은 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 논쟁 속에서 침례교 전통은 어떤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가? 전통적으로 침례교는 교회가 공적 이슈에 대해 분명히 발언할 자유는 인정하면서도, 특정 후보자를 교회 명의로 공식 지지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왔다.

이는 국가의 강제가 아니라 정교분리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신학적·역사적 자각에서 나온 자발적 원칙이다. 존슨 수정안이 폐지된다 해도 교회가 반드시 ‘후보 지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지된다 해도 ‘쟁점 옹호’에 대한 설교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핵심은 교회가 성경적 원리를 가르치되, 최종 정치적 선택은 각 개인의 양심과 책임에 맡기는 데 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교회의 정치 활동을 세제 혜택이라는 경제적 고리와 연결해 규제하는 방식을 보여 준다. 교회의 입을 직접 막기보다는, 국가가 부여한 특권을 유지하려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일종의 계약적 제한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은 이보다 훨씬 직접적이다. 미국이 면세 지위 박탈이라는 우회적 수단을 쓰는 반면, 한국은 공직 선거법이라는 형사 처벌의 잣대가 교회 강단을 직접 겨누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공직 선거법 제85조는 “종교적 조직 내에서 직무상 이용자의 지위를 이용해 신도에게 선거 운동을 하

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목회자는 경제적 불이익을 넘어 인신구속이나 당선 무효에 이르는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목회자들이 세금 문제를 고민할 때, 한국 목회자들은 범법자가 될 것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무엇이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쟁점 옹호 발언이고, 무엇이 법이 금지하는 선거 운동인가? 미국의 판례가 ‘분리의 벽’을 세우며 종교의 자유를 지키려 했던 노력이, 한국 사회에서는 때로 교회의 공적 목소리를 거세하는 ‘침묵의 벽’으로 오용되기도 한다. 특정 후보자의 정책이 기독교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할 때 이를 비판하는 설교가 ‘선거 개입’이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현실은, 한국 교회가 정교분리 원칙을 더욱 정교하게 이해해야 할 절박한 이유이다.

이러한 구분은 한국 교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한국에서는 목사가 공산주의를 비판하면 즉각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기준에 따르면, 이는 전형적인 쟁점 옹호 발언에 해당한다. 공산주의는 공식적으로 무신론을 표방해 왔으며,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공산 정권 아래에서 수많은 성직자와 신앙인이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역사적·신학적 평가를 설교에서 언급하는 것은 종교적 입장 표명에 속한다. 다만 “그러므로 이 정당(후보)에 투표하지 마십시오.”라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목하는 순간, 그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된다.

한국의 상황에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 “공산주의는 반기독교적 사상이다.”라는 설교는 이념에 대한 신학적 평가이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 운동이 아니다. “동성애는 성경이 죄라고 규정한 행위이다.”라는 가르침 역시 교리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동성혼을 반대하므로 이 후보자에게 투표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후보 지지’에 해당한다. 이 구분은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함께 지키기 위한 핵심 기준이다.

문제는 한국에서 이러한 쟁점 옹호 발언 자체를 ‘혐오 발언’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형사적·행정적 제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사회적 비판이나 여론의 반박을 넘어서, 국가 권력이 개입해 종교적 발언의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경우, 그 성격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국가가 종교적 교리의 내용을 스스로 판단하고 ‘허용 가능한 교리’와 ‘금지되어야 할 교리’를 구분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정교분리의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일 뿐 아니라, 국가가 종교의 내용을 심사하고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수정 조항 제1조의 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은 바로 이 점을 분명히 한다. 국가는 종교의 신학적 판단에 개입할 수 없으며, 교리의 진위나 적절성을 평가할 권한도 없다.

목사가 성경에 근거해 어떤 행위를 죄라고 선언하는 것은 종교적 교리의 선포에 해당한다. 이는 교회의 신앙 고백과 도덕적 가르침의 영역에 속한다. 국가가 이러한 선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간섭이다. 국가는 그 순간 종교의 내용에 대한 최종 심판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구분이 있다. 폭력을 선동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조장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종교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는 범죄적 행위에 속한다. 그러나 성경적 교리를 설명하거나 도덕적 평가를 제시하는 것과 실제적 폭력이나 차별 행위를 선동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교리적 선언과 범죄적 선동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법적·철학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이 둘을 의도적으로 혼동하는 순간, 정교분리는 종교를 보호하는 헌법적 장치가 아니라 종교를 통제하고 침묵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된다. 국가가 ‘허용된 신앙 표현’과 ‘금지된 신앙 표현’을 결정하는 구조가 형성된다면, 그것은 정교분리의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종교 규제 체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종교의 자유의 본질과 직결된 중대한 쟁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선거철의 침례교회 - 영혼의 자유 행사

미국의 많은 침례교회들은 선거철이 되면 강단에서 직접 후보자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두 후보자의 정책과 입장을 비교해 교인들에게 설명한다. 예를 들어 “이 후보자는 낙태 문제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저 후보자는 저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저 후보자는 저렇게 말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묻는다.

“어느 공약이 성경적 가치에 더 가깝습니까?”

거기까지이다. 그 선을 넘지 않는다.

실제 투표소에 가서 누구를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에 맡겨진다. 목사는 결코 “이 후보자에게 투표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다. 교회는 성경적 원리를 가르치되, 최종 선택은 각 개인의 양심과 책임에 맡긴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자유(Soul Liberty)의 실제적 구현이며, 침례교가 266년 동안 지켜온 핵심 원리이다. 교회는 강요하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각 후보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십시오.” 이것이 침례교의 방식이다.

이러한 관행은 침례교의 ‘영혼의 역량’(Soul Competency) 교리에 기초한다.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믿음이다. 목사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이지, 교인의 양심을 대신 결정하는 통치자가 아니다. 침례교의 회중 정치 역시 이 원리를 반영한다. 침례교에는 교황도 없고, 총회장이 지역 교회를 지배하지도 않는다. 각 지역 교회는 자치적이며, 각 교인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결정한다. 이러한 구조가 민주주의 정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침례교 교회 정치가 미국 민주주의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역사학자들의 평가도 바로 이 ‘영혼의 역량’ 교리에 근거한다. 이 원리를 한국 교회에 적용하면 몇 가지 구체적 실천 방향이 도출된다.

첫째, 한국 교회는 성경적 가치에 근거해 사회적 이슈에 대해 분명하게 발언

해야 한다. ‘정교유착’이라는 비판을 두려워해 침묵하는 것은 교회의 대언자적 사명을 스스로 축소하는 행위이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고, 신약의 사도들 역시 로마 권력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 교회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는 일은 정교유착이 아니라 신앙의 표현이다.

둘째, 그러나 교회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특정 정당의 도구가 되는 순간, 교회의 영적 독립성과 도덕적 권위는 약화된다. 이는 콘스탄티누스 이후 교회가 국가 권력과 결합하면서 겪었던 역사적 교훈이다.

셋째, 교인 각자의 정치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목사는 성경적 원리를 가르치되, 최종 정치적 선택은 각 개인의 양심과 책임에 맡겨야 한다. 이것이 침례교 방식이며, 영혼의 자유를 실천하는 길이다.

넷째, 교회는 자기 교회의 자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다른 종교의 양심의 자유까지 보호하는 것이 정교분리의 참된 정신이며, 침례교가 오랜 세월 강조해 온 원리이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침례교회에서는 선거철에 ‘유권자 가이드’(Voter Guide)를 배포한다. 이 가이드에는 각 후보자의 주요 정책 입장—낙태, 동성혼, 종교의 자유, 세금 정책, 이민 정책, 국방 문제 등—이 비교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후보자를 선택하라.”라는 지침은 없다. 대신 “각 후보자의 입장은 이러하다. 당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라고 안내한다. 이것이 교회가 정치적 사안에 참여하면서도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는 방식이다.

정치인의 교회 방문과 정교분리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자, 상·하원 의원 후보자, 주지사 후보자 등이 선거 기간에 교회나 기독교 대학을 방문하는 일이 매우 흔하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 기간에 버지니아의 리버티 대학(Liberty University)을 방문해 연설했고, 학생들과 참석자들은 환호와 박수로 그를 맞이했다. 힐러리 클린턴은 감리교 신자로서 여러 감리교회 예배에 참석하거나 종교 행사에서 발언

했다. 연방 의회 후보자나 주지사 후보자들이 지역 교회를 방문해 인사하거나 연설하는 일은 미국 선거 문화에서 일상적인 풍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 자체를 정교분리 위반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제도적으로 설립하거나 우대하는 것’이지, 정치인의 종교 공동체 방문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노동조합, 대학, 상공 회의소,



리버티 대학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대통령

시민 단체를 방문하는 것과 법적으로 동일한 범주의 정치 활동이다. 종교 공동체도 하나의 시민 사회 구성 단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후보자가 그 유권자 집단을 찾아가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리버티 대학에서 학생들이 환호한 것은 참석자 개인들의 정치적 표현이지, 대학이라는 기관의 공식 후보 지지 선언이 아니다. 핵심은 ‘접촉’(contact)과 ‘제도적 결합’(institutional union)을 구분하는 데 있다. 후보자가 교회에 와서 연설하거나, 예배에 참석해 소개받고 인사하는 행위는 접촉이다. 그러나 교회가 기관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공식 지지하거나, 예배 강단을 선거 운동의 장으로 사용하거나, 교회 자금과 조직을 선거 캠페인에 동원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전자는 정치적 소통이지만, 후자는 교회와 정당 정치가 제도적으로 결합하는 행위로 법적 제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이 있다. 대학이 후보자를 초청하거나, 교회가 후보자를 초청하거나, 후보자 측의 방문 요청을 교회가 허락하는 것 자체는 정교분리 위반이 아니다. 대학은 다양한 연사를 초청하는 것이 일상적 활동이며, 정치인을 초청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기관 차원의 공식 지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회가 후보자의 방문을 허락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후보자가 노동조합 회관에서 연설한다고 해서 그 단체가 자동으로 선거 조직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장소를 제공하거나 방문을 허락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정치적 주체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판단 기준의 핵심은 ‘초청 여부’가 아니라 ‘초청의 맥락에서 무엇을 하느냐’이다. 후보자를 초청해 발언 기회를 주는 행위는 허용된다. 그러나 초청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 후보자를 지지한다.”라고 공식 선언하거나, 사실상 교회가 선거 운동 기관의 역할을 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전자는 시민 사회 안에서의 정치적 소통이지만, 후자는 종교 기관이 정치적 행위자로 나서는 일이다.

미국 법은 이 구분을 비교적 명확하게 유지한다. 후보자가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세금 면제를 받는 교회가 특정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존슨 수정안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목사가 개인 시민 자격으로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만, 교회라는 기관이 선거 운동 주체가 되는 일은 제한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보자의 교회나 기독교 대학 방문은 허용된다.

둘째, 참석자들 개인의 정치적 자유에 따른 환호나 지지 표현은 허용된다.

셋째, 목사 개인 자격으로 행하는 후보자 지지는 허용된다.

넷째, 교회 기관이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거나 교회 조직을 선거 운동에 동원하면 존슨 수정안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리버티 대학 방문, 클린턴의 감리교회 참석 자체는 정교분리 위반이 아니다. 이는 정치인이 종교 유권자들과 ‘접촉’한 사례일 뿐이다. 정교분리는 종교인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원칙이 아니라, 국가가 종교를 공식화하거나 특정 종교와 ‘제도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막는 원칙이다. 이 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정교분리를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완전히 배제하는 원칙’으로 오해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이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흔하다. 예배 중 광고 시간에 후보자의 참석을 소개하고, 후보자가 자리에서 인사하거나 짧게 발언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만 놓고 보면 미국에서 후보자가 교회나 기독교 대학을 방문해 소개받고 박수를 받는 장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단순한 방문과 소개 자체를 곧바로 정교분리 위반으

로 단정하는 태도는 과도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실제로 반복되어 온 사례들 가운데는 이 선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설교 시간에 목사가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지지 의사를 밝히는 일, 교회 건물이나 주차장에서 사실상 선거 운동과 유사한 모임이 열리는 일, 교회 단체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공개 지지하는 성명이 발표되는 일이 있었다. 이러한 일들은 선거 때마다 언론 보도와 함께 논란이 되어 왔다.

이때 문제의 본질은 ‘방문 여부’가 아니라 ‘교회의 역할 변화’이다.

예배가 예배로 남는가, 아니면 선거 행사로 변하는가?

교회가 원리를 가르치는 자리인가, 아니면 정치적 동원 조직이 되는가?

교회가 특정 후보자와 동일시되기 시작하면 여러 부작용이 따른다. 교회의 영적 권위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보이고, 교회 안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른 성도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복음이 특정 정당의 이념과 동일시되는 위험이 생길 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난 뒤 교회가 분열되거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회들은 전통을 따라 “성경적 원리는 가르치되, 후보자는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선을 지켜 왔다. 교회가 생명 존중을 가르치고, 가정의 질서를 가르치고,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정당하다. 교회는 성경적 가치의 기준을 제시하되, 최종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각 개인이 양심에 따라 책임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올바른 정치 참여의 방식이다.

결론 - 분리의 벽은 보호의 벽이다

1791년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 제정 이후 230년의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은, 정교분리의 ‘분리의 벽’이 종교를 공격하기 위해 세워진 장벽이 아니라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장벽이라는 점이다. 이 벽은 단방향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작동한다. 한쪽 방향에서는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고 간섭하며 제도적으로 길들이지 못하도록 막는다. 다른 한쪽 방향에서는 교회가 국가 권력을 장악해 신앙을 강제하거나 특정 교리를 법으로 확립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 두 기능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교회의 순수성과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동일한 목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 벽을 한쪽으로만 이해하면 본래 정신을 왜곡하게 된다. 일부 좌파 진영에서 이 벽을 종교 제거의 도구로 사용해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 목소리를 배제하려는 태도도 문제이고, 우파가 이 벽을 허물고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는 태도도 문제이다. 둘 다 수정 조항 제1조의 원래 의도를 벗어난 해석이다. 침례교인들이 오랫동안 피와 땀으로 지켜 온 이 원칙은, 교회가 국가의 간섭 없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이 강제 없이 자기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강요 없는 신앙, 통제 없는 교회, 이것이 정교분리의 본질이다.

미국의 경험은 한국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첫째, 정교분리는 한번 확립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점이다. 지난 역사가 보여 주듯, 정교분리는 항상 양쪽에서 압력을 받는다. 한쪽에서는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밀어내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종교를 국가 권력과 결합하려 한다. 자유 민주 사회에서 이 두 극단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점이 과제이다. 정교분리는 중간 지점에서 작동할 때 가장 건강하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에서 정교분리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구체적 쟁점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미국의 230년 실험은 단순한 외국 사례가 아니라,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역사적 실험실이다.

미국의 경험이 한국에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정교분리가 교회를 약화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제도라는 사실이다. 정교분리 아래에서 미국 교회는 세계 역사상 가장 활발하고 역동적인 종교 공동체를 형성했다. 국가의 특권이나 재정 지원 없이, 오직 복음의 설득력과 자발적 헌금,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했다. 이는 이 사실을 장기간에 걸쳐 입증한 사례이다. 국가 권력에 기대지 않는 교회는 오히려 더 순수하고 더 자발적이다.

특히 한국 교회는 일부 좌파의 정교분리 오용에 대해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정교분리’라는 구호가 사용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국가의 종교 중립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사회적 발언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표현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진정한 정교분리는 교회와 국가 모두에게 유익하다. 교회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국가는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시민을 공정하게 섬길 수 있다. 그러나 종교적 표현을 공적 영역에서 제거하는 방식의 정교분리는 사실상 종교 억압에 가깝다.

한국 교회가 지켜야 할 태도는 분명하다. 교회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자기 신앙을 강제하려 해서는 안 되며, 동시에 국가 권력 앞에서 침묵을 강요받아서도 안 된다. 교회는 국가의 칼을 빌려서는 안 되고, 국가의 칼 앞에 굴복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윌리엄스가 가르치고, 킬랜드가 실천하며, 매디슨이 헌법적 구조 속에 반영한 정교분리의 참된 의미이다.

둘째, 정교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례 분석이 필수적이다. 추상적 원칙만으로는 실제 상황에서의 판단이 어렵다. 미국 대법원이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해 온 판례는, 종교와 국가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 왔는지 보여 주는 귀중한 법적 유산이다. 물론 한국의 헌법 구조는 미국과 동일하지 않다. 한국 헌법 제20조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지만, 표현 방식과 역사적 맥락은 미국과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분리의 핵심 원리, 즉 국가는 어떤 종교를 세울 수도 없고, 어떤 종교를 금지할 수도 없다는 원칙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이다.

셋째, 정교분리의 벽은 종교를 공격하기 위한 장벽이 아니라 종교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벽이 존재하지 않으면, 권력을 장악한 다수 종교가 소수 종교를 억압하거나 배제할 위험이 생긴다. 또한 국가가 종교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가능성도 커진다. 반대로 종교가 국가 권력에 의존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영향력을 얻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영적 순수성과 독립성을 잃게 된다. 정교분리의 벽은 교회를 약화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교회가 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나 본연의 사명인 복음 선포와 양심의 자유 수호에 충실하도록 지켜 주는 보호막이다. 미국의 역

사적 경험은 국가의 특권 없이도 교회가 자발성과 신앙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넷째, 한국 교회는 ‘정교분리’라는 용어 자체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누군가가 이 개념을 교회의 사회적 발언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 한국 교회는 정교분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정교분리는 교회의 적이 아니라 교회의 방패이며, 교회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이다. 역사적으로 정교분리 원칙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실천해 온 이들이 바로 침례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교분리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교회는 정교분리의 본래 정신을 수호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국 교회는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려는 흐름에 대해 법적·지적·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입법 시도에 대해 헌법적 근거와 논리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지적으로는, 정교분리의 역사와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 왜곡된 해석에 대해 설득력 있게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는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체계적인 학습과 성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영적으로는, 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진리를 선포해 온 선배 신앙인들의 용기를 기억해야 한다. 버지니아 감옥에서조차 창문을 통해 설교를 이어 갔던 침례교 목사들의 모습은, 교회의 사명이 환경에 의해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교회는 국가의 힘에 기대지 않으면서도, 국가의 압력 앞에 침묵하지 않는 공동체로 서야 한다. 이것이 정교분리의 참된 정신을 이어 가는 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와 정교분리

앞 장에서 우리는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지난 230년 동안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 현시대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두 항은 한국 정교분리의 헌법적 토대이다. 우리는 이 조항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조항이 당연시되기까지는 결코 평탄하지 않은 역사가 있었다. 조선 시대에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을 이유로 참수되었던 박해의 역사, 일제 시대에 신사 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회자들이 투옥되고 교회가 탄압받았던 역사가 이 조항의 밑거름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 헌법 제20조가 지닌 또 다른 단면을 직시해야 한다. 비록 우리 민족에게는 피어린 순교와 저항의 역사가 있었으나, 정작

1948년 제헌 헌법에 이 조항이 명문화될 당시에는 그 정신을 담아낼 깊이 있는 철학적·법적 토론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 조항은 미군정의 영향 아래 서구 근대 헌법의 외형을 갖추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신학적 성찰 없이 ‘이식’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미국 침례교인들이 266년간 피 흘려 쟁취한 ‘분리의 벽’이, 한국에서는 행정 절차만으로 법전에 기록된 셈이다. 말 그대로 우리는 이 중대한 원리를 무료로 수입한 셈이다. 이러한 ‘역사와 법리의 괴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원리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문구만 수입되다 보니, 정작 국가 권력이 종교의 영역을 침범할 때 이를 방어할 논리적 근거가 취약해졌다. 한국 사법부가 정교 분리를 해석할 때 명확한 기준 없이 국가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거나, 정교분리를 오히려 ‘종교 통제의 수단’으로 오용해 온 구조적 원인이 바로 이 준비 없이 수용된 자유의 취약성에 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수정 조항 제1조의 45개 단어를 둘러싸고 230년 동안 방대한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며 정교분리의 벽을 견고히 쌓아 왔지만, 한국에서는 헌법 제20조에 대한 법적 해석이 아직 충분히 정교하게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역사를 모르면 헌법 제20조가 지닌 무게를 이해할 수 없고, 그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조항이 위협받을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이 장에서는 헌법 제20조의 의미와 한계를 단계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조문의 구조와 문구를 살펴보고, 이어 한국 정교분리의 역사적 배경을 추적한다. 다음으로 미국 수정 조항 제1조와 비교해 한국 법체계의 특징을 드러내고, 마지막으로 한국 법질서 안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제로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 분석은 단순한 학술적 관심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한국 교회가 직면한 현실적 상황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종교 단체 해산 논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시도, 대형 교단이나 다수 종교에 의한 소수 종교의 압박 문제 등은 모두 헌법 제20조의 해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헌법 제20조가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보호하지 않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

더구나 오늘날 일부 진영에서 ‘정교분리’라는 개념을 교회의 공적 발언을 제한하는 논리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교분리의 정확한 헌법적 의미를 아는 것은 단순한 이론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 과제이다. 헌법 제20조는 교회를 침묵시키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는 일이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출발점이 된다.

1. 헌법 제20조의 의미와 한계

제1항 - 종교의 자유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에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단일한 권리가 아니라, 여러 층위의 구체적 자유를 포괄하는 종합적 개념이다.

헌법학에서는 이를 보통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신앙의 자유이다. 이는 특정 종교를 믿을 자유뿐 아니라 아무 종교도 믿지 않을 자유, 종교를 선택하고 변경할 자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자유와 그 고백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한다. 신앙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의 핵심이며, 내심(內心)의 영역에 속하는 자유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는 절대적 영역에 속한다.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내면적 신앙 자체를 조사하거나 강요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신앙의 자유는 양심의 가장 깊은 영역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헌법 질서 안에서 가장 강하게 보호되는 자유이다.

둘째, 종교적 행위의 자유이다. 이는 예배, 기도, 의식, 종교적 상징 사용 등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에 참여할 자유와, 그러한 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믿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행위까지 보호 대상이 된다. 국가는 특정 종교 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종교적 행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셋째,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이다. 이는 교회, 사찰, 성당, 종교 단체 등을 조직하고 설립하며, 그 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자유를 말한다. 종교 단체

의 조직과 운영은 종교의 자유의 중요한 표현 방식이므로,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더 넓은 보호를 받는다고 이해된다. 종교 단체의 자율성은 종교의 자유 보장의 핵심 요소이다.

넷째, 선교(포교)의 자유이다. 선교의 자유란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그 교리를 전파하며, 그에 따른 종교 교육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대법원은 헌법 제20조 제1항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안에 자기가 믿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며, 공공장소 등에서 자신의 종교를 선전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그 교리를 전파하는 행위 자체도 이러한 선교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4148).

이와 같이 종교의 자유는 단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마음속에서 결정하는 차원의 사적 신앙의 자유에 머무르지 않는다. 일정한 한계 내에서 공적 공간에서 자신의 종교를 알리고 교리를 전파할 자유까지 함께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이해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일관되게, 종교의 자유란 단지 마음속 신념으로 신앙을 가질 자유에 그치지 않고, 예배와 종교 의식, 선교, 종교 교육 등 신앙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천하는 종교 활동의 자유는 물론, 그 신념에 따라 생활하고 행동할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본다. 이러한 이해는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의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free exercise) 조항이 신앙 자체뿐 아니라 종교적 실천 전반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과도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한다.

이 가운데 신앙의 절대적 보호 여부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자유에 관해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반복해서 판시한 부분이 특히 주목된다(헌재 1998. 7. 16. 96헌바35; 2004. 8. 26. 2004헌가5 등).

내심의 자유가 절대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심지어 헌법 제37조 제2항이 허용하는 국가 안보, 질서 유지, 공공복리 명분에 의한 제한조차도) 내심의 영역에는 미칠 수 없다는 뜻이며, 국가가 개인의 신앙 자체를 변경하도록

강요하거나 그 신앙 때문에 차별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신앙의 자유를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영역으로 인정한 판단으로, 종교적 양심의 불가침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문제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대한 해석에서 나타난다.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보,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본다(헌재 2000헌마159 등).

결국 관건은 이러한 상대적 자유에 가해지는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있다. 종교적 행위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심사 척도(과잉금지 원칙 등)의 엄격성에 따라, 시민이 누리는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 폭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셔버트 대 버너’(Sherbert v. Verner, 1963) 사건¹ 판결 이후 종교적 행위를 제한하려면 ‘중대한 국가적 이익’(compelling state interest)이 존재해야 하고, 그 제한은 ‘가장 덜 제한적인 수단’(least restrictive means)을 사용해야 한다는 엄격한 심사 기준이 확립되었다.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높은 보호 기준을 의미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종교의 자유에 특화된 별도의 엄격한 심사 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기본권 제한 규정이 적용될 뿐이다.

이 구조는 종교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동일한 수준에서 심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유한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특수성이 법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경우, 종교의 자유는 형식적으로는 보장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쉽게 제한될 위험이 있다. 바로 이 지점이 한국 정교분리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다.

1. 이 사건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인 아델 셔버트(Adell Sherbert)가 안식일 준수를 위해 토요일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실업 급여 지급이 거절된 사안이다. 이 판결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적 심사 기준인 ‘셔버트 테스트’(Sherbert Test)를 확립한 핵심적인 판례이다.

제2항 - 국교 부인과 정교분리

헌법 제20조 제2항은 두 가지 핵심 원칙을 동시에 선언한다. 하나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국교 부인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정교분리 원칙이다. 이 두 문장은 짧지만, 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규정하는 헌법상의 기본 구조와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국교 부인 원칙은 국가가 특정 종교를 공식 종교로 지정하거나 그 종교에 특별한 법적 지위나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범이다. 국가는 어떤 종교도 ‘국가의 종교’로 삼을 수 없으며, 특정 종교를 다른 종교보다 제도적으로 우대해서도 안 된다. 이 원칙은 한국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 시대 유교가 사실상 국가 이념이자 공적 질서를 지배하는 종교적·철학적 체계로 기능했고, 그 과정에서 천주교와 같은 다른 신앙이 박해를 받았던 경험은 특정 사상이나 종교가 국가 권력과 결합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선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국가 이념의 종교화·국교화 경험에 대한 헌법적 반성과 결별의 선언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와 정치권력이 서로 독립된 영역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이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보호하거나 특권을 부여하거나 재정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국가가 공식 행사에서 특정 종교의 의식을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공권력을 통해 특정 신앙을 간접적으로 장려·조장하는 행위도 헌법상 중립 의무에 비추어 문제 될 수 있다. 또한 국공립 학교에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신앙 교육의 형태로 가르치는 행위는 국가가 종교 활동의 직접적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 보장 취지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로 평가된다.

이처럼 제20조 제2항은 단순히 “종교를 존중한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종교 문제에 관해 제도적·정책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구조적 원칙을 제시한다. 국교 부인은 특정 종교의 제도적 우위를 차단하는 장치이고, 정교분리는 국가와 종교의 상호 간섭과 결탁을 제한하는 장치이다. 두 원

칙은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토대를 이룬다.

제20조의 한계 - 미완의 과제

그러나 헌법 제20조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조항이 지나치게 간결하다.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도 45개 단어에 불과하지만, 200년이 넘는 연방 대법원 판례의 축적을 통해 그 의미가 매우 구체화되었다. 반면 한국 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70년이 넘었음에도, 정교분리와 관련해 구체적 상황을 다룬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가 미국에 비하면 극히 적다. 조문의 추상성이 풍부한 판례를 통해 충분히 보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판례의 부족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낳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수정 조항 제1조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연방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왔다. 예를 들어, 공립 학교에서 교사 주도의 기도가 위헌인지 여부는 ‘엔젤 대 비탈레’(Engel v. Vitale, 1962) 사건에서 다루어졌다. 이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공립 학교에서 국가가 작성한 기도를 학생들에게 낭독하게 하는 것은 국교 설립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의 자발적 종교 모임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위드마 대 빈센트’(Widmar v. Vincent, 1981) 사건²에서 판시되었다. 대법원은 공립 대학이 일반 학생 단체에게 시설 사용을 허용하면서 종교 단체만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졸업식에서 성직자의 기도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리 대 와이즈먼’(Lee v. Weisman, 1992) 사건³에서 다루어졌다. 대법

2. 미주리 대학교가 종교적 성격을 이유로 학생 단체의 교내 시설 사용을 금지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다룬 사건이다. 이 판결은 공립 교육 기관 시설 이용에서 종교 단체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평등 접근(Equal Access) 원칙의 법적 근거가 된 중요한 판례이다.

3. 로버트 리(Robert E. Lee) 교장이 초청한 성직자가 공립 중학교 졸업식에서 기도를 인도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연방 대법원은 이를 학생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강제적 종교 행위로 판단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공립 학교 행사에서 종교적 의례가 학생들에게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세운 판례이다.

원은 공립 학교 졸업식에서 학교 측이 성직자를 초청해 기도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종교 참여를 사실상 강요하는 효과가 있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최근에는 공립 학교 코치가 경기 후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행위가 종교의 자유로 보호되는지 여부가 ‘케네디 대 브레머턴 교육구’(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2022) 사건에서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코치의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기도는 수정 조항 제1조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구체적 상황마다 별도의 사건을 통해 세밀한 기준이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판례의 축적은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의 경계를 더욱 명확하게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정교분리 원칙이 누구를 직접 구속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헌법 제20조 제2항이 본질적으로 국가에 대한 조직·절차상의 규범인지, 아니면 종교 단체와 종교인에게도 정치 개입 금지의 형식으로 작용하는지에 관해 학자들 사이의 견해가 엇갈린다. 이 조항이 구조 규범, 즉 국가 권력만을 구속하는 규범이라고 본다면, 종교 단체와 종교인의 정치적 발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반대로 종교 단체까지 직접 구속한다고 해석하면, 종교의 이름으로 공적·정치적 사안에 관여하는 행위 전반이 제한 대상이 될 여지가 커진다. 이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으나, 헌법재판소 판례상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불명확성은 현실에서 상당한 혼란을 낳는다. 예를 들어 목사가 설교 중 특정 입법이나 사회 현안에 대해 성경적 관점을 밝히면, 이를 두고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곤 한다. 그러나 정교분리 원칙을 본래 국가 권력에 대한 제한으로 이해한다면, 종교인의 설교와 발언은 정교분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종교인도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앙에 기초해 공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가진다. 미국에서는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연방] 의회는…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해 수범자(법 규범을 지켜야 하는 대상)를 명확히 국가(입법부)로 한정하기 때문에, 종교인의 정치·사회적 발언이 정

교분리 위반으로 문제 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이런 구분이 아직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정교분리’라는 용어가 종교인의 공적 발언 자체를 위축시키는 억압의 수단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일부 정치 세력과 시민 단체는 헌법 제20조 제2항의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교회의 사회·윤리적 발언 전반을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공격하기도 한다. 목사가 동성애, 낙태, 가정·성 윤리와 같은 공적 사안에 대해 성경적 기준을 제시하면 ‘정치 개입’이라는 비난이 따르고, 교회가 생명·가정 관련 법안에 의견을 표명하면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식이다.

그러나 정교분리의 본래 취지에서 보면, 이는 원칙의 방향을 거꾸로 적용한 오용이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종교 활동에 개입하거나 통제하지 말라는 원칙이지, 종교 공동체가 자신의 신앙에 근거해 사회·윤리·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말라는 침묵 명령이 아니다. 한국 헌법 제20조 제2항의 수범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리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점은, 이런 왜곡과 오용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앞서 살펴본 듯이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는 조문의 표현상 국가만을 명백한 수범자로 삼는 체제인데, 한국 헌법의 표현은 이 점에서 상대적으로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셋째, 제3자에 의한 종교 강요를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 한국 헌법은 국가 권력에 의한 종교 강요를 금지할 뿐,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종교 강요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실제로 군대, 교도소, 학교 등 폐쇄적·위계적 공간에서 종교 행사 참석을 사실상 강요하거나, 특정 종교를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관행이 반복적으로 문제 되었다. 육군훈련소 종교 행사 강제 사건에서야 비로소 헌법재판소가 종교 행사 참석 강제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관계에서의 종교 강요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헌법 차원의 명문 규정과 판례·법리는 여전히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종교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이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하는 일반적 기준이 미비하다.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종교의 자유와 교육권(공립 학교·종립 학교⁴에서의 종교 교육), 종교의 자유와 병역 의무(양심적 병역 거부) 등 다양한 충돌 사안에서 한국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개별 사건마다 과잉 금지 원칙과 기본권의 체계적 조화에 따라 판단해 왔다. 그러나 미국 연방 대법원이 레몬 사건에서 정부의 종교 관련 조치에 대한 위헌 심사 기준으로 이른바 ‘레몬 테스트’를 제시하고 오랫동안 적용해 온 바와 같이,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 충돌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체계적인 심사 기준이 한국에서는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다.

다섯째, 헌법 제20조에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직접 규정한 문구가 없다.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 역시 국교 설립 금지와 종교의 자유 실행 보장을 선언할 뿐 차별 금지를 명시하지 않지만, 연방 대법원은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와 민권법 등을 해석하면서 종교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전개해 왔다. 한국에서는 헌법 제11조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 평등권 조항이 제20조의 종교의 자유 보장과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체계적인 법리 논의와 판례 축적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채용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특정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조직 내부나 사회에서 배제되는 경우 어떤 요건 아래에서 헌법상 차별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 논의는 현재 추진되는 이른바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도 직결된다. 차별 금지법이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한다면, 그 자체로는 종교를 가진 사람과 종교를 가지지 않을 자유를 가진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법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표현하거나 실천하는 행위를 곧바로 ‘차별’로 규정한다면, 오히려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성경에 따라 동성 간 성행위를 죄라고 가르치는 설교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적 표현’으

4. 종교 단체에서 설립하여 경영하는 학교.

로 규정될 수 있는지, 기독교 학교가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교사를 교리 위반을 이유로 해고하는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등은 대표적인 쟁점이다. 미국에서도 2020년 ‘보스톡 대 클레이턴 카운티’(Bostock v. Clayton County) 사건⁵ 판결 이후, 성별(sex) 차별 금지 규정을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직장 내 LGBT 차별은 대폭 금지되는 반면, 종교 단체와 신자의 종교적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관한 논쟁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한국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비슷한 충돌과 긴장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며, 그 과정에서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 조항이 어디까지 종교적 신념에 따른 표현과 행위를 보호할 수 있는지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2. 한국 정교분리의 역사적 배경

조선 시대 - 유교 국가의 전통

한국에서 정교분리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조선 시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조선(1392-1897)은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채택한 나라였다. 유교는 공식적으로 ‘종교’라고 불리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국가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세계관이자 통치 이념이었다. 왕은 유교적 의례를 주관했고, 과거 시험은 유교 경전에 기초했으며, 사회 질서는 유교적 윤리 위에 세워졌다.

조선의 유교 국가 체제는 서양의 국교 체제와 형태는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다. 국가가 특정 세계관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그것에 기초해 통치하며, 다른 세계관을 억압했다. 불교는 조선 건국과 함께 탄압의 대상이 되었고, 천주교는 18세기 말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 대규모 천주교 박해가 거듭되었고, 수천 명의 천주교인이 처형되었다.

1791년의 진산 사건은 한국 최초의 종교 박해 사건으로 신해박해로 알려져

5.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행위가 1964년 민권법 제7조가 금지하는 성차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이다. 연방 대법원은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이 성 소수자 보호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인 제럴드 보스톡(Gerald Bostock)의 손을 들어주었다.

있다. 윤지충과 권상연이 조상의 위패를 불사르고 천주교 의식에 따라 장례를 치른 것이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1801년의 신유박해에서는 중국인 사제 주문모(周文謨)가 처형되었고, 수백 명의 카톨릭 신자가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오박해, 1866년 병인박해로 이어지는 대규모 박해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1866년 병인박해에서는 프랑스 선교사 9명을 포함해 약 8,000명의 카톨릭 신자가 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아시아 카톨릭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박해 가운데 하나이다.

이 박해의 본질은 무엇이었는가? 국가가 공인하지 않은 종교를 믿었다는 죄, 국가의 공식 이념인 유교 질서에 도전했다는 죄, 조상 제사를 거부해 사회 질서를 위협했다는 죄였다. 이는 제3장에서 살펴본 유럽의 국가 교회 박해와 본질적으로 같다. 국가가 특정 세계관을 강제하고 다른 세계관을 억압하면, 반드시 박해가 뒤따른다.

조선의 카톨릭 박해에서 주목할 점은, 박해의 논리가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조선 정부는 카톨릭을 ‘사교’(邪敎, 사악한 종교)라고 규정했다. 국가가 특정 종교를 ‘사교’ 또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것이 조선 시대에만 있었던 일인가? 오늘날 한국에서 대형 교단이 특정 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국가에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는, 조선 정부가 카톨릭을 ‘사교’로 규정하고 탄압한 것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달라진 점은, 조선 시대에는 국가가 직접 ‘사교’를 규정했고, 오늘날에는 대형 교단이 ‘이단’을 규정한 뒤 국가에 집행을 요청한다는 점뿐이다. 그 본질, 즉 국가 권력을 이용해 특정 종교를 탄압하는 구조는 같다. 1801년의 신유박해에서 약 300명이 처형되고 수백 명이 유배된 역사를, 우리는 끔찍한 인권 침해로 기억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국가가 특정 종교를 해산하는 법을 만드는 행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개화기와 개신교 선교사의 도래

19세기 후반 개화기를 맞아 한국은 근대 서구 문명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로 한국에 들어왔다. 1884년 호레이스 알렌(Horace Allen), 1885년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Underwood)와 헨리 아펜젤러(Henry Appenzeller)가 대표적이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복음과 함께 근대적 가치를 가져왔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한글 교육을 실시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의 자유였다. 특히 미국 개신교, 그 가운데서도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주축이었으므로, 미국적 종교의 자유 개념이 한국에 소개되었다. 물론 이 선교사들의 종교의 자유 개념은 미국 침례교인들이 발전시킨 정교분리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가져온 정교분리는 불완전한 형태였다. 초기 미국 선교사들 가운데 다수는 장로교(호레이스 언더우드)와 감리교(헨리 아펜젤러) 출신이었다. 이 교파들은 미국에서 정교분리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지만, 침례교 처럼 정교분리를 핵심 교리로 가르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에 전달된 정교분리 개념은 침례교의 원래 의미보다 희석된 형태였다.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와 병원을 운영하면서, 정부와의 관계에서 실용적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부 선교사들이 신사 참배 문제에서 타협한 사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한국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이 정교분리를 핵심 교리로 가르쳤다면, 한국 교회의 정교분리에 대한 이해는 지금과 달랐을 것이다. 한국 교회가 오늘날 정교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은, 이 초기 전달 과정의 한계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정교분리가 한국에 전달된 과정은 미국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달랐다. 미국에서는 침례교인들이 직접 박해를 받으며 피 흘려 싸워 정교분리를 쟁취했다. 그 과정에서 정교분리의 원리가 그들의 뼈와 살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정교분리가 서양에서 들어온 근대적 제도의 하나로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그들의 원리’이지 ‘우리의 원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정교분리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다. 정교분리 덕분에 국가의 간섭 없이 교회를 세우고 운영할 수 있으면서도, 다른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종교의 자유'의 첫 명문화

1919년 3·1 운동 이후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곧바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제정했는데, 여기에서 '신교(信敎)의 자유'가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이는 한국 역사에서 종교의 자유가 국가의 최고 규범 문서에 공식적인 권리로 등장한 사실상 최초의 사례로, 이후 제헌 헌법과 현행 헌법에 이르는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 조항'의 직접적인 전조가 되었다. 단순한 선언을 넘어, 새로운 국가가 지향해야 할 기본 질서의 한 축으로 이를 명확히 세운 선택이었다.

임시 헌장에 종교의 자유가 포함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3·1 운동 자체가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 당대의 주요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선, 종교적 색채가 강한 민족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 대표가 16명, 천도교 대표가 15명, 불교 대표가 2명이었는데, 이 숫자는 단지 인원 비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곧, 교회 강단과 천도교 집회, 사찰과 포교 공간이 함께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었고, 종교 공동체가 민족 자결과 자유를 외치는 도덕적·영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종교가 민족 독립운동의 중요한 동력이었으므로, 독립된 나라를 구상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헌장 속에 분명히 규정한 일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자, 종교의 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선택이었다.

일제 식민지 시대 - 국가에 의한 종교 통제의 경험

일본 제국주의 아래에서 한국인들은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뼈아프게 경험했다. 일제는 신사 참배를 강요했다. 당시 일제는 이를 '정치적 애국 행위'라고 강변했는데, 이는 오늘날 국가 권력이 종교적 사안을 '정치적 사안'으로 치환해 규제하려는 시도에 대한 강력한 역사적 경고등이 된다. 1930년대부터 본격화된 신사 참배 강요는 사실상 일본 천황 숭배라는 국가 종교를 강제한 행위였다.

기독교 학교들은 신사 참배 거부를 이유로 폐교되었고, 이를 거부한 목사들과 교인들은 투옥되었다. 주기철(1897-1944) 목사는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

가 1944년 평양 감옥에서 순교했다. 약 2,000명이 투옥되었으며, 그 가운데 약 50명의 목사와 교인이 옥중에서 목숨을 잃었다.

주기철 목사 외에도 많은 순교자가 있었다. 이기풍(1868-1942) 목사는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 7인 가운데 한 명으로, 신사 참배 거부로 투옥되어 옥중에서 순교했다. 손양원(1902-1950) 목사는 신사 참배 거부로 투옥되었다가 해방 후 석방되었으나, 한국전쟁 때 공산군에 의해 순교했다. 그의 두 아들은 앞서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순교했다. 신사 참배 문제는 단순히 일본 국가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국가가 종교적 행위를 강요할 수 있는가?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사도 베드로의 대답은 분명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 (행 5:29)

정교분리의 원리가 확립되어 있었다면,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일제 시대의 이러한 경험은 해방 후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명시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1948년 제헌 헌법 - 제12조의 탄생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 국회는 헌법 제정에 착수했다. 헌법 기초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유진오 박사가 초안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종교의 자유에 관한 조항은 제헌 헌법 제1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이 조항의 형성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1948년 4월 5일 미군정 존 하지(John R. Hodge) 중장이 발표한 「조선 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에는 “모든 종교는 법 앞에 평등하며 공공질서나 도덕에 반하지 않는 종교 활동의 자유가 있다. 국교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와 국가의 분리 원칙이 확립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유진오의 초안은 이 포고문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된다.

흥미로운 점은 제헌 국회에서의 논의이다. 헌법기초 전문위원 권승렬은 당시 제12조 제2항(현행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국교 부인 및 정교분리 조항)에 대해 “실로 현재에서는 연문(衍文)입니다.”라고 언급했다.⁶

권승렬의 이 발언은 해당 조항이 무의미하다거나 불필요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당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국교를 둘러싼 직접적·긴급한 갈등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독자적이고 긴박한 규범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항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는 의미에 가깝다. 즉, 종교의 자유가 이미 선언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라는 문구는 논리적으로는 그 귀결에 해당하므로, 현실적 긴장 속에서 절실하게 요구된 조항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의 경우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미국에서 수정 조항 제1조의 종교 조항은 단순한 선언적 문장이 아니었다. 국가가 특정 교회를 설립하고 세금으로 지원하며, 비국교도를 차별하던 현실 속에서 ‘국교 설립 금지’와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 보장’은 절박한 생존의 문제였다. 따라서 미국의 종교 조항은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 역사적 갈등 속에서 탄생한 실천적 방어 장치였다.

반면 한국의 제헌 과정에서는 이미 일제 식민지 시대와 해방의 경험을 거치며 종교적 다원성이 상당 부분 형성되어 있었고,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으려는 현실적 움직임도 뚜렷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국교 부인과 정교분리 조항은 예

6. 여기에서 말하는 ‘연문(衍文)’이란 필사나 전승 과정에서 원문에 없던 글자나 구절이 덧붙여진 부분을 가리키며, 당시 법학자들에게 정교분리는 굳이 적을 필요조차 없는 당연한 원칙으로 여겨졌다는 의미이다.

방적·선언적 의미가 더 강하게 인식되었고, 권승렬은 이를 연문(衍文)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한 셈이다.

이 대비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정교분리’라는 같은 의미의 문구라도, 한 사회에서는 피 흘린 투쟁의 산물로 이해되었고, 다른 사회에서는 선언적 원칙으로 비교적 차분하게 채택되었다. 바로 이 역사적 출발점의 차이가, 이후 두 나라에서 정교분리 원칙이 해석되고 적용되는 방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제헌 국회에서 기독교계 의원들은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일부는 종교의 자유 보장을 더 적극적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했고, 일부는 조항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제12조는 원안대로 채택되었다.

제헌 헌법에 종교의 자유 조항이 포함된 데에는 당시의 정치적 역학도 작용했다. 제헌 국회 198명의 의원 가운데 기독교인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승만(1875-1965, 재임 1948-1960) 대통령 자신이 감리교 신자였고, 건국 초기 정부에는 기독교인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기독교를 사실상의 국교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불교, 유교, 천도교 등 다른 종교 전통의 존재와, 미군정의 영향, 그리고 근대적 헌법의 보편적 원리가 작용해 결국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가 헌법에 명시되었다. 이는 현명한 선택이었다. 만약 초대 정부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다면, 한국 사회의 종교적 갈등은 훨씬 심각했을 것이다.

이승만의 종교관은 복잡했다. 그는 독실한 개신교인(감리교)으로서, 1904년 투옥 중에 회심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미국으로 건너간 후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수학하면서 미국의 정교분리 전통을 체험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에 대해서는, 기독교를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비판적 평가도 존재한다. 그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기독교를 결합해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기독교 국가’의 이미지를 형성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미국에서 정교분리 전통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기독교 국가라는 이상을 언급한 점은, 그가 미국식 정교분리를 ‘국가로부터 종교를 보

호하는 원리'라기보다 '종교를 통해 국가의 도덕적 기반을 강화하는 원리'로 이해했거나, 혹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변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해의 차이가 훗날 한국 보수 기독교의 '국가 조찬 기도회'와 같은 독특한 정교유착 문화를 형성하는 씨앗이 되었다. 국가 지도자가 특정 종교를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행위는, 그 종교가 사회 다수의 신앙이라 하더라도 정교분리의 정신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이승만의 이러한 경향이 이후 한국에서 보수 정치와 개신교의 밀착을 촉진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밀착은 단기적으로 교회에 정치적 영향력과 발언의 통로를 제공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교회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정교유착'이라는 비판을 낳는 구조를 형성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한국 교회는 탄생 초기부터 정교분리를 교회의 '국가에 대한 방어권'이 아닌 '국가와의 동맹 조건'으로 오독(誤讀)하는 태생적 한계를 안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교회는 국가 권력의 종교 개입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흔들리고 있다.

1962년 개헌 — 제20조로의 이동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제6호 헌법)에서 전면적인 조문 재배치가 이루어졌다. 종교의 자유 조항은 제12조에서 제16조로 이동했고, 문구도 현재와 같이 수정되었다.

-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헌 헌법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로 바뀌었고, '양심의 자유'는 별도 조항(현행 제19조)으로 분리되었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로,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로 수정되었다. 이와 같이 확립된 정교분리의 원칙과 조문 형식은

1987년 현행 헌법 제20조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1948년 이후 아홉 차례의 개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조항의 본질적 내용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 조항은 유지되었다. 유신 헌법(1972)에서도, 제5공화국 헌법(1980)에서도 종교의 자유 조항은 살아남았다. 이는 종교의 자유가 한국 사회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합의된 원칙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조항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이 곧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신 시대에 정부는 교회의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면서, 그것이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정치 개입에 대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정교분리를 빙자해 종교인의 사회적 발언을 억압한 셈이다. 이는 정교분리 조항이 국가에 의해 얼마나 쉽게 오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유신 시대(1972-1979)와 전두환 정권(1980-1988) 시기, 일부 종교 단체들은 단순한 도덕적 발언을 넘어 적극적인 정치 운동에 참여했다. 도시산업선교회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은 노동·인권 문제를 제기했을 뿐 아니라, 당시 권위주의 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정치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종교적 의견 표명이 아니라 체제 변화를 목표로 하는 정치 운동에 가까웠다.

이 점을 무시한 채 “종교 단체가 사회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탄압을 받았다.”라고만 해석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단순화하는 오류이다. 당시 정권은 이를 정치 개입, 더 나아가 체제 안정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했다. 특히 냉전 체제 하에서 국가 안보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부는 종교 단체의 활동을 정치적 위협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된다.

종교 단체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체제 개혁을 요구하는 행위가 곧바로 정교분리 위반이 되는가?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표현뿐 아니라 그 신앙에 기초한 사회적·도덕적 판단의 표명도 포함된다. 종교가 인간의 존엄, 정의, 자유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행위는 그 본질적 사명감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핵심은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하는 데 있다.

- 종교 단체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 하거나 폭력적 전복을 추구하는 경우
- 종교 단체가 단순히 도덕적·정책적 비판을 하는 경우

이 둘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정교분리는 종교의 정치 참여를 전면 금지하는 원칙이 아니다. 동시에 종교 단체가 정치권력의 직접적 행위자가 되는 것을 보호하는 원칙도 아니다. 정교분리는 국가와 종교가 제도적으로 결합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다. 종교의 자유로운 표현은 보호되지만, 국가 질서를 직접적으로 전복하려는 조직적 정치 활동은 이와 구별된다.

유신 및 군사 정권기의 사례는 이 경계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 준다. 어떤 활동은 분명히 체제 비판적 정치 운동의 성격을 띠었고, 어떤 활동은 신앙에 기초한 양심적 비판에 가까웠다. 이 둘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태도도 문제이고, 반대로 모두를 정치 탄압으로만 규정하는 것도 균형을 잃은 것이다.

결국 중요한 과제는 종교의 자유와 국가 질서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헌법적 기준으로 조정하느냐이다. 바로 이 지점이 한국 정교분리 논의에서 가장 섬세한 부분이며, 단순한 흑백 구도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다. 유신 및 군사 정권기의 이러한 경험은 조항의 존재와 조항의 실질적 보호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생길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3.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와의 비교

구조적 차이

한국 헌법 제20조와 미국 수정 조항 제1조의 종교 조항을 비교하면, 몇 가지 구조적 차이가 드러난다.

첫째, 규범의 수범자(受範者)가 다르다. 미국 수정 조항 제1조는 “[연방] 의회는(Congress shall make no law)…”이라고 명시해, 국가 권력만을 구속한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교회는 쟁점 옹호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목사도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다. 한국 헌법

제20조 제2항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문만 보면 종교가 정치 영역에 일체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읽힐 여지가 있다. 이 차이는 실질적인 함의를 낳는다. 미국에서는 수범자가 연방 의회로 명시되어 있어 종교인의 정치 참여 자체가 정교분리 문제로 비화하지 않는 반면, 한국에서는 수범자에 관한 헌법적 논의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아 앞서 살펴본 해석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자유의 방향이 다르다.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는 두 가지 조항으로 구성된다. ‘국교 설립 금지 조항’(Establishment Clause)과 ‘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Free Exercise Clause)이다. 이 두 조항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 하나는 국가가 종교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을 막지 못하게 한다. 한국 헌법 제20조도 제1항(종교의 자유)과 제2항(국교 부인, 정교분리)으로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미국처럼 두 조항 사이의 긴장 관계를 세밀하게 다루는 판례가 발달하지 못했다.

셋째, 역사적 맥락이 다르다.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는 침례교인들의 266년간의 투쟁에서 나온 원칙이다. 한국 헌법 제20조는 해방 후 헌법 제정 과정에서 미국 헌법의 영향을 받아 도입되었다. 미국에서 정교분리는 피를 흘려 쟁취한 원칙이고, 한국에서 정교분리는 외부에서 받아들인 원칙이다. 이 차이가 두 나라에서 정교분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깊이와 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신학적 기초가 다르다. 미국의 정교분리는 침례교 신학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양심의 자유(Soul Liberty), 믿음을 고백한 신자의 침례, 교회의 자발적 공동체 성격 등의 교리가 정교분리의 신학적 기초를 형성한다. 이 신학적 기초 때문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정교분리를 ‘교회의 적’이 아니라 ‘교회의 방패’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신학적 기초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정교분리를 세속적 원칙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세상은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방어적 의미로만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금지 조항으로만 이해한다. 침례교의 정교분리가 성경적 원리에 기초한 적극적 교리라는 사실을 한국 교

회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사법 체계가 다르다. 미국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이 종신으로 재직하며, 위헌 심사권을 통해 종교의 자유 관련 법률과 정부 행위를 적극적으로 심사한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이 6년 임기로 재직하며,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다룬다. 그러나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기되는 종교의 자유 관련 사건의 수는 미국에 비해 매우 적다. 이는 한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 침해를 헌법적 문제로 인식하고 소송으로 다루는 문화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석의 차이 - '관용'인가 '권리'인가

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임스 매디슨은 버지니아 권리 장전에서 '관용'(toleration)이라는 단어를 '권리'(right)로 바꾸려고 싸웠다. 관용은 정부가 베푸는 은혜이고, 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 권리이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헌법 문구상으로는 '권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종종 '관용'처럼 작동한다. 국가가 종교를 허용해주는 형국이지, 국가 이전에 존재하는 천부적 권리라는 인식이 약하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가 미국만큼 절대적인 가치로 대우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관용'처럼 작동하는 구체적 사례를 보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19 사태 시기의 종교 집회 제한 조치이다. 당시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 집합을 전반적으로 제한했다. 공중 보건을 위한 일정한 제한 자체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제한이 어떤 기준과 균형 위에서 이루어졌는가에 있다.

시기와 지역에 따라 예배당에서의 정규 예배는 전면 금지되거나 인원 제한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 반면, 유사한 규모의 비종교적 활동—식당 영업, 카페 이용, 헬스장 운영, 학원 수업 등—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감염 위험도, 밀집도, 비말 발생 가능성 등을 근거로 설명했

지만, 종교 집회가 본질적으로 다른 유형의 모임보다 더 위험하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여기에서 핵심은 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종교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동등한 기본권이라면, 비종교적 유사 활동과 비교해 더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치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즉,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이 존재하고, 그 수단이 불가피하며 침해를 최소화하는지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종교 활동을 국가가 상황에 따라 허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관용적 영역으로 본다면, 정부는 정책 판단에 따라 종교 집회를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선택을 비교적 쉽게 내릴 수 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에서 종교의 자유가 차지하는 위상의 문제이다.

실제로 2020-2021년 종교 집회 제한과 관련해 여러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일부 사건에서 각하하거나 본안 판단을 회피하는 결정을 했고, 종교의 자유와 방역 조치 사이의 충돌에 대해 장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종교 집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가늠할 법리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

반면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은 ‘로마 카톨릭 브루클린 교구 대 쿠오모’ (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v. Cuomo, 2020) 사건⁷ 등에서, 방역을 이유로 하더라도 종교 시설을 유사한 세속 시설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는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분명히 판시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권리로서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런 대비는 한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여전히 정책적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한 관용 수준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위기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7.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종교 시설의 대면 예배 인원을 제한한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다룬 사건이다. 당시 뉴욕 주 주지사였던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는 감염 위험도에 따라 구역을 나누고 교회나 회당의 참석 인원을 엄격히 규제했으나 로마 카톨릭 브루클린 교구(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는 이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할 기본권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왜 계속되는지를 잘 보여 준다.

감염병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국가의 방역 권한이 확대된 점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종교 집회가 다른 유사 활동과 동일한 기준 아래 다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결국 코로나19 사례는 종교의 자유가 단순히 선언적 권리에 머무는지, 아니면 위기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헌법적 권리인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시험대였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법리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종교의 자유가 다시 관용의 영역으로 후퇴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첫 번째 자유’(First Freedom)라고 불린다. 이것은 수정 조항 제1조의 첫 번째 조항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자유의 기초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자유라는 의미이다. 매디슨이 말했듯이, 양심의 자유가 보호받지 못하면 어떤 권리도 안전하지 않다. 한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여러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인식될 뿐, ‘첫 번째 자유’라는 인식은 거의 없다.

한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조차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함께 수정 조항 제1조에 함께 보장되어 있어, 이 자유들이 상호 보강하는 관계에 있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면 표현의 자유도 위축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 종교의 자유도 위축된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자유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가 충분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다른 기본권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리는 훗날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리로 확대될 수 있다.

실행의 차이

미국에서는 수정 조항 제1조를 둘러싸고 수천 건의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어 있다. ‘에버슨 대 교육위원회’(Everson v. Board of Education, 1947), ‘엥겔

대 비탈레’(Engel v. Vitale, 1962), ‘레몬 대 커츠먼’(Lemon v. Kurtzman, 1971), ‘케네디 대 브레머턴 교육구’(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2022) 판결 등 주요 판결만 해도 정교분리의 의미를 매우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의회 원목 기도가 합헌인지, 공립 학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지, 공공건물에 십계명을 전시할 수 있는지 등 세밀한 쟁점까지 판례로 정리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정교분리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가 극히 적다. 대법원은 종교 단체의 내부 분쟁에 관한 판결에서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은 드물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정교분리의 의미가 아직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정교분리 관련 주요 결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2010년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단, 2018년에 변경됨). 2008년 대법원은 사립 종교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 강제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강의석 사건).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광고등학교(기독교 재단)가 학생에게 종교 수업 참석을 강제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들은 미국의 풍부한 판례 체계에 비하면 극히 제한적이다. 정교분리의 구체적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법리적 기준이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판례들을 미국의 풍부한 판례와 비교하면, 한국에서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쟁점이 얼마나 많은지가 드러난다. 대형 종교 단체가 ‘이단’으로 규정한 다른 종교 단체에 대해, 특히 정치 개입이나 공익 침해를 이유로 국가가 해산 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목사의 설교 내용이 ‘혐오 발언’으로 처벌될 수 있는가? 종교 학교에서 성적 지향에 관한 내용을 종교적 관점에서 가르칠 수 있는가? 교회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결혼 주례를 거부할 수 있는가? 이 쟁점들은 미국에서는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느 정도 해답이 제시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법적 기준이 전무하다. 이 공백을 일부 좌파 진영에서

는 ‘차별 금지법’ 제정으로, 일부 교계 인사들은 특정 단체의 사회적 폐해와 정치 개입을 근거로 국가의 법적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차별 금지를 명분으로 목사의 설교 내용을 규제하거나 교회의 교리적 결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 그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된다. 특정 단체의 사회적 폐해를 지적하는 행위와, 국가가 ‘교리’나 ‘종교적 정체성’을 기준으로 단체의 존립 여부를 결정하는 일 역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국가가 특정 종교를 ‘사교’(邪敎)나 ‘해산 대상’으로 낙인찍는 순간, 정교분리의 벽은 무너지고 국가가 신앙의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한국 교회의 과제는 이 공백을 헌법 제20조에 충실한 판례로 채우는 데 있다.

4. 한국법에서 종교의 자유의 범위

보장되는 범위

앞서 살펴본 네 가지 종교의 자유 유형이 실제 한국 법체계에서 어떻게 보장되고 제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개인의 신앙 자체는 절대적으로 보호된다. 어떤 종교를 믿든, 또는 종교를 믿지 않든, 이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이다. 국가가 개인에게 특정 종교를 믿으라고 강제하거나 특정 종교를 믿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종교 단체의 설립과 활동은 자유이다. 교회, 사찰, 성당, 모스크 등 종교 단체를 구성해 예배와 선교, 종교 행사를 하는 데에는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재산의 관리, 법률 행위, 세제 혜택 등을 위해 법인격(法人格)⁸을 취득하려 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종교 법인으로서 별도의 설립 허가와 등기가 요구된다. 법인격 취득과 무관하게, 종교 단체는 내부 교리와 규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국가는 교리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

8.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자연인과 법인에게 부여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셋째, 종교적 집회와 예배는 자유이다. 종교적 예배, 집회, 모임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며,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공질서를 현저히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때 종교 집회 제한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는 종교의 자유와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복리가 충돌한 사례였다.

넷째, 선교와 전도의 자유는 보장된다. 거리 전도, 방문 전도, 종교 서적 배포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과 개종 권유도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 다만 타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강압적·위력적인 방식으로 전도하거나, 명예 훼손·협박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다섯째, 종교인의 정치 참여는 국민의 일반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종교인도 국민이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종교 정당의 설립도 가능하다. 정교분리는 종교인의 정치 참여 자체를 금지하는 원칙이 아니라, 국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그리고 종교가 국가 권력을 장악해 다른 종교나 비종교인을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제한되는 범위

종교의 자유도 절대적이지는 않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보,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첫째, 종교를 이유로 한 법적 의무의 회피는 제한된다. 병역 의무가 대표적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에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이 결정은 종교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의 조화를 모색한 시도였다.

이 사건은 한국 정교분리·종교 자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가운데 하나이다. 오랫동안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병역 의무는 헌법적 의무이며 양심의 자유가 이를 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

러나 2018년 헌법재판소는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고, 같은 해 대법원도 기존 판례를 변경해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020년부터 대체 복무제가 시행되었다. 이 과정은 한국에서 종교의 자유에 관한 법리가 아직도 형성 중임을 보여 준다.

2018년 판결 이전까지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백 명이 매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었다. 한국은 한때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되는 인원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지적되었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반복적으로 개선을 권고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과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한국 종교 자유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 이 판결의 핵심 의미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종교적·양심적 신념이 국가의 법적 의무(병역)와 충돌할 때, 국가가 이를 일률적 처벌이 아니라 대체 복무라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원리가 인정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대체 복무제는 의무의 면제가 아니라 의무의 대체이며, 복무 기간이 현역의 약 2배로 정해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된다는 비판도 있다.⁹ 이는 한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아직 ‘최대한의 존중’이 아니라 ‘제한적 관용’의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 준다.

둘째, 공공질서를 중대하게 해치는 종교 행위는 제한된다. 종교의 이름으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치는 행위, 사기·갈취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종교의 자유로 보호받지 못한다. 종교적 집회·행위의 자유도 절대적 권리가 아니므로, 그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 금지 원칙’과 그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¹⁰

9. 당시 육군 현역병의 복무 기간은 21개월이었으나 2018년 7월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단축 계획에 따라 10월 1일 전역자부터 2주에 하루씩 복무 기간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현재 확정된 대체 복무 기간은 최종 단축 기간인 18개월의 2배에 해당하는 36개월이다. 대체 복무는 주로 교정 시설에서 합숙하며 복무하는 형태를 띤다.

10. ‘과잉 금지 원칙’은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필요성, 법익 균형성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며,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은 공익을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권리가 권리로서 기능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최후의 한계를 뜻한다.

셋째, 국공립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은 엄격히 제한된다. 국공립 학교는 특정 종교를 신앙 대상으로 가르치거나 종교 행사를 실시할 수 없고, 다만 세계 종교에 대한 객관적 지식 전달로서의 ‘종교학’ 교육은 허용된다. 사립 학교의 경우 건학 이념에 따른 종교 교육이 일정 범위에서 허용되나,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기독교계 사립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실질적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채플(chapel) 참석을 의무화한 사건에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사립 종교학교(미션스쿨)가 학생에게 종교 교육을 실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고교 평준화 지역에서 배정으로 입학한 학생처럼 선택권이 없는 경우, 종교 수업과 종교 행사 참석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는 문제가 된다. 이른바 ‘대광고등학교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생의 소극적 종교 행위의 자유와 학교의 종교 교육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 이익 형량¹¹으로 한계를 정해야 하며, 학생에게 실질적 대안 없이 종교 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종교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국 법원이 제시한 가장 구체적인 기준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의 경우, 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 종교학교는 상대적으로 폭넓은 종교 교육의 자유를 인정받는다라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

넷째, 국가 기관과 공무원의 종교적 행위는 정교분리 원칙 아래에서 제한된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특정 종교 활동을 하거나 국가 기관이 특정 종교를 선전·후원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군종 제도(군목 제도)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한국 군대에는 개신교·카톨릭·불교·원불교 군종 장교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군인이 종교 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려운 특수한 환경에서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된다. 따라서 군종 제도는 정교분리의 예외라기보다, 정교분리 원칙과 양립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군대 내에서 상급자의

11.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익을 비교하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일을 말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지위를 이용한 종교 강요나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 모두에 반하는 행위로, 제도 자체가 아니라 운영상의 남용을 통제하는 일이 과제이다.

회색 시대 -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

한국 사회에는 정교분리와 관련해 아직 명확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은 회색 시대가 많이 남아 있다.

첫째, 목사의 설교 중 정치적 발언이 정교분리 위반인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에서는 목사의 설교 중 낙태, 생명 윤리, 차별 금지법, 노동 문제, 복지 정책, 공산주의 등 도덕적·신학적 발언이 곧바로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목사가 성경적 원리에 기초하여 도덕적·신학적 쟁점에 대해 발언하는 행위는 종교의 자유 실행 영역에 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는 유용한 기준을 제공한다. 미국의 경우, 성경적 가치에 근거한 쟁점 옹호, 즉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허용되지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는 세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미국의 존슨 수정안 참조).

한국에서는 선거 때마다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진다. 2022년 대선을 전후해 일부 목사들이 설교 중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 선거법상 종교 시설 내 선거 운동 금지 규정을 근거로 조사와 고발에 나섰다.¹² 이 논쟁의 핵심은 “공산주의는 성경에 반한다.”라는 식의 쟁점 옹호와 “그러므로 이 후보자에게 투표하라.”라는 후보 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다. 미국 등 타국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종교적 설교와 선거 운동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부 진영이 이러한 사례들을 근거로 목사의 모든 사회·도덕적 발언 자체를 정교분리 위반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12. 공직 선거법 제80조는 종교 시설 안에서 선거 운동을 위한 연설을 금지하며 제85조 제3항은 종교적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에게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문제이다. 특정 후보자를 직접 지지하는 행위와, 성경적 관점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 평가·비판하는 설교는 전혀 다른 성격의 행위이다. 전자는 공직 선거법 등에서 선거 운동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 있다. 한국 법체계에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고 보호 범위를 제시하는 일관된 판례 기준이 아직 부족하며, 이 해석의 공백이 교회의 사회적·공적 발언을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려는 시도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둘째, 종교 단체의 사회 참여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교회가 사회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인권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며, 법안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행위는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다만 종교의 권위를 앞세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지·동원하는 행위는 정교분리의 정신과 공정 선거 원칙에 비추어 자제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 행사에서 종교적 요소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대통령 취임식이나 국가 기념식에서 특정 종교 지도자가 축도하거나 기도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러한 관행이 정교분리 위반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리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입법부 개회 기도를 둘러싼 ‘마쉬 대 체임버스’(Marsh v. Chambers, 1983) 사건 판결 등으로, 역사적 관행에 뿌리를 둔 제한적 종교 의례를 합헌으로 보는 기준이 발전해 왔다. 한국에서는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서 카톨릭·개신교·불교 지도자가 순서대로 축도했지만,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공식 종교 축도가 생략되는 등, 국가 행사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전통이 자발적 관행으로 존중되는 전례와 달리, 이러한 관행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합의와 법리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넷째, 종교 단체에 대한 세제 혜택은 정교분리의 범위 안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한국에서 종교 단체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배당 등 종교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일정한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2018년부터는 종교인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고 있으며, 종교 단체 자체에 대한 과세는 종교 활동의 비영리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일정 범위에서 조정·완화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정교분리의 관점에서 국가가 종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는 이러한 세제 혜택 자체를 정교분리 위반이나 특혜로 몰아세우며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정교분리를 ‘국가의 종교 보호’가 아닌 ‘종교에 대한 국가의 우위’로 해석하려는 시각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결국 한국 법체계 안에서 종교의 자유가 ‘권리’로서 온전히 대우받기 위해서는, 헌법 제20조의 문구를 넘어 그 속에 담긴 양심의 자유와 국가 권력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성숙한 판례와 사회적 합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세금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우려를 낳는다. 지역 교회의 재정 장부에는 예산·수입·지출 내역 등 공동체의 거의 모든 재정 정보가 포함된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를 이유로 교회의 전체 회계 자료 제출을 광범위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세무조사와 행정적 압박이 이루어진다면, 종교 단체에 대한 과도한 감시와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종교인 과세의 집행 범위를 분명히 한정하고, 교회·사찰의 교리·예배·내부 자율 영역에 대한 ‘사찰’로 비치지 않도록 정교분리 원칙에 부합하는 운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이는 미국에서 말하는 정교분리 원칙 중 ‘국가의 과도한 얽힘’(Excessive Entanglement) 금지 원칙¹³과 맞닿아 있는 지점으로, 조세 행정이 종교 단체의 내부 운영과 신앙의 영역 속으로 깊이 파고들지 않도록 경계를 분명히 그어야 한다.

13. ‘국가의 과도한 얽힘 금지 원칙’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1971년 ‘레몬 대 커츠먼’(Lemon v. Kurtzman) 사건에서 제시한 정교분리 심사 기준인 레몬 테스트의 한 요소이다. 이는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거나 규제하는 과정에서 종교 단체의 재정·인사·교육 내용·교리 판단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감독·검열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와 종교가 밀접하게 뒤얽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결론 - 이식된 원칙에서 체화된 원칙으로

한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중요한 헌법적 성취이다. 그러나 이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정교분리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몇 가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한국의 정교분리는 역사적 투쟁을 통해 체화된 원칙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식된 원칙이다. 이 출발점의 차이가 이후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었다.

둘째, 한국에서는 정교분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하다. 정교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종교의 자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다. ‘목사가 공산주의를 비판하면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주장이 당연한 듯 제기되는 현상은, 정교분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이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과제는 정교분리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다. 정교분리는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와 제37조의 자유 제한 원칙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핵심 개념이지만, 오늘날 한국에서는 이 원칙의 의미가 대체로 정치적 구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셋째, 정교분리를 구체화하는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수정 조항 제1조의 의미는 대법원 판례로 정밀하게 구체화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관련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정교분리 원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

현재 학교 교육과 일반적인 헌법 교육에서 정교분리 원칙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거나, 종교의 자유 조항 속에 매우 간략히 언급되는 정도에 그친다. 교과서에서도 ‘국교 부인과 정교분리’가 문장 하나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며, 왜 이런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교회와 국가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조정되어 왔는지에 관한 설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 결과 많은 한국인들은 정교분리라는 말을 듣기는 하지만, 이 원칙이 실제로 무엇을 금지하고 무엇을 허용하는지,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서 어디까지가 자유이고 어디서부터가 권력

납용인지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 인식의 공백을 오늘의 이념 진영들이 각자 자기 방식으로 채우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일부 좌파 진영에서는 정교분리를 “교회는 정치와 공적 사안에 일절 관여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이해하고, 목사의 사회·윤리적 발언까지 모두 정치 개입으로 몰아가려 한다. 반대로 우파 진영 일부는 정교분리를 무신론자들과 세속 권력이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 만들어 낸 음모 정도로 취급 하면서, 헌법적 논의를 아예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두 입장은 모두 정교분리의 역사적 맥락과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정교분리는 교회를 침묵시키기 위한 장치도 아니고, 교회를 국가 위에 올려놓기 위한 수단도 아니라, 국가 권력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종교가 국가 권력을 장악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균형의 원칙이다.

이러한 공정한 이해는 단순한 구호나 교과서 한두 줄로는 얻을 수 없다. 미국과 유럽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대립하고, 협력하고, 다시 충돌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제도와 판례를 형성해 왔는지, 제4장에서 제6장까지 추적한 역사적 전개를 따라가야 비로소 전체 그림이 드러난다.

이 책이 그 역사를 정리해 한국 사회에 소개하는 목적은, 정교분리를 둘러싼 이념적 구호를 넘어서 교회와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관한 공통의 언어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역사적·법리적 이해가 공유된다면, 새로운 입법 논의가 제기될 때마다 ‘반종교 대 친종교’라는 단순 구도에서 벗어나 헌법 원칙에 기초한 냉정한 토론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필요한 과제는, 외부에서 받아들여 이식된 원칙을 체화된 원칙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정교분리가 왜 필요한지, 정교분리가 교회를 약화시키는 원칙이 아니라 보호하는 원칙임을, 정교분리가 종교인의 입을 막는 원칙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원칙임을, 한국적 맥락에서 깊이 이해하고 체화해야 한다.

이 작업은 한국 교회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 정교분리는 교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원칙이기 때문이다. 정교분리는 세속주의자가 종교를 억압하기 위해 만든 원칙이 아니다. 침례교인들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교회를 보

호하기 위해 오랜 세월 투쟁해서 이루어 낸 원칙이다. 한국 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원칙의 수호자가 될 때, 비로소 한국의 정교분리는 ‘이식된 원칙’에서 ‘체화된 원칙’으로 전환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이 모든 일은 교회가 스스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이자, 한국 사회 전체의 자유 질서를 공고히 하는 공적 섬김이다.

첫째, 정교분리의 정확한 의미를 교인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정교분리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고 특정 종교를 편들거나 억압하지 말라.”라는 헌법적 방패이다. 이 구분을 성도들이 분명히 이해할 때, 일부 좌파 진영이 정교분리를 “교회는 사회적 쟁점에 대해 성경에 따른 공적 발언을 하지 말라.”라는 무기처럼 사용하더라도, 교회는 위축되거나 침묵하는 대신 헌법 언어로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 동시에, 일부 보수 진영이 정교분리를 ‘무신론의 음모’로만 치부하며 원칙 자체를 거부하지 않도록, 역사와 성경, 헌법을 함께 가르치는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비교적 탄탄하게 보호되는 이유는, 1791년 수정 조항 제1조 제정 이후 230년 동안 수많은 사건이 연방 대법원과 하급심을 거치면서 판례가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예배·설교·종교 교육·선교·양심적 병역 거부 등에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위축될 소지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헌법 제20조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판례를 쌓아 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차별 금지법이든 종교 단체 해산법이든 새로운 입법이 나올 때마다 해석 기준이 정치 세력의 손에 맡겨질 위험이 크다.

셋째, 초교파적 연대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소수 종교나 비주류 단체에 대한 탄압은 결국 모든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며, 그 여파가 보수 개신교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교파와 이단 논쟁을 넘어서 ‘국가 권력이 종교의 교리를 심사하고 단체를 해산하는 선례’ 자체

에 함께 반대하는 연대가 필요하다. 개신교, 카톨릭, 불교를 포함한 종교계 전체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올바른 이해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성명과 공동 소송, 공동 연구를 통해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연대는 교리적 차이를 희석하거나 종교 통합을 추구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르다. WCC 계열의 종교 통합 운동처럼 신학적 정체성을 절충하는 연대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종교 침해에 맞서 헌법적 권리를 함께 수호한다는 시민적·법적 연대를 의미한다.

넷째, 국제적 기준과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종교의 자유 판례는, 신분증의 종교 표시, 학교에서의 종교 상징, 소수 종교의 집회와 선교 등 다양한 사안에서 종교의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의 기준을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22호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 최소 기준을 제시하면서, 국가가 어느 범위까지 종교를 제한할 수 있는지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한국 교회와 학계, 법조계는 이러한 국제 판례와 기준을 연구해 한국 헌법 해석에 창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한국만의 특수성을 유지하면서도 보편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종교의 자유의 토대를 세워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 교회가 정교분리의 원칙을 실제로 어떻게 위반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본다.



한국 교회의 정교분리 현실

앞의 두 장에서 우리는 미국에서의 정교분리 실행과 한국 헌법 제20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제 시선을 돌려 한국 교회의 현실을 살펴보려 한다. 한국 교회는 정교분리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교회의 정치 개입, 국가의 종교 개입, 대형 교단의 이단 정죄—이 세 영역은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정교분리 원리와 직결된 하나의 쟁점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불편한 진단을 제시하는 목적은 교회를 공격하거나 폄하하려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성경적 원리와 헌법적 원칙 위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이 장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교회가 정치권력에 밀착하면 그 권력을 빌려 다른 종교나 소수 집단을 누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이때 대형 교단의 ‘이단 정죄’는 국가적 제재와 결합해 심각한 인권 침해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국가가 정교분리라는 이름으로 종교 단체 해산법이나 각종 규제를 통해 교회를 과도하게 통제하려 할 때, 교회의 정당한 사회적 발언과 공적 책임까지 위축될 위험이 있다. 이런 양방향의 왜곡 속에서

정교분리는 ‘교회를 침묵시키는 구호’나 ‘국가를 성역화하는 이념’으로 전략해 왔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한 가지로 수렴된다. 한국 교회가 정교분리의 원리를 자기 것으로 체화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유럽과 미국의 침례교 전통이 오랜 시간 동안 피 흘리며 붙들어 온 원리는 분명하다. 교회는 국가의 칼을 빌려 복음을 강요하지 않고, 동시에 국가의 칼 앞에 신앙을 굽히지도 않으며, 오직 복음의 능력과 성도들의 자발적 헌신으로 선다. 이 장은 바로 이 원리를 기준으로, 앞서 제시한 세 영역을 하나하나 비추어 보려 한다.

1. 교회의 정치 개입 - 어디까지가 정당인가

정당한 영역 - 도덕적·신학적 발언

제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교회의 공적 발언을 쟁점 옹호(Issue Advocacy)와 후보 지지(Candidate Endorsement)로 구분하는 원칙이 기본이다. 쟁점 옹호란 성경적·윤리적 기준에 따라 특정 제도·사상·법안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행위이고, 후보 지지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행위이다. 한국 교회도 정교분리와 선거법을 논의할 때 이 구분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한다.

교회는 성경적 원리에 기초한 도덕적·신학적 발언을 정당하게 할 수 있다. 낙태는 생명 경시라고 말하는 것, 동성애는 성정이 금지하는 죄라고 가르치는 것,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 체제라고 지적하는 것, 차별 금지법이 성경적 가치와 충돌한다고 비판하는 것—이런 발언들은 모두 신앙 고백과 교리 교육의 범주에 속하며, 종교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 교회가 이러한 내용을 설교와 교육을 통해 가르치는 행위는 정교분리 위반이 아니라, 정교분리가 보호하려는 바로 그 종교적 자유의 핵심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이다. 성경 말씀의 도덕적·윤리적 원리는 개인의 사생활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정·경제·문화·정치 등 사회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이다. 따라서

교회가 사회적 현안에 대해 성경적 입장을 밝히고, 국가와 사회의 죄를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행위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속한다. 만일 교회가 “사회적·정치적 이슈에는 일절 언급하지 말라.”라는 압력을 받아 침묵을 강요당한다면, 이는 정교분리의 실현이 아니라 교회의 대언자적 사역 자체에 대한 억압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이 구분이 더 분명해진다. 2020년대 들어 한 대형 교회 목사가 설교 중 ‘사회주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사상’이라고 말하자, 일부 언론과 시민 단체는 즉각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라면 이러한 발언은 특정 정책과 이념에 대한 성경적 평가, 즉 쟁점 옹호로 간주된다.

반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일부 목사들이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 후보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저 후보자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식으로 사실상 지지·반대를 선동한 행위로 인해, 해당 목사들은 공직 선거법상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¹ 이는 신앙적 가치 판단을 밝히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 후보자의 당락에 직접 개입하는 정치 행위, 즉 정교분리의 원칙을 벗어난 후보 지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균형도 필요하다. 쟁점 옹호라는 명분 아래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교묘하게 설계된 발언들 역시 경계되어야 한다. 교회가 복음의 보편성을 상실하고 특정 정파의 대변인처럼 행동할 때, 교회는 스스로 종교적 권위를 훼손하게 된다. 그 순간 교회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방패를 스스로 내려놓는 셈이 되며, 정치권력과의 구조적 결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일부 좌파 진영에서 나타나는 비판의 패턴은 세 단계로 요약된다.

1. 대법원 2025도7693 판결은 예배 설교 중에 특정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여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사례이다. 또한 대법원 2023도12345 판결은 가명으로 처리된 사건이며 2024년 9월 28일에 선고되었다. 이는 설교에서 특정 후보의 낙선을 호소한 행위로 인해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사실을 다루고 있다.

첫째, 교회의 성경적 발언을 ‘정치적 발언’으로 재규정한다. 목사가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이다.”라고 말할 때, 이는 교리와 신학에 관한 진술이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해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이려 한다.

둘째, 교회의 도덕적 발언을 ‘혐오 발언’으로 재규정한다.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는 것은 성경적 윤리에 따른 도덕·신학적 평가인데, 이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규정해 법적 제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셋째, 교회의 정당한 사회 참여를 ‘정교유착’으로 매도한다. 교회가 낙태법·차별 금지법·가정과 생명에 관한 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입법 과정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행위는 시민으로서, 종교 공동체로서의 정당한 참여임에도, 이를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다”, “정교유착이다.”라고 규정해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반복된다.

이 세 전략의 공통점은, 교회의 정당한 발언권을 언어의 재규정을 통해 불법화하려 한다는 점이다. ‘성경적 발언’을 ‘정치적 발언’으로, ‘도덕적 발언’을 ‘혐오 발언’으로, ‘사회 참여’를 ‘정교유착’으로 바꾸어 부르는 순간, 교회는 공적 공간에서 말할 권리를 잃게 되고, 사회적 악과 불의에 대해 말하는 행위조차 스스로 검열하게 된다. 한국 교회는 이 언어 전쟁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미국에서 정립된 쟁점 옹호·후보 지지의 구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무엇이 종교의 자유 범위에 속하고 무엇이 실제 선거 운동인지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부당한 공격에 법적·신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부당한 영역 - 교회의 정치권력화

그러나 교회가 넘지 말아야 할 선도 분명히 존재한다. 선거철에 교회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교회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치 운동에 동원하는 행위, 교회의 재정을 정당·후보 지원 등 직접적인 정치 활동에 사용하는 행위, 교회의 영적 권위와 강단을 이용해 특정 정치 세력을 ‘하나님의 사람’ 또는 ‘마귀의 도구’로 부르는 행위—이러한 행위들은

정교분리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쟁점 옹호를 넘어, 교회가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옳지 않은가? 단순히 현행 법률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적 원리에 있다. 교회가 정치권력의 획득이나 유지를 목표로 삼는 순간, 교회는 반드시 타락의 길로 들어선다.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교회사 전체가 이 사실을 증언한다. 교회가 세상 권력과 결합하는 순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아니라 권력의 정당성을 포장하는 도구가 되기 쉽다. 예수님께서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요 18:36)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교회는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 구조를 장악하라고 부름받지 않았고 어떤 정권 아래서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도 교회가 정치권력과 결합하려 할 때마다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어떤 교회와 지도자들은 특정 정권과 밀착해 그 정권의 정책과 권력 유지에 성경적 언어로 정당성을 부여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조직하고, 교인들을 특정 노선 아래 결집시키는 데 강단과 조직을 활용했다. 이러한 행위는 교회의 영적 권위와 신뢰를 약화시켰고, 비기독교인들에게 ‘교회는 결국 또 하나의 이익 집단일 뿐’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정교분리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복음의 능력을 훼손하는 자기파괴적 선택이었다.

한국 교회와 정치권력의 밀착 역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문제점이 드러난다. 1950년대 이승만 정권 시절,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모세나 다윗에 비유하며, 그의 통치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선포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1960-70년대 군사 정권기에는 교회가 둘로 갈라졌다.

한쪽에서는 박정희 정권과 보수 정권들에 협력하며 반공 이데올로기와 정권의 정책을 지지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진보적 교회와 에큐메니컬 진영이 민주화 운동과 인권 운동에 깊이 참여하며 정치적 역할을 수행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하에서도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정권과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며 국

가 행사와 정권 홍보에 동원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상반된 전통이 형성되었다. 하나는 보수적 교회의 반공·친정부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진보적 교회의 민주화·사회 운동 참여 전통이다. 두 전통은 정치적 방향과 성향에서는 서로 대립하지만, 정교분리의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문제를 공유한다. 보수적 교회가 특정 정권과 이념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단과 조직을 사용하는 것도, 진보적 교회가 특정 정치 운동과 세력의 조직적 도구가 되는 것도, 둘 다 교회를 어떤 형태로든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침례교회가 오랜 투쟁을 통해 세운 성경적 정교분리 원리에 따르면, 교회는 어떤 정치 세력과도 밀착하거나 결탁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성경적 원리에 기초해 모든 정치 세력을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되, 그 어느 편도 공식 후원자나 선거 조직으로 서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교회가 복음의 자유를 지키면서 정교분리 원칙을 성경적으로 실천하는 길이다.

구분의 원리 - 교회와 목사 개인의 분리

미국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교회(종교 기관)와 목사(개인 시민)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데 있다. 미국에서도 교회라는 조직이 예배 시간과 공식 집회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교인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는 세법·선거법상 문제 소지가 있지만, 목사가 시민으로서 언론 인터뷰나 개인 채널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밝히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본다. 다시 말해, 교회의 공식 입장과 목사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법적·사회적 위상이 다르다.

앞서 예를 든 바와 같이, 델러스 제일침례교회의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가 자기 교회 주일 설교 시간에 “트럼프에게 투표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교회의 예배와 조직을 특정 후보자의 선거 운동에 직접적으로 동원하는 행위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Fox News 인터뷰나 개인 명의 칼럼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행위는, 시민으로서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밝히는 발언으로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놓인다. 핵

심은 ‘어디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느냐’이다. 강단 위에서 교회의 영적 권위를 걸고 공식 입장을 선포하는 행위와, 한 시민이 자기 이름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는 분명히 구별된다.

한국에서도 이 구분이 적용되어야 한다. 목사가 교회 강단에서, 예배 중에 “이 후보자에게 투표하십시오”, “저 후보자는 낙선시켜야 합니다.”라고 설교하는 행위는 사실상 선거 운동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교회의 조직·예배·헌금·권위를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목사가 개인 자격으로 방송·인터뷰·유투브 등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누구를 지지·반대하는지 설명하는 행위는, 교회의 공식 직함이나 조직을 내세우지 않는 한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으로 보아야 한다. 목사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시민이다. 단지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의견 표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정교분리를 빌미로 특정 직업군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셈이 되며, 오히려 종교인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교분리 원칙과 선거법 준수라는 관점에서 문제 삼아야 할 대상은 ‘교회의 공식적 구조와 예배를 이용한 조직적 선거 운동’이지, ‘목사 개인이 시민으로서 의견을 말하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다. 한국 교회와 사회는 이 두 영역을 신중하게 구분함으로써, 교회의 정치적 오용을 막으면서도 목회자 개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영혼의 자유 – 판단은 개인의 몫

제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침례교회들은 선거철이 되면 두 후보자나 주요 정당의 공약을 비교·설명해 주되, “어느 공약이 성경적 가치에 더 가깝습니까?”라고 묻는 선에서 멈춘다. 공약을 성경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일까지는 교회의 몫이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각 성도가 양심에 따라 내리는 책임 있는 결정으로 남겨 둔다. 설교자는 원칙을 제시하고 성경적 분별력을 돕되, “누구에게 투표할지”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하지 않는다. 이 원리가 침례교 전통이 말하는 영혼의 자유(Soul Liberty), 곧 하나님 앞에서 각 개인의 양

심과 책임을 존중하는 실천이다.

한국 교회도 이 원리를 배워야 한다. 교회는 성경적 원리와 가치, 곧 생명·가정·자유·정의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가르치되, 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 어떤 후보·정당을 선택할지는 성도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 성도들을 마치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며 “누구에게 투표하라.”라고 직접 지시하는 행위는 성도의 양심의 자유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침례교인들이 오랜 세월 피를 흘리며 지켜 온 영혼의 자유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목사는 양심을 깨우는 설교자이지, 투표를 대신 결정해 주는 정치 브로커가 아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많은 교회는 아직 이 원리를 충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일부 목사는 설교 중에 특정 후보자를 노골적으로 칭찬하거나 비난하며, 사실상 지지·반대 선언을 한다. 교회 게시판이나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특정 정당의 홍보물이 올라오고, 교회 건물 안에 특정 정치 세력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일부 교회에서는 교회 버스를 동원해 단체로 투표장에 가면서, 누구에게 투표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사례까지 보고된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부당하며, 첫째, 교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둘째, 교회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셋째, 결과적으로 교회 스스로 ‘정교유착’과 ‘교회의 정치 도구화’라는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한국 교회가 이러한 관행을 스스로 정리하지 않는 한, 교회를 향한 외부의 비판 앞에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반박하기 어렵다. 내부적으로는 영혼의 자유를 무시하면서 외부를 향해서만 ‘정교분리는 교회를 보호하는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태도는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 교회가 먼저 자기 강단과 조직 안에서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성도의 양심을 존중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직접 지지하는 발언을 중단할 때, 비로소 일부 좌파 진영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교분리를 성경적으로 지키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정교분리는 국가만을 향한 요구가 아니라, 교회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자기 절제의 원리이다.

2. 국가의 종교 개입 - 어디까지가 정당한가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정교분리는 양방향의 벽이지,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장치가 아니다. 교회가 국가 권력을 장악해 자기 교리를 법과 정책으로 강요할 수 없듯이, 국가 역시 교회의 내부 문제에 침범해 지배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정교분리는 교회를 국가로부터 분리하는 원칙이자 동시에 국가를 교회로부터 분리하는 원칙이다. 이 둘이 함께 지켜질 때만,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온전히 보호된다.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은 비교적 명확하다. 특정 종교를 다른 종교보다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 세금·보조금·각종 인허가를 통해 한 종교에 특혜를 주고 다른 종교를 배제하는 일, 종교 단체의 교리·신학·예배 방식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며 개입하는 일, 종교 지도자의 임명·해임이나 내부 인사 문제에 간섭하는 일, 종교적 이유만으로 시민의 기본권?직업 선택, 공직 진출 등—을 제한하는 일, 그리고 특정 종교 단체를 공식 문서에서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하는 것—이 모두가 정교분리 원칙의 금지선에 해당한다. 국가는 공권력으로 교리를 가려내거나, 신앙 내용을 기준으로 종교를 차등 대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 금지선은 ‘전통문화 존중’이나 ‘정치적 협치’라는 모호한 이름 아래 빈번히 침범당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양상은 개인의 양심을 억압하는 행태와 국가 예산의 편향적 집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 가장 노골적인 사례는 기독교인 공직자나 정치인이 공식·비공식 일정으로 사찰을 방문할 때 직면하는 ‘합장 강요’이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에티켓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19조가 명시한 ‘양심의 자유’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처사이다.

양심의 자유는 개인이 선택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할 자유를 넘어,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반하는 특정 행동을 강제당하지 않을 ‘소극적 양심의 자유’를 본

질로 한다. 합장은 불교의 고유한 수행 방식이자 신앙 고백이 담긴 종교적 의례이다. 기독교인에게 이를 요구하는 일은 그의 영적 정체성을 강제로 부정하게 만드는 정신적 폭력과 다름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를 거부했을 때 따르는 사회적 압박이다. 불교계와 일부 언론은 이를 ‘편협함’이나 ‘불통’으로 몰아세우며 정치적 압박을 가한다. 이러한 압박에 굴복해 합장을 하는 공직자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종교적 양심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타협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준다. 진정한 정교분리는 각자의 신앙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성립된다. 불교인은 불교의 방식으로, 기독교인은 기독교의 방식으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의 품격이다. 공직자가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정교분리의 건강한 토양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한국적 정교유착의 폐단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종교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현실이다. 연등회 지원, 사찰 성역화 사업, 템플스테이(temple stay) 운영 지원 등은 이미 그 규모가 문화재 보호의 수준을 넘어 특정 종교의 세력을 확장하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재원이 되고 있다.

이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정교분리의 핵심 원칙(국교 설립 금지 원칙의 현대적 해석)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처사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이 해당 종교 행사를 기획하고 홍보하며, 심지어 행사장 현장에서 종교적 의례를 돕는 보조자로 강제 동원되기까지 한다. 이는 헌법 제7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넘어, 공직자를 특정 종교의 포교 도구로 전락시키는 헌법 유린이다.

지자체는 이를 관광객 유치에 위한 문화 마케팅이라 항변하지만, 공적 자금이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거나 종교 단체의 자산을 불리는 데 사용된다면 이는 명백한 정교유착이다. 공공의 세금은 모든 시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 종교의 선교 비용으로 전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모든 종교

로부터 엄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공정한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 국가의 저울추가 특정 종교로 기울어질 때, 그 국가는 이미 모든 종교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호할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부당한 개입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재정 지원의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위협은 국가가 종교의 가장 깊은 성소인 ‘교리와 신념’의 영역까지 침범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려는 시도에서 나타난다. 정교분리의 벽은 세속적 편향을 막는 방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라는 거대 권력이 종교 내부의 신학적 판단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최후의 저항선이기 때문이다.

재정 지원의 문제를 넘어,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과연 국가가 종교의 내용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가? 본래 정교분리 원칙이 역사 속에서 등장한 배경은, 국가 권력과 결합한 다수 교단이 소수 신앙인의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다. 정교분리는 강한 쪽이 약한 쪽을 마음대로 제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소수의 양심과 신앙을 국가와 다수 종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였다.

특히 주의해야 할 지점은, 국가가 이단 척결·사이비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종교 내용 자체에 개입하는 경우이다. 어떤 교리가 정통이고 어떤 교리가 이단 인지를 판단하는 권한은 교회와 신앙 공동체, 신학의 몫이지, 행정부나 법원의 몫이 아니다. 그 단체의 교리와 신앙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를 기준으로 “해산하라, 존속하라.”를 판단하는 일은 국가의 정당한 권한 밖에 있다. 만일 국가가 이 선을 넘어서, 특정 교리를 가진 집단을 ‘위험한 이단’으로 낙인찍고 해산·등록 취소·예배 금지 등을 결정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형식만 현대적일 뿐 본질적으로 중세 카톨릭의 종교 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가 된다. 정교분리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 오늘은 그 칼이 통일교와 신천지를 겨냥하더라도, 내일은 복음적 개신교와 침례교, 그다음에는 또 다른 소수 신앙이 국가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 위협을 일찍이 인식하고 실천적 체계로 확립한 것이 미국 침례교 전통이다. 이들은 장로교처럼 상설 ‘이단 규정 위원회’를 두고 타 교파를 공식적으로

정죄하는 구조를 갖추지 않았다. 목사는 성경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집단에 대해서 분명히 이단·사이비로 경고하지만,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인지 중앙 교단이 일괄 선언하기보다는, 개교회와 각 성도의 양심이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도록 맡기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영혼의 자유(Soul Liberty)와 개교회 자치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원리가 종종 거꾸로 작동한다. 국가가 아니라 교단의 중앙 기구가 다수라는 힘과 제도적 권위를 바탕으로 소수를 쉽게 이단으로 낙인찍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지 않거나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서도 ‘종교 자율’과 ‘정교분리’라는 말 뒤에 숨는 일이 벌어진다.

더욱이 이러한 절차적 남용이 반복되는 데도, 정교분리 원칙이 오히려 “종교와 관련된 일에는 사법부가 일절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왜곡되어 사법적 구제마저 가로막히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형 교단들이 이단 지정으로 수많은 개인과 소수 교회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사례들이 적지 않다. 교단 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소명 기회도 충분히 주지 않고, 정족수와 의결 요건을 무시한 회의에서 어떤 모임을 이단으로 규정해 버리고, 그 결과로 해당 인물들이 목회 현장에서 배제되고, 교회가 분열되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낙인과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교회 건물 매각이나 교단 법 개정 과정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난다. 정관과 규칙이 요구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재산을 처분하고 구조를 바꾸어 놓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에게는 ‘종교 자율’과 ‘정교분리’를 내세워 사법적 판단 자체를 막으려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사안의 쟁점은 교리의 옳고 그름을 심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적법 절차와 기본권 침해의 문제이다. 이단 규정이든, 건물 매각이든, 교단 헌법·규칙 개정이든, 그것이 종교 단체 내부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정족수와 의결 요건을 위반한 채 처리되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그 결과로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재산권·인격권·명예가 침해되었다면, 이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는 종교 문제' 영역이 아니라 일반 사법의 심판 대상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역시 종교 단체의 징계·해임·공동의회 결의 등이 교인의 구체적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를 무효로 보아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3104 판결; 2011. 5. 25. 선고 2010다67665 판결 등).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서 사법부는 정교분리를 이유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이는 교리와 신앙의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문제가 아니라 절차 위반, 인권 침해, 명예 훼손과 같은 일반 법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교리 판단에 개입하는 일을 막는 원칙이지, 종교 단체 내부의 절차적 전횡이나 기본권 침해까지 면책해 주는 원리가 아니다.

그래야만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의 종교 개입을 차단하는 방패이면서도, 동시에 대형 교단의 전횡을 정당화하는 방패가 아니라, 소수 성도와 약한 교회의 양심과 자유를 보호하는 울타리로서 제자리를 찾게 된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국가가 종교 영역에서 정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종교 단체도 다른 모든 단체와 마찬가지로 법 아래 있으며, 국가는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폭행, 사기, 횡령, 감금, 성범죄와 같은 범죄 행위를 일반 형사법과 민사법에 따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종교 지도자가 신도를 폭행하면 폭행죄로, 헌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면 횡령죄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성범죄로 형사 책임을 진다. 종교가 범죄에 대한 면책 특권이 될 수는 없다.

여기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사항이 있다. 국가는 종교 단체의 시민적 행위를 규제하는 영역과 종교적 행위를 규제하는 영역을 명확히 나누어야 한다.

시민적 행위란 건축법·소방법·안전 규정 준수, 재산권 행사, 계약 관계,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 등 종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과 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질서상의 행위를 말한다. 종교 단체 역시 이 영역에서는 예외가 아니며, 국가는 종교 단체를 특권 집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다른 단체와 동일하게 공

정한 법을 집행해야 한다. 이는 정교분리 위반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이다.

반대로 종교적 행위란 교리의 내용, 예배의 형식, 성직자의 임명과 해임, 교인의 자격, 교회의 내부 조직과 운영 방식처럼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과 직결된 부분을 가리킨다.

이 영역은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핵심에 속한다. 교회가 어떤 교리를 가르칠지, 어떤 설교를 할지, 누구를 목사와 장로로 세울지는 원칙적으로 종교 단체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 국가가 “이 교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교리 판단에 대한 직접 개입이며 정교분리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같은 맥락에서, 특정 교리를 이유로 종교 단체 자체를 해산하는 행위는 종교적 영역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형태의 국가 개입이다. 정치 개입을 명분으로 종교 단체의 법인 자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종교 단체 해산법 논의는 이 경계를 넘어서는 시도이다. 국가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 행위와 교리 판단을 구분하지 않고, 특정 종교 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이는 법치의 강화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의 침식이다.

정교분리는 종교 단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국가가 교리와 신앙의 본질 영역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적 경계선이다. 이 경계를 지킬 때, 국가는 법을 집행하면서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종교 위에 군림하는 강한 국가도, 법 위에서는 특권 집단으로서의 종교도 아니다. 지켜야 할 질서는 오직 하나, 법 아래에서 보장되는 자유이다.

국가는 교리와 신앙의 영역에 개입하지 않되, 모든 개인과 단체를 동일한 법의 기준 아래 두어야 한다. 종교 단체는 자율성을 누리되, 법적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에만 정교분리는 교회를 침묵시키는 장치도 아니고, 종교를 무제한으로 방치하는 면허증도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울타리로 작동한다.

코로나19 사태의 교훈

2020년 코로나19 사태는 한국에서 국가의 종교 개입과 종교 차별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난 계기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 집회를 강하게 제한했고, 이에 대해 일부 교회는 ‘종교의 자유 침해’, ‘교회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당시 핵심 쟁점은 종교의 자유와 공중 보건이라는 두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어떻게 충돌했는가 하는 문제였다. 감염병 상황에서 밀폐된 실내 공간의 대규모 집회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 자체는 공중 보건을 위한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그 제한이 종교 집회에만 특별히 더 엄격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이다. 위험도와 성격이 유사한 다른 집회나 시설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으면서 종교 집회만 더 강한 제약을 받았다면, 이는 종교에 대한 차별로 평가될 수 있다. 핵심 기준은 단 하나이다. 종교 집회가 유사한 세속 활동과 동등하게 취급되었는가, 아니면 더 불리하게 취급되었는가.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선명해진다. 2020년 2월 신천지 예수교를 통한 대규모 집단 감염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종교 집회 전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종교 시설 전반에 대해 집합 제한·집합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일정 시기에는 대형 마트, 영화관, 식당 등은 인원 제한과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된 반면, 교회는 대면 예배 자체가 전면 금지되거나 정규 예배 외의 모든 모임과 식사, 소모임이 일괄적으로 금지되는 조치를 받았다. 이는 방역 필요성과는 별개로 형평성 논란을 낳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다. 2020년 ‘로마 카톨릭 브루클린 교구 대 쿠오모’(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v. Cuomo)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종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이 유사한 세속 시설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된 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종교 활동이 유사한 세속 활동보다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천명했다. 이는 종교에 특혜를 주라는 요구가 아니라, 최소한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의미였다.

한국에서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종교 집회가 다른 유사 시설과 동일한 위험도와 방역 조건을 전제로 운영되었음에도 더 강한 제한을 받았다면,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차별적 제한으로 볼 여지가 있다. 동시에, 특정 종교 단체와 교회를 반복적으로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과정에서 언론과 정치권이 종교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한 측면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 경험은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위기 상황이 닥치면 종교의 자유는 언제든지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국가는 공중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조치가 종교를 특별히 불리하게 취급하지 않는지, 동일 위험에 동일 규제가 적용되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정교분리는 평상시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위기 상황일수록 더 엄격히 지켜져야 할 헌법적 경계선이다.

3. 대형 교단의 이단 정죄 - 현대판 종교 재판

이단대책위원회의 권한과 실태

한국 교회에서 정교분리와 관련해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는 대형 교단의 이단 정죄 구조이다. 한국의 주요 장로교 교단들(예장 합동, 예장 통합, 예장 합신, 예장 고신 등)과 그 밖의 일부 다른 교단들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 위원회가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이단 또는 사이비로 규정하는 안을 총회에 상정하면, 총회가 이를 결의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이처럼 교단 차원에서 상설 기구를 두고 정기적으로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이단’으로 공식 규정하는 제도는, 세계 교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일부 교단이나 신학 공동체가 특정 사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거나 경계 성명을 발표하는 경우는 있으나, 한국 교회처럼 상설 이단대책위원회를 두고 교단 총회 결의로 광범위한 이단 규정 체계를 제도화해 운영하는 사례는 해외 주요 교단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예컨대 세계교회협의회(WCC)나 미국장로교(PCUSA)와 같은 주요 해외 교단·연합 기구들은 특정 집단을 교단 차원의 공식 결의로 이단이라 낙인찍는 상설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교회의 이단 규정 시스템은 교단 정치와 밀접하게 결합된 독특한 제도적 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있다. 이단대책위원회는 대개 소수의 목회자와 신학자들로 구성되며, 이들이 조사와 평가를 진행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면, 수백 또는 수천 명의 총회 대의원(총대)들이 모인 총회에서 이를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총대들은 해당 사안을 충분히 연구할 시간도, 원 자료와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할 여건도, 복잡한 교리 논쟁을 세밀하게 판단할 전문성도 갖추기 어렵다. 그 결과 소수 위원회의 판단이 사실상 ‘교단 전체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에 더하여, 더 심각한 문제는 절차적 보장의 부재이다. 이단으로 지목된 당사자에게 충분하고 실질적인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입장을 설명할 기회 자체가 거의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주어지고,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태에서 요식 행위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단 정죄 절차를 국가의 형사 재판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교를 통해 절차적 차이를 돌아볼 수는 있다. 형사 소송에서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증거와 기록을 열람·등사할 권리, 증인을 신문할 권리, 충분한 방어 준비 기간이 보장된다. 반면 많은 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 절차에는 이러한 최소한의 절차적 권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조사하는 위원과 최종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동일한 경우도 있고, 판정에 대한 독립적인 항소·재심 구조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교단의 내부 결의는 국가의 형벌 권한과는 다르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의 모든 기준을 그대로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한 사람의 목회 사역과 평생의 명예,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면서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조차 보장하지 않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이다.

적어도 자연정의의 원칙(Principles of Natural Justice)²의 기본 원칙, 곧 “자기 사건의 판사가 될 수 없다.”라는 원칙과 “상대방의 말도 들어야 한다.”라는 원칙만큼은 이단 규정 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 번째 원칙과 관련해, 특정 교단이 교단의 세력 확장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그 결정이 사실상 최종적 효력을 갖는 구조라면,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단으로 지목된 대상이 교단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교단의 노선과 직접 충돌하는 경우라면, 그 심판 구조는 객관적 신앙 분별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개입된 자기 방어로 비칠 소지가 크다.

두 번째 원칙과 관련해, 당사자에게 충분하고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듣고, 제시된 자료를 검토하며, 반론과 설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 없이 내려진 결론은, 그 내용이 아무리 정통 교리를 수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

이 두 원칙이 무너지면, 이단 규정은 신앙적 분별이 아니라 권력 행사로 비치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교단의 권위는 외부로부터 공격받기 이전에 스스로 내부에서 약화된다.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 위에 서지 않는 권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신학적 차이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구조

이단 정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단’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있다. 성경에서 이단(heresy)은 본래 ‘선택’ 또는 ‘분파’라는 의미에서 유래했고, 교회사 속에서는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구원의 은혜와 같은

2. 영국 보통법에서 발전하여 현대 행정법의 절차적 공정성 원리로 정착한 법 원리로, “상대방의 말도 들어야 한다.”(Audi alteram partem.)와 “자기 사건의 판사가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라는 두 가지 규칙으로 요약된다. 이 원칙은 공정한 소명 기회, 심사의 중립성, 사전 고지라는 세 가지 요건을 핵심으로 하며, 재판과 행정 절차는 물론 종교·사회 단체의 징계 과정에도 적용되는 절차적 정의의 기준이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부정하는 교리적 이탈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단 정죄는 종종 이 범위를 넘어선다. 기독교의 공통된 핵심 진리를 부정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교단의 신학적 전통이나 예배 방식, 실천적 강조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단 또는 사이비로 규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용어의 역사적·신학적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예장 통합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사이비로 규정했다가 수년 뒤 이를 해제한 사건을 들 수 있다. 당시 통합 총회는 성령이 해와 치유 사역, 조상 제사 문제 등을 쟁점으로 삼았으나, 이러한 문제들은 장로교와 오순절 교파 사이의 신학적 전통과 실천 방식의 차이에 해당하는 측면이 강했다. 실제로 당시에도 조용기 목사를 사이비로 보지 않는다는 공개적 견해가 존재했고, 장로교 신학자들이 순복음교회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결국 통합 총회는 해당 결의를 공식적으로 해제했다. 이는 교단 차원의 판단이 절대적·불변의 교리 기준이라기보다 특정 시기의 교단 분위기와 신학적 긴장 속에서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다락방’(류광수) 관련 논쟁을 들 수 있다. 여러 교단이 초기에는 강한 표현으로 이단 또는 이단성 규정을 내렸으나, 이후 일부 교단에서는 재검토를 거쳐 표현을 완화하거나 입장을 조정했다. 같은 집단을 두고 교단마다 판정이 엇갈리거나, 시간이 지나 입장이 반복되는 양상은 이단 규정이 절대적·불변의 교리 기준이라기보다 교단 구조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작동함을 보여 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 교회의 이단 정죄가 언제나 순수한 신학적 판단의 결과라기보다 교단 정치와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공식적으로 합의된 보편적 신학 기준보다 특정 시기의 교단 내부 분위기와 권력 구조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 결과 ‘정통’과 ‘이단’의 구분이 교리의 본질적 내용보다는 교단의 경계선에 따라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누가 이단인가”라는 질문은 종종 “누가 우리 교단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으로 대체된다. 이는 복음의 포용성과 보편성을 교단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는 행위이며, 신학적 논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조직적 결의로 단죄하려는 교권주의의 산물이다. 신학적 토론과 교리적 검증은 말씀과 학문적 논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지, 조직적 결의와 낙인을 통해 단번에 종결될 사안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교단이 사실상 상대 교단의 신학이나 실천을 이단적 요소로 간주하면서도, 동시에 ‘한국교회 연합’을 선언하는 모순된 구조가 발생한다. 이단이라는 용어가 교회의 본질적 신앙을 지키는 엄중한 개념이 아니라 교권 구조 속의 경계 설정 도구로 사용될 때, 그 권위와 설득력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

만일 이단이라는 용어가 교회의 본질적 신앙을 수호하는 엄중한 신학적 개념이라면, 그 판단은 더욱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 위에서 신중하게 내려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이단 규정은 신앙의 경계를 세우는 작업이라기보다 교단의 경계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오해받게 되고, 교회의 공적 신뢰 또한 함께 손상된다.

교단이 다르면 서로 이단 - 이단 정죄는 같은 교단 안에서만 유효하다

이단 정죄의 구조적 모순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실은, 교단이 서로 다르면 서로를 이단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단은 상대적 개념이다. 절대적인 이단이 존재하려면 먼저 모두가 인정하는 절대적 정통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교단이 절대적 정통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기독교 안의 모든 교단이 합의한 답은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카톨릭은 종교 개혁 이후 개신교 전체를 이단으로 규정해 왔다. 개신교 역시 카톨릭의 여러 교리와 제도를 성경에 어긋난다고 보며, 카톨릭을 사실상 이단적이라고 비판해 왔다. 또 장로교와 침례교, 감리교와 성결교, 루터교와 개혁교회는 각각 교리와 예배 전통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진다. 만일 “자기 교단의 교리와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이단이라 부를 수 있다면, 모든 교단이 서로를 이단이라고 지목할 수 있게 된다. 장로교는

침례교를, 침례교는 장로교를, 감리교는 성결교를, 성결교는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이단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이단 정죄는 원칙적으로 같은 교단 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로교 교단이 “이 사람의 교리는 우리 장로교 교단의 신앙 고백에 위배된다.”라고 판단해, 그 교단 소속 목사의 자격을 문제 삼는 일은 최소한 교단 내부 규율로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장로교 교단이 다른 교단에 속한 목사나 교회를 공식적으로 이단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그 목사나 교회는 애초에 장로교 소속이 아니므로, 장로교 신앙 고백에 구속받지 않는다. 장로교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 자체가 그 사람의 종교의 자유 영역이지, 이단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이 원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임에도, 한국 교회 현실에서는 자주 무시된다. 대형 장로교 교단이 다른 교단이나 독립 교회의 목사와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 결의가 마치 ‘한국 기독교 전체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통용되는 양상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정 교단의 내부 결의를 교단 밖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기준인 것처럼 내세우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 논리를 극단까지 밀어붙이면 그 귀결은 더욱 분명해진다. 만약 대형 장로교 교단이 “우리 교단의 교리와 다른 모든 단체를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가장 먼저 이단이 되어야 할 대상은 침례교이다.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장로 정치가 아닌 회중 정치를 채택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같은 장로교 신앙 고백을 따르지 않는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오순절 교회도 이단이 된다. 방언, 신유, 예언 등 은사적 행위를 중시하는 오순절 신학은 대부분의 장로교 교단이 전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신학이기 때문이다. 감리교 역시 장로교 관점에서 보면 이단이 될 수 있다. 감리교가 강조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Arminianism)는, 장로교가 전통적으로 고백하는 칼빈주의(Calvinism)와 조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교단의 기준을 절대화하면, 결국 자기 교단만 정통이고 나머지 모든 교단은 이단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로마 카톨릭만 참된 교회이고,

그 밖의 모든 집단은 이단'이라는 중세 로마 카톨릭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 한국의 대형 장로교 교단들이 자각 없이 이단 정죄를 남발하는 현실은, 실제로는 중세 카톨릭의 독선적 구조를 반복하는 셈이다. 정통과 이단의 문제를 성경과 복음의 본질에서가 아니라, 자기 교단의 경계와 교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삼는 순간, 이단 정죄는 신학이 아니라 권력 행위가 되고 만다.

결국 기독교의 일치란 단일한 교권 아래 정렬되는 '구조적 통합'이 아니라, 각자의 양심과 신학적 전통을 존중하며 복음의 본질 안에서 연합하는 '자발적 일치'여야 한다.

중세 카톨릭과의 구조적 유사성 - 다수가 소수를 심판하다

한국 교회의 이단 정죄 구조는 중세 카톨릭의 종교 재판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 이 유사성을 직시하지 않으면, 교회는 중세의 오류를 반복하면서도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된다.

첫째, 다수가 소수를 심판하는 구조이다. 중세 카톨릭에서 로마 교황청과 공의회는 자기들의 교리와 질서에 동의하지 않는 소수 집단을 이단으로 정죄했다.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단 역시 자기 교단의 신학과 전통에 동의하지 않는 소수 인물과 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다수라고 해서 언제나 옳지만은 않으며, 소수라고 해서 자동으로 틀리지도 않다. 중세 카톨릭이 절대 다수였던 시절, 그들이 이단으로 몰았던 왈도파, 위클리프, 후스, 루터가 과연 잘못이었던가? 역사는 다수 편에서 있던 카톨릭 교권이 아니라, 소수였던 개혁자들의 복음 이해가 성경에 더 가까웠음을 훗날 확인해 주었다.

둘째, 정죄의 결과가 사실상 사회적 매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중세에는 이단으로 판정되면 화형, 추방, 재산 몰수 등 물리적 처벌이 뒤따랐다. 오늘날 한국에서 이단으로 정죄된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처형되지는 않지만, 그 대신 사회적·교계적 처형이 이루어진다. 이단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즉시 다른 교회와의 교류가 끊기고, 교인들이 등을 돌리며, 언론과 대중의 신뢰가 무너진다. 언론은 '이단'이라는 단어를 부정적 맥락에서 반복 사용하고, 당사자는 충분한 변론 기회도 없이 이미 낙인부터 찍힌 상태에서 방어해야 한다. 이는 형태만

다를 뿐, 현대적 방식의 사회적 사형 집행과 다를 바 없다.

셋째, 권력 구조가 정죄를 좌우하는 구조이다. 중세 종교 재판은 언제나 순수한 신학 논쟁만의 결과가 아니었다. 정치권력과 교권, 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해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이단’ 낙인이 활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오늘날 한국 교단의 이단 정죄 과정에도 이와 비슷한 교권 정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교단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인물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격한 이단 규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교단 권력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비슷한 성격의 교리 문제도 묵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이단 정죄가 더 이상 신학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정, 곧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내쫓는 도구’로 변질된다.

이단 사냥꾼들의 횡포

한국 교회에는 스스로를 ‘이단 전문가’로 내세우며 활동하는 개인들이 적지 않다. 이들 가운데에는 진지한 연구와 목회적 책임감에서 이단 문제를 다루는 이들도 있지만, 일부는 이단 규정을 사실상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른바 ‘이단 사냥꾼’으로 불릴 만한 행태를 보인다. 이들의 존재는 한국식 이단 정죄 구조를 한층 더 왜곡시키고 있다.

첫째, 개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타인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문제이다. 이들은 교단의 공식 절차나 공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 매체, 출판물, 집회, 세미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특정 목회자와 교회를 공개적으로 이단으로 낙인찍는다. 교단 차원의 연구·심의·결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적 판단임에도, 일반 성도와 대중은 이를 마치 공적 판단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한 개인이 자기 주관에 따라 특정인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름을 거론하는 일은, 사실 관계가 부정확하거나 과장·왜곡이 포함될 경우 명백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

둘째, 이들의 활동이 금전적 이익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단 관련 강의, 세미나, 집회, 책·자료 판매, 상담·자문 등이 일정한 수익 구조와 연결되면, 이단을 많이 발견할수록 경제적 이익이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단이 줄어들

들면 할 일이 없어지므로, 끊임없이 새로운 이단 후보를 찾아내어야 한다는 유인이 작동한다. 이 점에서 현대의 이단 사냥꾼은, 마녀를 많이 색출할수록 더 큰 보상을 받았던 중세의 마녀 사냥꾼과 닮아 있다. 이때 이단 규정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영적 분별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셋째, 이단 판단을 수행하는 주체의 신학적 수준과 분별력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단 여부를 엄밀하게 판단하려면 성경신학, 조직신학, 교회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원문을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학문적 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리의 미세한 차이를 식별하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며, 용어의 발전 과정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성급한 결론에 이를 위험이 크다.

그럼에도 일부 이단 감별 활동에서는 이러한 학문적 검증 과정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특정 교단의 전통과 다르다는 이유, 혹은 익숙하지 않은 신학적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단으로 규정하거나 이단성이 있다고 언급하는 태도는 신학적 분석이라기보다 교단 중심적 해석에 가깝다. 자신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개념을 곧바로 “틀렸다.”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해석의 한계를 절대화하는 위험을 내포한다.

특히 일부 비판 방식에서는 발언의 전체 맥락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특정 문구나 표현만을 발췌해 문제 삼는 이른바 ‘박제식 비판’이 나타난다.³ 설교나 저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는 정통 교리의 범주 안에 있는 표현임에도, 단어 하나만을 떼어 내어 이단적 사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균형 잡힌 신학적 비평이라기보다 부분 인용을 통한 오해의 확대에 가깝다.

일부 이단 규정 과정에서는, 보고서의 신학적 엄밀성과 학문적 검증 수준에

3. ‘박제식 비판’이란, 특정 설교나 저서의 전체 맥락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일부 문장이나 단어만을 발췌해 고정된 의미로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이단 혹은 이단성을 규정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다. ‘박제’가 생물의 형태만을 떼어내어 전시하는 행위를 뜻하듯, 이 표현은 발언의 살아 있는 문맥과 의도, 논리 전개를 제거한 채 단편적 인용만으로 판단하는 비판 태도를 가리킨다. 신학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을 ‘proof-texting’(문맥을 무시한 부분 인용 중심의 해석)과 유사한 문제로 본다.

대한 의문이 제기된 사례도 있다. 당사자의 원저작물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거나, 특정 문장을 맥락 없이 인용하거나, 역사적 정통 교리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이 뒤따른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히 결론의 옳고 그름을 넘어, 판단 과정의 전문성과 검증 절차 자체에 대한 문제를 드러낸다.

신학적 비판은 가능하고, 때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학문적 검토와 공정한 해석을 거치지 않을 때, 이단 낙인은 교리 수호가 아니라 인격과 사역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이단 규정은 무엇보다도 높은 수준의 신학적 책임성과 해석의 정직성을 요구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넷째,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의 확산이 이 문제를 폭발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이단 규정이 교단 총회라는 일정한 공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절차에 문제는 많았어도, 적어도 누가 안전을 올리고 누가 결의했는지는 기록으로 남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개인 유튜브와 SNS 계정이 ‘이단 폭로’를 콘텐츠로 삼아 조회수와 구독자를 끌어모은다. 자극적인 제목과 편집으로 특정 교회와 목사를 공격하면, 당사자에게 충분한 반론·해명 기회가 주어지기도 전에 이미 수만·수십만 명이 “저 사람은 이단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중세 종교 재판에서는 최소한 재판관이 누구인지, 어떤 절차로 판정이 내려지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익명성 뒤에 숨어 있는 온라인 채널은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교회는 이단이다.”라고 선언하고 사라져 버릴 수 있다. 책임 없는 폭로와 일방적 낙인은 중세보다 더 무책임한 구조이다.

이단 정죄의 사회적 파급 효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뿌리째 흔든다. 한 교단에서 이단으로 결정되거나, 이단 사냥꾼들의 공격이 대중적으로 퍼져 버리면, 그 목회자는 다른 교단이나 지역에서도 사실상 목회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 교계는 교단이 달라도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망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한 곳의 이단 낙인이 금세 전체 교계로 확산된다. 피해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미친다. 자녀가 학교에서 ‘이단 목사 자녀’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배우자가 교회 공동체에서 배제되거나, 오랜 인간관계가 한순

간에 끊어지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현대의 이단 낙인은 중세의 화형과 추방을 대신하는 사회적 형벌로 작동한다.

더 나아가, 이단 정죄가 각종 민·형사 소송의 근거로 사용되면서 문제는 정교분리의 영역까지 번진다. 어떤 단체가 이단으로 규정되면, 그 단체에 속했던 교인들이 “이단 교주에게 속았다.”라며 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이단으로 지목된 쪽이 명예 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이 사람이 실제로 이단이나 아니냐”, “이 교리 주장이 정통이나 아니냐”를 판단해야 하는 곤란한 위치에 놓인다. 결국 국가 법원이 종교 내부의 교리 문제와 정통·이단 여부를 사실상 심사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국가가 신앙과 교리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교분리 원칙과 충돌한다. 교회가 해야 할 분별과 책임을 교회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 빈자리를 국가 권력이 대신 채우게 되는 셈이다.

4. 정교분리 원리에서 본 이단 정죄의 문제

교단이 국가의 칼을 빌리려 할 때

정교분리 원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단 정죄의 가장 위험한 형태는 교단이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이단을 처벌하려 하는 경우이다. 교단 내부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 소속 목회자에게 “당신의 교리는 우리 교단 신앙 고백에 위배되므로 제명한다.”라고 통보하는 행위는 교단 자율의 영역에 속한다. 그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그 교단 공동체 내부의 징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교단이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에 “이 단체를 법적으로 제재해 달라”, “이 집단을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순간, 문제의 성격은 전혀 달라진다. 이는 단순한 교단 내부 규율이 아니라 종교적 판단을 국가 권력과 결합시키는 시도로서, 정교분리의 근본 원리와 충돌한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구조는 중세 서구 교회에서 반복되었다. 교회가 자체 종교 재판을 통해 이단을 선고하고, 그 판결을 세속 권력에 넘겨 형벌을 집행하

도록 한 구조는, 교회와 국가 권력이 결합할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명백히 보여 준다. 교회가 교리를 판단하고, 국가는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이 이중 구조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과 재산을 잃었다. 정교분리 원리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 위에서 형성된 원리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물리적 처형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조적 유사성에 대한 경계는 여전히 필요하다. 교단의 이단 결의가 행정 기관의 판단 자료로 활용되거나, 언론 보도의 근거로 반복 인용되고, 각종 법적 분쟁에서 사실상의 낙인으로 작용하는 순간, 종교적 판단은 사회적·법적 효과를 동반하게 된다. 종교 단체의 내부 결의가 공권력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국가의 종교 중립이라는 헌법적 원리와 긴장 관계에 놓인다.

이 긴장은 국내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의 대형 교단이 특정 종교 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 결의를 근거로 국가에 법적·행정적 조치를 요구할 때, 그 여파는 국내 교계의 문제를 넘어 국제 사회의 시선과 평가에까지 미친다. 미국 국무부는 해마다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를 통해 각 나라의 종교의 자유 상황을 평가하고,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를 ‘특별 관심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CPC)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한다. 만약 한국에서 특정 종교 단체를 국가가 법률로 해산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실제로 작동한다면, 한국의 종교의 자유 평가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국가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대형 교단이 이단 정죄를 발판 삼아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 달라고 요구할 때, 이런 국제적 파장과 장기적 결과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로저 윌리엄스가 강조했듯이, 참된 교회는 국가의 칼을 빌려 신앙을 강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박해도 감수하는 공동체이다. 교회가 국가 권력을 동원해 타 교단이나 다른 종교 집단을 억압하려 한다면, 이는 정교분리의 방과제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다. 교회의 사명은 진리를

선포하고 양심에 호소하는 데 있지, 공권력을 통해 반대자를 제거하는 데 있지 않다.

정교분리는 교회를 침묵시키기 위한 족쇄가 아니라, 교회가 정치권력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켜 주는 보호 장치이다. 교회가 국가의 칼을 요구하는 순간, 그 칼은 결국 교회를 향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적 경험에 분명히 보여 준다.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소수에게도 있다

정교분리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양심의 자유이다. 이 자유는 다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소수 개인과 소수 종파, 심지어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 앞의 권리이다. 로저 윌리엄스는 “카톨릭의 양심도, 유대인의 양심도, 투르크인(무슬림)의 양심도, 이교도의 양심도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선언했고, 매디슨도 “양심은 인류의 가장 성스러운 권리”라고 말했다. 양심의 자유란, 내가 그 내용을 전혀 옳다고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자기 양심에 따라 믿고 예배드리고 해석할 자유를 인정하는 원리이다.

이 원리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다.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교단의 교리가 정통이고, 저들의 교리는 이단이다. 그러니 이단을 막는 행위는 정당하다.” 그러나 로저 윌리엄스는 이렇게 되물었을 것이다. “당신이 정통이라고 확신하는 그 교리를, 카톨릭은 이단이라고 본다. 칼빈주의자는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이단이라고 보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는 칼빈주의를 잘못되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누가 옳은가?” 이 질문에 답을 내릴 권한은 국가에 있지 않다. 이는 오직 성경과 성령님 앞에서 각 개인과 각 교회가 자기 양심으로 씨름하며 판단할 문제이다.

이 원리의 성경적 근거를 다시 확인해 보자. 예수님께서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마 13:24-30)에서 밭에 난 알곡과 가라지가 수확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다. 종들이 “가라지를 지금 뽑아 버릴까요?”라고 묻자, 주인은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을 수 있다. 둘 다 수

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라.”라고 말한다. 이 비유의 핵심은, 진짜와 가짜, 곧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최종적으로 판별하고 심판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시는 천사들의 일이라는 점이다.

로저 윌리엄스는 바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근거로 정교분리를 주장했다. 존 코튼이 “이단은 국가가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을 때, 윌리엄스는 “가라지 비유를 다시 읽으라.”라고 반박했다. 이단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일은 수확 때 천사들이 할 일이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물론 교회는 삼위일체 부정, 그리스도의 신성 부정, 행위 구원과 같은 명백한 복음 부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학적 견해의 차이를 곧장 이단으로 규정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힘을 빌려 그런 단체를 제거하려 드는 행위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는 어리석음과 같다.

이 원리를 한국 교회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분명해진다. 대형 장로교 교단의 교리와 다른 신학적 견해를 가진 소수 교단이나 독립 교회의 양심의 자유도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대형 교단의 시각에서 볼 때 교리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그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해석하며 교회를 세울 자유는 침해받아서 안 된다. 양심의 자유는 ‘모든 교리가 다 옳다’고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대형 교단이 소수 교단의 교리에 대해 “우리는 성경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행위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학문적·신학적 비판과 공개 토론, 책과 강단을 통한 논쟁은 오히려 건강하다.

문제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학문적 판단을 넘어 “저들은 이단이다.”라고 낙인을 찍고, 그 낙인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할 때 발생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신학적 평가이지만, “이단이다.”는 사실상 사회적 처형 선고이다. 정통 교리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있다면, 국가의 칼이나 여론몰이, 행정 제재에 기대어 상대를 억누를 필요가 없다. 진리는 자유로운 토론, 성경에 기초한 논쟁, 양심 앞에서의 설득 속에서 스스로 증명된다. 매디슨이 「기념과 항의」에서 말했듯이, “진정한 종교는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초대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성장했다. 진리가 참이라면, 국가의 칼이나 교단 권력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다.

침례교의 역사는 이 원리를 실천으로 증명해 왔다. 침례교는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도 국가의 칼을 빌려 다른 종교를 탄압한 적이 없다. 침례교는 교리적으로 카톨릭과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카톨릭을 국가 권력으로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침례교는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와 복음의 기초에서 정면으로 다르지만, 이들 종교의 자유까지 함께 보호해 달라고 싸웠다. 로저 윌리엄스가 프로비던스에서 카톨릭, 유대인, 무슬림, 심지어 불신자에게까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바로 이 양심의 자유 원리를 실제 정치와 제도 속에 구현한 사례였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침례교가 복음 자체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진리가 자유로운 경쟁과 토론 속에서도 반드시 이긴다고 믿기에, 국가의 칼을 빌릴 필요가 없다. 반대로, 국가의 칼과 법적 제재에 의존하려는 태도는, 자기 복음과 자기 교리가 진리라는 확신이 실제로는 약하다는 고백이다. 한국의 대형 교단이 국가에 특정 단체에 대한 법적 제재와 해산을 요구하는 행위는, ‘우리 교리가 진리이니, 자유로운 논쟁과 설득 속에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다.

정교분리와 양심의 자유는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세속적 장치’가 아니라, 참된 복음과 교회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원리이다.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양심에 호소하는 사역이지, 국가의 칼을 빌려 다른 이의 양심을 짓밟는 행위가 아니다.

결론 - 성경적 원리로 돌아가자

이 장에서 살펴본 한국 교회의 정교분리 현실은, 성경 신자들이 수백 년간 지켜 온 원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잘 보여 준다.

첫째, 교회의 정치 개입 문제에서 성경적 원리는 분명하다. 교회는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고, 공적 이슈에 대해 양심에 따라 말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교회

가 정치권력을 추구하거나, 교회의 공식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조직적으로 지지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구체적 선택과 판단은 각 신자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

둘째, 국가의 종교 개입 문제에서도 성경적 원리는 분명하다. 국가는 교회의 교리와 내부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종교라는 명분으로 저질러진 폭행, 사기, 횡령, 성범죄 등 명백한 범죄를 수사·처벌하는 일은 국가의 정당한 책무이지만, 어떤 교리가 옳고 그른지, 어떤 설교와 신학이 정통인지 판정하는 일은 국가의 소관이 아니다.

셋째, 이단 정죄 문제에서 성경적 원리는 더욱 분명하다. 양심의 자유는 다수 교단에만 있는 권리가 아니라, 소수 교단과 독립 교회에도 똑같이 주어진다. 신학적 차이를 이유로 이단으로 낙인찍고 배척하는 구조는 본질적으로 중세 카톨릭 종교 재판과 다르지 않다. 이미 교단이 서로 다르면, 엄밀히 말해 각자의 기준에서 상대를 이단이라고 부를 수 있으므로, 이단 정죄는 그 교단 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의미가 있을 뿐이다. 교단이 국가의 칼을 빌려 이단을 법적으로 제재·해산하려 하는 일은 정교분리의 근본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로저 윌리엄스가 프로비던스에서 최초의 정교분리 실험을 시작한 것은 1636년이었다. 그로부터 거의 4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이 원리가 여전히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음이 드러난다. 윌리엄스는 “강제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악취를 내뿜는다.”라고 했다. 강제된 정통, 강제된 이단 정죄 역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아니겠는가? 한국 교회가 침례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 온 이 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살 길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외부로부터는 일부 좌파 세력의 공격이 거세다.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교회의 사회적 발언을 봉쇄하려는 시도, ‘차별 금지법’으로 성경적 교리를 사실상 범죄화하려는 시도, ‘종교 단체 해산법’을 통해 소수 종교와 불편한 교회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내부로부터는 교회 스스로의 죄와 허물이 심각하다. 이단 정죄의 남용, 일부 교회들의 정치권력과의 유착이 교회의 도덕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

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미국 침례교의 정교분리 원리 위에 단단히 서야 한다. 교회는 국가의 칼을 빌리지 않고, 국가의 칼 앞에 무릎 꿇지도 않으며,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서야 한다.

결국 우리가 이 책의 긴 여정을 통해 확인한 토마스 제퍼슨의 ‘분리의 벽’(Wall of Separation)은 결코 교회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거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기 위한 담장이 아니다. 오히려 그 벽은 세속 권력의 부패와 오염이 거룩한 신앙의 영역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세워진 견고한 ‘보호의 울타리’이다.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이 종교의 교리를 심사하고, 예배의 형식을 규제하며, 설교자의 입을 통제하려 할 때, 이 분리의 벽은 그 권력을 멈춰 세우는 가장 강력한 헌법적 방패가 된다. 정교분리는 교회를 무력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교회가 국가의 간섭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영적 독립 선언이다. 우리는 흔히 이 벽이 교회를 가두고 있다고 오해해 왔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이다. 이 벽은 국가가 스스로를 신격화하거나 종교를 통치 수단으로 삼으려는 유혹을 차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와 교회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 낸다.

준비 없이 외부로부터 이식된 자유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우리는 성경대로 실행하려 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피로 쓴 그 원리의 대가를 지불하며, 우리 손으로 이 울타리를 보수해야 한다. 한국 교회가 스스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킬 때, 교회는 국가의 종교 개입과 탄압에 대해서도 당당히 항의할 수 있다. 교회가 자발적으로 이단 정죄의 남용을 바로잡고, 절차의 공정성과 양심의 자유를 존중할 때, 교회는 국가의 종교 탄압에 대해 훨씬 설득력 있게 저항할 수 있다.

이 분리의 벽을 온전히 지켜 내는 일은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의 순결한 영적 권위를 가장 강력하게 세우는 길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자유의 길이다.



정교분리와 종교 단체 해산법

이 책이 집필되고 있는 지금, 한국 교회는 전례 없는 위기 앞에서 있다.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종교 재단에 대해 일본의 사례처럼 해산 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가 통일교에 해산 명령을 청구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법제처와 관계 부처에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어 2026년 1월에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종교 단체 해산법’ 또는 ‘통일교·신천지방지법’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 개정안은 비영리법인, 특히 종교 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 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정당·후보자와 관련된 정치 활동에 조직적·반복적으로 개입해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주무 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무 관청에 광범위한 조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교계 일각에서는 이를 ‘종교 단체 해산법’, ‘종교 법인 해산법’, 혹은 ‘종교해산

법’이라고 부르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는 단지 통일교나 신천지와 같은 특정 단체를 규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정교분리 위반이나 정치 개입을 명분으로, 종교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그 권한은 이론상 어느 교단, 어느 교회, 어느 종교를 향해서도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종교의 자유 체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이며, “국가가 종교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 질문을 제기한다.

이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보아야 한다. 종교 단체 해산법 논쟁은 단순한 법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책 앞 장들에서 다루어 온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담겨 있다. 일부 좌파 진영은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교회의 사회·정치적 발언을 약화시키려 하고, 정부는 헌법 제20조와 민법 규정의 모호성을 활용해, 정교분리 위반을 이유로 종교 단체 설립 취소와 해산을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일부 대형 교단과 종교 세력이, 자신들이 이단으로 규정해 온 단체들을 제거하는 편리한 수단으로 이러한 법안을 활용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좌파의 정교분리 개념 악용, 헌법 제20조와 관련 법제의 불완전한 보호, 대형 교단의 이단 정죄 남용이라는 세 가지 문제가, 종교 단체 해산법이라는 하나의 법안 안에서 동시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법안이 단순한 민법 개정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법안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 한국에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 실제로 어디까지 지켜질 수 있는지가 검증되는 셈이다.

1. 2025-2026 종교 단체 해산법 논란의 전말

발단 -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2025년 12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 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라며, 그러한 종교 재단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같

은 달 9일 국무회의에서는 “사단 법인이든 재단 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말하며, 종교 재단이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해산 방안을 마련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일본 정부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종교 법인 해산 명령을 청구하고, 도쿄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해 해산을 명령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발언의 일차적 대상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불법 정치 자금 제공 의혹으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던 통일교 재단으로 널리 해석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표현은 통일교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종교 재단’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은, 해석에 따라 그 범위가 사실상 모든 종교 법인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 포괄적 표현이 단순한 수사적 선택인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를 담은 것인지를 판단하려면 발언의 배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대선 과정에서 다수의 보수 기독교 단체와 교회로부터 강한 비판과 반대를 받았다. 많은 보수적 교회가 공개·비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고, 일부 목회자들은 설교와 집회에서 그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선 이후 대통령이 종교 해산 가능성을 거론하고, 이어 종교 법인 해산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자신에게 비판적이었던 종교 세력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물론 통일교의 금품 로비 의혹과 같은 구체적 범죄 혐의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교 관련 범죄 행위를 수사·기소·처벌하는 일과, 종교 단체 전체를 해산할 수 있는 일반 법률 장치를 만드는 일은 차원이 다르다. 전자는 형법과 선거법 등 기존 법률에 따라 개별 범죄 행위를 다루는 영역이지만, 후자는 국가가 특정 종교 법인 자체의 존재를 박탈하고 재산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이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근본적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통일교 문제를 명분으로 삼아 모든 종교 단체에 적용 가능한 해산법을 추진하는 행위는, 특수한 사건을 계기로

일반적 규제를 확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안 발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9일, 무소속 최혁진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거나 공직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종교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해 사실상 해산시키고, 그 잔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언론은 이 법안을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이라고 불렀으나, 법 조문상 적용 대상은 특정 종교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종교 법인 전체였다.

이 법안의 직접적인 발의 배경에는 2025년 12월 2일과 9일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에 개입한 종교 재단에 대해 일본의 통일교 해산 명령 사례를 참고해 해산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민법 개정안은 이러한 대통령의 구상을 구체적인 입법 형태로 옮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년 기자회견 - 설교까지 겨냥

2026년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다시 한번 종교의 정치 개입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개신교는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최근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설교 시간에 자신을 비난하는 교회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발언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통일교의 정치 자금 로비에서 시작된 논의가,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아 일반 개신교 교회의 설교 내용으로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종교 단체 해산 논의의 칼날이 이미 방향을 틀어, 특정 단체의 불법 정치 자금 문제를 넘어, 광범위한 개신교 설교 전체를 겨냥하는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확대 과정을 단계별로 추적해 보면 그 위험성이 더욱 분명해진다.

1단계(2025년 12월 2일): 통일교의 정치 자금 로비와 정교유착을 문제 삼는 데서 출발했다. 대부분의 국민이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출발점이었다.

2단계(2025년 12월 9일): 일본의 종교 해산 사례를 검토하라고 지시함으로써, 특정 단체의 범죄 처벌 문제에서 ‘종교 법인 해산’이라는 일반적 제도 논의로 범위를 넓혔다.

3단계(2026년 1월 9일): ‘조직적 정치 개입’이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도입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적용 범위를 사실상 모든 종교 법인으로 확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4단계(2026년 1월 21일): 대통령이 설교 내용을 직접 문제 삼으며,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설교까지 국가가 규제·수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불과 두 달 사이에, ‘특정 단체의 명백한 불법 행위 처벌’이라는 합리적 출발점에서, ‘모든 종교의 설교 내용까지 국가가 사실상 검열하고 제재하겠다’는 극단적 결론으로 빠르게 이동한 것이다. 이는 우연한 확장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종교 탄압은 비슷한 패턴을 밟아 왔다. 먼저 누구나 동의하기 쉬운 극단적 사례—부패, 폭력, 범죄—를 명분으로 삼아 시작하고, 그다음 법과 제도의 틀을 넓혀 가며, 결국에는 정권에 비판적인 설교와 양심의 표현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종교의 자유 전체를 잠식해 왔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단체 해산·정교분리 논란 역시, 바로 이 위험한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법안의 핵심 문제점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다.

첫째, ‘조직적 정치 개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법안은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경우를 해산 사유로 삼고 있으나, 무엇이 조직적 정치 개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라면 그 요건은 엄격하

고 분명해야 한다는 원칙은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이 법안은 해산이라는 가장 중대한 제재를 규정하면서도 핵심 개념을 불명확하게 남겨 두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가 특정 정책이나 사회 현안에 대해 신앙적 관점에서 입장을 밝히는 행위, 즉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의견 표명(Issue Advocacy)은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반면,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직접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Candidate Endorsement)는 선거법과 충돌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적 검토 대상이 된다. 이 두 영역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안의 문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목사가 설교에서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거나, 교회와 교단이 차별 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거나, 낙태·교육·가정과 같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성경적 관점을 선포하는 행위까지도 ‘조직적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념이 추상적일수록 해석 권한을 준 국가 기관의 재량은 확대되고, 그 결과 불편한 설교와 입장 표명이 선택적으로 제재 대상이 될 위험이 커진다. 모호한 규범은 결국 집행자의 의도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도구가 되기 쉽다.

특히 법안이 부여한 광범위한 ‘조사·감독 권한’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 국가 공무원이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명목으로 교회의 재정 장부, 내부 회의록, 의사 결정 과정, 심지어 목회자의 설교 준비 자료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감독을 넘어 종교 공동체 내부에 대한 상시적 개입 구조를 제도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종교 단체의 내부 토론과 신학적 판단 과정이 국가의 점검 대상이 되는 순간, 종교의 자율성은 형식적 선언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국가가 종교 공동체의 내적 영역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종교 단체 해산이라는 극단적 제재를 전제로 하면서도 그 요건을 모호하게 규정하는 입법은,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량을 과도하게 확장시키고 종교의 자유를 구조적으로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

할 위험이 있다.

둘째, 개인의 위법 행위를 단체 전체의 해산 사유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회법연구원 김영훈 장로의 지적대로, “정교분리와 공직 선거법 위반이 조건인데, 종교 법인이 어떻게 선거법을 위반하는가? 위반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목사 개인이나 일부 임원이 선거법을 어겼다면, 그 개인을 형사·행정적으로 처벌하면 된다. 그런데 이 법안은 개인의 위법을 이유로 그가 속한 교회나 종교 법인 전체를 해산하고, 법인격을 박탈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는 죄를 지은 개인이 아니라, 그와 함께 신앙생활해 온 모든 교인과 공동체 전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로, 사실상 현대판 연좌제에 해당하며 법적 비례성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셋째, 잔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는 단순히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수준을 넘어, 교인들의 헌금과 봉사료 세워진 교회 건물과 토지, 선교 센터, 각종 시설과 기금 등 공동체의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중세 유럽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자들의 재산을 국가와 국교가 나누어 가졌던 관행을 떠올리게 한다.

역사를 보면, 종교 재산 몰수는 항상 종교 탄압의 핵심 수단이었다. 영국에서 헨리 8세는 1536-1541년 수도원 해산(Dissolution of the Monasteries)을 통해 카톨릭 수도원을 폐쇄하고 막대한 재산을 왕실과 귀족에게 넘겼다. 프랑스 혁명 정부는 1789년 교회 재산 국유화를 통해 카톨릭교회의 토지와 자산을 몰수했다. 러시아 혁명 직후 소련 역시 교회 재산을 몰수해 교회를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 타격을 가했다. 이 모든 사례에서 재산 몰수는 종교의 힘을 꺾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다. 교회는 건물과 토지, 최소한의 재정 기반 없이는 사실상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의 종교 단체 해산 법안이 정교분리 위반이나 정치 개입을 이유로 해산된 종교 법인의 잔여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려는 시도는, 이러한 역사적 패턴과 정확히 겹친다. 교인들이 수십 년간 드린 헌금으로 세워진 예배당, 매입한 토지, 쌓아 온 기금이 한순간에 국가 소유가 된다면,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뿐 아니라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가장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조치가 된다.

넷째,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교계 안팎에서 지적되었듯이, 현 정부와 여권은 보수 개신교의 정치적 발언과 설교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과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다른 종교권의 정치적 표현과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불교계 일부 승려들은 오랫동안 정치적 시위와 발언에 참여해 왔고, 조계종 차원의 성명과 정치적 의견 표명도 반복되어 왔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역시 수십 년 동안 미사와 성명을 통해 직접적인 정치적 주장을 펼쳐 왔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해 종교 단체 해산법을 적용하겠다는 논의는 사실상 제기되지 않았다. 정교분리 원칙이 헌법적 원리라면 모든 종교에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법안이 실제로는 개신교, 특히 보수 개신교를 염두에 둔 선별적 입법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 법 앞의 평등은 개인뿐 아니라 종교와 단체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특정 종교의 정치적 발언과 설교만 문제 삼고 다른 종교의 정치적 발언은 사실상 용인한다면, 이는 정교분리가 아니라 종교 차별이다. 보수 개신교의 정치적 표현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들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종교 세력의 정치 활동은 관대하게 넘어간다면, 이는 앞 장에서 분석한 이중 기준(double standard)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교분리는 더 이상 종교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특정 종교를 억누르는 선택적 칼로 변질된다.

교계의 반응과 그 한계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한국 교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종교의 자유 침해의 신호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여러 교단과 연합기관들이 성명을 내어 종교 단체 해산 시도와 민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회법학회와 한국교회법연구소 등 법률 전문가들도 법안의 위헌성과 과도한 기본권 제한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회장은 민법 제38조의 공익 침해 요건 자체가 ‘다소 추상적’이며, 과거 신천지에 대한 법인 취소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힌 사

례를 상기시키며, 종교 법인 해산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극히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시도가 국가 권력이 종교를 통제하려 했던 일제 시대 신사 참배 강요의 논리와 닮아 있다고까지 말하며 강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반응에는 분명한 아쉬움도 있었다. 반대의 목소리는 컸지만, 왜 이 법안이 위험한지에 대해 헌법적·역사적·신학적으로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감정적·정치적 수사는 넘쳤지만, 정교분리의 원리와 종교 자유의 역사에 기초한 논증은 미흡했다. 제4장부터 제6장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 신자들이 오랜 시간 투쟁하며 세운 정교분리와 양심의 자유의 원리를 제대로 아는 이가 한국 교계에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쓰여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 교회의 대응이 빈약했던 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첫째, 한국 교회 안에 정교분리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제1장부터 제6장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교분리는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수많은 핍박과 투쟁 끝에 확립된 원리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 역사를 거의 배우지 못했다. 역사를 모르면 원리를 알 수 없고, 원리를 모르면 국가 권력의 논리에 대해 원칙 있게 반박할 수 없다.

둘째, 일부 대형 교단이 이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계산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이단으로 규정해 온 단체들을 국가의 힘을 빌려 해산시키고 재산까지 정리하게 만들 수 있다면, 겉으로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속으로는 반드시 반대해야 할 이유를 절실히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이는 18세기 버지니아에서 국교였던 성공회가 국가의 힘으로 침례교회와 감리교회를 억압하려 했던 논리와 본질적으로 같다. 정교분리는 ‘내가 싫어하는 자’의 자유까지 보호할 때 비로소 ‘나의 자유’를 지키는 방파제가 된다. 국가의 칼을 빌려 이단을 치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양심의 자유라는 보편적 원칙으로 돌아가야만 이 법안을 막아낼 수 있다.

셋째, 한국 사회 전반에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기의식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해방 이후 70년 이상, 비교적 폭넓은 종교의 자유를 누려 왔다.

박해와 차별 속에서 교회를 지켜 온 경험이 없으니, 이 자유가 언제든지 제도적으로 축소·침해될 수 있다는 감각이 희미해졌다. 자유가 너무 오래 당연하게 주어질 때, 사람들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대비를 소홀히 한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다. 역사와 원리를 다시 배우고, 정교분리와 양심의 자유라는 근본 토대 위에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종교의 자유를 새롭게 지켜 내야 한다.

2. 일본 종교법인법과의 비교

일본의 종교법인법 체계

대통령이 모델로 제시한 일본의 사례는, 미국의 존슨 수정안(Johnson Amendment)과 함께 이해하면 구조가 더 분명해진다. 두 제도 모두 ‘국가가 부여한 법인격·면세 특권’을 고리로 종교 단체의 정치 활동을 통제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일본은 1951년 종교법인법을 제정해, 국가가 인정한 종교 법인에 법인격과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 법 제81조는 종교 법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공공의 복지를 해쳤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종교 단체의 목적에서 현저히 이탈한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산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종교 법인은 법인격과 면세 특권을 잃고, 자산을 청산해야 한다. 다만 법인격이 소멸할 뿐, 신도들이 임의 단체 형태로 모여 예배드리고 종교 활동을 계속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

미국의 존슨 수정안도 논리는 비슷하다. “면세 혜택(면세(c)(3))¹을 받으려면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와 같은 선거 개입을 하지 말라.”라는 원칙이다. 종교 단체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 신앙 고백을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다면 세제 특권을 포기하라.”라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한다. 실제로는 국

1. 미국 연방 세법 501(c)(3)조는 종교·교육·자선 목적의 비영리 단체에 법인세를 면제하고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1954년 존슨 수정안(Johnson Amendment)은 이 면세 지위의 조건으로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 개입 활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세청이 면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세척이 이 조항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아 면세 혜택 박탈 사례는 극히 드물었지만, 구조 자체는 ‘면세 특권을 지렛대 삼아 정치 활동을 규제’하는 장치이다.

이렇게 보면, 일본의 해산 제도와 존슨 수정안은 모두 ‘종교를 직접 금지’하기보다는 ‘국가가 부여한 법인격과 세제 혜택을 근거로 종교 단체의 행동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같은 계열에 속한다. 다만 일본은 요건이 충족되면 해산과 자산 청산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고, 미국은 원칙적으로 세제 혜택 박탈에 초점을 두며 법인격 자체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일본의 종교 해산 사례 세 건

일본 종교법인법 제정 이후 70여 년 동안 실제로 종교 법인에 해산 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단 세 건뿐이다. 이 세 사례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일본식 해산 제도가 어떤 경우에 작동해 왔는지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 사례는 1996년 옴진리교 해산이다. 1995년 3월 20일, 옴진리교는 도쿄 지하철에서 사린 가스 테러를 일으켜 13명을 살해하고 수천 명에게 중경상을 입히는 초유의 대형 테러를 자행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도쿄도(都)는 종교법인법 제81조를 근거로 옴진리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도쿄지방법판사가 1심에서 해산을 명령한 뒤, 항소·상고를 거쳐 1996년 1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1951년 종교법인법이 제정된 이래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던 종교 법인 해산 명령 조항이 처음으로 실제 적용된 사건이었다. 옴진리교 사건 이후 일본 사회는 ‘사이비 종교가 국가와 시민에게 실질적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충격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종교법인법이 개정되어, 해산 사유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교 단체에 대해 정부가 질문을 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질문권’이 신설·강화되었다. 즉, 옴진리교는 교리적 이유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살상 테러를 자행한 범죄 조직으로서 해산 명령을 받았다.

두 번째 사례는 2002년 명각사(明覚寺) 해산이다. 명각사는 불교계에 속한

소규모 종교 법인이었지만, 그 소속 승려들과 간부들은 낙태나 유산을 경험한 여성들을 상대로 “죽은 아이의 영혼이 당신에게 붙어 있다”, “이대로 두면 가족이 큰 불행을 당한다.”라는 식의 공포를 조장하고, 이 불안을 해소하려면 값비싼 기도·의식을 드려야 한다고 강요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신도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거액의 공양금과 헌금을 받아 냈고, 결국 최고 간부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가 종교법인법이 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공공의 복지를 해쳤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이자, ‘종교 단체의 목적에서 현저히 일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 결과 명각사에 대한 해산 명령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역시 쟁점은 교리 자체가 아니라, 종교적 언어를 이용한 구조적인 사기·착취 행위였다.

세 번째 사례는 2025년 3월 25일 도쿄지방법판소가 내린 통일교 해산 명령이다. 발단은 2022년 7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전 총리의 암살 사건이었다. 범인은 수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한 탓에 가정이 파탄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통일교에 대한 강한 증오가 범행 동기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후 일본 사회에는 통일교의 고액 헌금과 이른바 ‘영감상법’(영적공포를 이용한 물품 강매)으로 인한 피해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질문권을 사상 처음으로 본격 발동해, 여러 차례에 걸쳐 통일교에 자료 제출과 보고를 요구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최소 1,500명 이상 신도가 고액 헌금·강매 등으로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이 약 204억 엔(당시 환율 기준 우리 돈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부과학성은 이를 근거로 2023년 10월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고, 2025년 3월 도쿄지방법판소 1심 재판부는 통일교가 수십년간 전국적으로 민법상 불법 행위를 반복해 ‘전례 없이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종교법인법 제81조 소정의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산을 명령했다. 통일교는 신앙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즉시 항고했고, 현재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

이 세 사례를 종합하면, 일본의 종교 법인 해산 제도는 교리적 논쟁이 아니라 종교의 외피를 쓰고 이루어진 중대한 불법 행위와 공공복리 침해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옴진리교는 살인 테러, 명각사는 조직적 사기, 통일교는 악질적 현금 강요와 영감상법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 피해가 문제였다. 그러나 법 조문 자체는 ‘법령 위반으로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라는 비교적 넓고 추상적인 문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어디까지 해산 사유로 볼 것인지는 결국 정부와 법원의 해석 및 정치적 환경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일본 사법부가 제시하는 엄격한 법리적 기준을 주목해야 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996년 옴진리교 해산 사건 확정 판결에서, 종교 단체 해산이 비록 신앙의 자유 자체를 법적으로 박탈하지 않더라도, ‘종교적 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중대한 제약’임을 분명히 인정했다. 따라서 해산 명령은 오직 ‘공공복리에 반하는 명백하고도 긴박한 위협’이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판시했다.

한국의 헌법 원리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심판(통합진보당 사건)에서 과잉 금지·비례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국가 권력이 결사체를 해산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정당조차 해산하기 위해 이토록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헌법 정신이, 왜 유독 종교 단체 앞에서는 이토록 쉽게 무력화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법리를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종교 단체 해산 법안에 대입해 보면, 해당 법안은 해산 요건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침해의 최소성’²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범죄 행위가 있다면 형법과 민법으로 엄단하면 될 일이지, 종교 단체 자체를 해산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이는 종교의 자유라는 본질적 가치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정교분리의 원칙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

2. 침해의 최소성은 과잉 금지 원칙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기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다. 헌법재판소는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으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라고 설명한 바 있다(헌재 1990. 9. 3. 89헌가95).

이 종교의 생사여탈권을 쥐려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일본 사례의 특수성과 한국의 차이

일본의 세 가지 해산 사례는 모두 극히 특수한 경우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 건 모두 해산의 근거는 교리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반복적이며 조직적인 위법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한 공공복리의 현저한 침해였다.

그러나 한국의 종교 단체 해산 법안이 겨냥하는 대상은 이 사례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일본이 실제로 해산을 명령한 사례들은 형법·민법상 중대한 범죄와 대규모 피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한국 법안의 핵심 해산 사유는 ‘조직적 정치 개입’이다. 교회가 설교에서 특정 정책을 비판하거나, 성도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투표하고 공적 의제를 분별하라고 권하는 행위 자체가 조직적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열려 있는 구조이다. 일본에서도 종교 단체의 정치 참여는 늘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정치 개입을 이유로 종교 법인 해산 명령이 내려진 적은 한 번도 없다. 공명당을 직접 창당해 일본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창가학회조차 해산 명령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 정치적 발언 자체를 공공복리 침해와 동급으로 취급해 해산 근거로 삼겠다는 발상은, 일본의 법제와 운용 기준으로는 정당화할 수 없다.

일본의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끌어와 정당화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두 나라의 법체계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 종교법인법 제81조는 종교 법인의 설립부터 해산까지를 종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로 규율하며, 해산 청구권자를 문부과학 대신 또는 관할 도도부현 지사로 한정하고, 해산 여부는 반드시 법원이 심리해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종교의 자유를 전제로 하면서도 극단적 경우에 한해 사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한 예외적 장치인 셈이다.

한국에는 이러한 종교법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 단체는 일반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민법 제38조가 유일한 설립 허가 취소(사실상 해산)의 일반 근거이다. 이 조항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주무 관

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국 대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왔다. 단순한 비판적 설교나 정치적 발언, 논쟁적인 교리만으로는 공익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실제로 설립 취소가 최종 확정된 사례는 1976년 동방교와 2003년 천종회, 두 건뿐이다. 두 단체 모두 신도들을 상대로 금전을 갈취한 사기 조직으로 판단된 경우였다. 법원은 이들을 ‘종교를 가장한 사실상의 사기 집단’으로 보았고, 민법 제38조에 따른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반면 ‘일본 군국주의를 찬양한다’는 비판을 받은 일련정종³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는 2017년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고, 2020년 코로나 19 방역 방해를 이유로 한 신천지 관련 단체의 설립 등록 취소 처분도 법원에서 상당 부분 제동이 걸렸다. 한국 사법부는 일관되게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해산 요건을 극히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의 종교 단체 해산 법안이 추구하는 방향은 미국과 일본 어느 나라보다도 종교의 자유에 더 위협한 접근이다. 미국에서는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국가의 종교 개입과 종교 단체 해산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일본에서는 별도의 종교법인법 아래, 극단적이고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입증된 경우에만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반면 한국 법안은 종교 단체를 일반 비영리 법인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하면서,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추상적 개념과 ‘조직적 정치 개입’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해산 사유에 포함시키고 그 문턱을 대폭 낮추려 한다. 세 나라 가운데 한국의 종교 단체 해산 법안이 종교 단체의 존립에 가장 넓고 불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것이 바로 이 법안이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니라 한국의 종교 자유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입법 시도로 평가되는 이유이다. 일본의 사례도, 한국 사법부가 걸어온 길도 이 법안의 방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3. 일련정종(日蓮正宗)은 13세기 일본 승려 일련(日蓮)의 가르침에 뿌리를 둔 불교 종파이다. 창가학회와 함께 일련계 불교의 양대 분파로 꼽히며, 한국에서는 일련정종 한국포교원 명칭으로 활동해 왔다.

일본 사례 자체의 문제점

일본의 통일교 해산 사례 자체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종교법인법 제81조가 규정한 해산 사유, 곧 ‘법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공공의 복지를 해쳤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법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본래 이 조항은 살상 테러나 악질적 사기처럼 누구나 명백히 범죄로 인식할 수 있는 행위를 겨냥했지만, 어디까지를 공공복리 침해로 볼 것인지는 해석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은 보완적으로 ‘종교 단체의 간부 등이 형법을 위반한 경우’를 전형적 예로 들고 있다. 그런데 통일교의 경우, 간부가 형사 범죄로 유죄 확정된 사례는 없었다. 해당 판결은 처음으로 ‘민법상 불법 행위만으로도 종교 법인 해산 요건인 법령 위반이 충족된다’고 본 것으로, 종교법인법 해석을 위협할 만큼 넓은 전례라는 점에서 많은 법학자와 인권 단체들이 우려를 표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 이후 격양된 여론 속에서 일본 정부가 통일교 해산을 매우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 가운데 하나가 ‘분노한 여론에 밀려 급격하게 법과 정책을 바꾸는 것’이다. 여론은 중요하지만, 일시적으로 폭발한 분노를 기준으로 기본권 구조를 재편하기 시작하면, 그 힘은 언제든지 다른 집단을 향해 돌려질 수 있다. 여론에 편승한 국가 권력의 행사는 결국 시민 사회 전체를 향한 규제 권한을 과도하게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여론에 의해 종교 탄압이 정당화되는 위험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다. 중세 유럽에서 마녀 사냥은 신학적 검토보다 “마녀가 우리 마을을 해치고 있다.”라는 공포와 집단 히스테리가 추동력이었다. 프랑스 혁명기의 교회 탄압 역시, ‘교회는 특권층의 하수인’이라는 격양된 혁명 여론이 그 배경에 있었다.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와 성결교 해산⁴도 전시 동원 체제에서 고양된 국수주의와

4. 일제 말기인 1943년 총독부는 신사 참배 거부와 황국신민화 정책 불협력을 이유로 조선 성결교를 강제 해산하고 교단 지도자들을 체포하며 교회 재산과 조직을 해체했으나, 성결교는 해방 이후 1945년 재건되었다.

전쟁 열기에 떠밀려 이루어졌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 주는 바는 분명하다. 종교 탄압은 언제나 국가 권력과 여론이 함께 작동할 때 가장 거세게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는 국가 권력으로부터만이 아니라, 다수 대중의 여론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정책은 여론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되는 기본권이어야 한다. 헌법은 다수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인 동시에, 다수가 소수를 짓밟지 못하도록 막는 안전장치이다. 다수의 여론이 “저 종교는 싫다, 위험하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종교를 해산할 수 있다면 종교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여론이 종교 탄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 원칙은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에서도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이 단체들을 싫어하고 불신한다는 여론을 근거로 종교 단체 해산법을 강행하는 행위는 위험하다. 다수가 싫어하는 종교를 시험대로 삼아 해산 제도를 도입하면, 그 권한은 이후 정치권력과 여론의 향방에 따라 다른 종교, 다른 교파, 나아가 권력에 불편한 모든 신앙 공동체를 향해 언제든지 행사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은,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권리를 짓밟는 일이다.

일본의 상황을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국가 권력이 종교 영역에 쉽게 개입해 온 나라이다. 일제 식민지 시절 조선에서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성결교·장로교 일부를 강제로 통폐합·해산한 주체가 바로 일본이었다. 일본에서 종교를 ‘국가가 관리·조정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관료 문화는 패전 이후 헌법이 제정된 뒤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종교 법인법을 통해 종교 법인의 설립·운영·해산을 상당 부분 행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서구 국가들이 종교 해산을 헌법적 예외 조항으로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일본의 종교 규제 체계는 국가 재량이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다.

이런 일본의 전례를 한국이 본보기로 삼겠다는 발상은, 정교분리와 종교 자유의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한국이 참고해야 할

본보기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에서는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라고 못 박고 있다. 그 결과, 국가가 특정 종교 단체를 해산하는 발상을 아예 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다. 국가가 종교 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미국 헌법 체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헌법 제20조가 말하는 정교분리는 바로 이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의 정신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일본 사례를 참조하며 “우리도 종교 해산을 검토해 보자.”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살펴보면, 한국이 가야 할 길이 더 분명해진다. 미국에도 문제적 종교 단체와 사이비 집단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 1978년 짐 존스(Jim Jones)가 이끈 인민사원(Peoples Temple)⁵은 가이아나 존스타운에서 918명이 사망한 충격적인 집단 자살·살해 사건을 일으켰다. 1993년 데이비드 코레시(David Koresh)의 브랜치 데이비디언(Branch Davidians)⁶은 텍사스 웨이코에서 FBI와의 무력 대치 끝에 화재로 76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겪었다. 사이언톨로지(Scientology)⁷는 수십 년 동안 세금 포탈, 신도에 대한 강도 높은 통제와 착취, 비판자에 대한 괴롭힘 등 각종 논란에 휘말려 왔다. 그럼에도 미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이 단체들을 ‘종교 단체 해산’이라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미국의 대응은 일관된다.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구체적 행위는 민·형사법에 따라 수사·기소·처벌한다. 짐 존스와 데이비드 코레시는 사건 과정에서 사망

-
5. 인민사원은 기독교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회주의적 평등 공동체를 이상으로 삼아 인종 차별 철폐와 공동 재산제를 강조했으며, 지도자에 대한 강한 충성을 요구하며 점차 폐쇄적 구조로 발전했다.
 6. 브랜치 데이비디언은 1930년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서 분리된 종파로, 종말론과 요한계시록 해석을 강조하며 자신들을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계시를 받은 남은 무리로 이해했다. 지도자를 통한 새로운 계시와 다윗 왕국 회복 사상을 결합한 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르쳤다.
 7. 사이언톨로지는 1950년대 L. 론 허버드(L. Ron Hubbard)가 시작한 종교 운동으로, 인간을 영적 존재(테탄)로 이해하며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정신적 흔적(엔그램)을 ‘오디팅’(auditing) 과정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영적 해방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친다.

했고, 브랜치 데이비디언 생존자들 중 범죄에 가담한 자들은 재판을 받아 형을 선고받았다.

사이언톨로지의 경우, 미국 국세청(IRS)이 오랫동안 면세 지위 인정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여러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 자체를 국가가 해산한다’는 선택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단체의 면세 혜택을 조정할 수는 있어도, 종교 단체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는 수정 조항 제1조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범죄는 범죄대로 다루되, 종교는 해산하지 않는다’는 미국식 정교분리의 실천이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원칙은, 범죄는 엄정히 처벌하되 종교 단체의 존립 여부를 국가가 결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식 정교분리의 정신이다. 국가가 종교 해산권을 가지도록 허용하는 순간, 오늘은 통일교와 신천지를 겨냥하더라도, 내일은 정권과 여론이 불편하게 여기는 다른 교회와 교단을 향해 그 칼이 돌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교분리의 진정한 정신은, 바로 그 칼을 아예 만들지 않는 데 있다.

3. 정교분리의 칼날이 교회를 향할 때

칼날은 항상 돌아온다

정교분리 원칙이 특정 종교를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때, 그 원칙은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다. 제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정교분리의 벽은 언제나 양방향이다. 국가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교회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게 막는다.

역사가 반복해서 가르치는 교훈이 하나 있다. 국가가 ‘나쁜 종교를 처리하겠다’는 명분으로 종교 규제 권한을 손에 쥐는 순간, 그 권한은 반드시 ‘좋다고 여기는 종교’에게도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통일교와 신천지 같은 극단적 사례를 겨냥한다. 그러나 일단 국가가 종교 해산과 통제의 권한을 확보하고 나면, 다음 단계에서는 정권 정책에 비판적인 보수 교회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고, 결국에는 낙태·동성애·교육·가정 문제 등에서 성경적 입장을

분명히 말하는 어떤 교회든 문제 집단으로 지목될 수 있다. 권력은 결코 한 번 얻은 도구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한국 현대사만 보아도 이 교훈은 분명하다. 이승만 정권은 반공을 명분으로 진보적·좌파적 종교 세력을 견제하고 탄압했다. 박정희 정권은 국가 안보를 내세워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목회자와 신부, 승려들의 정치적 발언을 억압하고 감시했다. 신군부 역시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이유로 종교 집회를 제한했고, 1980년 10월 27일에 벌어진 대규모 불교계 강제 단속 사건은 국가 권력이 종교 영역에 깊숙이 개입한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다.

물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전적으로 외면할 수는 없다. 냉전 체제 아래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던 안보 환경,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체제 전복을 지향하는 급진 세력의 존재, 일부 종교 인사들이 실제로 정치 운동의 전면에 나섰던 현실 등은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한 요소였다. 국가가 공공질서와 헌정 체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원칙이 더욱 중요해진다.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종교 집단 전체를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종교적 발언까지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행위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각 시대마다 내세운 명분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이다. 국가가 종교를 규제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손에 쥐게 되면, 그 권한은 공공 안전의 범위를 넘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확대 적용되기 쉽다는 사실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안보냐 자유냐’라는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위기 상황 속에서도 종교의 자유와 국가 권력의 한계를 어떻게 균형 있게 지킬 것인가에 있다. 정교분리는 평온한 시대에만 필요한 원칙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의 시대일수록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헌법적 안전장치이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사용했던 종교 규제의 논리가 오늘날에는 보다 세련된 언어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반공’과 ‘안보’가 종교 통제의 정당화 근거로 자주 동원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정교분리 위반’과 ‘공공복리’라는 표현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향이 있다. 사용되는 어휘는 달라졌지만, 구조적 위험은 동일하다. 국가가 “이 정도까지는 종교의 내

용과 활동에 개입해도 된다.”라는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순간, 그 경계는 점점 넓어지기 쉽다.

우파 정부든 좌파 정부든, 문제의 본질은 이념이 아니라 권력이다. 국가가 종교 활동을 평가하고 규제할 수 있는 재량을 광범위하게 보유하게 되면, 그 권한은 정권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필요에 따라 확대 해석될 위험을 안는다. 그래서 정교분리의 벽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 이념으로부터의 보호막이 아니라, 국가 권력 일반으로부터의 방파제이다. 사람과 정부는 바뀌지만, 권력의 유혹과 남용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반복된다.

이는 추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이미 한국 사회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다. 2026년 신년 기자 회견에서 대통령은 “설교 시간에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말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일부 개신교회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 표현은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며, 한 개인에 대한 과격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설교가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를 조직적으로 선동한 행위도 아니고, 공식 선거법이 직접 적용되는 구체적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설교 내용의 적절성’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 사례를 국가의 제재·입법 논의와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있다. 한 시민으로서 “그런 설교는 잘못이다.”라고 비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범주 안에 있지만, 국가 최고 권력이 정교분리 위반을 거론하며 수사 가능성과 제재의 필요성을 함께 언급하는 순간, 교회의 설교 내용이 국가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정교분리는 교회의 정치적 발언을 봉쇄하기 위한 구실이 아니라, 국가가 설교 강단에까지 들어와 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하지 못하게 막는 방파제이다.

그 설교는 목회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이를 빌미로 국가가 ‘이런 설교는 허용되고, 저런 설교는 수사·제재 대상’이라고 나누기 시작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통일교의 정치 자금 로비에서 출발한 논의가, 불과 두 달 만에 일반 교회의 설교 내용까지 국가 통제의 영역으로 끌려 들어오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교분리의 벽이 얼마나 빠르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된다.

칼은 언제나 돌아온다. 정교분리의 진짜 목적은, 바로 그 칼을 국가 손에 쥐어주지 않는 것이다.

‘나쁜 종교’ 규제의 딜레마: 개인의 범죄와 과잉 제재의 위험

여기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질문이 있다. 통일교나 신천지처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단체의 범죄 행위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정교분리를 이유로 “종교 문제는 손대지 말자.”라는 말인가? 전혀 아니다. 종교라는 명목으로 저지른 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와 마찬가지로 형법과 개별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면 된다.

원칙은 분명하다. 사기를 치면 사기죄로, 폭행을 하면 폭행죄로, 횡령을 하면 횡령죄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성범죄로,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주고받으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으로 다루면 된다. 가해자가 목사든, 교주든, 장로든, 교인이든 상관없다. 종교라는 이름을 내세운다고 해서 더 관대하게 다룰 이유도 없고, 더 가혹하게 다룰 이유도 없다.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그 범죄에 직접 관여한 책임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형을 선고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굳이 종교 단체 자체를 해산할 필요는 없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행위와, 그가 속한 신앙 공동체 전체의 법인격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행위는 차원이 전혀 다른 조치이다.

비유를 통해 생각해 보자. 어떤 대형 병원의 의사가 환자에게 중대한 의료 과실을 저질러 사망 사고를 냈다고 하자. 이 경우 국가와 사법부는 그 의사 개인의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병원 차원의 징계와 손해 배상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병원 전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병원 건물과 장비를 모두 국고로 몰수하며, 수많은 환자와 직원들을 한순간에 거리로 내모는 방식으로 병원을 해산하지는 않는다. 병원이 조직적으로 살인·사기 행위를 되풀이한 극단적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중대한 과실과 범죄를 병원 전체의 해산 사유로 삼는 행위는 비례성과 형평성에 명백히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 어느 기업의 임원이 뇌물을 공여했다면, 그 임원과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

면 된다. 회사 전체를 없애는 조치는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비상조치이다. 어느 정당의 당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그 당원과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과태료와 형사 처벌을 내리면 된다. 정당 자체를 해산하는 행위는 헌정 질서를 폭력적으로 파괴하려 한 경우처럼 헌법이 정한 아주 좁은 예외에만 허용된다.

그런데 유독 종교 단체에 대해서만, 일부 지도자나 신도의 범죄를 이유로 단체 전체를 해산하고, 교회·성당·사찰의 법인격을 없애고, 교인들이 수십 년 동안 헌금과 보시로 마련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 대학·기업·정당에는 적용하지 않는 극단적 조치를 종교 단체에만 적용하겠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의 지적은 핵심을 정확히 짚는다.

“단순히 고위 공직자에게 정치 자금이나 뇌물을 건넸다는 이유만으로 종교 단체 전체를 해산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 위법 행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면 될 일을, 단체 전체의 해산 사유로 삼는 것은 법적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

법치국가에서 형벌·제재는 항상 ‘위법의 정도’와 ‘제재의 무게’가 비례해야 한다. 개인의 범죄에 대해 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수단과 목적이 전혀 맞지 않는 과잉대응이다.

이것은 결코 범죄를 덮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범죄일수록 더 투명하게, 더 공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범죄는 범죄로서 단죄하되, 종교는 해산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대상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설교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종교 단체 해산법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결국 설교의 자유이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 회견에서 설교 내용을 직접 거론한 것은, 국가가

앞으로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강단 안으로 들어와 설교 내용을 검열하지 못하게 막는 방과제여야 한다.

설교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한복판에 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을 풀어 가르치고, 성경에 근거해 시대의 도덕·윤리·사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교회의 부수적 활동이 아니라 본질이다. 생명·가정·성 윤리·정직·공의 등의 주제는 성경의 주제인 동시에 공적 현안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을 정치 개입이라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종교의 자유 상당 부분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정치와 무관한 것만 말하라.”라는 요구는 사실상 설교의 폭을 크게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종교 단체 해산법이 통과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생각해 보자.

시나리오 1: 목사가 설교 중에 “동성혼은 성경이 분명히 금지하는 것이다.”라고 선포한다. 이 발언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 ‘동성혼 법제화를 막기 위한 조직적 정치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해당 교회가 차별 금지법·동성혼 입법에 반대하는 집회와 청원을 조직해 왔다는 이유로 해산 청구를 시도한다.

시나리오 2: 목사가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을 신격화하는 사상이며, 기독교인은 이에 반대해야 한다.”라고 설교한다. 이 설교가 특정 정당을 겨냥한 정치적 선전이라며, 특정 이념·정당에 대한 조직적 반대 활동으로 묶어 해산 사유로 삼으려 한다.

시나리오 3: 교회와 교단이 차별 금지법 반대 성명을 내고, 교인들에게 “양심에 따라 국회 청원에 동참하라.”라고 권면한다. 이것이 ‘정책과 입법 과정에 대한 조직적 개입’이라는 이유로 정교분리 위반, 곧 해산 사유로 해석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것이 다소 과장된 우려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법안의 핵심 개념인 ‘조직적 정치 개입’의 정의가 여전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서 언급한 시나리오들이 법 논리상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특정 단체들, 예를 들어 통일교나 신천지와 같은 집단에 한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가 이러한 법 적용에 점차 익숙해지게 되면, 그 적용 범위의 경계가 조금씩 확장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보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설교나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한 공적 발언까지도 동일한 법적 틀 속에서 해석되고 평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물론 설교의 자유가 아무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강단에서 특정인의 살해를 직접 선동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을 사실인 양 반복 유포해 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는 형법과 민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정책을 비판하고, 대통령과 정치인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특정 법안이 성경과 양심에 어긋난다고 밝히는 발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이자 종교의 자유 안에 포함된다. “이 법은 악하다”, “이 정책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는 설교까지 국가가 금지하려 한다면, 그 행위는 정교분리가 아니라 국가가 허용할 교리와 금지할 교리를 직접 선별하겠다는 월권에 해당한다.

성경은 대언자(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권력자의 죄를 꾸짖게 하셨다. 나단은 다윗 왕에게 “당신이 바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이라.”라고 말하며 죄를 정확히 지적하면서 맞섰고(사무엘기하 12장),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왕과 왕의 집”이라고 지적했다(열왕기상 18장). 이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면 입을 닫았을 것이다.

침례교 목사인 존 번연은 ‘허가받지 않은 설교’를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조차 설교와 글쓰기를 계속했다. 권력자의 죄를 책망하고 시대의 악을 지적하는 일은 성경적 대언자의 전통이자, 모든 시대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설교를 정치 개입이라 규정

하고 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범죄로 만드는데 길을 여는 셈이다.

역사는 설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국가와 교회의 갈등을 수없이 기록한다. 1612년 토마스 헬위스는 책 「불법의 신비」(*A Short Declaration of the Mystery of Iniquity*)에서 영국 왕 제임스 1세의 종교 정책과 국교 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가 런던 뉴게이트 감옥에 갇혀 옥사하였다. 18세기 버지니아에서는 침례교 목사들이 국교였던 성공회의 허가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투옥되었다. 이 시대 국가가 문제 삼았던 사안은 설교 내용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국가가 허가하지 않은 곳에서, 국가가 허락하지 않은 방식으로 설교했다”라는 점이었다. 다시 말해, 국가 허가 없는 설교 행위 자체가 범죄로 취급되었다.

오늘날 한국에서 논의되는 종교 단체 해산법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제는 설교 행위 자체가 아니라, 설교 내용 속에 담긴 성경적 비판과 교리적 선언까지 정치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문제 삼겠다는 발상이다. 헬위스와 번연의 시대에는 국왕이 설교 허가증을 쥐고 있었지만, 설교 내용 자체는 적어도 이론상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고 여겨졌다. 이제는 국가가 ‘어떤 설교는 허용, 어떤 설교는 해산 사유’라고 나누려 한다. 이는 17세기 영국이나 18세기 버지니아보다 한 단계 더 후퇴하는 처사이다.

1525년부터 266년 동안 성경 신자들이 피를 흘리며 싸워서 쟁취한 성과가 바로 이 강단의 자유, 성경을 따라 권력자와 국가 정책을 책망할 자유였다. 한국 교회가 정교분리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 설교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면, 그 오랜 투쟁과 희생은 오늘날 우리의 손에서 허무하게 단절되고 말 것이다. 설교의 자유 수호는 특정 교단의 이익이 아니라, 한국 모든 교회와 다음 세대의 신앙 양심을 지키는 일이다.

국가가 설교 강단을 향해 제약을 가하려 할 때, 교회는 역사적 선례와 헌법적 원칙에 근거하여 차분하고 분명하게 그 경계를 지켜야 한다. 참된 복음은 국가의 보호를 구걸하지 않으며, 부당한 압력 앞에서도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국가가 교회를 해산할 수는 있어도, 성도의 양심 속에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해산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는 거듭 증명해 왔다.

4. 국가가 종교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가 - 역사적 교훈

로마 제국의 박해

역사적으로 국가가 종교를 해산하거나 금지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았으며, 그 결과는 거의 예외 없이 비극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이다. 로마는 기독교를 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불법 종교(religio illicita)로 규정하고, 1세기 중반부터 4세기 초까지 약 250년 동안 간헐적·국지적·전면적 박해를 반복했다. 네로 황제 아래에서 기독교인들은 로마 대화재⁸의 책임을 뒤집어쓴 채, 산 채로 불에 타 정원의 횃불이 되었고, 맹수에게 던져지고, 잔인한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 244-312, 재위 284-305)는 303년에 연이은 칙령을 발표해 모든 교회 건물을 파괴하고, 예배 모임을 금지하며,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압수해 불태우고, 공직에 있는 기독교인을 모두 해임하고 시민권과 재산권까지 박탈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교회 조직과 재산, 법인격을 완전히 붕괴시키려 한, 역사상 가장 체계적인 종교 해산 시도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박해 속에서 더 강해지고 더 넓게 퍼졌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대박해가 시작된 지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313년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합법화하고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다. 국가가 교회 건물을 무너뜨리고 재산을 몰수할 수는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다시 모여 예배드리려는 갈망까지 지워 버릴 수는 없었다. 이것이 로마 제국 박해의 역사가 보여 주는 가장 중요

8. 64년 로마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도시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다. 이 사건은 흔히 '로마 대화재'로 불리며, 일부 고대 사료에 따르면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화재의 원인이나 네로의 직접적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이 서로 달라 역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한 진실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로마의 박해에도 늘 그럴듯한 명분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네로는 로마 대화재로 들끓는 민심을 돌리기 위해 기독교인에게 방화를 뒤집어씌웠고(공공 안전과 질서 유지), 도미티아누스와 다른 황제들은 황제 숭배 의식을 거부하는 기독교인을 ‘국가에 대한 불충’으로 몰았다(국가 충성·애국심).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가 로마의 전통 종교와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하며(사회 질서·전통 가치 수호) 대대적 탄압을 정당화했다.

오늘날 한국에서 논의되는 종교 단체 해산법의 명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정교분리 원칙 수호’, ‘조직적 정치 개입 규제’, ‘공공복리와 헌정 질서 보호’라는 말들은 누구라도 쉽게 반대하기 어려운 말들이다. 그러나 명분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결과까지 정당한 것은 아니다. 로마 황제들도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말했고, 그 결과는 수많은 순교와 신앙의 자유의 박탈이었다. 마찬가지로, ‘정교분리 수호’와 ‘공공복리 보호’라는 말이 종교 단체 해산과 설교 내용 통제의 근거로 쓰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명분은 자유를 파괴하는 칼이 될 수 있다.

국가가 종교 해산 권한을 손에 쥐면, 그 칼은 점점 더 넓게, 점점 더 일반적인 신앙과 설교를 향해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 역사적 교훈을 잊은 채 종교 단체 해산법을 논의한다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위험이 크다.

일제의 성결교 해산과 신사 참배 강요

한국인에게 가장 가까운 역사적 교훈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경험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1930년대 들어 조선의 기독교, 특히 장로교와 성결교를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해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938년에는 장로교 총회에 신사 참배 가결을 강요했고, 이를 끝까지 거부하는 목사들과 교회는 불령선인(不逞鮮人), 즉 ‘불평·불만을 품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조선인’으로 낙인찍혀 투옥과 고문을 당했다. 신사 참배 문제는 단순한 의식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교회의 예배 형태와 신앙 양심을 직접 통제한 사건이었다.

1943년에 이르러, 일제는 아예 성결교를 공식적으로 해산해 버렸다. 표면적

명분은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만이 주이시다’라는 기본 교리가 ‘천황 만세’ 이데올로기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50명 안팎의 목사와 성도가 투옥·고문을 당했고, 교회 재산은 국가와 친일 종교 세력에게 넘어갔으며, 교회당 상당수가 몰수되거나 강제 폐쇄되었다.

성결교 해산의 구체적 구조를 오늘날 논의되는 종교 단체 해산법과 나란히 놓고 보면, 놀라운 유사성이 드러난다.

첫째, 일제는 교리와 설교 내용을 문제 삼았다. “성결교의 재림 신앙과 유일신 사상이 일본 천황의 영속적 통치와 국체(國體)에 모순된다.”라는 국가 판단이 해산의 직접적 근거가 되었다. 이는 국가가 신학과 교리를 심판한 사례이다. 지금 논의되는 종교 단체 해산법 역시, ‘정교분리 위반 설교’, ‘조직적 정치 개입 설교’라는 이름으로 설교 내용 자체를 국가가 재단하려는 구조를 띤다.

둘째, 일제는 성결교 지도자 몇 명만 처벌한 것이 아니라, 교단이라는 ‘단체 전체’를 해산시켰다. 개인 범죄가 아니라 교단의 신앙과 활동 전부를 표적으로 삼았다. 오늘날 한국의 법안도 개인 위법을 이유로 단체 전체를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셋째, 일제는 해산과 함께 교회 재산을 사실상 몰수했다. 성결교 소유의 교회당과 토지, 시설이 국가와 다른 단체로 넘어갔다. 지금의 법안 역시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겠다고 하니, ‘법인 해산 + 재산 환수’라는 틀이 그대로 반복된다.

넷째, 일제는 이 모든 조치를 ‘국가 안보’, ‘황민화’, ‘공공질서와 국민 통합’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했다. 오늘날 종교 단체 해산법을 정당화하는 논리 역시 ‘정교분리 수호’, ‘헌법 질서 보호’, ‘공공복리 보장’이다. 명분만 바뀌었을 뿐, 국가가 종교의 존폐를 결정하겠다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80년이 흘렀지만, 작동 방식은 거의 그대로이다. 달라진 점은 ‘어느 나라’, ‘어떤 정권’이 행사하느냐 하는 문제뿐이다.

이 비교가 단순한 역사적 유추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시대를 몸으로 살아낸 주기철 목사의 생애가 분명히 보여 준다. 그는 다섯 차례나 체포·투옥되었고, 극심한 고문과 질병 끝에 1944년 4월 21일 평양 감옥에서 순교했다.

‘일사각오’(一死覺悟)—한 번 죽음을 각오한다—는 그의 설교 제목이자 생애의 표어였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우상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라는 그의 결단은 오늘까지 한국 교회 신앙 양심의 상징이 되고 있다. 주기철 목사 외에도 수십 명의 목사와 신자들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 옥사하거나 순교했고, 2,000명 가까운 성도가 투옥·고문을 당했다. 이 모든 고난은 ‘국가 안보’와 ‘제국에 대한 충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종교 탄압이었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종교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손에 쥐었을 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다. 당시 일본 정부도 늘 명분을 내세웠다. ‘전시 체제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 통합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국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종교를 규제하고 교단을 해산한다고 했다. 오늘날 한국 정부가 말하는 ‘정교분리 수호를 위해’, ‘헌정 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해’라는 표현과 구조가 다르지 않다. 표면적 명분과 표현은 시대와 체제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국가가 종교의 존폐와 재산을 좌지우지하는 법적 권한을 갖겠다는 본질은 같다.

일제가 성결교를 해산하고 교회 재산을 빼앗았던 사건과, 지금 논의되는 종교 단체 해산 법안이 종교 법인을 해산하고 잔여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려는 구상 사이에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물론 2026년의 대한민국을 1943년 일제 식민지와 동일선상에 놓자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법은 ‘지금 저 사람이 착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제정되지 않는다. 법은 일단 만들어지면, 그 조항을 가장 극단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의 손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 오늘의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절제하여 사용한다 해도, 내일의 대통령이 이 권한을 정치적·이념적 목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한 번 국가에 그 칼을 쥐어 주면, 역사는 그 칼이 결국 신사 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시대마다 양심을 따라 설교하는 목회자와 교회들을 향해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 주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이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역사는 증언한다. 국가가 종교를 해산하려 할 때마다 교회가 아니라 그 국가의 도덕적 정당성이 무너졌으며, 권력의 칙령이 아니라 성도들의 굽히지 않

는 양심이 살아남았다. 지금 이 법안은 우리에게 그 역사의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묻고 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일제의 칼날 앞에 섰던 선배들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정교분리라는 이름의 가짜 방패 뒤에 숨어 강단을 내줄 것인가?

공산주의 체제의 종교 탄압

국가가 종교를 해산하는 가장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실험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이루어졌다. 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이념 아래, 러시아 정교회를 비롯한 모든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했다. 혁명 직전 러시아 전역에 5만 개가 넘는 교회와 수도원이 있었지만, 1930년대 후반에는 실제로 예배가 허용된 교회가 수백 곳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수만 명의 사제·수도자·평신도 지도자들이 총살되거나 수용소로 끌려갔고, 수많은 교회 건물이 파괴되거나 무신론 박물관, 창고, 군사 시설로 전용되었다.

중국 공산당 역시 1949년 집권 이후 비슷한 길을 걸었다. 초기에 “애국적 종교만 허용한다.”라고 선전하며 종교를 국가 아래 통제하려 했고, 문화대혁명⁹ 시기에는 사실상 모든 종교 활동이 금지되었다. 교회와 사찰, 성당이 파괴되거나 폐쇄되었고, 성직자들은 농촌·공장으로 추방되거나 투옥·처형되었다.

한국인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사례는 북한이다. 해방 이전 북한 지역, 특히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교회와 신학교, 기독교 학교가 있었으며, 1945년 당시 북쪽에는 약 3,000개의 교회와 3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추산된다. 그러나 김일성 정권은 처음에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선언하며, “반동적 종교 활동만 규제하겠다.”라고 했다. 여기에서 ‘반동적’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반정부 폭력 활동 정도로

9.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에서 마오쩌둥의 주도로 진행된 정치·사회 운동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강화하고 당과 사회 내부의 ‘자본주의적 요소’와 전통 문화를 제거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 조직인 홍위병 등이 동원되어 당 간부, 지식인, 종교인 등이 대규모로 비판과 숙청의 대상이 되었으며, 중국 사회 전반에 심각한 정치적 혼란과 인적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해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반동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설교에서 공산주의와 수령을 비판하는 행위, 교회가 자치적으로 선교·교육·구제를 펼치는 활동,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까지 모두 반동적이라고 규정되었다. 먼저 교회의 사회봉사와 학교 운영이 금지되었고, 이어서 주일학교·청년 모임 등 종교 교육이 막혔다. 목사의 정치적 발언은 탄압의 직접 대상이 되었고, 6·25 전쟁과 그 이후 숙청 과정을 거치며 대부분의 교회가 파괴되거나 폐쇄되었다.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끌려갔고, 살아남은 이들은 신앙을 숨기고 지하로 숨어들었다.

오늘날 북한에는 외국인에게 보여 주기 위한 봉수·칠골·제일교회 등 선전용 예배당 몇 곳이 존재할 뿐, 실제 교회는 지하로 숨어들었다. 성경을 몰래 소지하고 읽거나, 몇 사람이 모여 기도하다 발각되면, 그 사람뿐 아니라 가족까지 연좌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공개 처형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현실이 ‘국가가 종교를 해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끝까지 밀고 나갔을 때 도달하는 최종 형태이다.

이 공산주의 체제들의 종교 탄압에서 공통점은, 처음부터 “모든 종교를 없애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출발점은 언제나 온건하고 합리적인 표현이었다. 첫 단계에서는 “반사회적·반혁명적 종교 활동을 규제하겠다.”라고 했다. 즉, 국가 전복을 선동하거나 외세의 앞잡이 역할을 한다고 규정된 종교만 문제 삼는다는 식이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국가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생산적 종교 활동을 정리하겠다.”라고 했다. 진보적·애국적 종교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소멸시키겠다는 명분이었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모든 독립적 종교를 말살하고, 오직 당과 지도자를 향한 숭배만 남겼다. 칼날은 항상 가장 미미하고 가장 악명 높은 대상에서 시작해, 점점 범위를 넓혀 가는 양상을 보였다.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는 논의를 이 역사적 전례에 비추어 보면,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처음에는 “통일교와 같은 극단적 사이비를 규제하겠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그다음에는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종교 단체를 규

제하겠다.”라고 대상을 넓힌다. 그리고 결국에는 “설교에서 정부와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특정 정책과 이념에 반대하는 교회를 규제하겠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 역사적으로 이 단계적 확장은 너무 자주 반복되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박수 치는 대상, 즉 사이비, 극단적 단체를 향하지만, 권력이 그 도구를 손에 넣고 나면, 언젠가는 자신들이 싫어하는 다른 대상에게도 같은 칼을 들이대게 마련이다.

물론 한국의 종교 단체 해산법이 북한과 같은 전면적 탄압을 지향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재 단계에서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의도’가 아니라 ‘구조’이다. 국가에 종교 단체를 해산하고 그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는, 방향성 면에서 동일한 축 위에 놓인 첫걸음이다. 첫걸음은 언제나 가장 쉽게 정당화된다. “통일교 정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여론 속에서 법이 제정되면, 그다음 적용 범위를 넓히는 일은 훨씬 수월해진다. 법과 권력은 한 번 만들어지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넓은 대상에게,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될 때 국가가 문제 삼는 대상은 단순히 목사의 입만인 아니다. 해산 권한이 제도화되는 순간, 교회가 신앙적 가치에 따라 집행하는 선교 예산과 사회 참여 비용은 언제든지 정치 자금으로 재해석될 수 있고, 성도들의 자발적 공동체 조직은 선거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될 위험에 놓인다. 쟁점은 특정 설교 문장이 아니라, 교회의 재정과 조직, 시설 전체가 국가의 감독과 허가 체계 아래 들어가게 되는 구조적 변화에 있다.

이는 정교분리의 핵심 기둥인 재정적 자립과 조직적 자율성을 근본에서 흔드는 발상이다. 교회가 현금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떤 모임을 조직할 수 있는지, 어떤 공적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지를 국가가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종교 단체는 자발적 신앙 공동체라기보다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는 준공공 기관에 가까워진다. 개인의 일탈적 발언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존립 조건을 국가의 허가 영역 안에 두겠다는 사고는, 종교를 사실상 국가 권력의 외곽 기관으로 편입시키는 발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지금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은 “통일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종교의 존폐를 결정하고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갖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이다.

동시에 한국 교회가 스스로 깊이 성찰해야 할 사안은 “통일교를 어떻게 분별하고 대처할 것인가?”가 아니라, “통일교를 명분으로 국가에 종교 해산의 칼을 쥐여 주는 데 동조할 것인가, 아니면 정교분리의 벽을 지키기 위해 그 권한 자체에 반대할 것인가?”이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특정 종교를 보호하기 위한 특권 장치도, 마음에 들지 않는 종교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도 아니다. 국가 권력이 종교 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재량적으로 좌우하지 못하도록 막는 최소한의 헌법적 경계선이다. 오늘 내가 비판하는 집단을 향해 국가의 칼을 허용한다면, 내일은 그 칼이 나를 향할 수도 있다. 원칙은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다른 이유

미국에서 종교 단체 해산법이라는 발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는, 미국 헌법 구조가 애초에 ‘국가가 종교를 만들거나 없애는 권한’ 자체를 봉쇄해 놓았기 때문이다. 수정 조항 제1조의 단 한 문장이 이 방향의 모든 입법을 막는 헌법적 방파제 역할을 한다.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그래서 종교 단체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개별 범죄 행위를 형법·민사법으로 처벌할 뿐, 종교 단체 전체를 해산하는 방식으로 다루지 않는다. 세무·행정 영역에서는 국세청(IRS)이 비영리 종교 단체의 면세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 활동 제한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면세 혜택(501(c)(3))을 박탈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나 세금 혜택 회수일 뿐, 예배와 설교, 전도와 교육 같은 종교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는 아니다. 면세 지위를 잃을 수 있어도 신앙과 예배 자체는 헌법상 국가가 금지할 수 없다.

국가는 설교뿐 아니라 교회의 재정 집행이나 조직적 활동을 공공복리 침해로 몰아세울 수 있다. 그러나 미국적 원칙에 따르면, 재정 비리는 회계 책임자의 처벌로, 조직적 위법은 해당 행위의 금지로 해결해야 한다. 신도들이 낸 헌금으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단체 자체를 없애는 행위는 개인의 책임을 집단에게 묻는 현대판 연좌제이자, ‘종교의 자율적 통치권’¹⁰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 침해이다.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이처럼 강하게 보호되도록 해 주는 세 가지 축이 있다.

첫째, 수정 조항 제1조 그 자체이다. 이 조항은 종교 단체 해산법 같은 입법 시도를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국가가 종교 단체의 설립·존속·해산에 손을 대려는 순간, 곧바로 이 조항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둘째, 1993년 제정된 종교의 자유 회복법(RFRA)은,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 할 경우 두 가지를 반드시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하나는 정부가 추구하는 ‘중대한(불가피한) 국가 이익’(compelling governmental interest)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의 침해 수단’(least restrictive means)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종교 단체를 통째로 해산하는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최소 침해 수단이 될 수 없다.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고, 필요하면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훨씬 덜 침해 수단이기 때문이다.

셋째, 연방 대법원은 수십·수백 건의 판례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의 기본권으로 다루어 왔다. 이러한 판례가 축적되

10. 미국 연방 대법원은 1872년 ‘왓슨 대 존스’(Watson v. Jones) 판결에서 교회 내부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고, 2012년 ‘호산나-타보르 대 평등고용기회위원회’(Hosanna-Tabor Evangelical Lutheran Church and School v. EEOC) 판결에서 종교 단체가 성직자 인사 문제를 국가 간섭 없이 결정할 권리를 확인했다. 유럽에서도 유럽인권협약 제9조를 근거로 종교 단체의 내부 자율성이 보호되고 있다.

면서, 행정·입법이 종교를 제한하려 할 때마다 강력한 제동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런 제도적 안전장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간결한 선언을 담고 있지만, 그 선언을 구체적인 심사 기준으로 발전시킨 종교의 자유 회복법과 같은 일반법은 없는 상태이다. 또한 대법원·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 축적도 미국에 비하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 단체 해산법이 통과될 경우, “여기까지는 안 된다.”라고 차단할 세밀한 법적 방어선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칼이 먼저 만들어지는 셈이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법이, 한국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처럼 논의되는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용납하지 않는 종교를 해산하라.”라는 명령이 아니다. 정교분리를 종교 해산의 근거로 삼는 순간, 그 정신은 완전히 전도된다. 국가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이 설교는 허용, 저 교리는 금지, 이 단체는 해산’을 결정하기 시작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정교분리의 붕괴를 뜻한다.

5. 대형 교단과 국가 권력의 결탁 - 역사에서 반복되는 유혹

위험한 침묵, 더 위험한 환영

종교 단체 해산법 논란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현상 가운데 하나는, 일부 대형 교단이 이 법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심지어 “이단 척결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유로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논리는 단순하다. “통일교와 신천지는 이단이므로, 국가가 이들을 해산해 주면 좋은 일이다. 우리는 정통 교단이니 이 칼이 우리에게까지 올 일은 없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역사를 모르는 자의 자만이며, 가장 위험한 형태의 단기적 계산이다.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콘스탄티누스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대형 교단 + 국가 권력’이 결탁해 소수 신앙을 짓밟은 패턴은 반복해서 나타났다. 4세기에

는 니케아에서 공인된 정통파가 로마 황제의 힘을 등에 업고 아리우스파를 추방하고 박해했다. 중세에는 로마 카톨릭이 제후·왕권과 손을 잡고 알도파·카타리파·위클리프파와 같은 개혁 운동을 이단으로 몰아 화형과 토지 몰수로 제거했다.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에는, 루터파와 칼빈파가 국가 교회가 되자마자, 재침례파(침례교의 신앙적 선조)를 ‘질서 교란자’로 낙인찍고 감옥과 화형대로 보냈다. 다수 교회가 “우리에게 직접 닢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소수에 대한 탄압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환영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1930년대 독일의 사례는 특히 경고의 의미가 크다. 나치가 처음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를 탄압할 때, 독일 개신교 다수파였던 독일 기독교인(Deutsche Christen)은 그 흐름에 협력했다. 그들은 유대인 탄압이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리라 생각했고, 나치와 손잡고 민족주의적 기독교를 세우면 교회의 영향력이 오히려 커지리라 착각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나치는 점차 교회 자체를 국가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만들었다. 교회의 독립성은 사라졌고, 강단에서는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설교가 요구되었다. 처음에 나치를 지지했던 마르틴 니뭄러 목사 자신도, 결국 양심에 따라 나치에 저항하다가 수용소에 갇혔다. 그가 후에 남긴 고백—“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단이 통일교·신천지 해산 문제 앞에서 침묵하거나 환영하는 태도는, 정확히 니뭄러의 첫 번째 침묵과 같다. 다음 차례가 자신이 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짚어야 한다. 국가 권력과 결탁한 교회는 결국 국가의 종이 된다. 독일에서 루터파 교회를 지지했던 제후들은, 시간이 지나자 루터파 교회를 국가 행정 조직의 일부로 편입하고, 목회자 인사·재정·교리 문제에 깊게 개입했다. 영국 국교회 역시, 국왕의 종교 정책에 따라 카톨릭을 탄압하다가도 카톨릭 왕이 즉위하면 반대로 국교회 성직자들이 탄압을 받는 상황이 되풀이되었다. 언제나 칼을 권 쪽은 국가였고, 교회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표적이 될 수 있는 하위 협력자일 뿐이었다.

지금 일부 대형 교단이 “우리는 이단이 아니니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며 종교 단체 해산법을 방관하거나 묵인한다면, 이는 자기 교단의 단기적 이해를 위해 한국 교회 전체의 장기적 자유를 담보로 내주는 행위이다. 국가가 종교 해산의 칼을 쥐도록 도와준 뒤, 훗날 정권과 이념이 바뀌었을 때 그 칼이 보수 교회, 성경적 설교, 성경적 가정·성 윤리·생명관을 향해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역사 속에서 칼날은 언제나 그렇게 돌아왔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선택은 단순히 “통일교 처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종교 전체를 겨냥한 칼을 쥐도록 도울 것인가, 아니면 정교분리의 벽을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인가”의 문제이다.

성경 신자들은 다수와 국가 교회가 국가의 칼을 빌려 자신들을 박해할 때도, 결코 국가에 종교 규제권을 요청하거나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박해하는 자의 자유’까지 보호받아야 ‘나의 자유’가 온전해진다는 정교분리의 역설을 피로 써 내려갔다. 오늘날 대형 교단들이 이 유산을 저버리고 국가의 종교 탄압에 동조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옹아맬 올가미를 엮는 셈이다.

250년 전의 교훈 – 버지니아의 성공회와 침례교

제5장에서 살펴본 미국 버지니아의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시 버지니아 식민지의 국교는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였다. 침례교인들은 단지 야외에서 설교하고,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자기 양심에 따라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벌금을 물어야 했다. 성공회는 국가 권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박해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방조했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 앞장서기도 했다.

성공회의 계산은 단순했다. “침례교는 우리와 신학이 다르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과격한 집단이다. 국가가 이들을 단속하는 일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우리는 국교이니 이런 규제의 대상이 될 리가 없다.” 오늘날 한국의 일부 대형 교단에서도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논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제임스 매디슨의 태도는 전혀 달랐다. 매디슨은 장로교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젊은 시절 버지니아에서 침례교 목회자들이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이유만으로 태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장면을 보고 깊은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침례교의 모든 교리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 예배드리고 설교할 자유만큼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확신했다. 매디슨의 위대함은, 자기 교단과 다른 소수 종파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데 있다. 그는 “우리 교단은 안전하다.”가 아니라, “어떤 교단이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위해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 1조를 설계했다.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단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매디슨의 교훈이다. 통일교의 교리에 단 한 줄도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교리를 기준으로 종교를 해산하는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지켜야 한다. 신천지를 성경적으로 분명한 이단이라고 믿더라도, 국가가 ‘옳은 교리’와 ‘나쁜 교리’를 심판해 종교 단체의 존폐를 결정하는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오늘날 국가의 칼날이 통일교를 향한다고 해서, 내일 그 칼이 “정치에 개입했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라는 이유로 자기 교단의 설교와 사역을 겨누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역사는 다른 길도 보여 준다. 매디슨이 침례교인들의 고통에 응답했을 때, 침례교인들은 그를 지지해 미국 헌법의 기초를 놓게 했다.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단이 소수 종파의 권리를 위해 원칙을 지킬 때, 비로소 한국 교회 전체의 미래를 담보할 헌법적 방파제를 함께 세울 수 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남을 내주는 행위가 아니라, 모두의 자유를 위해 국가의 칼을 거두게 하는 일, 그것이 약 250년 전 매디슨과 침례교인들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이다.

제9장의 교훈과의 연결 - 중세 구조의 부활

제9장에서 우리는 대형 교단의 이단 정죄 구조가 중세 카톨릭의 종교 재판과 구조적으로 유사함을 살펴보았다. 거기에서 우리는 교단이 국가의 칼을 빌려 이단을 처벌하려 할 때의 위험을 지적했다. 종교 단체 해산법은 바로 그 위험이 법제 속에서 구체화된 형태이다.

만일 종교 단체 해산법이 제정되면, 대형 교단은 국가의 법적 장치를 통해 자신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도구를 손에 넣게 된다. 교단이 이단 여부를 판단하고, 국가는 그 판단을 근거로 해산을 집행하는 구조이다. 이는 중세 카톨릭이 세속 권력의 칼을 빌려 이단을 처형하던 구조와 정확히 같다. 교회가 판결하고, 국가가 집행하는 중세 종교 재판의 틀이 21세기 한국에서 법률 형태로 부활하는 셈이다.

중세 종교 재판관들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명분으로 이단을 화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했듯, 오늘날의 권력은 ‘공공복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교회의 법인격을 말살하고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려 한다. 명칭은 ‘구원’에서 ‘공익’으로 바뀌었지만, 신앙의 영역을 물리적 강제로 제압하려는 그 본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종교 단체 해산법은 제9장에서 분석한 대형 교단의 이단 정죄 구조에 국가의 집행력을 더한 것으로, 중세 종교 재판의 완성판과 다를 바 없다.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가령 대형 장로교 교단이 특정 신흥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였다고 하자. 교단이 이 결의를 근거로 해당 교회가 ‘비정상적 종교 활동’과 ‘교리적 일탈’을 하고 있다고 정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정부는 종교 단체 해산법과 민법 개정 조항을 근거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교회의 설교 내용, 교인 모집 방식, 재정 운영, 시민 단체와의 연대, 정치·사회적 발언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가운데 ‘조직적 정치 개입’ 또는 ‘공공복리 저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추려 해산을 청구할 것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교회는 해산되고, 법인격은 소멸하며, 교회당과 토지, 예금 등 잔여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이 시나리오에서 국가는 사실상 대형 교단의 이단 정죄를 법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 되는 셈이다. 교회가 판단하고 국가가 집행하는 이 구조는, 중세에 카톨릭교회가 이단 여부를 판별하고 세속 권력이 화형과 재산 몰수를 집행하던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바로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대형 교단이 국가 권력과 결탁해 소

수 종교를 탄압하는 행위는, 250년 전 버지니아에서 성공회가 세속 권력을 빌려 침례교를 탄압했던 구조와 다를 바 없다. 침례교인들은 그 탄압에 맞서 오랜 세월 동안 투쟁하여 정교분리를 쟁취했다.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단이 국가 권력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그들이 피 흘려 세운 정교분리의 원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셈이다.

대형 교단 지도자들은 이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 오늘 국가가 통일교를 해산할 수 있다면, 내일 그 칼날이 자기 교단을 향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정권이 바뀌면 기준도 바뀌며, 오늘의 ‘정당한 종교’가 내일의 ‘해산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에게 종교를 해산할 권한을 넘겨주는 순간, 그 권한은 어떤 정권 아래서도 국가의 손에 영구히 남는다. 교회는 어떤 명분으로도 국가의 칼을 빌려 이단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을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6. 한국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

원칙을 세우라

한국 교회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몇 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는 일이다.

첫째, 국가는 종교 단체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거나 해산할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 아니라, 국가 권력으로부터 종교를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어떤 종교든, 그 교리가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교리가 옳고 그름을 국가가 심판하고 그 결과로 종교 단체 자체를 해산하는 행위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교리의 판단은 성경과 교회가 할 일이지, 행정부와 법원이 할 일이 아니다.

둘째, 범죄는 범죄로 처벌하되, 종교 단체는 해산하지 않는다. 종교의 이름으로 사기, 폭행, 착취, 성범죄, 불법 정치 자금 수수, 공직 선거법 위반 등을 저지른 자들은 형법과 개별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와 손해 배상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나 일부 지도자의 범죄

를 이유로 종교 단체 전체의 법인격을 박탈하고, 교회와 성당, 모스크와 사찰을 통째로 해산하는 처사는 명백한 과잉 조치다. 범죄자는 감옥에 보내되, 예배 공동체 자체를 없애는 행위는 다른 차원의 폭력이다.

셋째, 설교의 자유는 양보할 수 없다.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에 기초해 시대의 도덕적·윤리적·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평가하는 일은 핵심적인 종교 활동이다. 생명, 가정, 성 윤리, 정의, 정직, 통치자에 대한 책망은 모두 성경이 다루는 주제이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정치 개입으로 낙인찍고 제재의 근거로 삼기 시작하면, 종교의 자유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설교의 내용까지 국가가 허용·불허를 나누기 시작하는 순간, 정교분리는 사실상 붕괴한다.

넷째, 원칙은 모든 종교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통일교의 종교의 자유도, 신천지의 종교의 자유도, 보수 교회의 종교의 자유도, 진보 교회의 종교의 자유도, 불교·천주교·여타 종교의 자유도 같은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내가 동의하는 교리만 보호하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 교리는 국가가 눌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는 사라진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 주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종교 자유의 시험대이다.

이 원칙들은 국제 인권 규범과도 일치한다. 세계인권선언(UDHR) 제18조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제18조는 “누구도 자기가 선택하는 종교나 신앙을 가지는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이 자유에 대한 제한은 ‘공공의 안전, 질서, 건강,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못 박고 있다.¹¹ 유엔 인권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2호는 이 조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1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8조는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제 인권 규범의 토대를 이루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는 1966년 채택되어 1976년 발효된 조약으로 비준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극히 예외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종교나 신념을 겨냥해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에서 발의된 종교 단체 해산 관련 법안은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1990년 4월 10일 ICCPR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7월 10일부터 이 규약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규약의 정식 당사국으로서 그 규범을 준수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또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국가 기관과 법원은 기본권과 인권 문제를 판단할 때 이 규약의 내용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조직적 정치 개입’이라는 개념이다. 이 용어는 그 범위와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종교 단체 해산의 사유로 삼는 것은 제한 사유를 엄격하고 좁게 규정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 규범의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현실 정치의 환경 속에서 이러한 규정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특정 성향의 종교 집단—예를 들어 보수 개신교—에게 선택적으로 적용될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가는 종교 단체를 해산할 권한이 없고, 범죄는 범죄로 처벌하되 종교 단체는 남겨야 하며, 설교의 자유는 교리와 양심 범위 안에서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고, 이 모든 원칙은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네 가지 원칙을 굳건히 붙들 때만,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종교의 자유가 앞으로도 보전될 수 있다. 교회는 자기 안위만을 구하는 성벽이 아니라, 인류의 양심을 지키는 파수꾼이어야 한다. 오늘 통일교라는 사안 뒤에 숨겨진 국가 권력의 움직임은 외면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지킬 언어마저 잃게 될 것이다. 원칙을 세우는 일은 교회를 지키는 일인 동시에, 이 땅에 영혼의 자유를 보존하는 일이다.

목소리를 내라 - 감정이 아니라 원리로

원칙을 세웠으면, 이제 그에 기초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종교 단체 해산법을 두고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나 이해관계 호소가 아니라, 헌법적·역사적·신학적 근거에 뿌리를 둔 체계적인 반론을 제시해야 한다.

헌법적으로, 종교 단체 해산법은 헌법 제20조가 선언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할 수 있으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종교 단체를 아예 해산시켜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조치는, 종교의 자유 가운데서도 ‘종교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을 실천할 자유’라는 본질적 내용을 뿌리째 잘라 내는 조치이다. 이는 헌법이 허용하는 제한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종교를 해산하거나 금지할 권한을 쥐고 있었던 모든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는 예외 없이 심각한 위협 아래 놓여 왔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중세 카톨릭의 이단 처형, 일제 치하의 교단 해산 압력, 공산주의 체제의 교회 폐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례가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국가가 ‘이 종교는 허용, 저 종교는 해산’을 결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종교의 자유는 법 조문 속 문구로만 남게 된다.

신학적으로, 교회는 국가가 세운 기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시고 친히 세우신 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교회의 기원은 입법부나 행정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약속과 성령님의 역사에 있다. 국가가 교회를 세우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교회를 해산할 권한도 없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엡 5:23),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어느 정당이나 이념도 아니다. 국가는 범죄를 다스릴 수 있으나, 교회의 존립 자체를 좌우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국가는 종교 단체를 해산할 수 없다.”라는 헌법적 원칙, “역사는 국가의 종교 개입이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증언한다.”라는 역사적 교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는 그분이 세우신다.”라는 신학적 확신 위에서, 종교 단체 해산법에 대한 공적·지적·신학적 반론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한다. 이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한 발언이며, 자기 교단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자유, 더 나아가 다음 세대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다.

교단을 초월해 연합하라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교단을 초월해 연합해야 한다. 장로교든 침례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순복음이든, 교단의 차이를 넘어서 “국가는 종교 단체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라는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 이는 교리의 합의가 아니라 원칙의 합의이다. 교리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원칙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자기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은 물론, 이단이라 여기는 단체의 종교의 자유도 지켜야 한다. 이 일이 가장 어렵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정교분리의 본질이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교리의 자유까지도 지켜 줄 때, 비로소 나의 신앙과 교리의 자유도 안전해진다.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단을 초월한 ‘종교의 자유 연대’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등 모든 개신교 교단이 참여하고, 가능하다면 카톨릭과 불교도 함께 참여하는 연대 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모든 입법과 행정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것은 종교를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천부적 원리인 양심의 자유를 함께 지키자는 것이다.

둘째, 헌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종교 단체 해산법이 통과될 경우, 즉각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헌법학자, 변호사, 교회법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법률 팀을 미리 구성해야 한다.

셋째, 국제적 연대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유럽의 종교 자유 단체들, 세계침례교연맹 등과 긴밀히 연대해 한국의 종교의 자유 상황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국제적 압력과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넷째, 학술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정교분리의 역사와 원리, 국내외 판례와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 책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다섯째,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종교 단체 해산법이 왜 위험한지를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헌법적·역사적·신학적 논거에 기초해 일반 시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

분리의 벽을 지키라

이 책의 목적은 국가와 교회가 서로를 적으로 삼거나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영역과 권한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서로를 침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하게 공존하는 질서를 세우는 데 있다. 국가는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고, 교회는 복음과 도덕적 책임을 통해 사회를 섬길 때, 둘은 충돌이 아니라 상호 유익의 관계에 서게 된다. 정교분리의 참된 정신은 바로 이 거룩한 거리 두기를 통한 평화로운 공존에 있다.

종교 단체 해산법 논란은 한국 교회에 대한 경종이자 시험대이다. 경종인 이유는, 한국 교회가 그동안 정교분리의 원리를 충분히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험대인 이유는, 이 위기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서 종교의 자유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제퍼슨이 말한 ‘분리의 벽’은 교회를 공격하는 벽이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는 벽이다. 이 벽은 국가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리를 간섭하고 예배를 통제하고 교회의 존폐를 결정하지 못하게 막는 방파제이다. 종교 단체 해산법은 이 벽을 허물어 국가가 교회의 생사여탈권을 쥐겠다는 선언이며, 이는 정교분리의 실현이 아니라 정교분리의 파괴이다.

이제 이 땅 한국에서도 이 벽을 지켜야 할 때이다. 이 벽은 특정 교단의 벽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벽이다. 대형 교단의 벽이자 소형 교회의 벽이다. 스스로를 정통이라 부르는 교단의 벽이자, 오늘날 이단이라고 낙인찍힌 단체의 벽이다. 이 벽이 무너지면 모든 교회가 위협해진다. 이 벽이 서 있으면,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보호를 받는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1525년 취리히에서 시작되어 1791년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에 이르기까지의 266년 여정을 따라왔다. 그 긴 여정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국가는 종교를 간섭하지 말라.” 이 원리가 지금 한국에서 시험대에 놓여 있다. 종교 단체 해산법은 이 원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가가 종교 단체를 해산할 수 있다는 선언은 곧 국가가 종교를 간섭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그 피와 눈물로 세워진 원리를 뒤집는 일이다. 한국 교회가 이 시험 앞에서 그 유산 위에 굳건히 서기를 바란다.

주기철 목사는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에 맞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생명을 걸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만큼 각오가 필요한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국가는 종교 단체를 해산할 수 없다. 이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이 원칙 위에 서서, 한국 교회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분리의 벽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매우 어렵다. 이 벽을 지키는 일은 특정 교단만의 과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인의 과제이며, 종교인만의 과제를 넘어 모든 시민의 과제이기도 하다.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면,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다. 종교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기초이다. 매디슨이 종교의 자유를 ‘첫 번째 자유’(First Freedom)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종교 단체 해산법은 이 첫 번째 자유를 위협하는 입법이다. 이에 맞서는 일은 단지 교회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국가 권력도 꺾을 수 없는 ‘양심의 자유’가 깊이 뿌리내리기를 소망한다. 역사는 흐르고 정권은 바뀌어도, 진리는 결코 해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교분리는 교회를 보호하는 울타리이다

이 책은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정교분리는 교회를 보호하는 울타리인가, 아니면 교회를 제거하는 장치인가?”

이 질문은 더 이상 이론적 논쟁이 아니다. 2025년 12월 대통령이 종교 재단 해산 가능성을 언급하고, 2026년 1월 종교 단체 해산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 시점에서, 이 물음은 한국 교회가 피할 수 없는 현실적 질문이 되었다. 정교분리는 추상적 헌법 조항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강단과 예배당, 신앙 공동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긴 여정을 걸어왔다. 성경의 원리에서 출발해, 초대 교회의 순수한 정교분리의 정신을 살피고, 콘스탄티누스 이후 교회와 국가가 결합하면서 어떤 변질이 일어났는지를 돌아보았다. 이어 중세의 교권 체제를 거쳐, 1525년부터 성경 신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양심의 자유를 위해 흘린 피와 눈물을 따라갔다. 그 투쟁의 결실이 1791년에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

1조로 제도화되었고, 그 정신이 한국 헌법 제20조에도 반영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적 유산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시험대에 놓여 있는지까지 살펴보았다.

이제 이 여정을 정리하고, 한국 교회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제시할 때이다. 정교분리는 교회를 침묵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손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이다. 이는 교회를 특권 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장벽이 아니라, 국가가 신앙의 내용을 재단하지 못하도록 세워진 경계선이다. 이 울타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디까지 지켜 내느냐가, 앞으로 한국에서 복음과 교회,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설 자리의 넓이와 깊이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1. 우리가 걸어온 길 - 열 개의 장이 말하는 것

이제 이 책의 여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 우리는 정교분리의 성경적 원리를 살펴보았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한 세금 납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교회가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한다는 근본 원리의 선언이었다. 동전에 새겨진 형상은 카이사르의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다. 교회는 세상 권력을 장악하라고 부름받은 공동체가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언하라고 부름받은 공동체이다. 이 점이 정교분리의 신학적 출발점이다.

제2장에서 우리는 초대 교회의 정교분리를 살펴보았다. 초대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국가 권력에 기대지 않았고, 어떤 정치적 특권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확장되었다.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정교분리였다. 교회는 국가의 승인이나 보호 없이 존재했고, 국가의 칼에 의존하지 않고도 번성했다. 바로 그 자발성과 독립성이 초대 교회의 힘이었다.

제3장에서 우리는 콘스탄티누스의 타협과 그 역사적 결과를 살펴보았다.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교회와 국가가 결합하면서, 교회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본래의 순수성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 380년 테오도시우스의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유일한 합법 종교가 되면서, 교회는 더 이상 박해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때로는 박해를 가하는 위치로 이동했다. 이러한 전환은 이후 중세 천 년 동안 카톨릭교회와 국가가 긴밀히 엮힌 구조를 낳았다. 루터와 칼빈 등 종교 개혁자들은 교리 개혁과 교회 개혁에는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나,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를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했다. 그들의 개혁은 대체로 국교 체제를 유지한 채 교리와 예배를 정화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그 결과 정교분리의 원리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제4장에서 우리는 침례교인들의 정교분리 투쟁의 출발을 살펴보았다. 1525년 스위스 재침례파의 등장으로부터 1612년 영국의 토마스 헬위스가 선포한 신앙 자유 선언, 그리고 1689년 관용법에 이르기까지, 침례교인들은 국가의 종교 강제에 맞서 양심의 자유를 외치며 끊임없이 저항했다. 그들은 이 원리를 지키기 위해 투옥과 추방, 재산 몰수와 채찍질 등 온갖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왕은 몸만 다스릴 뿐,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확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러한 피와 눈물의 역사 속에서 정교분리는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감옥과 법정, 화형장과 추방지에서 지켜 낸 살아 있는 신앙 고백이 되었고, 훗날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로 열매 맺을 종교의 자유 전통의 토대가 되었다.

제5장에서 우리는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의 아이러니를 보았다. 그들은 영국에서 국교회의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이었음에도, 새 땅에서 다시 국가 교회를 세우고 다른 종교인들을 배제하는 선택을 했다. 이어 1636년 로저 윌리엄스가 프로비던스를 세우고, 1638년 미국 최초의 침례교회를 설립한 사건을 살펴보았으며, 17세기 내내 성공회가 국교로 자리 잡고 있던 버지니아에서 침례교인들이 벌인 자유 투쟁을 조명했다. 존 릴랜드와 아이작 백커스 등 침례교 지도자들은 매디슨과 제퍼슨과 연대해 1786년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을 이끌어 냈고, 매디슨의 「기념과 항의」는 종교의 자유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임을 분명히 선언했다.

제6장에서 우리는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의 탄생을 살펴보았다. 침례교

인들의 266년에 걸친 고난과 투쟁은 1791년 수정 조항 제1조로 결실을 맺었다. “[연방] 의회는 종교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다.”라는 이 선언은, 국가는 특정 종교에 특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동시에 어떠한 종교의 신앙과 예배도 억압할 수 없다는 이중의 울타리를 세운 사건이었다. 45개 단어에 불과한 이 조항은 교회를 국가의 손에서 분리해 하나님께 돌려드린 역사적 선언이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종교 자유 보장의 문장으로 자리 잡았다.

제7장에서 우리는 수정 조항 제1조의 230년간의 적용 역사를 추적했다. 1947년 ‘에버슨 대 교육위원회’ 판결에서 2022년 ‘케네디 대 브레머턴 교육구’ 판결에 이르기까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해 왔는지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았다. 설립 조항과 종교의 자유 실행 조항 사이의 긴장, 이를 조정하기 위해 등장했던 레몬 테스트와 그 폐기 과정,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공적 영역에 참여할 때 쟁점 옹호와 특정 후보자 지지 사이를 어떻게 구분해 왔는지 등을 판례를 통해 확인했다.

제8장에서 우리는 한국 헌법 제20조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했다. 조선 왕조의 유교 국교 체제와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를 거쳐, 1948년 헌법 제12조의 탄생과 1962년 제20조로의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정교분리는 미국처럼 오랜 세월을 걸친 논쟁과 판례, 피의 대가 속에서 형성된 토착 원리가 아니라, 해방 이후 서구 헌법 모델을 따라 비교적 짧은 기간에 도입된 원칙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 결과, 한국 교회와 사회가 이 원리를 역사적 경험 속에서 충분히 체화하기보다 조문 중심으로 이해해 온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제9장에서 우리는 한국 교회의 현재 정교분리 현실을 직시했다. 교회의 정치 개입과 국가의 종교 개입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자주 흐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경계가 무너지л 때 어떤 왜곡과 갈등이 발생하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대형 교단의 이단 정죄 구조가 중세 종교 재판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면을 보인다는 점, 소위 이단 감별 활동이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정교분리 원리가 교회 안팎에서 어떻게 왜곡되거나 편의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제10장에서 우리는 2025-2026년 종교 단체 해산법 논란을 분석했다. 대통령의 발언에서부터 법안 발의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정리하고, 일본 종교법 인법과의 구조적 차이와 공통점을 비교하면서, 역사적 교훈에 비추어 그 법안이 지닌 법적·신학적 위험을 점검했다. 국가는 특정 종교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순간, 그 권한은 처음에는 문제 집단을 겨냥하는 듯 보일지라도, 정권과 이념,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종교와 다른 교단, 심지어 오늘의 '정통 교회'를 향해 확장될 수 있다. 역사는 이러한 확장의 가능성을 반복해서 보여 주었다.

2. 질문에 대한 답 - 보호 울타리인가, 제거 장치인가

정교분리의 본래 의미 - 교회를 보호하는 울타리

열 개의 장을 지나온 지금, 우리는 비로소 처음의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정교분리는 본래 교회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이다. 이것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결론이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로저 윌리엄스가 '분리의 벽'을 말했다 때, 그것은 교회를 고립시키기 위한 벽이 아니었다. 그의 비유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정원'이었고, 세상은 아직 복음으로 경작되지 않은 '황무지'였다. 벽은 정원을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이 본래의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지키기 위한 보호막이었다. 이 벽이 허물어지면, 황무지가 정원 안으로 밀려 들어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결국 정원의 정체성을 약화시킨다. 윌리엄스의 통찰은 분명했다. 국가 권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점차 세속화되고 본래의 사명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제임스 매디슨이 「기념과 항의」에서 “진정한 종교는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교분리는 종교를 약화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를 순수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장치이다. 국가

의 보호와 특권을 받는 교회는 겉으로는 안정되고 강해 보일지 모르나, 권력에 의존하는 순간부터 내면의 자생력을 잃기 시작한다. 반대로 외적 특권 없이도 복음의 능력과 양심의 자유 위에서는 교회만이 진정으로 강한 교회이다.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역사와 그로부터 비롯된 수많은 왜곡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 준다.

침례교인들이 수 세기 동안 투옥과 추방, 채찍질과 재산 몰수까지 감수하며 지키려 했던 것도 바로 이 울타리였다. 그들은 국가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리를 규정하고, 성직자를 임명하며, 예배 방식을 통제하고, 심지어 교회의 존폐를 결정하는 구조를 단호히 거부했다. 이 거부와 저항은 단순한 정치적 반항이 아니라,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신앙 고백의 실천이었다. 그리고 그 고백은 1791년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로 법제화되었다. 이후 2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조항은 미국 교회를 외부 권력으로부터 지켜 주는 든든한 울타리로 자리해 왔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이다. 1525년부터 1791년까지 성경 신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피를 흘려 세운 이 벽을, 이제 이 땅 한국에서도 지켜야 한다. 이 벽은 특정 교단만의 벽이 아니다. 모든 교회의 벽이다. 대형 교단의 벽이자 소형 교회의 벽이다. 스스로를 정통이라 부르는 교단의 벽이자, 오늘날 세속 권력이나 다수 여론에 의해 이단 혹은 문제 집단으로 낙인찍힌 소외된 단체의 벽이기도 하다. 국가가 특정 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해산할 권한을 갖는 순간, 그 칼날은 언제든 정통이라 자부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 벽이 무너지면 모든 교회가 위협해지지만, 이 벽이 서 있으면 비록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단체일지라도 그들의 양심과 함께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게 보호된다. 이 벽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교리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신앙의 영역을 재단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함이다. 자유는 모두에게 허용되거나, 아니면 아무에게도 허용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 신자들이 감옥과 화형대 위에서 우리에게 물려준 정교분리의 참된 유산이다.

정교분리는 교회를 침묵시키는 족쇄가 아니라, 교회를 세속 권력의 손아귀

에서 풀어 주는 방과제이다. 그 본래의 의미를 회복할 때에만, 교회는 권력의 유혹과 보호라는 이름의 통제 모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왜곡된 의미 - 교회를 제거하는 장치로의 변질

이 울타리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정교분리가 교회를 보호하는 경계선이 아니라, 교회를 공적 영역에서 밀어내는 도구로 전용되는 경우이다. 본래 국가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세워진 원리가, 오히려 교회를 제한하는 근거로 변질되는 순간, 정교분리는 그 정반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 왜곡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교회의 입을 막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정교분리니까 교회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침묵하라”, “정교분리니까 목사는 정치적 문제를 설교하지 말라”, “정교분리니까 교회는 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말라.” 등의 주장은 정교분리 개념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결과이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는 원칙이지, 교회가 사회와 역사, 국가의 도덕적 문제에 대해 침묵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교회가 성경에 기초해 시대의 윤리와 정의, 생명과 가정의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일은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행위가 아니라, 신앙에 따른 양심의 표현이다. 이는 정교분리 위반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하는 핵심 영역에 속한다.

둘째, 교회를 해산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2025-2026년 종교 단체 해산법 논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정교분리의 개념이 어떻게 뒤틀릴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정교분리니까 정치에 개입하는 교회는 해산한다.”라는 식의 논리는, 국가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칙을 거꾸로 돌려 교회를 제거하는 명분으로 삼는 행위이다. 정교분리는 국가와 교회의 영역을 구분하라는 원칙이지, 국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종교 단체의 존립을 판단하고 제거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국가와 교회가 서로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경계선을, 국가가 교회의 존재 자체를 심판하는 칼로 바꾸는 행위는 정교분리의 가장 극단적인 왜곡이다.

이 두 가지 왜곡의 공통점은, 정교분리를 국가의 무기로 전환시키는 데 있다. 본래 정교분리는 국가 권력의 간섭과 탄압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방패였다. 그러나 그 의미가 뒤집히는 순간, 그 방패는 교회를 압박하는 도구로 변질된다. 이는 성경 신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투옥과 추방, 채찍질과 재산 몰수까지 감수하며 세워 놓은 원리에 대한 근본적 배반이다. 더 나아가, 정교분리의 성경적·역사적 의도 자체를 정반대로 뒤집는 위험한 왜곡이기도 하다.

핵심 - 누가 분리의 벽을 세우는가

정교분리가 교회의 울타리가 되느냐, 제거 장치가 되느냐를 가르는 결정적 질문은 이것이다. 누가 분리의 벽을 세우는가?

교회가 스스로 분리의 벽을 세우면, 그것은 울타리이다. 교회가 자발적으로 세상 권력과 거리를 두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보호와 특혜를 거부하는 것 — 이것이 초대 교회의 정교분리였고, 로저 윌리엄스가 말한 정교분리였으며, 수정 조항 제1조가 법제화한 정교분리였다. 교회의 정교분리는 세상으로부터의 오염을 막기 위한 거룩한 구별이 되어야 하며, 국가의 정교분리는 신앙을 사적 영역에 가두기 위한 정치적 격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국가의 도움 없이도 복음의 능력만으로 서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 벽은 교회를 가두는 장벽이 아니라 교회를 숨 쉬게 하는 울타리가 된다. 그것은 교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보존하는 경계선이다.

반대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분리의 벽을 세우면, 그것은 통제 장치가 된다. 국가가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의 발언을 규제하며 교회의 존폐를 판단하기 위해 정교분리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순간, 그 벽은 방향이 바뀐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탄압, 일제 강점기의 성결교 해산과 신사 참배 강요, 공산주의 체제의 조직적 종교 말살은 모두 국가가 세운 벽의 사례였다. 2025-2026년 종교 단체 해산법 논의 역시, 국가가 종교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 이때 정교분리는 더 이상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라, 교회를 옥죄는 족쇄와 감시 장치로 변한다.

한국의 현재 상황을 이 기준으로 평가하면 결론은 분명하다. 종교 단체 해

산법은 교회가 자발적으로 세우는 벽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를 향해 세우는 벽이다. 교회가 양심에 따라 스스로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 선을 넘으면 해산하겠다.”라고 경고하며 강제하는 구조이다. 이는 보호 장치가 아니라 통제 장치이다. 차별 금지법을 통해 교회의 성경적 발언을 일괄적으로 혐오 표현으로 분류하고 제재하려는 접근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회가 스스로 표현 방식을 성찰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외부에서 기준을 정해 강제하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울타리가 아니라 통제 장치이다.

반대로 교회가 스스로 특정 후보자 지지를 삼가기로 결단하는 것은 자발적 분리이다. 그것은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과 공공 신뢰를 지키기 위한 자기 절제이다. 이러한 벽은 교회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의 도덕적 권위를 지키는 울타리가 된다. 한국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국가가 강제로 세우는 벽에는 단호히 저항하되, 교회 스스로 세워야 할 거룩함과 절제의 벽은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

정교분리의 벽은 교회와 국가 사이에서 있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교회를 향해 세워진 벽이 아니라 국가를 향해 세워진 벽이다. 국가를 바라보는 그 벽의 한 면이 말한다.

“여기서 멈추어라.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너는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이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의 정신이며, 한국 헌법 제20조 역시 마찬가지 그 위에 서야 한다.

그러나 교회를 바라보는 다른 한 면도 말한다.

“너 역시 이 벽을 넘어 국가의 칼을 빌리려 하지 말라. 국가의 보호와 특혜를 구하지 말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서라.”

정교분리는 국가의 교회 지배를 막을 뿐 아니라, 교회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 반대자를 제압하려는 유혹도 동시에 차단한다. 한국 교회는 첫 번째 먼—국

가의 교회 간섭을 경계하는 면—에 대해서는 비교적 민감했다. 그러나 두 번째 면—교회가 국가 권력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찰하지 못했다. 대형 교단이 국가에 특정 종교 단체의 해산을 요청하는 행위는, 바로 이 두 번째 면을 간과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벽의 양면을 함께 인정하고 존중할 때에만, 정교분리는 비로소 성경적이고도 온전한 원리로 확립된다.

3. 한국 교회를 향한 네 가지 제언

첫째, 정교분리의 역사를 배우라

한국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정교분리의 역사를 모른다는 점이다. 이 원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무엇을 희생해 이 원리를 세웠는지, 이 원리가 왜 교회에 유익한지를 알고 있는 한국 교인이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의 한국 교인은 정교분리를 “교회와 정치는 상관없다.”라는 정도의 막연한 구호로만 이해한다. 이는 단순한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무지에 가깝다. 정교분리의 역사와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 원리가 왜곡되거나 뒤집혀 사용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없다. 국가가 정교분리라는 이름을 내세워 교회의 입을 막고 교회를 탄압할 때, 그것이 정교분리의 실현인지, 아니면 정교분리의 파괴인지조차 가려내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교분리의 역사는 한국의 신학교와 교회, 성경 공부 모임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로저 윌리엄스, 존 번연, 아이작 백커스, 존 릴랜드, 제임스 매디슨의 「기념과 항의」, 수정 조항 제1조의 탄생 과정 — 이 역사가 한국 교인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 이 책이 그러한 역사 교육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 신학교 교과 과정에 ‘정교분리의 역사와 원리’를 필수 과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 신학교에서 이 주제는 교회사의 작은 일부로 스쳐 지나가거나, 아예 다루어지지 않는다. 침례교 신학교뿐만 아니라 장

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신학교에서도 이 과목을 정식으로 가르쳐야 한다. 정교분리는 특정 교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자유와 양심을 지키는 공통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둘, 교회 차원에서 성도 교육과 성경 공부 과정에 정교분리를 포함해야 한다. 10주 또는 12주 과정의 성경 공부·교회사 공부를 개설하고, 각 장에서 다른 인물과 사건을 성경적 원리와 연결해 나가면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셋, 목사 세미나, 장로·집사 연수, 교단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정교분리를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원리를 성경·역사·헌법의 관점에서 정확히 이해할 때, 일부 좌파 진영에서 제기하는 왜곡된 정교분리 주장과 국가가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교회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논리적으로, 자신 있게 반박할 수 있다.

둘째, 양심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세우라

정교분리의 가장 깊은 뿌리는 양심의 자유이다. 제임스 매디슨이 「기념과 항의」에서 “양심의 권리는 인류의 가장 성스러운 재산”이라고 선언한 것도 바로 양심의 자유가 다른 모든 자유의 기초라는 확신에서였다. 양심이 자유롭지 않으면 어떤 자유도 안전하지 않다. 양심이 묶여 있으면 표현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심지어 예배의 자유도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

한국 교회는 양심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세워야 한다. 이는 곧 다른 사람의 양심도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상대방의 교리에 전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가 자기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유, 혹은 자기 방식대로 신을 섬기거나 믿지 않을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이는 상대방의 교리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교리의 옳고 그름은 성경과 성령님께서 판단하시는 영역이지, 교단의 권력이나 국가의 법률이 최종 심판자가 되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로저 윌리엄스는 “카톨릭의 양심도, 유대인의 양심도, 투르크인(무슬림)의 양심도, 이교도의 양심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그 시대에도 파격적이었지만,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편하고 파

격적인 고백이다. 한국 교회가 이 정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가 동의하지 않는 교리와 예배 방식의 자유까지도 지켜 주겠다는 각오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한국 교회의 성숙도를 보여 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셋째, 국가 권력에 의존하지 말라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교훈이 있다. 교회가 국가 권력에 의존하면 교회가 타락하고, 국가가 교회에 개입하면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사실이다. 역사는 이 명제를 수없이 증명해 왔다.

한국 교회도 이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정 정권에 밀착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교회, 국가의 이단 정죄를 환영하며 국가의 칼을 빌려 자기가 이단이라 규정한 단체를 누르려는 교단, 세금 혜택과 각종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는 교회 — 이 모든 모습이 국가 권력에 대한 의존이다. 교회는 국가의 보호 없이, 국가의 특혜 없이, 오직 복음의 힘으로 서야 한다. 앞서 살펴본 매디슨의 선언을 이 맥락에서 다시 새겨야 한다. “진정한 종교는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역사가 증언한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은 환호했지만, 그 대가는 약 1,000년에 이르는 타락과 세속화였다. 루터가 독일 제후들의 보호를 받았을 때도 불가피해 보였지만, 루터파 교회는 결국 국가 행정 기구에 편입되어 자유를 잃었다. 국가의 보호를 받을 때마다 교회는 잠시 안전해 보였지만, 끝내 자유를 잃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국가의 감시와 통제 아래 놓일지가 갈리게 된다. 지금 국가의 보호와 칼을 빌려 잠시 안정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당장은 손해를 보는 듯 보여도 복음의 힘만을 의지해 서서 다음 세대의 자유를 지킬 것인가. 이 선택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넷째, 모든 종교의 자유를 지키라

이 책에서 가장 도전적인 메시지를 꼽는다면 바로 이것이다. 한국 교회는 자

기 교회의 자유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는 종교의 자유, 심지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단체의 자유까지 포함된다.

이는 분명 어려운 요구이다. 교리적으로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확신하는 단체의 자유를 지키라는 요구는 많은 이들에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로 다가온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정교분리의 본질이다. 내가 동의하는 종교의 자유만 지키는 행위는 정교분리가 아니다. 모든 종교, 모든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정교분리이다. 로저 윌리엄스가 이교도의 양심의 자유까지 주장한 이유는, 양심의 자유란 특정 종파나 다수 종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보편적 영역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실용적인 이유도 분명하다. 오늘 국가가 통일교를 해산할 수 있으면, 내일은 순복음을, 모레는 장로교를, 그다음에는 침례교를 해산할 수 있다. 다수라는 이유로 소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을 묵인하면, 정권이 바뀌고 사회 분위기가 달라질 때 그 다수가 순식간에 소수가 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역전은 수없이 반복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의 자유를 지키려는 한국 교회의 태도는 단지 관용을 베푸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음 세대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4. 성경이 말하는 정교분리의 최종 근거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교분리의 최종 근거를 성경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정교분리는 단지 정치 이론이나 헌법 원칙이 아니다. 그 가장 깊은 뿌리는 성경에 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다르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 18:36)

이는 정교분리의 가장 근본적인 선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며, 이 세상 나라의 방식과 논리로 운영될 수 없다. 이 세상 나라는 칼과 권력과 표 대결로 다스려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와 사랑과 성령님의 일로 다스려진다.

둘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골 1:18)

교회의 최종 권위는 대통령에게도, 국회에도, 대법원에도, 교단 총회에도 있지 않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국가가 교회를 해산하겠다고 하거나, 교회의 교리와 설교 내용을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행위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대한 도전이다. 교회는 국가의 산하 기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셋째,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만 판단을 받는다.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계 보고를 하리라. (롬 14:12)

각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며, 국가나 교단이 타인의 양심을 대신 심판하고 통제할 수 없다. 이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성경적 근거이며, 정교분리 원리가 서 있는 궁극적 토대이다. 교단이 타인의 양심을 장악하려 할 때도, 국가가 그 양심 위에 군림하려 할 때도, 오직 하나님만이 최종 심판 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넷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정교분리를 가르친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주셨다. 밭에 알곡과 함께 가라지가 자라고 있을 때,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 버리겠다고 하자 주인이 이렇게 말한다.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들을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

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들을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 13:29-30)

이 비유는 최종적인 분리와 심판이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국가가 가라지를 뽑겠다고 나서면, 반드시 알곡
까지 함께 뽑히게 된다. 종교 단체 해산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나쁜 종교
를 제거하겠다고 국가가 나서기 시작하면, 결국 좋은 종교와 참된 교회까지
위협받게 된다.

이 비유의 신학적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정교분
리의 종말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알곡과 가라지의 최종 분리는 ‘수확 때’—곧
세상 끝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일어난다. 그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허용된다. 이 비유에서 종들은 가라지를 당장 뽑아 버리려 하
지만, 주인은 그것을 금지한다. 종들의 열심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열심이 곡
식까지 뽑아 버리는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상
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가가 나쁜 종교를 없애겠다는 열심, 대형 교단이
이단을 제거하겠다는 열심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열심이 가져올 결과,
곧 곡식까지 뽑혀 나가는 비극을 생각해야 한다. 역사 속에서 중세의 이단 심
문관들은 가라지를 뽑겠다는 열심으로 수많은 곡식을 함께 불태워 버렸다.
이 비유는 정교분리의 가장 깊은 성경적 근거이다. 최종 심판은 하나님의 영
역이지, 국가와 교단의 영역이 아니다.

다섯째, 강제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
니라. (요 4:24)

참된 예배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제로 만들어 낼 수 없다. 국가가 종교를
강제하거나 금지할 때, 두 경우 모두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이다. 로저 윌
리엄스가 “강제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악취를 내뿜는다.”라고 말한 것
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 성경적 진리를 요약한 표현이다.

자발성의 원리는 정교분리의 신학적 토대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다.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시면서도, 순종 여부를 선택할 자유를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순종을 강제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강제된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을 원하신다. 이것이 종교의 자유의 가장 깊은 신학적 근거이다. 국가가 종교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 의지를 침해하는 일이다.

토마스 헬위스가 제임스 1세에게 “왕은 사람들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서만 왕이지,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왕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한 것은 바로 이 신학적 원리의 정치적 표현이었다. 영혼의 영역은 하나님만의 영역이지, 왕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 영역이 아니다. 정교분리는 결국 이 고백 위에서 있다. “국가는 몸과 재산의 영역만 다룰 수 있으며, 영혼과 양심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다.” 이것이 이 책이 말하는 정교분리의 성경적 결론이며, 한국 교회가 깊이 새겨야 할 신학적 고백이다.

5. 맺음말 - 분리의 벽이 서 있는 한

1636년, 매사추세츠에서 추방된 로저 윌리엄스는 프로비던스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공동체를 세웠다. 그가 세운 원리는 지극히 단순했다. 국가는 종교에 간섭하지 않고, 종교는 국가를 지배하지 않으며, 각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이 원리를 위해 토마스 헬위스는 감옥에서 생을 마쳤고, 오바디아 홈즈는 채찍을 맞았으며, 존 번연은 12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아이작 백커스는 평생 청원서를 쓰며 의회를 드나들었고, 존 릴랜드는 곳곳을 누비며 정치 지도자들을 설득했다. 이름조차 남지 않은 수천 명의 침례교인들이 투옥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채찍에 맞았다. 1525년부터 1791년까지, 266년간의 피와 눈물이 응축되어 나온 결실이 바로 45개 단어의 수정 조항 제1조이다.

한국 교회는 이 자유를 값없이 받았으나, 이것이 결코 값싼 자유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1948년 제헌의회에서 한 전문위원이 정교분리 조항을 연문이라고 일컫은 장면은, 이 원리가 한국 땅에 아직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으로 치른 대가가 한국 교회의 양심에 엄중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값없이 받은 자유의 위험이 여기에 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자유는 소중히 여기지만, 거저 받은 자유는 가볍게 여기기 쉽다. 미국 교회는 오랜 투쟁의 대가로 정교분리를 얻었기에 이 원리의 가치를 안다. 반면 한국 교회는 이 원리를 값없이 도입했기에, 종교 단체 해산법이 발의되었을 때도 그 심각성을 충분히 감지하지 못하고 느슨하게 반응했다. 만약 한국 교회가 신앙의 선조들처럼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으면서 종교의 자유를 쟁취했다면, 종교 단체 해산법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달랐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해야 할 과제는, 이제라도 이 원리의 역사를 배워 그 가치를 깨닫고, 이 원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일이다.

오늘날 한국의 현실은 이 과제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 준다. 정교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교인들, 정교분리를 교회 탄압의 명분으로 사용하는 정치권력, 국가의 칼을 빌려 소수 종교를 누르려는 대형 교단의 유혹, 교회의 입을 막는 수단으로 정교분리를 활용하는 세속 사회 — 이 모든 현상은 정교분리 원리가 한국 땅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이 책은 앞서 살펴본 성경 신자들의 긴 투쟁의 역사를 한국 교회에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원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왜 여전히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설명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그 원리를 오늘의 한국 사회와 교회 현실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모색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한국 교회 안에서 정교분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을 읽은 목사가 강단에서 정교분리의 역사를 설교로 풀어 주기를 바란다. 이 책을 읽은 신학생이 정교분리의 성경적·역사적 원리를 더 깊이 연구하기를 바란다. 이 책을 읽은 성도가 종교의 자유의 가치를 깨닫고 기도하며 행동

하기를 바란다. 이 책을 읽은 법학도가 헌법 제20조의 의미를 새롭게 탐구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도, 정교분리의 원리가 판례와 학설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되기를 바란다. 그 과정은 결코 짧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도 230년이 걸렸다. 그러나 긴 여정도 첫걸음에서 시작된다. 이 책이 한국 교회의 정교분리 이해를 향한 그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

분리의 벽이 서 있는 한, 교회는 안전하다. 국가는 그 벽을 넘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리를 판단하고 설교를 검열하며, 교회의 존폐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리의 벽이 무너지면, 교회는 위협해진다. 국가가 교회의 교리를 재단하고, 설교를 법정에서 세우고, 결국 교회를 해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리의 벽이 서 있는 한, 양심은 자유롭다. 각 사람이 자기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분리의 벽이 무너지면, 양심은 국가의 통제 아래 놓인다. 국가가 인정하는 종교와 표현만 허용되고,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신앙과 양심은 억압과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분리의 벽이 서 있는 한, 복음은 자유롭게 전파된다. 어떤 권력도 복음 전파를 법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분리의 벽이 무너지면, 복음조차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할 수 있게 된다. 국가가 정치적이라고 판단하는 설교는 금지되고, 국가가 '사회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하는 전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정교분리의 궁극적 의미이다. 교회가 국가의 간섭과 검열, 해산의 위협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에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지상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 28:19-20)

이 명령을 수행하는 데 국가의 허가가 필요해서는 안 된다. 복음의 자유로운

전과, 이것이 정교분리가 지키려는 최종 가치이다.

이 벽을 지키는 일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과제이다. 이 벽은 한 번 세워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원히 서 있는 벽이 아니다. 매 세대가 다시 세워야 한다. 미국에서 오랜 세월 이 벽을 둘러싼 투쟁이 계속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이제 이 벽을 둘러싼 투쟁이 막 시작되었다.

정교분리 실현을 위한 수백 년간의 투쟁 역사가 한 목소리로 증언하는 바는 분명하다. 정교분리가 살아 있는 곳에서 교회는 번성했고, 정교분리가 무너진 곳에서 교회는 쇠퇴했다. 미국에서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존재해 온 이유는,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교회를 국가 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해 왔기 때문이다. 반대로 유럽의 수많은 교회가 텅 빈 건물이 된 배경에는, 국교 체제가 교회를 국가의 부속물로 만들어 버린 역사가 있다. 소련과 공산권에서 교회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것도, 국가가 교회를 노골적으로 통제하고 탄압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례가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이다. 정교분리는 교회의 생명선이다. 교회가 권력에 흡수되지도 않고, 권력에 의해 제거되지도 않으려면 이 경계선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생명선을 지키는 일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긴급하고도 본질적인 과제이다.

끝으로 정교분리의 목적은 국가와 교회가 서로를 적으로 삼게 하는 데 있지 않다. 정교분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영역과 권한을 분명히 인식해, 서로의 고유한 책임을 침해하지 않는 질서를 세우기 위한 원리이다. 국가는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고 법 앞의 공정을 지켜야 하며, 교회는 복음과 도덕적 책임으로 사회를 섬겨야 한다. 이때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유익의 관계에 설 수 있다.

정교분리는 대립의 원리가 아니라 질서의 원리이다. 통제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울타리이다. 교회에게 정교분리는 세속 권력에 예속되지 않기 위한 거룩한 구별이며, 국가에게 정교분리는 신앙을 사적 영역에 가두는 정치적 격리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계선이어야 한다. 정교분리는 교회의 적이 아니라 친구이다. 교회를 약화시키는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강

하게 하는 원리이며, 교회를 제거하는 장치가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는 울타리이다.

국가와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면서도 서로를 지배하거나 제거하려 하지 않는 구조, 곧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양쪽 모두가 함께 설 수 있는 길 — 이것이 이 책이 추구한 방향이며, 이 책을 덮는 독자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질문이다. 분리의 벽은 오늘도 서 있는가. 그 벽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국가와 교회 사이에 분리의 벽이 영원히 서 있기를!”

이 책을 수 세기 동안 양심의 자유를 위해 모욕과 투옥과 추방과 채찍을 견디며 싸웠던 모든 성경신자들(Bible believers)에게 바친다.

참고 문헌

통합 참고 문헌

1. 침례교·종교 자유·정교분리

Backus, Isaac. A History of New England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Baptists. 3 vols. Boston, 1777-1796.

Gaustad, Edwin S., and Leigh E. Schmidt. The Religious History of America. Rev. ed. San Francisco: HarperOne, 2004.

Sandy Creek Baptist Association. Minutes of the Sandy Creek Baptist Association, 1758-1770. North Carolina, 18th c.

Semple, Robert B. A History of the Rise and Progress of the Baptists in Virginia. Richmond, VA, 1810.

Torbet, Robert G. A History of the Baptists. 3rd ed.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1963.

2. 미국 헌법·정교분리·판례

Abington School District v. Schempp, 374 U.S. 203 (1963).

Cantwell v. Connecticut, 310 U.S. 296 (1940).

Edwards v. Aguillard, 482 U.S. 578 (1987).

Engel v. Vitale, 370 U.S. 421 (1962).

Everson v. Board of Education, 330 U.S. 1 (1947).

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597 U.S. ___ (2022).

“Lemon’s Entanglement Prong.” U.S. Constitution Annotated. Library of Congress.

Lemon v. Kurtzman, 403 U.S. 602 (1971).

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v. Cuomo, 592 U.S. ___ (2020).

3. 한국 헌법·판례·종교 자유

“Freedom of Religion in South Korea.” Wikipedia (accessed 2026).

Jeon, Sang-Hyeon. “Public Health and Constitutional Righ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Case of South Korea.” 서울대학교 법학 논문.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3104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1. 5. 25. 선고 2010다67665 판결 (징계무효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 2002헌바35 결정 (준법서약제 사건).

헌법재판소 2014헌다1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4. 일본 종교법인·옴진리교·통일교

Bälz, Moritz. “The Political and Legal Response to Aum-Related Violence in Japan.” *Japanese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The Dissolution of Aum Shinri Kyō as a Religious Corporation.”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Journal*.

“Religious Corporation Law” (Shūkyō Hōjinhō), Japan.

“The Unification Church Dissolution and Japan’s Evolving Religious Governance.” *East Asia Forum*, 3 May 2025.

5. 한국 개신교와 정치

“Conservative Zealots: Evangelical Politics in South Korea.” *9DashLine*, 9 July 2023.

“Mass Weddings and Political Power: Why Unification Church Keeps Resurfacing in Korean Politics.” *Korea Herald*, 14 Dec. 2025.

“The Organization Behind Growing Alliance of Korean, American Far-Right.” *Hankyoreh English Edition*, 15 Sept. 2025.

장별 참고 문헌

제1장: 정교분리란 무엇인가?

Ahdar, Rex & Leigh, Ian. *Religious Freedom in the Liberal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Dreisbach, Daniel L. *Thomas Jefferson and the Wall of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2.

Gaus, Gerald F. *The Order of Public Rea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Hamburger, Philip.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Tierney, Brian. *The Crisis of Church and State, 1050–1300*.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8.

Witte, John Jr. *Religion and the American Constitutional Experiment*.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도날드 드레이스바흐. 「정교분리의 담장: 토마스 제퍼슨과 분리의 벽」. 대장간, 2011.

제2장: 성경이 말하는 두 영역

Augustine. *The City of God (De Civitate Dei)*. (426).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Book IV, Chapter 20.

Carson, D. A. *Christ and Culture Revisited*. Eerdmans, 2008.

Cullmann, Oscar. *The State in the New Testament*. Scribner, 1956.

Luther, Martin. *On Secular Authority*. (1523).

Murray, John Courtney. *We Hold These Truths: Catholic Reflections on the American Proposition*. Sheed & Ward, 1960.

O'Donovan, Oliver. *The Desire of the Nations: Rediscovering the Roots of Political The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Wright, N. T. *God and the Faithfulness of Paul*. Fortress Press, 2013.

제3장: 국가 교회 천 년의 비극 (AD 313-1564)

Bainton, Roland H.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eacon Press, 1952.

Eusebius. *Life of Constantine*. (4th Century).

González, Justo L. *The Story of Christianity: Vol. 1 & 2*. HarperOne, 2010.

MacCulloch, Diarmaid. *Christianity: The First Three Thousand Years*. Viking, 2009.

Verduin, Leonard. *The Reformers and Their Stepchildren*. Eerdmans, 1964.

Williams, George Huntston. *The Radical Reformation*. Westminster Press, 1962.

에스텔, 윌리엄 R. 「재침례파 역사」. 라온성역, 그리심, 2006.

제4장: 재침례교에서 침례교로 - 유럽에서의 투쟁

Brachlow, Stephen. *The Communion of Saints: Radical Puritan and Separatist Ecclesi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Estep, William R. *The Anabaptist Story: An Introduction to Sixteenth-Century Anabaptism*. Eerdmans, 1996.

Helwys, Thomas. *A Short Declaration of the Mystery of Iniquity*. (1612).

McBeth, H. Leon. *The Baptist Heritage: Four Centuries of Baptist Witness*. Broadman Press, 1987.

Smyth, John. *The Character of the Beast*. (1609).

Underhill, Edward Bean. *Tracts on Liberty of Conscience and Persecution, 1614-1661*. J. Haddon, 1846.

Vedder, Henry C. *A Short History of the Baptists*.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1907.

제5장: 신대륙에서의 자유 투쟁 (AD 1620-1791)

Backus, Isaac. *A History of New England,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Denomination of Christians Called Baptists*. (1777).

Gaustad, Edwin S. *Roger William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Kidd, Thomas S. *The Great Awakening: The Roots of Evangelical Christianity in Colonial America*. Yale University Press, 2007.

Leland, John. *The Rights of Conscience Inalienable*. (1791).

McLoughlin, William G. *Soul Liberty: The Baptists' Struggle in New England, 1630-1833*. Brown University Press, 1991.

Miller, Perry. *Roger Williams: His Contribution to the American Tradition*. Bobbs-Merrill, 1953.

Williams, Roger. *The Bloody Tenent of Persecution for Cause of Conscience*. (1644).

제6장: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 정교분리와 분리의 벽 (1791)

Dreisbach, Daniel L. & Hall, Mark David. *The Sacred Rights of Conscience*. Liberty Fund, 2009.

Jefferson, Thomas. *Virginia Statute for Religious Freedom*. (1786).

Levy, Leonard W. *The Establishment Clause: Religion and the First Amendment*.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4.

Madison, James. *Memorial and Remonstrance against Religious Assessments*. (1785).

Noonan, John T., Jr. *The Lustre of Our Country: The American Experience of Religious Freedo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Ragosta, John. *Religious Freedom: Jefferson's Legacy, America's Creed*.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13.

Rakove, Jack N. *Original Meanings: Politics and Ideas in the Making of the Constitution*. Knopf, 1996.

제7장: 미국에서의 정교분리 실행과 문제점

Feldman, Noah. *Divided by God: America's Church-State Problem--and What We Should Do About It*. Farrar, Straus and Giroux, 2005.

Green, Steven K. *The Second Disestablishment: Church and State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Hamilton, Marci A. *God vs. the Gavel: Religion and the Rule of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Irons, Peter. *God on Trial: Landmark Cases from America's Religious Battlegrounds*. Viking, 2007.

Monsma, Stephen V. *The Challenge of Pluralism: Church and State in Five Democracies*. Rowman & Littlefield, 2008.

서헌재. 「미국 종교와 법」. 법문사, 2013.

제8장: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와 정교분리

국가기록원. 「제한의회 회의록」. (1948).

김남변. 「대한민국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의 재조명」. 법학논총, 2018.

김철기. 「한국 헌법상의 정교분리원칙에 관한 연구」. 법문사, 1995.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23.

한국헌법학회 편. 「한국 헌법사」. 법문사, 2014.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23.

제9장: 한국 교회의 정교분리 현실

강인철. 「한국의 정교분리: 역사와 쟁점」. 한울, 2014.

박명수. 「근대한국과 기독교: 정교분리의 형성과 전개」.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백종국. 「한국 정치와 기독교」. 흥성사, 2007.

법원도서관 편. 「사법논집 제42집: 종교단체의 내부 분쟁과 사법심사」. 법원도서관, 2006.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3.
윤승용. 「한국 사회와 종교교섭사」. 한국학학술정보, 2013.
이정배 외. 「한국교회와 정치: 정교분리의 역사와 현실」. 동연, 2012.
장석만. 「한국 근대 종교 개념의 형성」.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한국종교주권협의회 편. 「국가 종교편향 실태와 정교분리의 헌법적 가치」. 한국종교주권협의회, 2012.
황규학. 「이단감별사들의 한국교회 대사기극」. 에셀나무, 2014.

제10장: 정교분리와 종교 단체 해산법

Laycock, Douglas. Religious Liberty, Volume 1: Overviews and History. Eerdmans, 2010.
McConnell, Michael W. Religion and the Constitution. Aspen Publishers, 2011.
Sandel, Michael J. Democracy's Discontent: America in Search of a Public Philosoph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일본 문화청. 「종교법인법 해설」. (일본 종교법인 해산 명령 사례 연구 참고).
한국종교주권협의회. 「종교해산법의 위협성과 정교분리」. (2025).
헌법재판소 판례집. (위헌정당해산 및 단체 해산 관련 법리 참고)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테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족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곁이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류)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트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잡이 역할, 흥정적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설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인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전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티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짝스 외/ 고정인 역

모든 것을 끝낸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아담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설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찬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교회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잭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리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목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비침침 등 중말론 총정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흥정역

한영대역/ 스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테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변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개역성경분석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사랑침례교회 무료 요청)
9.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K. 파이퍼 저, 이황로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0.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2.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3.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4.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5.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테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테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대! 너희가 과부 들의 짐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징계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 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 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 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 하셨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 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 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괄호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소개



성경바로보기



요한계시록



9 788995 158784
ISBN 978-89-951587-8-4



값 8,000원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도서 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 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 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 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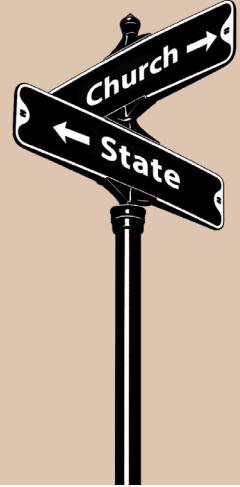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왜곡된 정교분리의 참된 의미를 말하다

- 인류 역사 최초의 정교분리 - 1791년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
- 정교분리는 국가와 교회 둘 다를 건강하게 만든다
- 정교분리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원리이다
- 좌파의 오남용: 공적 영역에서 종교 배제 시도
- 우파의 오남용: 기독교 국가주의 위험
-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 카이사르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 구분
- 구약의 신정 정치 - 이스라엘만의 특수한 체제
- 정교유착 중세 카톨릭 국가 교회 천 년의 비극
- 종교 개혁의 위대한 성취와 명백한 정교유착 국가 교회 한계
- 정교분리 선진국 미국의 정교분리 실행 역사 및 판례들
- 정교분리 후진국 일본의 종교법인 해산 사례들의 특수성
- 대한민국 헌법의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 범위
- 정교분리는 통일교, 신천지의 신앙의 자유도 존중한다
- 국가가 종교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가 - 역사적 교훈



종교 단체 해산법이 논의되고 설교 내용이 정치적 개입으로 판정되어 현직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이 시대에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곧 모든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일임을 이해시킨다는 점에서, 이 책은 신앙인뿐 아니라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시민이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 추천사 중에서(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이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를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목사가 설교에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면 정교분리 위반이다.”라는 주장이 마치 상식처럼 통용된다. 그러나 이는 정교분리의 본래 의미와 정반대이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거나 특정 종교를 강요·금지하지 못하도록 세운 헌법적 장치이다. 교회의 입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원칙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정교분리라는 방패가 오히려 교회를 향한 칼로 바뀌고 있다. - 저자 서문 중에서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소개



목회자·신대원생
무료 성경 증명



무료 설교
강해 노트

값 20,000원



9 788992 485739
ISBN 978-89-92485-73-9